社會保障關係法令集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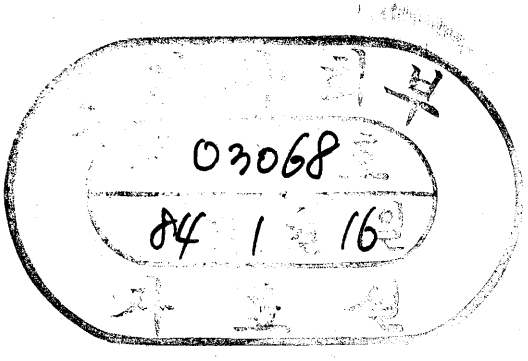

保健社會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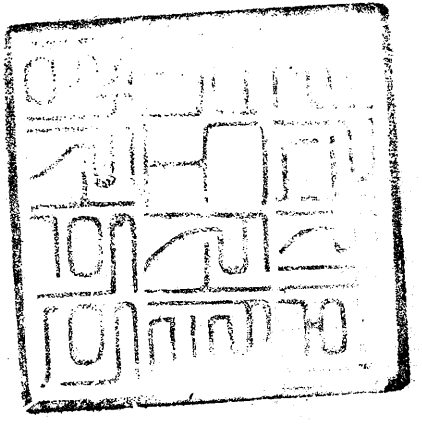

目　　次

1．総　則　編

◎ 大韓民国憲法 …… 1

◎ 社会保障에 関한 法律 …… 41

o 社会保障審議委員会 規程 …… 45

2．社会保険編

◎ 医療保険法 …… 49

◎ 産業災害補償保険法 …… 77

o 産業災害補償保険法施行令 …… 107

◎ 公務員年金法 …… 165

◎ 軍人年金法 …… 207

◎ 私立学校教員年金法 …… 231

o 私立学校教員年金法施行令 …… 256

◎ 船員保険法 …… 327

3．公的扶助編

◎ 生活保護法 …… 357

o 生活保護法施行令 …… 379

o 生活保護施設設置基準法 …… 389

o 生活保護基金積立管理要領 …… 397

o 生活保護施設 被收用死亡者
喪葬措処에 関한 規程 401

◎ 災害救護法 405

o 災害救護法施行令 411

◎ 災害救護로 因한 義死傷者救護法 421

o 災害救護로 因한 義死傷者救護法施行令 425

◎ 軍事援護報償法 435

o 軍事援護報償法施行令 450

◎ 国家有功者等 特別援護法 481

o 国家有功者等 特別援護法施行令 502

4. 社会福祉編

◎ 社会福祉事業法 595

o 社会福祉事業法施行令 605

o 社会福祉事業法施行規則 615

o 社会事業従事者 訓練規程 649

o 社会福祉 寄託金 管理規程 655

◎ 児童福利法 661

o 児童福利法施行令 673

o 児童福利法施行規則 684

o 児童福利施設設置基準令 713

7129
368.3
213ㅅ
1976

o 児童福利指導員資格試験規程 737

o 児童福利委員会 規程 740

◎ 孤児入養特例法 743

o 孤児入養特例法施行令 748

o 孤児入養特例法施行規則 757

◎ 保護施設에 있는 孤児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 763

o 保護施設에 있는 孤児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施行令 764

◎ 大韓民国 保健社会部와 西瑞国 페스타로지 児童村 財団間의 約定 771

◎ 淪落行為等防止法 777

o 淪落行為等防止法施行令 783

o 淪落行為等防止法에 依한 職業輔導施設의 施設基準令 789

o 淪落女性善導対策委員会規程 795

o 婦女相談員任用 및 配置에 関한 規則 799

◎ 家庭儀礼에 関한 法律 803

o 家庭儀礼에 関한 法律施行令 809

o 家庭儀礼準則 815

o 家庭儀礼에 関한 法律施行規則 ····· 829
◎ 自活指導事業에 関한 臨時措置法 ····· 853
◎ 外国民間援助団体에 関한 法律 ····· 857
o 外国民間援助団体에 関한 法律施行令 ····· 863
o 外国民間援助団体에 関한 法律施行規則 ····· 881
o 国際援助 韓国社会事業 諮問委員会 運営規程 ····· 895
o 中央救護協議委員会規程 ····· 899
◎ 海外移住法 ····· 903
o 海外移住法施行令 ····· 909
o 海外移住法施行規則 ····· 917

5. 其 他 論

◎ 大韓赤十字社組織法 ····· 929
o 大韓赤十字社組織法施行令 ····· 937
◎ 海外開発公社法 ····· 941
◎ 社会団体登録에 関한 法律 ····· 959
◎ 勤労基準法 ····· 967
◎ 労動組合法 ····· 1005
◎ 労動争議調整法 ····· 1027

◎ 労動委員会法 1045
o 労動委員会法施行令 1056
o 労動委員会法施行規則 1061
◎ 職業安定法 1065
◎ 保健社会部所管 非営利法人 및 監督에 関한 規則 1077
◎ 社会保障審議委員会研究班 運営細則 1087
o 社会保障審議委員会 諸手当支給規程 1089

卷末追錄添附

大 韓 民 國 憲 法

〔1948年 7月12日制定〕
〔1948年 7月17日公布〕
改正 1952. 7. 7.1954.11.29
1960. 6.15.1960.11.29
1962.12.26.1969.10.21
1972.12.27

前 文

悠久한 歷史와 伝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民国은 3·1運動의 崇高한 独立精神과 4·19義挙 및 5·16革命의 理念을 계승하고 祖国의 平和的統一의 歷史的使命에 입각하여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공고히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国을 建設함에 있어서 政治·経済·社会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会를 균등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発揮하게 하며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게하여, 안으로는 国民生活의 균등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영원히 확보할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7月12日에 制定되고 1962年12月26日에 改正된 憲法을 이제 国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1972年11月24日

第 1 章　総　　綱

第 1 条　①大韓民国은　民主共和国이다.

②大韓民国의　主権은　国民에게　있고, 国民은　그代表者나　国民投票에　의하여　主権을　행사한다.

第 2 条　大韓民国의　国民의　要件은　法律로　정한다.

第 3 条　大韓民国의　領土는　韓半島와　附属島嶼로　한다.

第 4 条　大韓民国은　国際平和의　維持에　노력하고　侵略的　戦争을　否認한다.

第 5 条　①이　憲法에　의하여　締結·公布된　条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国際法規는　国内法과　같은　効力을　가진다.

②外国人에　대하여는　国際法과　条約에　정한바에　의하여　그　地位를　보장한다.

第 6 条　①公務員은　国民全体에　대한　奉仕者이며　国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②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第 7 条 ①政党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数政党制는 보장된다.

②政党은 그 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国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参与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③政党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国家의 보호를 받는다. 다만, 政党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되거나 国家의 存立에 危害가 될때에는 政府는 憲法委員会에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党은 憲法委員会의 決定에 의하여 解散된다.

第 2 章 国民의 権利와 義務

第8条 모든 国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厳과 価値를 가지며, 이를위하여 国家는 国民의 基本的 人権을 最大限으로 보장할 義務를진다.

第9条 ①모든 国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또는 社会的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経済的·社会的·文化的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②社会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아니하며, 어떠

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③ 勲章등의 栄典은 이를 받은 者에게만 効力이있고 어떠한特権도 이에따르지 아니한다.

第10条 ①모든 国民은 身体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禁·押収 捜索·審問·処罰·強制労役과 保安処分을 받지아니한다.

②모든 国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禁·押収·捜索에는 検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発付한 令状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証拠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状을 要求할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받은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権利를 가진다.

다만, 法律이 정하는 경우에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수 없을 때에는 国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第11条 ①모든 国民은 行為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構成하지 아니하는 行為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同一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処罰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国民은 遡及立法에 의하여 参政権의 制限 또는 財産権의 剝奪을 받지 아니한다.

第12条 모든 国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居住·移転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3条 모든 国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職業選択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4条 모든 国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住居의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収나 捜索에는 検事의 要求에 의하여 法官이 発付한 令状을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条 모든 国民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通信의 秘密을 侵害받지 아니한다.

第16条 ①모든 国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国教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17条 모든 国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第18条 모든 国民은 法律에 의하지아니하고는 言論出版·集会·結社의 自由를 制限받지 아니한다.

第19条 ①모든 国民은 学問과 芸術의 自由를 가진다.

②著作者·発明家와 芸術家의 権利는 法律로서 보호한다.

第20条 ①모든 国民의 財産権은 보장된다. 그 内容과 限界는 法律로서 정한다.

②財産権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権의 収用·使用 또는 制限 및 그 補償의 基準과 方法은 法律로 정한다.

第21条 모든 国民은 20歳가 되면,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挙権을 가진다.

第22条 모든 国民은 法律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務担任権을 가진다.

第23条 ①모든 国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国家機関에 文書로 請願할 権利를 가진다.

②国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4条 ①모든 国民은 憲法과 法律에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権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属이 아닌 国民은 大韓民国의 領域안에서는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飲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 및 非常 戒厳이 宣布되거나 大統領이

法院의 權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法会議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国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理由가 없는 限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25条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無罪判決을 받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国家에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6条 ①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為로 損害를 받은 国民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国家 또는 共公団体에 賠償을 請求할수 있다. 그러나, 公務員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②軍人·軍属·警察公務員 기타 法律로 정한 者가 戰闘·訓練등 職務執行과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한 報償이외에 国家나 公共団体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為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수 없다.

第27条 ①모든 国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모든 国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게할 義務를진다.

③義務教育은 無償으로한다.

④教育의 自主性과 政治的 中立性은 보장되어야 한다.

⑤教育制度와 그 運営에 관한 基本的인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28条 ①모든 国民은 勤労의 権利를 가진다. 国家는 社会的·経済的方法으로 勤労者의 雇傭의 増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国民은 勤労의 義務를 진다. 国家는 勤労의 義務의 内容과 条件을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③勤労条件의 基準은 法律로 정한다.

④女子와 少年의 勤労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第29条 ①勤労者의 団結権·団体交渉権 및 団体行動権은 法律이 정하는 範囲안에서 보장된다.

②公務員인 勤労者는 法律로 인정된 者를 제외하고는 団結権·団体交渉権 또는 団体行動権을 가질 수 없다.

③公務員과 国家·地方自治団体·国営企業体·公益事業体 또는 国民経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事業体에 종사하는 勤労者의 団体行動権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制限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0条 ①모든 国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権利를 가진다.

②国家는 社会保障의 増進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国民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国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1条 모든 国民은 婚姻의 純潔과 保健에 관하여 国家의 보호를 받는다.

第32条 ①国民의 自由와 権利는 憲法에 列挙되지 아니한 理由로 軽視되지 아니한다.

②国民의 自由와 権利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国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限한다.

第33条 모든 国民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納税의 義務를 진다.

第34条 모든 国民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国防의 義務를 진다.

第 3 章　統一主体国民会議

第35条　統一主体国民会議는　祖国의　平和統一을　維持하기　위한　온　国民의　総意에　의한　国民的組織体로서　祖国統一의　神聖한　使命을　가진　国民의　主体的　受任　機関이다.

第36条　①統一主体国民会議는　国民의　直接選挙에　의하여　選出된　代議員으로　構成한다.

②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의　数는　2,000　以上　5,000以下의　範囲안에서　法律로　정한다.

③大統領은　統一主体国民会議의議長이　된다.

④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의　選挙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7条　①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으로서　選挙될　수　있는　者는　国会議員의　被選挙権이　있고　選挙日　現在30歳에　達한　者로서　祖国의　平和統一을　위하여　国民主権을　성실히　行使할　수　있는　者라야　한다.

②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으로　選挙될수　있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③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은　政党에　加入할　수　없으며,国会議員과　法律이　정하는　公職을　兼할수　없다.

④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第38条 ①大統領은 統一에 관한 重要 政策을 決定하거나 変更함에 있어서, 国論統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統一主体国民会議審議에 붙일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数의 賛成을 얻은 統一政策은 国民의 総意로 본다.

第39条 ①大統領은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討論없이 無記名 投票로 選挙한다.

②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在籍代議員 過半数의 賛成을 얻는 者를 大統領当選者로 한다.

③第2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2次投票를 하고 2次投票에도 第2項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得票者가 1人이면 最高得票者와 次点者에 対하여, 最高得票者가 2人以上이면, 最高 得票者에 대하여 決選投票를 함으로써 多数得票者를 大統領当選者로 한다.

第40条 ①統一主体国民会議는 国会議員定数의 3分의 1에 해당하는 数의 国会議員을 選挙한다.

②第1項의 国会議員의 候補者는 大統領이 一括推薦하며, 候補者全体에 대한 賛反을 投票에 붙여 在籍代議員 過半数의 出席과 出席代議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当選을 決定한다.

③第2項의 賛成을 얻지 못한 때에는 大統領은 当選의 決定이 있을때까지 계속하여 候補者의 全部또는 一部를 変更한 候補者 名簿를 다시 作成하여 統一主体国民会議에 提出하고 그 選挙를 要求하여야 한다.

④大統領이 第2項의 候補者를 推薦하는 경우에,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選挙할 国会議員 定数의 5分의 1의 範囲안에서 順位를 정한 豫備候補者名簿를 提出하여 第2項의 議決을 얻으면, 豫備候補者는 名簿에 記載된 順位에 따라 闕位된 統一主体国民会議 選出 国会議員의 職을 承継한다.

第41条 ①統一主体国民会議는 国会가 発議·議決한 憲法改正案을 最終的으로 議決·確定한다.

②第1項의 議決은 在籍代議員 過半数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第42条 統一主体国民会議의 組織·運営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4 章　大 統 領

第 43 条　①大統領은 国家의 元首이며, 外国에 대하여 国家를 代表한다.

②大統領은 国家의 独立, 領土의 保全, 国家의 継続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③大統領은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④行政権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속한다.

第 44 条　大統領으로 選挙될 수 있는 者는 国会議員의 被選挙権이 있고 選挙日 現在 계속하여 5 年以上 国内에 居住하고 40 歳에 達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公務로 外国에 派遣된 期間은 国内居住 期間으로 본다.

第 45 条　①大統領의 任期가 満了되는 때에는 統一主体国民会議는 늦어도 任期満了 30 日前에 後任者를 選挙한다.

②大統領이 闕位된 때에는 統一主体国民会議는 3 月以内에 後任者를 選挙한다.

다만, 残任期間이 1 年에 未満인때에는 後任者를 選挙하지 아니한다.

③大統領이 闕位된 경우의 後任者는 前任者의 残任期間中 在任한다.

第46条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 다음의 宣誓를 한다.

『나는 国憲을 遵守하고 国家를 保衛하며 国民의 自由와 福利의 増進에 노력하고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위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성실히 수행할것을 国民앞에 厳粛히 宣誓합니다.』

第47条 大統領의 任期는 6年으로한다.

第48条 大統領이 闕位되거나 事故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国務総理, 法律에정한 国務委員의 順位로 그 権限을 代行한다.

第49条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国家의 중요한 政策을 国民投票에 붙일수있다.

第50条 大統領은 条約을 締結·批準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戦布告와 講和를 한다.

第51条 ①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国軍을 統帥한다.

②国軍의 組織과 編成은 法律로 정한다.

第52条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体的으로 範囲를 정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을 発할수 있다.

第53条 ①大統領은 天災·地変 또는 重大한 財政·経済上의 危機에 処하거나, 国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가 重大한 威脅을 받거나 받을 憂慮가 있어, 신속한 措置를 할필요가 있다고 判断할 때에는 内政·外交·国防·経済·財政·司法등 国政全般에 걸쳐 필요한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②大統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이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国民의 自由와 権利를 暫定的으로 정지하는 緊急措置를 할 수 있고, 政府나 法院의 権限에 관하여 緊急措置를 할 수 있다.

③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를 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国会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第1項과 第2項의 緊急措置는 司法的 審査의 対象이 되지 아니한다.

⑤緊急措置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⑥国会는 在籍議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緊急措置의 解除를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으며, 大統領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限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54条 ①大統領은 戰時·事変 또는 이에準하는 国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필요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戒厳을 宣布할 수 있다.

②戒厳은 非常戒厳과 警備戒厳으로 한다.

③非常戒厳이 宣布된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令状制度·言論·出版·集会·結社의 自由, 政府나 法院의 権限에 관하여 특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戒厳을 宣布한 때에는 大統領은 지체없이 国会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国会가 在籍議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戒厳의 解除를 要求한때에는 大統領은 이를 解除하여야 한다.

第55条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公務員을 任命한다.

第56条 ①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赦免·減刑·復権을 命할 수 있다.

②一般赦免을 命하려면 国会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赦免·減刑·復権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57条 大統領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勲章 기타의 栄典을 수여한다.

第58条 大統領은 国会에 출석하여 発言하거나 書翰으로 의견을 표시할수 있다.

第59条 ①大統領은 国会를 解散할 수 있다.

②国会가 解散된 경우 国会議員 総選挙는 解散된 날로부터 30日以後 60日以前에 実施한다.

第60条 大統領의 国法上 行為는 文書로써하며, 이文書에는 国務総理와 関係 国務委員이 副署한다. 軍事에 관한것도 또한 같다.

第61条 大統領은 国務総理·国務委員·行政各部의 長 기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兼할 수 없다.

第62条 大統領은 内乱 또는 外患의 罪를 犯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中 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

第5章 政 府

第1節 国務総理와 国務委員

第63条 ①国務総理는 国会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国務総理는 大統領을 補佐하고 行政에 관하여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한다.

③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国務総理로 任命될 수 없다.

第64条 ①国務委員은 国務総理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名한다.

②国務委員은 国政에 관하여 大統領을 補佐하며 国務会議의 構成員으로서 国政을 審議한다.

③国務総理는 国務委員의 解任을 大統領에게 建議할 수 있다.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後가 아니면 国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第2節 国 務 会 議

第65条 ①国務会議는 政府의 権限에 속하는 중요한 政策을 審議한다.

②国務会議는 大統領·国務総理와 15人 以上 25人 以下의 国務委員으로 構成한다.

③大統領은 国務会議의 議長이되고, 国務総理는 副議長이된다.

第66条 다음 事項은 国務会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国政의 基本的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2. 宣戦·講和 기타 중요한 対外政策.

3. 憲法改正案·国民投票案·条約案·法律案과 大統領令案

4. 豫算案·決算·国有財産処分의 基本計劃·国家의 負担이 될 契約 기타 財政에 관한 重要事項

5. 大統領의 緊急措置 또는 戒厳과 그 解除

6. 軍事에 관한 重要事項

7. 国会의 解散

8. 国会의 臨時会 集会의 要求

9. 栄典授与

10. 赦免·減刑과 復権

11. 行政 各部間의 権限의 劃定

12. 政府안의 権限의 委任 또는 配定에 관한 基本計劃

13. 国政処理状況의 評価·分析

14. 行政 各部의 중요한 政策의 樹立과 調整

15. 政党解散의 提訴

16. 政府에 提出 또는 回附된 政府의 政策에 관계되는 請願의 審査

17. 検察総長·国立大学校総長·大使·各軍参謀総長·海兵隊司令官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과 国営企業

体管理者의 任命

18. 기타 大統領·国務総理 또는 国務委員이 提出한 事項

第67条 ①国家安全保障에 관련되는 対外政策·軍事政策과 国内政策의 樹立에 관하여 国務会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国家安全保障会議를 둔다.

②国家安全保障会議는 大統領이 主宰한다.

③国家安全保障会議의 組織·職務範囲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3節 行 政 各 部

第68条 行政各部의 長은 国務委員中에서 国務総理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69条 国務総理 또는 行政各部의 長은 所管事務에 관하여 法律이나 大統領令의 委任 또는 職権으로 総理令 또는 部令을 発할 수 있다.

第70条 行政各部의 設置·組織과 職務範囲는 法律로 정한다.

第4節　監　査　院

第71条　国家의　歲入·歲出의　決算，国家　및　法律에 정한　団体의　会計　検査와　行政機関　및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監察을　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属下에 監査院을　둔다.

第72条　①監査院은　院長을　포함한　5人以上　11人以下의　監査委員으로　構成한다.

②院長은　国会의　同意를　얻어　大統領이　任命하며，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③院長이　闕位된　경우에　任命된　後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④監査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하며 그　任期는　4年으로　한다.

第73条　監査院은　歲入·歲出의　決算을　毎年検査하여 大統領과　次年度国会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第74条　監査院의　組織·職務範囲·監査委員의　資格·監査対象　公務員의　範囲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6章　国　　会

第75条　立法権은　国会에　속한다.

第76条　①国会는　国民의　普通·平等·直接·秘密選挙에　의하여　選出된　議員　및　統一主体国民会議가　選挙하는　議員으로　構成한다.

②国会議員의　数는　法律로　정한다.

③国会議員의　選挙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77条　国会議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다만,　統一主体国民会議가　選挙한　国会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78条　国会議員은　法律이　정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第79条　①国会議員은　現行犯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会期中　国会의　同意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아니한다.

②国会議員이　会期前에　逮捕　또는　拘禁된　때에는　現行犯人이　아닌限　国会의　要求가　있으면　会期中　釈放된다.

第80条　国会議員은　国会에서　職務上행한　発言과　表決에　관하여　国会外에서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81条 国会議員은 그 地位와 特権을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2条 ①国会의 定期会는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每年 1回集会되며, 国会의 臨時会는 大統領 또는 国会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要求에 의하여 集会된다.

②定期会의 会期는 90日을, 臨時会의 会期는 3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国会는 定期会·臨時会를 합하여 年150日을 초과하여 開会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이 集会를 要求한 臨時会의 日数는 이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④大統領이 臨時会의 集会를 要求할 때에는 期間과 集会要求의 이유를 明示하여야 한다.

⑤大統領의 要求에 의하여 集会된 臨時会에서는 政府가 提出한 議案에 限하여 処理하며, 国会는 大統領이 集会要求時에 정한 期間에 限하여 開会한다.

第83条 国会는 議長1人과 副議長 2人을 選挙한다.

第84条 国会는 憲法 또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그 在籍議員 過半数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数인 때에는 否決된 것으로 본다.

第85条 ①国会의 会議는 公開한다. 다만, 出席議員 過半数의 賛成이 있거나 議長이 国家의 安全保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公開하지 아니한 会議의 内容은 公表되어서는 아니된다.

第86条 国会에 提出된 法律案 기타의 議案은 会期中에 議決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選挙되지 아니한 国会議員의 任期가 満了되거나 国会가 解散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87条 国会議員과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수 있다.

第88条 ①国会에서 議決된 法律案은 政府에 移送되어 15日以内에 大統領이 公布한다.

②法律案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第1項의 期間안에 異議書를 붙여 国会로 還付하고 그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 国会의 閉会中에도 또한 같다.

③大統領은 法律案의 一部에 대하여 또는 法律案을 修正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없다.

④再議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国会는 再議에 붙이

고 在籍議員 過半数의 出席과 出席議員 3分의 2 以上의 賛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⑤大統領이 第1項의 期間안에 公布나 再議의 要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法律案은 法律로서 確定된다.

⑥大統領은 第4項과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法律을 지체없이 公布하여야 한다. 第5項에 의하여 法律이 確定된 後 또는 第4項에 의한 確定法律이 政府에 移送된 後 5日以内에 大統領이 公布하지 아니할때에는 国会議長이 이를 公布한다.

⑦法律은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公布한 날로부터 20日을 경과함으로써 効力을 발생한다.

第89条 ①国会는 国家의 豫算案을 審議·確定한다.

②政府는 会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会計年度開始 90日前까지 国会에 提出하고, 国会는 会計年度開始 30日前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期間안에 豫算案이 議決되지 못한 때에는 政府는 国会에서 豫算案이 議決될때까지 다음

各号의 経費를 歳入의 範囲안에서 前年度豫算에 準하여 支出할 수 있다.

1. 公務員의 報酬와 事務処理에 필요한 基本経費

2. 憲法이나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機関 또는 施設의 維持費와 法律上 支出의 義務가 있는経費

3. 이미豫算上 承認된 継続費

第90条 ①한会計年度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年限을 정하여 継続費로서 国会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②豫測할수 없는 豫算外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한 豫備費는 미리 国会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豫備費의 支出은 次期国会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91条 豫算成立後에 생긴 事由로 인하여 豫算에 変更을 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政府는 追加更正豫算案을 編成하여 国会에 提出할 수 있다.

第92条 国会는 政府의 同意없이 政府가 提出한 支出豫算 各項의 金額을 増加하거나 새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

第93条 国債를 모집하거나 豫算外에 国家의 負担이 될 契約을 締結하려 할때에는 政府는 미리 国会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第94条 租税의 種目과 税率은 法律로 정한다.

第95条 ①国会는 相互援助 또는 安全保障에 관한 条約, 国際組織에 관한 条約, 通商条約, 漁業条約, 講和条約, 国家나 国民에게 財政的 負担을 지우는条約 外国軍隊의 地位에 관한 条約 또는 立法事項에 관한 条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権을 가진다.

②宣戦布告, 国軍의 外国에의 派遣 또는 外国軍隊의 大韓民国領域안에서의 駐留에 대하여도 国会는 同意権을 가진다.

第96条 ①国務総理·国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国会나 그 委員会에 출석하여 国政処理状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

②国会나 그 委員会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国務総理·国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答弁하여야 하며, 国務総理 또는 国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国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答弁하게 할수 있다.

第97条 ①国会는 国務総理 또는 国務委員에 대하여 個別的으로 그 解任을 議決할 수 있다.

②前項의 解任議決은 国会在籍議員 3分의 1以上

의 発議에 의하여 国会在籍議員 過半数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国務総理 또는 当該国務委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다만, 国務総理에 대한 解任議決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은 国務総理와 国務委員全員을 解任하여야 한다.

第98条 ①国会는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囲안에서 議事와 内部規律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国会는 議員의 資格을 審査하며 議員을 懲戒할 수 있다.

③議員을 除名하려면 国会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④第2項과 第3項의 処分에 대하여는 法院에 提訴할 수 없다.

第99条 ①大統領·国務総理·国務委員·行政各部의 長 憲法委員会委員·法官·中央選挙管理委員会委員·監査委員 기타 法律에 정한 公務員이 그 職務 執行에 있어서 憲法이나 法律을 違背한때에는 国会는 弾劾의 訴追를 議決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弾劾訴追는 国会在籍議員 3分의 1以上의 発議가 있어야 하며, 그議決은 国会在籍議員 過半数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에 대한 弾劾訴追는 国会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③弾劾訴追의 議決을 받은 者는 弾劾決定이 있을때까지 그 権限行使가 정지된다.

④弾劾決定은 公職으로부터 罷免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民事上이나 刑事上이나 責任이 免除되지는 아니한다.

第7章 法 院

第100条 ①司法権은 法官으로 権成된 法院에 속한다.

②法院은 最高法院인 大法院과 各級法院으로 組織된다.

③法官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01条 ①大法院에 部를 둘수 있다.

②大法院의 法官의 数는 16人以下로 한다.

③大法院과 各級法院의 組織은 法律로 정한다.

第102条 法官은 이 憲法과 法律에 의하여 그良心에 따라 独立하여 審判한다.

第103条 ①大法院長인 法官은 大統領이 国会의 同意를 얻어 任命한다.

②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은 大法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大法院長인 法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④大法院長이 아닌 法官의 任期는 10年으로 한다.

⑤法官은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連任될수 있다.

⑥法官은 法律이 정하는 年齡에 達한때에는 退職한다.

第104条 ①法官은 彈劾·刑罰 또는 懲役処分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停職·減俸되거나 不利한 処分을 받지 아니한다.

②法官이 重大한 心身上의 障害로 職務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退職할 수 있다.

第105条 ①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与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会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의하여 裁判한다.

②命令·規則·処分이 憲法이나 法律에 違反되는 与否가 裁判의 前提가 된 때에는 大法院은 이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権限을 가진다.

第 106 条 大法院은 法律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範囲안에서 訴訟에 관한 節次, 法院의 内部規律과 事務処理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 107 条 裁判의 審理와 判決은 公開한다. 다만, 審理는 国家의 安全保障 또는 安寧秩序를 방해하거나 善良한 風俗을 害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法院의 決定으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08 条 ①軍事裁判을 管轄하기 위하여 特別法院으로서 軍法会議를 둘 수 있다.

②軍法会議의 上告審은 大法院에서 管轄한다.

③非常戒厳下의 軍事裁判은 軍人·軍属의 犯罪나 軍事에 관한 間諜罪의 경우와, 哨兵·哨所·有害飮食物供給·捕虜에 관한 罪中 法律에 정한 경우에 限하여 単審으로할 수 있다.

第 8 章 憲法委員会

第 109 条 ①憲法委員会는 다음 事項을 審判한다.

1. 法院의 提請에 의한 法律의 違憲与否
2. 弾劾
3. 政党의 解散

②憲法委員会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3人은 国会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憲法委員会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第110条 ①憲法委員会委員의 任期는 6年으로 한다.

②憲法委員会委員은 政党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③憲法委員会委員은 弾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④憲法委員会委員의 資格은 法律로 정한다.

第111条 ①憲法委員会에서 法律의 違憲決定, 弾劾의 決定 또는 政党解散의 決定을 할때에는 委員 6人以上의 賛成이 있어야 한다.

②憲法委員会의 組織과 運営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9章 選挙管理

第112条 ①選挙와 国民投票의 公正한 管理 및 政党에 관한 事務를 処理하기 위하여 選挙管理委員会를

둔다.

②中央選挙管理委員会는 9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第2項의 委員中 3人은 国会에서 選出하는 者를, 3人은 大法院長이 指名하는 者를 任命한다.

④中央選挙管理委員会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⑤委員의 任期는 5年으로 한다.

⑥委員은 政党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⑦委員은 弾劾 또는 刑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한다.

⑧中央選挙管理委員会는 法令의 範囲안에서 選挙管理·国民投票管理 또는 政党事務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⑨各級選挙管理委員会의 組織·職務範囲 기타 필요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113条 ①選挙運動은 各級 選挙管理委員会의 管理下에 法律에 정한 範囲안에서 하되 균등한 機会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選挙에 관한 経費는 法律이 정하는 경우를 제

의하고는 政党 또는 候補者에게 負担시킬 수 없다.

第 10 章 地 方 自 治

第 114 条 ①地方自治団体는 住民의 福利에 관한 事務를 処理하고 財産을 管理하며 法令의 範囲안에서 自治에 관한 規定을 制定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団体의 種類는 法律로 정한다.

第 115 条 ①地方自治団体에는 議会를 둔다.

②地方議会의 組織·権限·議員選挙와 地方自治団体의 長의 選任方法 기타 地方自治団体의 組織과 運営에 관한 事項은 法律로 정한다.

第 11 条 経 済

第 116 条 ①大韓民国의 経済秩序는 個人의 経済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②国家는 모든 国民에게 生活의 基本的 需要를 충족시키는 社会正義의 실현과 균형있는 国民経済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範囲안에서 経済에 관한 規制와 調整을 한다.

第 117 条 ①鉱物 기타 重要한 地下資源, 水産資源, 水力과 経済上 利用할 수 있는 自然力은 法律이 정

하는바에 의하여 일정한 期間 그 採取·開発 또는 利用을 特許할 수 있다.

②国土와 資源은 国家의 보호를 받으며 国家는 그 균형있는 開発과 利用을 위한 計劃을 樹立한다.

第118条 農地의 小作制度는 法律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第119条 国家는 農地와 山地 기타 国土의 効率的인 利用·開発과 보전을 위하여 法率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制限과 義務를 課할 수 있다.

第120条 ①国家는 農民·漁民의 自助를 基般으로하는 農漁村開発을 위하여 計劃을 樹立하며, 地域社会의 균형있는 발전을 期한다.

②農民·漁民과 中小企業者의 自助組織은 育成된다.

第121条 国家는 対外貿易을 育成하며 이를 規制·調整할 수 있다.

第122条 国防上 또는 国民経済上 緊切한 필요로 인하여 法律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私営企業을 国有 또는 公有로 移転하거나 그 経営을 統制 또는 管理할 수 없다.

第123条 ①国民経済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学技術은

暢達・振興되어야 한다.

②大統領은 経済・科学技術의 暢達・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諮問機関을 둘 수 있다.

第 12 章 憲法改正

第124条 ①憲法의 改正은 大統領 또는 国会在籍議員 過半数의 発議로 提案된다.

②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国民投票로 確定되며 国会議員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国会의 議決을 거쳐 統一主体国民会議의 議決로 確定된다.

③憲法改正이 確定되면 大統領은 즉시 이를 公布하여야 한다.

第125条 ①国会에 提案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날로부터 60日以内에 議決하여야 한다.

②憲法改正案에 대한 国会의 議決은 在籍議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을 얻어야 한다.

③第2項의 議決을 거친 憲法改正案은 지체없이 統一主体国民会議에 回附되고 그 議決로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統一主体国民会議에 回附된 憲法改正案은 回附된 날로부터 20日以内에 議決되어야 한다.

第126条 ①大統領이 提案한 憲法改正案은 20日以上의 期間 이를 公告하여야 하며, 公告된 날로부터 60日以内에 国民投票에 붙여야 한다.

②国民投票에 붙여진 憲法改正案은 国会議員 選挙権者 過半数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数의 賛成을 얻어 憲法改正이 確定된다.

附 則

第1条 이 憲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憲法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法律의 制定과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 및 国会議員의 選挙와 기타 이 憲法施行에 관한 準備는 이 憲法施行前에 할 수 있다.

第2条 ①이 憲法에 의하여 統一主体国民会議에서 選挙된 最初의 大統領의 任期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開始된다.

②이 憲法에 의하여 選挙된 最初의 統一主体国民会議 代議員의 任期는 統一主体国民会議의 最初의 集会日로부터 開始되고 1978年 6月 30日에 終了된다.

第3条 이 憲法에 의한 最初의 国会議員 総選挙는

이 憲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内에 実施한다.

第4条 1972年10月17日부터 이 憲法에 의한 国会의 最初의 集会日까지 非常国務会議가 代行한 国会의 権限은 이 憲法施行当時의 憲法과 이 憲法에 의한 国会가 행한것으로 본다.

第5条 이 憲法施行当時의 公務員과 政府가 任命한 企業体의 任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憲法에 의하여 選任方法이나 任命権者가 変更된 公務員은 이 憲法에 의하여 後任者가 選任될때까지 그 職務를 행하며, 이경우 前任者인 公務員의 任期는 後任者가 選任되는 前日까지로 한다.

第6条 ①이 憲法施行当時의 法令과 条約은 이 憲法에 違背되지 아니하는 限 그 効力을 持続한다.

②이 憲法施行当時의 大統領令·国務院令과 閣令은 이 憲法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본다.

第7条 非常国務会議에서 制定한 法令과 이에따라 행하여진 裁判과 豫算 기타 処分등은 그 効力을 持続하며 이 憲法 기타의 理由로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8条 이 憲法施行当時에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 設置될 機関의 権限에 속하는 職務를 행하고 있는 機関은 이 憲法에 의하여 새로운 機関이 設置될때까지 계속하여 그 職務를 행한다.

第9条 1972年10月17日부터 이 憲法施行日까지 大統領이 행한 特別宣言과 이에 따른 非常措置에 대하여는 提訴하거나 異議를 할 수 없다.

第10条 이 憲法에 의한 地方議会는 祖国統一이 이루어질때까지 構成하지 아니한다.

第11条 ①特殊犯罪処罰에 関한 特別法·不正選挙関聯者処罰法·政治活動浄化法 및 不正蓄財処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그 効力을 持続하며 이에 대하여 異議를 할 수 없다.

②政治活動浄化法 및 不正蓄財処理法과 이에 관련되는 法律은 이를 改廃할 수 없다.

社會保障에 관한 法律

1963.11.5 法律 第1437号

第1条(目的) 이 法은 国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図謀하기 為한 社会保障制度의 確立과 그 効率的인 発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社会保障의 定義) 이 法에서 『社会保障』이라 함은 社会保険에 依한 諸給与와 無償으로 행하는 公的扶助를 말한다.

第3条(社会保障事業의 管掌 및 그 内容) ①政府는 社会保障事業을 행하며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一部를 地方自治団体 또는 其他의 法人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社会保障事業을 행함에 있어서 国民의 自立精神을 阻害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社会保障事業은 国家의 経済的 実情을 参酌하여 順次的으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행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社会保障事業을 地方自治団体 또는 法人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費用은 国庫가 負担한다.

第4条(社会保障審議委員会) ①社会保障에 관한 重要

事項에 대한 諮問에 応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長官 소속하에 社会保障審議委員会(이하 『委員会』라 한다)를 둔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社会保障에 관한 計劃을 樹立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委員会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第5条(委員会의 構成) ①委員会는 委員長 1人과 副委員長 2人을 包含한 委員 11人이내로 構成한다.

②委員長은 保健社会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중에서 互選한다.

③委員은 다음 各号의 者중에서 保健社会部長官이 위촉한다.

1. 関係行政部処의 2級公務員 이상의 者
2. 勤労者를 代表하는 者 및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3. 社会保障에 관한 学識과 経験이 있는 者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公務員인 委員의 任期는 그 在職期間으로 한다.

⑤補欠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 期間으로 한다.

⑥委員会의 運営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6条(関係行政機関의 協力) ①委員会는 関係行政機関에 대하여 社会保障에 관한 資料의 제출과 委員会의 業務에 관하여 必要한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②関係行政機関은 委員会로부터 前項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이에 応하여야 한다.

第7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규정

1970.2.5 대통령령 제457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직무) 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2. 휴업급여에 관한 사항

3.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

4. 노령급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6. 가족급여에 관한 사항

7. 출산급여에 관한 사항

8. 폐질급여에 관한 사항

9. 유족급여에 관한 사항

10. 장제급여에 관한 사항

11. 공적부조에 관한 사항

제5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위원) ①위원회에 5인이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④연구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할수 있다.

⑤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참사를 둔다.

⑥참사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제 7 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8 조(수당등) ①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구위원 및 참사에 대하여는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연구비 및 여비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 9 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法律 第 号

医 療 保 険 法

(1976.11.30 국회본회의 통과)

第 1 章 総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国民의 疾病·負傷·分娩 또는 死亡 등에 대하여 保険給与를 実施함으로써 国民保健을 向上시키고 社会保障의 増進을 図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管掌) 이 法에 의한 医療保険事業은 保健社会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第3条(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労者"라 함은 職業의 種別에 不拘하고 勤労의 対価로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経営主를 말한다.

3. "事業場"이라 함은 事業所 또는 事務所를 말한다.

4. "報酬"라 함은 勤労者가 勤労의 対価로서 賃金, 俸給, 手当, 其他 如何한 名目으로든지 支給받는 一切의 金品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被扶養者"라 함은 被保険者의 配偶者, 直系尊属 및 直系卑属으로서 主로 그 被保険者에 의하여 生計를 維持하는 者를 말한다.

第4条(医療保険審議委員会) ①保健社会部長官의 諮問에 応하여 医療保険事業에 관한 主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에 医療保険審議委員会(以下"審議委員会"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委員会는 勤労者, 使用者 및 医薬界를 代表하는 各同数의 委員과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으로 組織한다.

③ 審議委員会의 構成과 運営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2 章 被保険者

第5条(被保険対象) 国内에 居住하는 国民은 医療保険의 被保険対象이 된다. 다만, 公務員年金法,

軍人年金法, 또는 私立学校教員年金法의 該当者나 다른 法律에 의하여 医療保険에 加入된 者 및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를 받는 者와 그 世帶에 属하는 者는 除外한다.

第6条(被保険者의 種類) ①医療保険의 被保険者는 第1種 被保険者와 第2種 被保険者로 区分한다.

② 第1種 被保険者는 第7条 및 第8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의 勤労者가 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는 除外한다.

③第2種 被保険者는 地域住民등 第1種 被保険者外의 者가 된다.

第7条(当然適用 被保険者) 事業의 種類, 勤労者의 数등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場의 勤労者는 当然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被保険者(以下 "当然適用被保険者"로 한다)가 된다.

第8条(任意適用 被保険者) ①第18条第1項의 認可가 있은 때에는 그 事業場의 勤労者는 모두 第1種 被保険者가 된다.

②第19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가 있는 때에는 그 管轄地域内에 居住하는 者로서 医療保険

組合(以下"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는 第2種 被保險者가 된다.

第 9 条(資格取得의 時期) ①第1種 被保險者는 그가 使用하고 있는 事業場에 第17条 또는 第18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이 設立된 날 또는 그 組合이 設立되어 있는 事業場에 使用된 날에 그 資格을 取得한다.

② 第2種 被保險者는 第19条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加入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取得한다.

第 10 条(資格 喪失의 時期) ①第1種 被保險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国籍을 喪失한 때
3. 使用関係가 終了된 때
4. 第6条第2項단서의 規定에 該当하게 된 때
5. 第18条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 認可가 있은 때

②第2種 被保險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国籍을 喪失한 때

3. 組合의 管轄地域에서 退去한 때

4. 第1種 被保険者가 된 때

5. 第19条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認可가 있은 때

6. 組合에서 脫退한 때

第11条(資格得失의 確認) ①被保険者의 資格의 取得 및 喪失은 保険者의 確認에 의하여 効力을 発生한다.

②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第12条(標準報酬) ①第1種 被保険者의 保険料의 計算은 被保険者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하여 等級別標準報酬月額으로 算定한다.

②第1項의 等級別 標準報酬月額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3 章 保 険 者

第13条(保険者) ①医療保険의 保険者는 組合으로 하되 第1種組合과 第2種組合으로 区分한다.

②組合은 그 組合員인 被保險者의 保險을 管理·運營한다.

第14条(組合의 組織) ①第1種組合은 使用者와 그 事業場에 使用되는 第1種 被保險者를 組合員으로 하여 組織한다.

②第2種組合은 組合管轄地域內에 居住하는 者로서 그 組合에 加入한 第2種被保險者를 組合員으로 하여 組織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組合은 2以上의 事業場이 共同으로 하나의 組合을 組織할 수 있다.

第15条(組合의 法人格) 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第16条(類似名称의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組合이 아니면 医療保險組合 또는 이와 類似한 名称을 使用할 수 없다.

第17条(組合의 当然設立) 第7条의 規定에 의한 当然適用被保險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의 使用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組合을 設立하여야 한다.

第18条(第1種組合의 任意設立) ①第7条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 以外의 事業場의 使用者는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被保險者가 될 者의 3分의 2以上의 同意(2以上의 事業場이 共同으로 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경우에는 各 事業場別로 한다)를 얻어야 한다.

③第1項의 認可를 받아 設立된 組合의 被保險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의 使用者는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그 組合을 解散할 수 있다. 이 경우에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9条(第2種組合의 任意設立) ①第2種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2種被保險者로 될 자 30人 以上의 発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医療法의 規定에 依한 医療機関의 開設者가 第2種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30人以上의 発起人은 必要로 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組合의 設立認可에 있어서 그 組合이 管轄하는 地域 및 規模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認可를 받은 組合이 解散하고자 할 때에는 組合員 3分의2 以上의

同意를 얻어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20条(第1種組合의 設立命令) ①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7条의 規定에 의한 当然適用被保険者를 使用하는 2以上의 事業場의 使用者에게 共同으로 하나의 第1種組合을 設立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미 設立된 2以上의 第1種組合에 대하여 共同으로 하나의 組合을 設立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7条의 規定에 의한 当然適用被保険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의 使用者 및 이미 設立된 第1種組合에 대하여 共同으로 하나의 組合을 設立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④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7条의 規定에 의한 当然適用被保険者를 이미 設立된 第1種組合에 編入할 것을 그 事業場의 使用者 및 組合에 대하여 命할 수 있다.

第21条(擬制適用) 第17条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의 事業場이 第7条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에 該当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組合은

第18条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으로 본다.

第22条(組合의 成立) 組合은 設立의 認可를 받고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3条(組合定款의 変更) ①組合이 組合의 定款을 変更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項을 変更하였을 때에는 遅滞없이 그 内容을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条(組合의 解散命令等) 保健社会部長官은 組合의 決議 또는 任員의 行為가 法令 또는 定款이나 保健社会部長官의 이법에 의한 処分에 違反하여 組合員의 利益을 害하거나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할 때 또는 組合의 事業이나 財産의 状況을 보아 그 事業의 継続이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決議를 取消하거나 任員의 解任 또는 組合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

第25条(組合의 組織等) 組合의 組織과 그 管理

運営, 기타 組合의 해산·합병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6条(医療施設·福祉施設) ①組合은 被保険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 또는 負傷의 療養과 健康의 維持 및 增進을 위한 必要한 豫防事業과 医療施設 및 福祉施設을 設置運営할 수 있다.

②組合은 事業에 支障이 없는 範囲内에서 被保険者 및 被扶養者가 아닌 者에 대하여 第1項의 施設을 利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利用者에 대하여 利用料를 徵収할 수 있다.

③ 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第1項의 医療施設 또는 福祉施設의 設置를 命할 수 있다.

第27条(医療保険組合聯合会) ① 組合의 医療保険事業을 円滑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組合에 대하여 中央医療保険組合聯合会(以下 "組合聯合会"라 한다)를 設立할 것을 命하거나 또는 組合聯合会에 加入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聯合会는 組合의 保険財政의 危険을 保障하기 위한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医療施設 또는 福祉施設을 設立·運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能을 遂行하기 위하여 組合聯合会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負担金을 組合으로부터 徵収할 수 있다.

④組合聯合会에 대하여는 第15条, 第16条, 第22条 내지 第26条 및 第27条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組合"은 "組合聯合会"로 한다.

第28条(準用規定) 組合 및 組合聯合会에 関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団法人에 関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章 保 険 給 与

第29条(療養給与) ①被保險者 및 被扶養者의 疾病 또는 負傷에 対하여는 다음 各号의 療養給与를 한다.

1. 診察
2. 薬剤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3. 処置, 手術, 其他의 治療

4. 医療施設에의 収容

5. 看護

6. 移送

②第1項第1号 내지 第4号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与는 不得已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다음 各号의 医療機関 또는 薬局(以下 "療養取扱機関"이라 한다)에서 行한다.

1. 保険者가 指定한 保健·医療機関 또는 薬局

2. 保険者가 管理運営하는 医療機関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与의 基準은 保健社会部長官이 定한다.

第30条(療養給与期間) 療養給与의 期間은 療養給与가 開始된 날로부터 6月以内로 한다.

第31条(分娩給与) ①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의 配偶者가 療養取扱機関에서 分娩하는 때에는 分娩給与를 한다.

②第29条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32条(療養取扱機関의 指定) 第29条第2項第1号의 療養取扱機関은 保健社会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保険者가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指定한다. 指定을 取消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33条(療養取扱機関指定의 取消命令) 保健社会部長官은 療養取扱機関이 다음 各 号의 1에 該当하는 경우에는 그 療養取扱機関의 指定을 取消할 것을 保険者에게 命할 수 있다.

1. 第35条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与나 分娩給与의 費用의 請求에 있어 不正이 있을 때
2. 第71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虚偽報告를 하거나 関係公務員의 検査 또는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때

第34条(費用의 一部 負担) 第29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給与나 第31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与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本人이 負担한다.

第35条(療養의 費用등) 保険者는 療養取扱機関으로부터 療養給与나 分娩給与에 関한 費用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이 審議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定한 算定基準에 의하여 審査를한 이를 支給한다.

第36条(療養費) 保険者는 被扶養者나 緊急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29条 第2項의 規

定에 의한 療養取扱機関 以外의 医療機関이나 薬局 等에서 療養을 받은 때에는 療養給与에 相当하는 療養費로서 支給한다.

第37条(分娩費) 保険者는 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의 配偶者가 第29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療養取扱機関 以外의 場所에서 分娩한 때에는 分娩給与에 相当하는 額을 分娩費로서 支給한다.

第38条(資格喪失後의 継続療養給与) ①療養給与를 받고 있는 者가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그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第30条에 規定한 期間이 終了될 때까지 継続하여 療養의 給与를 받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는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한 날의 前日까지 継続하여 1年以上 被保険者이었던 者이어야 한다.

第39条(資格喪失後의 分娩給与) ①被保険者이었던 者가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3月 以内에 分娩한 때에는 第31条의 規定에 의한 分娩給与 또는 第37条의 規定에 의한 分娩費를 従前의 保険者로 부터 받을 수 있다.

②第38条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

를 準用한다.

第 40 条 (附加給与) 保険者는 이 法에 規定한 保険給与 以外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組合의 定款으로 定하는 葬祭費 其他의 給与를 할 수 있다.

第 41 条 (給与의 制限) ①保険給与를 받을 者가 自身의 故意의 犯罪行為에 基因하거나 또는 故意로 事故를 発生시켰을 때에는 保険給与를 하지 아니한다.

②保険者는 保険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正当한 理由없이 療養取扱機関의 療養에 관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保険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保険者는 保険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正当한 理由없이 第 43 条의 規定에 의한 文書 其他 物件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質問 또는 診断을 忌避한 때에는 保険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保険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른 法令에 의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로 부터 療養費를 支給받거나 療養을 받은 때에는 그 限度内에서 保険給与를 하지 아니한다.

⑤業務上 災害로 因하여 다른 法令에 의한 保險給与나 補償을 받게될 者는 이 法에 의한 保險給与를 하지아니한다.

第42条(給与의 停止 等) 保險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된 때에는 그 期間中 保險給与를 하지 아니한다.

1. 国外에 旅行中인 때 또는 国外에서 業務에 従事하고 있을 때

2. 現役으로 軍에 服務中일 때

3. 矯導所 基他 이에 準하는 施設에 収容되어 있을때

第43条(強制診斷等) 保險者는 保險給与를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保險給与를 받는 者에 대하여 文書 其他 物件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関係人으로 하여금 質問 또는 診斷을 하게 할 수 있다.

第44条(療養費의 支給) 保險者는 療養費, 分娩費 또는 附加給与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遅滞없이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45条(不当利得의 徵収) ①保險者는 詐欺, 其他 不正한 方法에 의하여 保險給与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給与에 相当한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徵收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使用者의 虛偽의 報告나 証明에 의하여 또는 療養取扱機関의 虛偽의 診斷書에 의하여 保険給与가 行하여진 때에는 保険者는 그 使用者 또는 療養取扱機関에 대하여 保険給与를 받은 者와 連帶하여 第1項의 徵收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

第46条(第3者에 対한 求償権) ①保険者는 第3者의 行為에 의한 保険給与事由의 発生으로 保険給与를 한 때에는 그 給与에 要한 費用의 限度内에서 当該 保険給与를 받은 者의 第3者에 対한 損害賠償請求의 権利를 取得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保険給与를 받을 者가 第3者로 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保険者는 그 賠償額의 限度内에서 保険給与를 하지 아니한다.

第47条(受給権의 保護) 保険給与를 받을 権利는 譲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第 5 章　　財　　務

第 48 条 (国庫負担)　国庫는 每年度 豫算의 範囲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 및 組合聯合会에 対하여 医療保険事業의 運営에 必要한 費用의 一部를 負担할 수 있다.

第 49 条 (保険料)　①保険者는 医療保険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充当하기 위하여 組合員으로 부터 保険料를 徵収한다.

②第 1 種組合의 保険料額은 各月에 対하여 各被保険者의 標準報酬月額에 第 50 条의 規定에 의한 保険料率을 乘하여 얻은 額으로 한다.

③第 2 種組合의 保険料額은 被保険者와 被扶養者의 数를 基準으로 組合定管에서 定하는 額으로 한다.

第 50 条 (保険料率)　①第 1 種組合의 保険料率은 1000 分의 30 乃至 1000 分의 80 의 範囲内에서 組合定款으로 定한다.

②国外에서 業務에 従事하고 있는 被保険者에 対한 第 1 種組合의 保険料率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되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組合定款으로 定한 保険料率 以下로 한다.

第 51 条 (保険料의 負担)　①第 1 種被保険者와 第 1 種

被保險者를 使用하는 使用者는 各各 保險料額의 2分의 1을 負担한다.

②第2種被保險者는 保險料額의 全額을 本人이 負担한다.

第52条(保險料의 免除) 被保險者가 第42条第2号의 規定에 該当된 때에는 保險料를 免除한다.

第53条(保險料의 納付義務) 保險料는 每月 納付하되 第1種被保險者의 保險料는 使用者가 納付하여야 하며 第2種被保險者의 保險料는 本人이 納付하여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1種被保險者가 負担하여야 할 当月分의 保險料額을 그 報酬로 부터 控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控除額을 被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54条(保險料 納付期限) 每月의 保險料는 그 다음달 10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第55条(保險料의 督促) ①保險者는 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間을 定하여 督促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할 때에는 10日以上의 納付期間을 정하여 督促状을 発付하여야

한다.

第56条(保険料의 徵収 優先順位) 保険料의 徵収順位는 国税 및 地方税 다음으로 한다.

第 6 章 審 査 請 求

第57条(審査請求) ①被保険者의 資格, 保険料 또는 保険給与에 関한 処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医療保険審査委員会(以下 "審査委員会"라 한다)에 審査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請求는 処分이 있은 날로 부터 60일 以内에 文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正当한 事由에 의하여 이 期間内에 審査請求를 할 수 없었음을 疎明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8条(審査委員会의 設置) 審査委員会는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道에 둔다.

第59条(審査委員会의 構成등) ①審査委員会는 被保険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医薬界를 代表하는 委員 各3人과 代表하는 委員 各 4人으로 構成한다.

②第1項의 委員은 保険社会部長官이 委嘱 또는

任命한다.

第60条(委員의 任期)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公務員으로서 公益代表委員이 된 경우에는 그 在任期間으로 한다.

第61条(委員長) ①審査委員会에 委員長을 두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②委員長이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公益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62条(議事) ①審査委員会의 会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審査委員会의 会議는 被保険者를 代表하는 委員,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및 医薬界를 代表하는 委員및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各 1人 以上을 包含한 在籍過半数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数인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権을 가진다.

第63条(審査委員会의 権限) 審査委員会는 審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査請求人 또는 関係人에 대하여 必要한 書類의 提出, 意見의 陳述 또는 報告를 하게 하거나 関係専門家에게 診断이나 検査등을 하게 할 수 있다.

第64条(審査의 決定) ① 審査의 決定은 文書로서 하여야 한다.

②審査委員会에서 決定된 事項은 審査請求人에게 決定書 謄本이 送達된 때로부터 그 効力이 発生한다.

第65条(審査請求의 節次등) 審査委員会의 運営 및 審査請求의 節次等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6条(訴訟과의 関係) 被保険者의 資格, 保険料 또는 保険給与에 関한 処分에 対한 不服의 訴는 審査請求에 依한 審査委員会의 決定을 거친후가 아니면 이를 提起할 수 없다. 다만, 審査請求가 있은 날로 부터 3月이 経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7 章 補 則

第67条(時効) ①保険料를 徴収하거나 返還을 받을 権利 또는 保険給与를 받을 権利 는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効가 完成된다.

②保険料의 督促은 民法 第174条의 規定에 不拘하고 時効中断의 効力을 갖는다.

第68条(期間의 計算)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規定된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除外하고 民法의 期間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9条(勤労者의 權益保護) 第7条 및 第8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被保險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의 使用者는 勤労者가 이 法에 의한 被保險者로 되는 것을 妨害하거나 그가 負担하는 負担金의 增加를 忌避할 目的으로 正当한 事由없이 勤労者의 昇給 또는 賃金引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解雇 其他 不利益한 措置를 할 수 없다.

第70条(申告等) 保險者는 保健社会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1種 被保險者를 使用하는 使用者로 하여금 被保險者의 移動, 報酬 其他 医療保險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第71条(報告와 検査) ①保健社会部長官은 使用者에게 被保險者의 移動, 報酬 其他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報告 또는 關係書類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属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検査하게 할 수 있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療養取扱機関(第36条 및 第37条의 規定에 의하여 診療 또는 薬剤를 支給한 医療機関을 包含한다)에 対하여 診療, 薬剤의 支給等 保険給与에 関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関係書類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属公務員으로 하여금 検査 또는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③保健社会部長官은 保険給与를 받는 者에게 当該保険給与의 内容에 関하여 報告를 하게하거나 所属公務員으로 하여금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関係公務員은 그 権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72条(組合에 対한 監督) 保健社会部長官은 組合에 対하여 그 事業에 関한 報告를 命하거나 事業 또는 財産状況을 検査하여 定款의 変更을 命하는 등 監督上 必要한 措置를 行할 수 있다.

第73条(権限의 委任) 保健社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権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74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8 章 罰 則

第75条(罰則) 第69条의 規定에 違反한 使用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76条(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正当한 理由없이 第20条 第2項내지 第4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26条第3項(第27条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正当한 理由없이 第63条 또는 第71条의 規定에 違反하여 書類의 提出, 意見의 진술 또는 報告를 하지 아니한 者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第77条(罰則) 第16条(第27条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78条(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従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76条 또는 第77条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그 行為者를 処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条의 罰金에 処한다.

第79条(過怠料) ①正当한 理由없이 第17条 또는 第20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所定의 期間內에 設立의 認可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遅延된 期間의 被保険対象者報酬総額의 1000分의 60에 該当하는 金額以下의 過怠料에 処한다.

②第55条의 規定에 違反하여 保険料를 指定한 納付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使用者에 대하여는 그 納付하여야 할 保険料額의 100分의 20에 該当하는 金額以下의 過怠料에 処한다.

第80条(過怠料)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3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処한다.

1. 第23条(第27条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70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3．第72条（第27条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検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77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被傭者組合에 対한 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従前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被傭者組合은 이 法에 의한 第1種組合으로 본다. 다만，이 경우 이 法 施行日부터 6月内에 保健社会部長官에게 이 法에 의한 定款変更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自営者組合에 対한 経過措置） ①이 法 施行当時 従前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自営者組合은 이 法에 의한 第2種組合으로 본다.

④（適用의 例外）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第2種組合으로 되는 従前의 自営者組合에 対하여는 그 組合 区域内에 새로 이 法에 依한 第2種組合이 設立될 때까지 第36条，第38条 및 第39条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하며 分娩給与 및 分娩費에 関하여는 第31条 및 第37条의 規定에 不拘하고 当該組合의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産業災害補償保険法 (1963.11.3 法律第1438号)

개정 1970.12.31 법률제 2271 호

1973. 1.15 법률제 2437 호 (政府組織法)

1973. 3.13 법률제 2607 호

第 1 章 總 則

第1条 (目的) 이 法은 社会保障에 관한 法律 및 勤労基準法에 의하여 産業災害補償保険事業 (이하 "保険事業" 이라 한다) 을 행함으로써 勤労者의 業務上災害를 신속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이 事業에 필요한 施設을 設置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

第2条 (保険의 管掌과 保険年度) ①이 法에 의한 保険事業은 労動庁長이 이를 管掌한다. < 개정 70. 12.31 법 2271 >

②내지④폐지 < 73.1.15 정부조직법 부칙 ⑥ >

⑤이 法에 의한 保険事業의 保険年度는 政府会計年度에 따른다

〔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

第2条의2 (国庫의 負担) 国家는 每年度 豫算의

範囲안에서 保険事業의 事務執行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一般会計에서 負担할 수 있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3条(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業務上의 災害"라 함은 業務遂行중 그 業務에 기인하여 발생한 災害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한다. <개정 73.3.13 법 2607>

③이 法에서 遺族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配偶者(事実上 婚姻関係에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子女·父母·孫·祖父母 또는 兄弟姉妹로서 第12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遺族으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신설 70.12.31 법 2271, 개정 73.3.13 법 2607>

第4条(適用範囲) 이 法은 勤労基準法의 적용을 받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事業의 危険率·規模 및 事業場所 등을 參酌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3.3.13 법 2607>

〔全文改正 70.12.31 法 2271〕

第5条(産業災害補償保険審議委員会) ①労動庁長의 諮問에 응하여 保険事業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労動庁에 産業災害補償保険審議委員会(이하 "委員会"라 한다)를 둔다. <개정 70.12.31 법 2271>

②委員会는 勤労者를 代表하는 者,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개정 73.3.13 법 2607>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73.3.13 법 2607>

第 2 章 保 険 加 入 者

第6条(保険加入者) ①事業의 事業主는 당연히 産業

災害補償保險(이하"保險"이라 한다)의 保險加入者가 된다. 다만, 第4条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事業主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0.12.31 법2271>

②第4条의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事業主는 労動庁長의 承認을 얻어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③事業이 数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元受給人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主로 본다. 다만, 元受給人이 書面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保險料의 納付를 引受하게 하는 경우에 元受給人의 申請에 의하여 労動庁長이 이를 承認한 때에는 그 下受給人을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業主로 본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7条(保險関係의 成立) ①保險関係는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成立한다.

1. 前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연히 保險에 加入하게 되는 事業에 있어서는 그 事業이 前条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게된 날

2. 前第条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그 事業의 事業主가 労動庁長의 保險加入承認을 얻은날 <개정 70.12.31 법 2271>

②前項 第1号에 의하여 保險關係가 成立된 事業이 事業의 規模·種類등의 變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적용되는 事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前項 第2号에 의하여 保險關係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신설 70.12.31 법 2271>

第8条(保險關係의 消滅) ①保險關係는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날에 消滅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1. 事業이 廢止된 날의 다음 날.
2. 第6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에 加入한 경우(前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加入이 擬制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労動庁長의 承認을 얻어 保險契約을 解約한 날의 다음 날.
3. 前2号 이외의 事由로 労動庁長이 保險關係를 維持할 수 없다고 認定하여 保險關係의 消滅을 決定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날의 다음 날.

②前項第2号의 解約은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1年이 경과된 후라야 한다.

第 3 章　保 險 給 与

第 9 条 (保險給与의 種類와　支給事由)　①保險給与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 療養給与

2 . 休業給与

3 . 障害給与

4 . 遺族給与

5 . 遺族特別給与

6 . 葬儀費

7 . 一時給与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与 (一時給与를 除外한다) 는 勤労基準法 第 78 条내지 第 80 条와 第 82 条 및 第 83 条에 規定된 災害補償의 事由가 발생한 때에 保險給与를 받을 者 (이하 "受給権者"라 한다) 의 請求에 의하여 支給한다.

③一時給与는 療養給与를 받는 勤労者가 療養開始후 2 年을 経過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労動庁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支給한다.

〔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

第9条의 2 (死亡의 推定) ①事故가 발생한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탔던 勤勞者의 生死가 不明하거나 航行중의 船舶 또는 航空機에 탔던 勤勞者의 行方不明 기타의 事由로 그 生死가 不明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死亡으로 推定하고 遺族給与 및 葬儀費에 관한 規定을 적용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으로 保險給与를 받은 후 그 勤勞者의 生存이 確認된 때에는 그 給与를 받은 者가 善意인 경우에는 받은 金額을, 惡意인 경우에는 받은 金額의 倍額을 返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 3 (療養給与) ①療養給与는 療養費의 全額으로 하되, 勞動庁長이 設置한 保險施設 또는 指定한 医療機関에서 療養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負傷 또는 疾病이 7日이내의 療養으로 治癒될 수 있는 때에는 療養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療養給与의 範囲는 다음과 같다.

1. 診察

2．藥剤 또는 診療材料와 義肢 기타 補綴具의 支給

3．処置·手術 기타의 治療

4．医療施設에의 収容

5．介護

6，移送

7．기타 労動庁長이 정하는 事項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 4（休業給与） ①休業給与는 療養으로 인하여 就業하지 못한 期間중 1日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다만，就業하지 못한 期間이 7日이내인 때에는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07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히 변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신설 73.3.13 법 2607〉

第9条의 5（障害給与） ①障害給与는 別表1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別表 2 에 의한 障害補償一時金으로 하되 그 等級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 또는 障害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選択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障害補償年金算定에 있어서 그 勤労者가 所属한 事業의 同一한 職種의 勤労者에게 支給되는 通常賃金이 顯著히 変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平均賃金을 増減할 수 있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 6 (遺族給与) ①遺族給与는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으로 하되 遺族補償年金의 支給基準, 受給資格 및 失格과 支給停止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遺族補償一時金은 平均賃金의 1,000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補償年金 또는 遺族補償一時金은 受給權者의 選択에 따라 이를 支給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 7 (遺族特別給与) ①保険加入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災害가 발생하여 勤労者가 死亡하였

을 경우에 受給權者가 民法에 의한 損害賠償請求에 갈음하여 遺族特別給与를 請求한 때에는 前条의 遺族給与외에 平均賃金의 千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②受給權者가 前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特別給与를 받은 때에는 第11条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保險加入者와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裁判上의 和解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③前項의 和解는 文書로 하되, 그 効力은 遺族全体에 미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8 (葬儀費) 葬儀費는 平均賃金의 90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9条의9 (一時給与) 一時給与는 平均賃金의 1,340日分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하되, 一時給与를 행한 때에는 이 法에 의한 다른 保險給与를 行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10条 <삭제 70.12.31 법 2271>

第11条 (다른 補償 또는 賠償과의 関係) ①受給權

者가 이 法에 의하여 保險給与를 받은 때에는 保險加入者는 同一한 事由에 대하여는 勤労基準法에 의한 모든 災害補償責任이 免除된다.

②受給権者가 同一한 事由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한 保險給与를 받았을 때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金額의 한도안에서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한 損害賠償의 責任이 免除된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12条(受給権者의 範囲) ①第9条의3 내지 第9条의7과 第9条의9의 規定에 의한 保險給与는 당해 勤労者나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遺族의 決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第9条의8의 規定에 의한 葬儀費는 그 葬祭를 행하는 者에게 支給한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12条의2(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

의 지급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급여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73.3.13 법 2607〕

第13条(保険金의 分割支給) 障害補償一時金, 遺族補償一時金, 遺族特別給与金 및 一時給与의 保険金은 期間을 정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하여 支給할 수 있다. <개정 법2271>

第14条(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중대한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条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배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 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노동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

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3.13 법 2607〕

第14条의 2 (不正利得의 徵收) ①労動庁長은 虛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保険給与를 받은 者에 대하여 그 給与額의 倍額을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에 保険加入者가 虛偽의 보고 또는 証明을 함으로써 保険給与를 하게한 때에는 그 保険加入者도 連帶하여 責任진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15条 (第3者에 대한 求償権) ①労動庁長은 第3者의 행위에 의한 災害로 인하여 保険給与를 한 때에는 그 給与額의 한도안에서 給与를 받은 者의 그 第3者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権을 代位한다.

②전항의 境遇에 受給権者가 第3者로부터 同一한 事由로 인하여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労動庁庁은 그 받은 賠償額의 한도안에서 保険給与를 하지 아니한다.

③受給権者 및 保険加入者는 第3者의 행위로 인한 災害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労動庁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 16 条 (受給権의 보호) ①勤労者의 保険給与를 받을 権利는 그 退職의 事由로 消滅되지 아니한다.

②保険給与를 받을 権利는 譲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険給与의 受領은 이를 委任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 17 条 (租税 기타 公課金의 免除) 保険給与로서 支給된 金品에 대하여는 租税 기타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 18 条 (保険施設) ①労動庁長은 保険事業에 필요한 医療·療養 및 職業再活등을 위한 施設과 災害豫防에 필요한 保険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労動庁長은 前項의 保険施設을 法人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 4 章 保 険 料

第 19 条 (保険料의 徵収) 労動庁長은 保険事業에 所要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保険加入者로 부터 保険料를 徵収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19条의2(保險料의 委託徵收) ①労動庁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料 기타 徵收金을 委託徵收할 수 있다. <개정 73.3.13 법 2607>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徵收를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을 交付할 수 있다.

③ <삭제 73.3.13 법 2607>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0条(保險料의 算定) 保險料는 保險加入者가 経営하는 事業의 賃金総額에 同種의 事業에 適用되는 保險料率을 乘한 金額으로 한다.

第21条(保險料率의 決定) ① 保險料率은 過去5年間의 災害率을 基礎로 하여 労動庁長이 이를 数等級으로 区分하여 정한다. 이 경우에 賃金 1원을 保險料率의 算出単位로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②이 法의 적용을 받은지 5年미만의 事業에 대한 保險料率은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労動庁長이 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数等級으로 区分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70.12.31 법 2271>

第22条(保險料率決定의 特例)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으로서 每年9月30日 現在로 保險關係가 成立한 지 3年을 경과한 事業에 있어서는 그 保險料의 額에 대한 保險給与의 額의 比率100分의85를 넘거나 100分의75이하인 때에는 労動庁長은 그 事業에 適用되는 保險料率을 100分의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引上 또는 引下한 率을 당해 事業에 대한 다음 保險年度의 保險料率로 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23条(概算保險料의 보고와 納付) ①保險加入者는 每保險年度마다 그 1年間에 사용할 모든 労動者(保險年度中에 保險關係가 成立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成立한 날로부터 그 保險年度의 末日까지 사용할 모든 労動者)에게 支給할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額(이하 "概算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年度의 初日(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成立된 사업에 있어서는 保險關係成立日)로부터 30日이내에 労動庁長에게 보고하고 50日이내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工事等 期間의 정함이 있는 事業에 있어서의 概算保險料의 納付期限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保險加入者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概算保險料를

納付한 후 賃金總額의 推定額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範囲를 초과하여 增加한 때에는 다음 달 15日이내에 增加후의 賃金總額의 推定額에 의한 概算保險料額과 이미 보고한 概算保險料額과의 差額을 勞動庁長에게 보고하고 다음달 末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③勞動庁長은 保險加入者가 前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事実과 다른 때에는 그 事実을 調査하여 概算保險料를 算定하여 徵収하되 이미 納付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収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3.3.13 법 2607>

④保險加入者는 第1項의 概算保險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割 納付할 수 있다.

⑤保險加入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概算保險料를 法定納付期限內에 全額을 納付하는 경우에는 納付하여야 할 保險料의 額에서 100分의10에 상당하는 金額을 控除하여 徵収한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24条(保險料率의 引上에 따르는 追加徵収) 勞動庁長은 保險料率을 引上한 때에는 概算保險料를

追加徵收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24条의 2 (概算保險料의 減額調整) 労動庁長은 保險關係가 消滅하거나 保險加入者가 年度중 事業規模를 縮小한 때 또는 保險料率의 引下등으로 인하여 이미 算定보고된 概算保險料 總額이 実際의 概算保險料의 總額보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이상으로 된 때에는 保險加入者의 申請에 의하여 그 해당액을 減額할 수 있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5条 (確定保險料의 보고·納付와 精算) ①保險加入者는 每保險年度의 末日 또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날까지 사용한 모든 勤労者에게 支給한 (支給하기로 決定된 額도 포함한다) 賃金總額에 保險料率을 곱하여 算定한 額 (이하 "確定保險料"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로부터 30日이내 (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保險關係가 消滅한 다음날로부터 15日이내)에 労動庁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②第23条 및 第24条의 規定에 의하여 納付 또는 追加徵收한 概算保險料의 額이 前項의 確定保險料의

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勞動庁長은 그 초과액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되는 경우에는 保險加入者는 그 不足額을 다음 保險年度의 初日로부터 50日이내(保險年度중에 保險關係가 消滅한 事業에 있어서는 消滅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0日이내)에 納付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③勞動庁長은 保險加入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보고가 事実과 다른 때에는 그 事実을 調査하여 確定保險料의 額을 算定하고 保險加入者가 概算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確定保險料의 全額을 徵収하고 이미 概算保險料를 納付한 경우에는 그 額이 確定保險料의 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을 保險加入者에게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되는 때에는 그 不足額을 徵収한다. 이 경우에 노동청장은 적어도 20일간의 여유가 있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73.3.13 법 2607>

④勞動庁長은 前2項의 規定에 의하여 초과한 額을 返還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加入者에게 미리 그 額을 통지하여야 하며 保險加入者는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초과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년도의 당해 보험가입자의 재산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73.3.13 법 2607>

第25条의2 (加算金의 徵收) 労動庁長은 前条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険料를 徵收할 경우에는 그 保険料에 대하여 100分의10에 상당하는 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6条 (延滯金의 徵收) ①労動庁長은 保険加入者가 保険料 기타 徵收金의 納付를 태만히 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金額 100원에 대하여 1日7전의 比率로 納付期間 満了日의 다음날로부터 保険料 기타 徵收金의 完納 또는 精算日의 前日까지의 日数에 의하여 計算한 延滯金을 徵收한다. <개정 73.3.13 법 2607>

②前項의 境遇에 保険料 기타 徵收金의 一部를 納付한 때에는 그 納付日의 다음날로부터 그 納付한 額을 控除한 残額에 대하여 延滯金을 徵收한다.

〔전문개정 70.12.31 법 2271〕

第26条의2(保險加入者로부터의 保險給与額의 徵收)

①労動庁長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災害에 대하여 保險給与를 支給한 때에는 그 給与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따로 保險加入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1. 第6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가 保險関係成立申告를 태만히 한 期間중 발생한 災害.
2. 保險加入者가 保險料의 納付를 태만히 한 期間중에 발생한 災害.
3. 保險加入者의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災害

③労動庁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한 保險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徵收하기로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保險加入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7条(徵收金의 督促) ①労動庁長은 保險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期限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73.3.13 법 2607>

②労動庁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할 경우

에는 督促状을 発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納付期限은 적어도 10日이상의 餘裕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期限內에 保険料 기타 徵収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労動庁長은 国税滯納処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収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27条의 2 (徵収金의 欠損処分) 労動庁長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保険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収金을 欠損処分할 수 있다.

1. 滯納処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当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不足될 때.
2. 第30条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게 될 때.
3.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収할 可望이 없을 때.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7条의 3 (保険料 徵収의 優先順位) 保険料 기타 이 法에 의한 徵収金의 徵収優先順位는 国税 및 地方税의 다음으로 한다.

〔본조신설 70.12.31 법 2271〕

第28条 (書類의 送達) 保険料 기타 徵収金에 관한

書類의 送達에 관하여는 国税徵収法 第24条·第24条의2 및 第25条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5 章 補 則

第29条(통지) 労動庁長은 保険料 기타 徵収金을 徵収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険加入者에게 그 額과 納付期限을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第30条(時効) ①保険料 기타 徵収金을 徵収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権利 및 保険給与를 받을 権利는 2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効가 完成된다.

②제9조제2항 또는 第25条第4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 第27条의 規定에 의한 督促 및 前条의 規定에 의한 통지는 民法 第174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時効中断의 効力을 가진다. <개정 73.3.13 법 2607>

第31条(印紙税의 免除) 이 法에 의한 保険에 관한 書類에는 印紙税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32条(보고등) 労動庁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使用者 또는 당해 事業에 종사하는 勤勞者에게 保險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關係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개정 70. 12.31 법 2271>

第33条(検査) ①勞動庁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 法의 適用을 받는 事業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출입하여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検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②前項의 경우에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証票를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34条(보고와 検査) ①勞動庁長은 保險給与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給与를 받는 勤勞者의 診療를 담당한 医師에게 당해 勤勞者의 診療에 관한 보고 또는 그 診療에 관한 書類나 物件의 제출을 命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医師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나 物件을 検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0.12.31 법 2271>

②前条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34条의2(진찰명령) 노동청장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3.13 법 2607〕

第34条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노동청장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노동청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73.3.13 법 2607〕

第35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70.12.31법2271>

第 6 章 罰 則

第36条(罰則)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10만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개정 70.12.31 법 2271>

1. 第23条·第25条·第32条 또는 第34条의 規

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者

2. 第32条 또는 第34条의 規定에 의한 書類나 物件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3. 第33条 또는 第34条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質問에 答辯을 拒否하거나 虛偽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關係公務員의 檢查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第37条(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条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前条의 罰金에 処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64년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日로 부터 5年間의 保險料率은 第21条 및 第22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労動庁長이 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数等級으로 区分

하여 이를 정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間은 당해 保險年度末에 保險料의 額에 대한 保險給与의 額의 比率이 100分의85를 초과하거나 100分의75이하인 때에는 労動庁長은 각 事業의 事業主에 대하여 第21条·第22条 및 第25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前記比率이 100分의8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額을 徵収하고 100分의75이하인 때에는 그 남는 額을 返還한다.

附 則 <70.12.31 법2271>

①(施行日) 이 法은 1971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災害補償保險業務 및 審査에 関한 法律에 의한 産業災害補償保險事務所 및 監察官은 이 法에 의한 地方事務所 및 産業監察官으로 본다.

③(適用例)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다.

1. 第9条第3項의 規定의 対象者에 대하여 이 法

施行당시 一時給与를 하지 아니한 때.

2. 第9条의 2의 規定에 의한 死亡의 推定者의 遺族에 대하여 이 法 施行당시 保険給与를 하지 아니한 때

3. 第9条의 5내지 第9条의 7의 規定에 의한 保険給与의 支給事由가 이 法 施行 이후에 발생한 때.

부 칙 <73.3.13 법 260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단서의 규정은 1973年 7월 1日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70.12.31법 2271>

장 해 보 상 연 금 급 여 표

등급	급여액
제 1 급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240일분
제 2 급 장해등급 제 2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213일분
제 3 급 장해등급 제 3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188일분

〔별표 2〕 <개정 70.12.31법 2271>

장 해 보 상 일 시 금 급 여 표

등급	급여액
제 1 급 장해등급 제 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1,340일분
제 2 급 장해등급 제 2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1,190일분
제 3 급 장해등급 제 3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1,050일분
제 4 급 장해등급 제 4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920일분
제 5 급 장해등급 제 5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790일분
제 6 급 장해등급 제 6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670일분
제 7 급 장해등급 제 7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560일분
제 8 급 장해등급 제 8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450일분
제 9 급 장해등급 제 9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350일분
제 10 급 장해등급 제 10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270일분
제 11 급 장해등급 제 11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200일분
제 12 급 장해등급 제 12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140일분
제 13 급 장해등급 제 13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90일분
제 14 급 장해등급 제 14 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자	평균임금의 50일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64년 6월 9일공포 대통령령 제1837호
개정 1965년 3월 26일공포 대통령령 제2087호
개정 1965년 12월 20일공포 대통령령 제2330호
개정 1966년 10월 20일공포 대통령령 제2778호
개정 1967년 11월 30일공포 대통령령 제3286호
개정 1968년 9월 16일공포 대통령령 제3584호
개정 1969년 7월 14일공포 대통령령 제3984호
개정 1969년 11월 10일공포 대통령령 제4230호
개정 1971년 11월 19일공포 대통령령 제5846호
개정 1973년 6월 23일공포 대통령령 제6740호
개정 1975년 4월 28일공포 대통령령 제761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①법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임업·수렵업·어업·금융업·보험업·증권업 도매업·소매업 및 부동산업
2. 써비스업.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경비·노무용역업

나. 세탁업

다. 영화제작업·라디오방송업·텔레비젼방송업·영화배급업·영화상영업·연극제작업·경마장 또는 골프장을 경영하는 영업

라. 위생써비스업

마. 수선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 16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탄·석유·고무 또는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계절사업으로서 연간 연인원 4천2백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때에는 그 재료의 싯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 다만, 당초의 총공사금액이 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

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로부터 이를 제외한다.

②제 1 항 제 5 호의 총공사금액은 위탁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급단위별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대리인) ①사업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주가 법과 이 영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사항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인 선임(또는 해임) 신고서를 관할 노동청지방사무소장(이하 "지방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험가입자

제 4 조 (보험관계 성립의 신고 등) ①법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게 되는 사업주는 그 사업이 법 제 7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되게 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의 2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는 승인신청) 원수급인이 법 제 6 조 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보험료의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7 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수급인 보험가입 인정승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험관계 성립의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관계

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성립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관계 소멸의 신고 등) ①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는 그 소멸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관계 소멸의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관계가 소멸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관계 소멸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급여

제8조(요양급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양을 받는 의료기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비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사무소장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 제9조의3 제3항 제6호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지정은 병원·의원·보건소 중에서 하되,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3.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4. 노동청장이 지역적 사정 또는 진료과목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의료기관

②노동청장은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요양관리에 관한 사항) 요양비의 산정기준·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해제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요양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 경우의 요양비의 산정기준은 당해 의료기관의 최저 수가 기준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노동청장이 인정하는 종합병원

제 11 조 (휴업급여) 법 제 9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의 2 (휴업급여액의 개정) ①법 제 9 조의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 월부터 3 월까지, 4 월부터 6 월까지, 7 월부터 9 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이를 개정할 수 없다.

⑤휴업급여액을 개정하여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업급여액 개정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해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보상 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①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 이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 인상

3. 제 13 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 인상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에 기재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있을 때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표에 기재된 신체장해에 준하여 그 신체장해의 등급을 정한다.

④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한 경우에 그 장해급여의 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의 25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기존장해가 제 1 급내지 제 3 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으로부터 기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연금액을 공제한 금액.

제 14 조 (장해보상연금액의 개정) 법 제 9 조의 5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에 있어

서 매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10월에서 12월까지의 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날이 속하는 년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이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되어 그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상승 또는 저하한 범위안에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비율에 의하여 최초의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한 금액을 그 다음해 5월로부터 장해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망의 추정등) ①법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1.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이하 "사고"라 한다)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간 불명한 때
2.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로부

터 3월간 불명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였던 자가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의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유카 발생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이 확인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 및 보험가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그 보험급여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유족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범위) ①법 제9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법 제3조제3항에 게기한 자중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서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외의 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2.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는 18세미만
3.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세미만 또는 60세이상
4. 제1호내지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별표1의 신체장해등급표의 제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을 것.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출생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인 것으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있는 유족(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의 순위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에 의한다.

제 18 조(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별표 2 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19 조(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의 실격) ①제 1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혼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18 세에

달한 때 다만, 근로자의 사망당시 제1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다만, 남편·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이상 이었던 경우와 자녀 또는 손에 있어서 아직 18세미만인 경우 및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아직 18세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사망당시 60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정지등) ①노동청장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

는 같은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인 기간의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달 분으로 부터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을 그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에서 그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게 해당하는 별표2에 의한 가산금액을 감액하여 개정한 금액
2.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액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1 조 (유족보상연금액의 개정) ①노동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유족보상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유족의 수가 증감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격된 경우
3. 제 20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4.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연금액의 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액개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연금지급기간등) ①연금인 보험급여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로부터 개시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②연금인 보험급여는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금인 보험급여는 매년 2월·5월·8월 및 11월(이하 "지급기"라 한다)의 4기에 각각 그 전월분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의 연금인 보험급여는 지급기가 아닌 달이라도 지급한다.

제23조(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특례)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잃은 경우에 따로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없고 당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유족보상연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유족보상일시금으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4조(유족특별급여의 청구) 법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특별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수급권자의 유족의 결정등) ①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유족

은 제 17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 3 조 제 3 항에 게기한 자로서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한 자에 있어서는 각각 당해 각호에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자를 포함한다). 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 자매

②법과 이 영에 의하여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같은 순위자의 유족이 2 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보험급여는 그 인수로 등분하여 지급한다.

④보험급여를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

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⑤이 영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순위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26조(장의비의 청구) 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의비청구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등) 제25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결정 및 통지)

①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청인에게 요양의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지방사무소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청구서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장해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해등급·지급액·장해급여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사무소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 청구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청구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청구서, 유족보상일시금청구서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10일이내에 지급액, 지급방법과 지급예정일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사무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특별급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에 관하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일시급여의 지급)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급여는 지방사무소장이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급한다.

제29조(보험급여의 분할지급) ①지방사무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행하되, 미리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장해보상일시금에 있어서는 장해등급 제10급내지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을 개시한 후라도 지방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어 나머지 보험금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제 30 조 (부정이득의 징수) ①노동청장은 법 제 14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납부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의 징수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이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의 신고등) 법 제 1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여야 할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3 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보험급여의 수령위임) ①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법 제 16 조제 2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수령을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그 보험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당하여 지불 받았음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주

2. 법 제9조의3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 법 제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법 제9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법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에 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보험급여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령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하거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3조(급여원부의 작성) ①지방사무소장은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근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고 지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사무소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34조(사업주의 조력등)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기타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시설의 이용)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용·법인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노동청장은 보험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영세 근로자로 하여금 보험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청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 4 장 보 험 료

제 36 조 (공사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나 정부투자기업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그 공사설계서에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발주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발주자에 의한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사무소장은 그 설계서에 계상된 보험료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료의 대행납부를 당해 발주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대행 납부하기로 한 당해 발주자는 수급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금액에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한국은행 또는 국고대리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위탁징수의 범위와 자격등) ①노동청장은 보험료·가산금·연체금 및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이하 "위탁징수금"이라 한다)을 그 사업주를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협회 또는 그 연합체로서의 법인인 단체(이하 "사업주단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는 그 구성원인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무처리의 위탁을 받은 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삭제) 73. 6.23 대통령령 제6740호

제39조(징수수탁자에 대한 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①노동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여야 할 징수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납액통지서를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이하 "징수수탁자"라 한다)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부금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증가액에 대하여는 납액통지서를 그 감액에 대하여는 감액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 40 조 (징수수탁자의 납부의무등) ①징수수탁자는 사업주로부터 위탁징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법 제 26 조의 2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가 징수수탁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③노동청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징수금에 관하여 징수수탁자에 대하여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여도 아직 징수하여야 할 잔여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 41 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노동청장은 법 제 19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수탁자가 납부한 징수금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징수비용을 징수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②제 1 항의 징수비용은 매월분의 불입금액에 따라

그 다음달 중에 교부한다.

제 42 조 (징수수탁자의 보고) ①징수수탁자는 매월 5일이내에 그 전월중의 징수상황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징수수탁자는 위탁징수금을 그 법정기한까지 징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체납한 사업주 및 체납액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3 조 (업무의 폐지와 인가의 취소) ①징수수탁자가 위탁징수의 업무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징수업무폐지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징수수탁자가 징수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거나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 또는 이를 태만히 한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44 조 (징수위탁인가내용 변경의 신고) 징수수탁자는 제 3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를 기재한 징수위탁인가내용변경신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조 (장부 및 서류의 비치등) 징수수탁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노동청장의 명을 받은 관계공무원이 위탁징수사무처리에 관하여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납부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의 명부
2. 사업주별 징수업무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

제 46조 (보험료율의 고시) 노동청장은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 47조 (보험료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전조의 고시에 의한 보험료율적용사업이 2종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등의 비중이 큰 사업 (이하 "주된사업"이라 한다) 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있어서 주된 사업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제 48 조 (보험요율의 결정의 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100 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2만 5천인 이상 (연인원의 적용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에 한한다)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제조업 전기가스업 및 운수창고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 49 조 (법 제 22 조의 보험료액과 보험급여액의 산정)
①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료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9월 30일 현재로 보험요율을 조정하는 보험연도 (이하 이조에서 "기준보험연도"라 한다) 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보험연도까지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다만,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직전의 4보험연도의 확정 보험료액의 합계액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

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times \frac{3}{\text{(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계산에 있어서의 보험급여액은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 현재로 보험관계가 성립된지 5년을 넘는 사업에 있어서는 기준보험연도의 5년전 보험연도의 10월1일)로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과 지급하기로 확정된 보험급여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하는 때에는 앞으로 지급될 전액을 포함한다.

제50조(법 제22조의 보험요율의 증감비율)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는 별표3의 비율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하여 결정된 보험요율을 당해사업의 보험가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1 조 (개산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 2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 법 제 23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 , (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일 , 다만 ,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서 상의 착공일로) 부터 30 일이내에 보고하고 45 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3 조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범위와 그 보고) ①법 제 23 조제 2 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범위는 법 제 2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100 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가 생긴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증가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4 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 ①법 제 23 조제 4 항

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4기로 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말일까지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말일까지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②개산보험료액이 1만원이상(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전기간이 6월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보험년도의 7월 1일 이후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년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에 있어서의 분할납부의 최초의 기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월 2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3월 31일까지

2. 2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3. 5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9월 30일까지

⑤제 1 항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는 보험가입자는 그 개산보험료액을 기수로 등분한 금액을 각기분의 개산보험료로 하되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법 제 23 조제 1 항(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55 조(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통지) 노동청장은 법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개산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 56 조(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추가징수) ①지방사무소장이 법 제 24 조의 2 의 규정

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그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액을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부기한은 보험요율의 인상을 결정한 날로부터 50일이내로 한다.

제57조(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의 기준)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에 그 축소후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의 100분의 70이하로 된 때에는 그 개산보험료 총액의 차액

2. 보험요율이 인하된 경우에는 이미 산정보고된 개산보험료 총액과 인하된 보험요율에 의한 개산보험료 총액과의 차액

3. 보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이미 산정보고된 산정보험료 총액이 보험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확정된 확정 보험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제 58조 (감액조정의 신청) 법 제 24조의 2 및 제 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보험료 감액조정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9조 (감액조정의 결정 및 통지)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그 감액조정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0조 (확정보험료의 보고) 보험가입자가 법 제 25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보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1조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가산금의 징수통지) 노동청장이 법 제 25조제 3 항 및 법 제 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 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2조 (보험료의 반환청구 및 충당) 보험가입자가 법 제 25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보험료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초과보험료액을 다음 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에 충당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청장으로부터 초과액의 반환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납보험료반환청구서 또는 과납보험료충당신청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연체금징수의 예외)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납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
2. 연체금 또는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
3. 독촉장의 지정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한 경우
4. 납부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불명하여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5. 체납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노동청장이 인정한 경우

제64조(보험가입자의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 ①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급여액의 납부기한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로 한다.

제 65조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 27조의 2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연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견적가격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청장이 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경찰서·은행·세무서·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유무를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공시송달의 방법) ①법 제 27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에 관한 공시 송달은 그 송달한 서류를 지방사무소장이 보관하고,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자에게 이를 교부한다는 취지를 그 서류의 요지와 함께 지방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행한다.

②제 1 항의 게시는 그 게시한 날로부터 10 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보 칙

제 67 조 (변경사항의 신고) 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및 사업장의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제 68 조 (수급자에 관한 사항의 보고) ①법 제 32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는 노동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성명·본적·주소·부양가족의 성명·진단서·근로계약체결일자 기타 노동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피재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보험가입자는 보험관계법령중 근로자와 관계있는 규정의 요지와 보험관계 성립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업장의 보기 쉬운 장소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소멸될 때에는 그 일자를 근로자가 주지하도록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0조(서류의 보존의무)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그 보험에 관한 서류를 그 완결의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고·제출등의 명령) 법 제32조·법

제34조 및 법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 또는 진찰의 명령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71조(유족보상연금액의 합리화) 노동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과거 및 현재의 경제사정과 장래의 경제예상 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별표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개정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1971.1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때까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가 상시 50인미만 또는 연간 연인원 1만3천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본사와 건설공사 현장을 통합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보험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의 도급계약이 이 영 시행일 전 7일내에 체결되었더라도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도래되는 것은 그 계약서상의 착공일에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④(적용례) 1971년1월1일로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기준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이미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행한 통지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전에 이미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적용례) 이 영 시효당시 법 제15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 상당액의 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하여 제3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적용례)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971년1월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사도급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도래된 것을 말한다)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45일이내로 하며, 이미 1971년 1월1일 이전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⑧(적용례)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증가가 1971년1월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에 그 증가가 생긴 것으로 본다.

⑨(적용례) 1971년1월1일부터 이 영 시행일의 전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급여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보험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하여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75. 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업과 제조업중 화학·석유·석탄·고무 또는 프라스틱제품 제조업으로서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

②(도급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착공된 건설공사로서 그 공사도급계약단위별도급금액이 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설공사의 보험요율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 받고 있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1

신 체 장 해 등 급 표

제 1 급

1. 두눈이 실명된 자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두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3. 두팔을 완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3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4 급

1. 두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팔을 주관절 사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발을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5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팔을 완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6 급

1. 두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의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팔의 3 개 관절중의 2 개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 대관절 중의 2 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손의 5 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 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 7 급

1.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 한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발을 "리스프랑" 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제 8 급

1.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서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제 9 급

1. 두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안점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제 10 급

1.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 11 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 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 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 1 족지를 포함하여 2 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제 12 급

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안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 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이각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관절중에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 증상이 남은 남자

13.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남자

14. 외모에 총상이 남은 여자

제13급

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 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제14급

1. 한 눈의 안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섭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와 시지 이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10.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참 고"

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지1 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 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

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유족보상연금표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를 넘는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보험료의 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액의 비율	보험료에 대한 증감비율
30%까지의 것	30% 감한다.
30%를 넘어 40%까지의 것	25% 감한다.
40%를 넘어 50%까지의 것	20% 감한다.
50%를 넘어 60%까지의 것	15% 감한다.
60%를 넘어 70%까지의 것	10% 감한다.
70%를 넘어 75%까지의 것	5% 감한다.
75%를 넘어 85%까지의 것	0
85%를 넘어 90%까지의 것	5%를 증가한다.
90%를 넘어 100%까지의 것	10%를 증가한다.
100%를 넘어 110%까지의 것	15%를 증가한다.
110%를 넘어 120%까지의 것	20%를 증가한다.
120%를 넘어 130%까지의 것	25%를 증가한다.
130%를 넘는 것	30%를 증가한다.

公務員年金法〔1962年8月31日 法律第1133号〕

改正 1963. 2.28法1284号 1963.11. 1法1433号
1963.12.16法1613号 1964. 5. 2法1635号
1966.12.15法1851号 1968.12.18法2054号
1969. 7.28法2119号 1972.12. 6法2354号
1975. 4. 1法2747号

第1章 総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公務員의 健康診断·疾病·負傷·廃疾·分娩·退職 또는 死亡에 対하여 適切한 給与를 実施함으로써 公務員에 対한 社会保障制度를 確立하고 公務員 및 그 遺族의 経済的生活 安定과 福利向上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1963. 法1433>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公務員"이라 함은 常時公務에 従事하는 国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을 말한다. 다만, 軍人과 選挙에 依하거나 臨時的 또는 條件附로 就任하는 公務員을 除外한다.
2. "遺族"이라 함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当時 그에 依하여 扶養되고 있던 配偶

者(事実上 婚姻関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子·父母·孫 및 祖父母를 말한다.

3. "退職"이라 함은 免職·辞職 其他 死亡 以外의 모든 解職의 境遇를 말하되, 公務員의 資格이 消滅된 날 또는 그 翌日에 다시 資格을 取得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4. "俸給月額"이라 함은 公務員의 種類 및 級別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本俸과 職責手当의 標準月給与額을 말한다. 다만, 日給을 받는 公務員의 俸給月額은 俸給日額의 30倍에 상당하는 金額으로써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標準月給与額을 말한다.

5. "俸給日額"이라 함은 俸給月額의 30分의 1에 相当하는 金額을 말한다.

6. "俸給年額"이라 함은 俸給月額의 12倍에 相当하는 金額을 말한다.

7. "機関長"이라 함은 当該豫算을 執行하는 機関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말한다.

8. "寄与金徵収義務者"라 함은 豫算支出事務에 従事하는 公務員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를 말한다.

9. "寄与金"이라 함은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公務員이 負担하는 金額을 말한다.

10. "負担金"이라 함은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으로 国庫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負担하는 金額을 말한다.

②第1項第2号의 규정중 子는 18歲 미만인者와 大統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있는 18歲 이상인 者에 한한다. <改正 75.4.1 法 2747 >

③第1項第2号의 규정중 孫은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新設75.4.1法 2747 >

1. 18歲 미만인 者.

2. 18歲 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정도의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④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当時의 胎児는 民法第988条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章 在職期間

第3條(在職期間의 計算) ①公務員의 在職期間은 公務員으로 任命된 날이 属하는 月로부터 退職 또는 死亡한 날이 属하는 月까지의 年月数에 依한다.

②退職한 公務員(公務員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제외한다) 이 公務員으로 任命된 때에는 그의 意思에 따라 종전의 在職期間을 前項의 在職期間에 合算할 수 있다.

③退職한 軍人(軍人年金法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였던 者는 除外한다) 이 公務員으로 任用된 때에는 그의 意思에 따라 軍人年金法第16條에 의한 服務期間을 第1項의 在職期間에 合算할 수 있다. <改正 1666法 1851号>

④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休職期間 및 職位解除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減하고 停職期間은 3分의 2를 減한다. (新設 72.12. 6法 2354号)

第3條의 2 (在職期間의 合算方法) ①第3條第2項 또는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 또는 服務期間의 合算을 받고자 하는자는 公務員으로 任用된 날로부터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소속機関의 長을 거쳐 総務処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期間合算의 申請을 하여 合算을 받은자는 退職当時에 受領한 退職給与額(第49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給与額의 制限을 받은 때에는 그 制限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給与額으로 한다) 또는 返還받은 寄与金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公務員年金特別会計에 返納하여야 한다. 그러나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者가 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受給者인 경우에는 返納하지 아니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返納하여야 할 給与額 및 利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分割하여 納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加算한다. (本条 新設72.12.6法2354号)

第3章 給 与

第1節 通 則

第4條(給与) 公務員의 健康診断 疾病·負傷·分娩 및 葬祭에 対하여는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短期給与를 支給하고 公務員의 退職·廃疾 및 死亡에 対하여는 第26條의 規定에 依한 長期給与를 支給한다.

第5條(給与事由의 確認 및 給与의 決定) ①給与를 받을 権利는 그 権利를 가질者가 当該公務員이 所属하였던 機関長의 確認을 얻어 申請하는 바에 依하여 総務処長官이 決定한다. 다만, 給与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種類의 給与의 決定에 있어서는 公務員年金給与審議会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②前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年金給与審議会의 組織과 運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1963.法1433号>

第6条(支給事務의 委託) 総務処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給与의 支給에 関한 事務를 逓信部長官 또는 金融機関에 委託할 수 있다.

第7条(給与額算定의 基礎) ①給与額算定의 基礎가될 俸給月額은 給与의 事由가 발생한날(給与의 事由가 退職後에 발생한 경우에는 退職한 날로 한다. 이하같다.)이 속하는 月의 俸給月額으로 한다. 다만 年金인 給与에 대하여는 그 支給期日이 속하는 月을 基準으로 하여 退職 또는 死亡당시의 号給에 상당하는 俸給月額으로 한다.

②昇進, 降任이나 転職 또는 再任用으로 인하여 俸給月額이 増減된 後 1年以内에 長期給与의 事由가 発生한 때에는 前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増減되기 前月의 俸給月額과 給与事由가 발생한 달의 俸給月額을 平均한 金額을 給与額算定의 基礎로 한다. 다만 俸給月額이 減額된 者에 대하여는 総務処長官은 本人의 希望에 따라 종래의 職級 및 号俸에 의한 寄与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종래의 職級 및 号俸을 適用하여 俸給月額을 査定한다. <改正 75.4.1法2747>

〔全文改正72.12.6 法2354〕

第8条(遺族의 優先順位) 給与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財産相続의 順位에 依한다.

第9條(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以上 있을 때에는 그 給与는 等分하여 支給하되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10條(給与의 受給者에 対한 特例)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死亡한 境遇에 給与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의 額을 그 直系卑属에게 支給하고 直系卑属도 없을 때에는 該当公務員을 위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11條(給与의 還収) ①総務処長官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給与를 한 경우에는 그 給与額을 還収하여야 하며, 第1号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給与額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 및 還収費用을 加算하여 徴収할 수 있다.

1. 不正한 方法으로 給与를 받은 경우

2. 給与를 받은후 그 給与의 事由가 소급하여 消滅된 경우

3. 기타給与가 過誤給된 경우

②前項의 규정에 의한 給与의 還収는 国税徴収法의 규정에 의한 滞納処分의 例에 의한다.

<全文改定 72.12.6 法 2354 号)

第12條(権利의 保護) 給与를 받을 権利는 이를 譲渡押留하거나 担保에 供할수 없다. 다만, 年金인

給与를 받을 権利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融機関의 担保로 供하는 境遇 및 国税徴収의 例에 依하여 滞納処分을 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12條의2 (다른 法令에 의한 給与와의 調整) 다른 法令에 의하여 国庫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負担으로 이 法에 의한 給与와 同類의 給与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給与에 상당하는 金額을 이 法에 의한 給与에서 控除하여 支給한다.

②이 法에 의한 給与의 事由가 第3者의 行為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総務処長官은 当該給与事由에 대하여 이미 행한 給与額의 範囲안에서 受給権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갖는 損害賠償請求権을 取得한다.

③前項의 경우에 受給権者가 그 第3者로부터 同一한 事由로 인하여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그 賠償額의 範囲안에서 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12條의3 削除 <1972.12.6>

第2節 短期給与

第1款 通則

第13條 (短期給与) 이 法에 의한 短期給与는 다음과

같다.

1. 保健給与

가. 公務上療養費

나. 公務上療養一時金

다. 療養扶助金

라. 分娩費

마. 健康診断費

2. 休業給与

가. 傷病手当

나. 分娩手当

3. 災害給与

가. 葬祭費

나. 災害扶助金

第13條의 2 (医療保険法과의 관계) 公務員이 医療保険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医療保険에 加入된 때에는 第15條의 2, 第20條 및 第25條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2款 保健給与

第14條 (公務上療養費) ①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다음 各号에 揭記한 療養을 하는 때에는 療養費를 支給한다.

1. 診斷

2. 藥劑, 治療材 및 補綴具의 交付

3. 処置, 手術기타의 治療

4. 病院, 또는 療養所에의 収容

5. 介護

6. 移送

②前項의 療養費는 同一한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療養을 開始한 날로부터 3月까지 그 療養에 所要된 金額을 全額支給한다. 다만, 総務処長官은 그 療養期間이 3月을 초과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9月까지의 療養에 所要되는 費用을 支給할 수 있다.

第15條(公務上療養一時金) 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을 당하여 前條의 규정에 의한 療養費를 받는 療養을 開始한 후 1年을 경과하여도 그 疾病 또는 負傷이 完治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療養에 所要될 費用으로 公務上 療養一時金을 支給하되 그 金額은 1年間療養에 所要될 費用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15條의2(療養扶助金) ①公務員이 公務外의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療養을 하거나 公務員의

家族이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療養을 하는 때에는 그 療養費의 2分의 1의 範囲안에서 療養扶助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家族의 範囲·公務員世帶当年間扶助限度額과 病疾이나 負傷의 種類 및 그 種類別 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療養機関) 公務員 또는 그의 家族이 第14條 또는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療養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号에 揭記하는 医療機関에서 받아야 한다.

1. 公務員의 療養을 目的으로 하는 医療機関으로서 総務処長官과 療養에 関하여 契約을 締結한 医療機関

2. 保健社会部長官이 指定하는 公共医療機関

第17條(療養費의 支給節次) ①公務員이 前條의 医療機関으로부터 療養을 받은 경우에는 総務処長官은 第14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療養費를 그 医療機関에 직접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특수한 療養費는 本人에게 직접 支給할 수 있다.

②長期間의 療養을 하거나, 多額의 費用이 所要되는

療養費의 支給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分割 또는 先金으로 支給할 수 있다.

③第14條第1項第2号의 規定에 의한 補綴具의 交付는 同一한 疾病 또는 負傷에 대하여 1回에 限한다.

第18條(医療費의 算定) 第14條, 第15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療養에 所要되는 医療費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総務処長官이 算定한 金額으로 한다.

第19條(療養費支給의 特例) ①公務員이 緊急 其他 不得已한 事情으로 因하여 第16條 各号에 揭記한 医療機関以外의 医療機関으로 부터 第14條 및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療養을 받은 境遇에는 総務処長官이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本人에게 医療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前項의 医療費의 算定에 있어서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総務処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療養에 필요한 薬剤등을 支給할 수 있다.

第 19 條의 2　削除 < 1972.12. 6 >

第 20 條 (分娩費)　①公務員이 分娩한 때에는 分娩費로 俸給月額 3 分의 1 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다만, 그 金額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에 未達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으로 한다.

②削除 < 1966.12.15 >

第 21 條 (健康診斷)　①総務処長官은 給与의 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에 대하여 健康診斷을 実施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이 健康診斷을 받은 때에는 健康診斷費를 支給한다.

③前項의 健康診斷費는 公務員의 健康診斷을 実施한 医療機関에게 이를 支給한다.

④健康診斷費의 算定은 総務処長官이 保健社会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3 款　休 業 給 与

第 22 條 (傷病手当)　①公務員이 疾病負傷으로 因한 療養을 하기 위하여 継続하여 勤務를 할 수 없는 境遇에는 勤務할 수 없게 된날 以後 5 日을 経過한 날로부터 그後의 勤務를 할 수 없었던 期間

每1日에 対하여 公務上의 境遇에는 俸給日額의 10分의 6에 相当하는 金額을, 公務外의 境遇에는 俸給日額의 10分의 3에 相当하는 金額을 傷病手当으로 支給한다.

②傷病手当의 支給期間은 同一한 疾病·負傷에 対하여 3月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23條(分娩手当) 公務員이 分娩한 境遇에는 分娩한 날을 前後하여 3月까지 勤務할 수 없게된 期間每1日에 対하여 俸給日額의 10分의 3에 相当하는 金額을 分娩手当으로 支給한다.

第24條(俸給과의 調整) 傷病手当과 分娩手当은 그 支給期間에 該当하는 俸給을 받을 境遇에는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4款 災害給与

第25條(葬祭費) 公務員이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当時에 葬祭를 하는 者에게 葬祭費로 俸給月額의 3倍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第25條의2(災害扶助金) ①公務員이 水災·火災기타 非常災害로 인하여 財産에 損害를 받은 때에는 俸給月額의 3倍에 상당하는 金額의 範囲안에서 災害扶助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災害의 範囲와 그 災害의 程度別扶助金額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節 長期給与

第1款 通則

第26條(長期給与) 이法에 의한 長期給与는 다음과 같다.

1. 退職給与
   가. 退職年金
   나. 退職年金一時金
   다. 退職一時金
2. 障害給与
   가. 障害年金
   나. 障害補償金
3. 遺族給与
   가. 遺族年金
   나. 遺族年金一時金
   다. 遺族一時金
   라. 殉職扶助金

第27條(年金의 支給期間 및 支給時期) ①年金인 給与는 그 事由가 発生한 날이 属하는 月의 翌月부터 그 事由가 消滅된 날이 属하는 月까지의 分을

支給한다.

②年金인 給与의 支給을 停止할 事由가 発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発生한 날이 属하는 月의 翌月부터 그 事由가 消滅된 날이 属하는 月까지의 支給을 停止한다. 다만, 停止事由가 発生한 날과 그 事由가 消滅된 날이 같은 月에 属하는 境遇에는 그 支給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③年金인 給与의 支給額을 改正할 事由가 発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発生한 날이 属하는 月의 翌月分부터 그 改正된 金額을 支給한다.

④年金인 給与는 每年 이를 12等分하여 月別로 支給한다.

第27條의2 (年金支給의 特例) 年金인 給与를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外国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의 願하는 바에 따라 年金인 給与에 갈음하여 出国하는 다음달을 基準으로 한 年金額의 4倍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받을 수 있다.

第28條 (給与相互間의 調整) ①障害給与 또는 殉職扶助金과 다른 長期給与는 이를 併給한다.

②退職年金 또는 退役年金을 받던 자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았다가 다시

退職 또는 死亡한 경우에는 退職年金 또는 遺族年金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갈음하여 退職年金一時金 또는 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받을 수 없다.

第29條(長期給与 受給權者에 対한 書類提出要求)

①総務処長官은 長期給与의 支給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対하여 身分上의 移動, 廃疾状態 其他 給与에 関하여 必要한 書類 또는 物件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長期給与를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正当한 事由없이 이에 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者에 対한 給与의 支給을 이에 応할때 까지 中止할 수 있다.

第2款 退 職 給 与

第30條(退職年金 또는 退職年金一時金) ①公務員이 20年以上 在職하고 退職하였을 때에는 死亡할 때까지 退職年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本人이 願하는 때에는 退職年金에 갈음하여 退職年金一時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退職年金의 額은 俸給年額의 100分의 50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하고 在職期間이 20年을 超過할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 1年(1年未満의 每 1月

은 12분의 1年으로 計算한다)에 対하여 俸給年金의 100分의 2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경우에 그 金額은 俸給年額의 100分의 70을 超過하지 못한다. <改正 66.12.15 法1851,75.4.1 法2747>

③第1項 後段의 退職年金一時金의 額은 退職한 날이 属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在職年数(1年미만의 每1月은 12分의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같다.)를 乘한 金額의 100分의150에다 在職年数에서 5年을 控除한 年数의 每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이 속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在職年数를 乘한 金額의 100分의1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在職年数는 30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退職 또는 退役年金 受給者가 第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경우에 退職당시의 俸給額이 公務員으로 새로이 任用된 당시의 俸給額보다 많은 때에는 退職年金의 額은 公務員으로 새로이 任用되기 전에 受給하던 退職 또는 退役年金에 公務員에서 退職할 당시의 俸給年額에 새로이 任用된 公務員으로서의 在職期間을 乘한 金額

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이 경우에 그 金額은 俸給年金의 100分의 70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31条(退職年金의 支給정지) 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機関으로부터 報酬 기타 給与를 支給받고 있는 때에는 그 支給期間중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退職年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給을 정지할 수 있다.

1.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機関.
2. 国家·地方自治自体가 資本金의 2分의 1이상을 出資한 機関 및 韓国銀行(이하 "政府投資機関"이라 한다)과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 및 政府投資機関이 単独 또는 共同으로 出資한 総額이 資本金의 2분의1 이상이 機関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関
3.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出捐金·補助金등 財政支援을 하는 機関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関. 〔全文改正75.4.1法2747〕

第32条(退職一時金) ①公務員이 20年未満 在職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退職一時金의 額은 在職期間이 1月以上 5年未満인 者에 対하여는 退職한 날이 属하는 月의 寄与金에 在職月数를 乗한 金額에 利子를 加算한 金額으로 하고 5年以上 20年 未満인 者에 対하여는 退職한 날이 属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在職年数(1年未満의 每1月은 12分의 1年으로 計算한다. 이하같다)를 乗한 金額의 100分의 150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하며, 在職期間이 5年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1年에 対하여 退職한 날이 属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在職年数를 乗한 金額의 100分의 1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率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款 障害給与

第33條(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 ①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되어 退職한 때 또는 退職후 3年以內에 그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廢疾狀態로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疾의 程度에 따라 本人이 願하는 바에 의하여 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을 支給한다.

②總務処長官은 前項의 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本人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公務員年金給与審査委員会의 議決로 그 廢疾狀態가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한 것이 明白하다고 判定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을 支給한다.

第34條(障害年金 또는 障害補償金의 額) ①前條의 障害年金의 額은 俸給年額에 다음 各号의 比率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1. 第1級은 100分의 80
2. 第2級은 100分의 75
3. 第3級은 100分의 70
4. 第4級은 100分의 65

5. 第5級은 100分의 60

6. 第6級은 100分의 55

7. 第7級은 100分의 50

8. 第8級은 100分의 45

9. 第9級은 100分의 40

10: 第10級은 100分의 35

11: 第11級은 100分의 30

12: 第12級은 100分의 25

13, 第13級은 100分의 20

14. 第14級은 100分의 15

②前條의 障害補償金의 額은 그 者가 받을 수 있는 障害年金의 5倍에 상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35條(障害年金額의 改定等) ①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의 廢疾의 程度가 減退된 때 또는 減退한 날로부터 3年以內에 增進한 境遇에 그 期間內에 本人의 請求가 있을 때 또는 總務処長官이 認定한 때에는 減退하였거나 增進한 後의 廢疾의 程度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依하여 그 障害年金의 額을 改定한다.

②前項의 障害年金의 改定에 있어서는 第33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程度의 廢疾狀態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權利는 消滅된다. 이 境遇에는 公務員年金給与審査委員会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④削除 < 1972.12.6 >

⑤削除 < 1972.12.6 >

第36條 (2以上의 廢疾이 있는 境遇의 取扱)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에게 同時에 2以上의 廢疾이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廢疾을 併合処理한다.

第37条 (障害年金의 支給停止等) ①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31条의 규정을 準用한다. < 改正 75.4.1 法 2747 >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障害年金의 支給을 停止当한 者가 다시 退職한 때에는 그 退職当時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程度의 廢疾狀態에 있는 境遇에 限하여 再退職当時의 俸給月額을 基礎로 하여 障害年金의 額을 改定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障害年金의 額을 改定할 境遇에 그 改定額이 改定前의 障害年金額 額보다 적을 때에는 改定前의 障害年金의 額을 改定額으로 한다. 但, 第35條第1項 乃至 第3項의 適用을 排除하지 아니한다.

第38條 削除 (1963.2.28)

第4款 遺族給与

第39條 (遺族年金 또는 遺族年金一時金)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을 支給한다. 이 경우에 20年 이상 勤務한 公務員이 在職중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이 願하는 바에 따라 遺族年金에 갈음하여 遺族年金一時金을 支給한다.

1. 退職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때
2. 障害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때

第40條 (遺族年金 또는 遺族年金一時金의 額) ①遺族年金의 額은 다음과 같다.

1. 前條第1号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退職年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

2. 前條第2号에 해당할 경우에는 公務員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는 障害年金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金額

②遺族金額一時金의 額에 관하여는 第30條第3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41條 削除 (1972.12.6)

第42條 (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以上 行方不明인 境遇에는 同順位者의 請求에 依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行方不明된 期間에 該当하는 当該年金을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第43條 (遺族年金의 受給權 喪失) ①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할 때에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再婚한 때 (事実上 婚姻関係에 있는 境遇를 包含한다)
3. 死亡한 公務員이었던 者와의 親族関係가 終了된 때
4.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程度의 廢疾状態에 있지

아니한 子 또는 孫이 18歲에 達한 때

5.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程度의 廢疾狀態로 因하여 遺族年金을 받고 있던 者의 廢疾狀態가 解消된 때

②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喪失한 때에 同順位者가 있을 때에는 그 同順位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轉한다.

第44條(遺族一時金) ①公務員이 20年未滿 在職하고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一時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遺族一時金의 額에 關하여는 第32條第2項의 退職一時金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5條(殉職扶助金) ①公務員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在職中에 死亡하거나 退職後 3年以內에 그 疾病 또는 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殉職扶助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殉職扶助金의 額은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자의 俸給月額의 36倍의 範囲안에서 殉職의 原因 기타事情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4 節　給与의　制限

第46条(給与의　制限)　①이　法에　依한　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故意로　疾病, 負傷　또는　廢疾을　発生하게　한　境遇에는　그에　対한　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遺族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公務員, 公務員이었던　者　또는　遺族給与를　받고　있는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境遇에는　그　者에　対한　遺族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死亡前에　그　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遺族給与를　받을　수　있는　同順位者　또는　先順位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者에　対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法에　의한　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公務遂行中의　事故로　인한　負傷·疾病에　대하여는　그　事故가　本人의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그　負傷·疾病에　대한　療養費는　全額을　支給한다. <改正 75.4.1 法2747>

1. 중대한　過失　또는　平素의　疾病要因에　의하거나　정당한　事由없이　療養에　관한　指示에　不応함으로써　疾病·負傷, 廢疾을　발생하게　하거나　死亡하거나　또는　그　疾病·負傷·廢疾의　정도를　増進하게　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한　경우.
2. 故意로　疾病·負傷·廢疾의　정도를　増進하게　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한　경우.

第47條(同前) 이 法에 依한 給与의 支給에 関하여 診断을 받아야 할 境遇에 正当한 事由없이 받지 아니할 때에는 総務処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対한 当該給与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8條(同前) 第5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寄与金을 期日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給与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9條(同前) ①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禁錮以上의 刑을 받았거나 公務員이 弾劾 또는 懲戒処分에 依하여 免職된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給与額의 一部를 減額하여 支給한다.

②遺族給与를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禁錮以上의 刑을 받은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遺族給与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禁錮以上의 刑의 執行中인 者에게 支給될 年金인 給与는 그 刑의 執行期間中 그 支給을 停止한다.

第4章 費用負担

第50條(費用負担의 原則) 이 法을 運用하기 為한

費用은 다음 各号에 依하여 算定된다. 이 境遇에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은 적어도 2年마다 다시 計算하여야 한다.

1.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은 그 費用의 豫想額과 寄与金, 負担金 및 豫定運用收益金의 合計額이 将来에 있어서 財政的 均衡이 維持되고 每事業年度의 寄与金과 負担金의 額이 平均的으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第13条 및 第26条의 規定에 依한 公務上 疾病負傷 또는 死亡에 대한 給与에 소요되는 費用은 国庫가 負担한다.

第51条(寄与金) ①寄与金은 公務員으로 任命된날이 属하는 月로부터 退職 또는 死亡한날이 属하는 月까지의 分을 月別로 納付하여야한다. 다만, 寄与金納付期間이 30年을 초과한 자는 寄与金을 納付하지 아니한다. <改正 75.4.1 法 2747>

②前項의 寄与金의 額은 俸給月額의 1,000分의 55로 한다. <改正 68.12.18 法 2054, 69,7,28 法 2119>

第52條(寄与金의 徵収) ①寄与金은 寄与金徵収義務者가 每月 俸給에서 徵収하여 俸給支給日로 부터 5日以内에 本 会計에 불입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俸給의 全部를 支給받지 못할 事由로 因하여 当該月의 俸給을 받지 못할 境遇에는 寄与

金을 俸給支給日로 부터 10日以内에 寄与金 徵収義務者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한 寄与金을 収納한 当該 寄与金 徵収義務者는 遅滞없이 이를 本会計에 払入하여야 한다.

④寄与金徵収義務者는 公務員이 第2項의 규정에 의한 寄与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다음의 俸給을 支給할 때 徵収하여야 한다.

⑤寄与金의 過誤納이 있을 때에는 다음의 寄与金을 徵収할 때에 加減한다. 다만, 寄与金徵収時에 加減할 수 없을 때에는 給与를 支給할 때 加減할 수 있다.

第53條(転出의 境遇에 있어서의 寄与金의 徵収) 公務員이 다른 機関으로 転出한 境遇에 있어서의 転出한 날이 属하는 月의 寄与金은 前機関의 寄与金徵収義務者가 이를 徵収한다.

第54條(負担金) ①国庫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長은 負担金을 年4期로 나누어 每期分을 2月末, 5月末, 8月末, 11月末까지 本会計에 払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負担金의 算定은 每期마다 그

初日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俸給豫算에 增減이 있는 때에는 다음期의 負担金 算定時에 이를 精算하여야 한다.

③負担金의 額은 每会計年度의 俸給豫算의 1,000分의 55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한다.

④地方自治団体의 負担金은 国庫가 地方自治団体에 交付하는 交付税 其他 交付金中에서 直接 徵収할 수 있다.

⑤前項의 規定에 依한 負担金을 徵収할 境遇에는 이를 概算払로 할 수 있다. 이 境遇에는 当該会計年度의 末에 精算하여야 한다.

⑥負担金의 過誤納이 있을 때에는 다음 期의 負担金을 納付할 때에 加減한다.

第54條의 2 (軍人年金特別会計에서의 移替) ①軍人年金法에 의한 退役年金 受給者가 公務員으로 任用되어 第3條의 2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은 後 公務員에서 退職하거나 死亡한 때에는 国防部長官은 그 退職한 者 또는 그 家族이 軍人年金法에 의하여 支給받을 수 있는 退役年金 또는 遺族年金에 상당하는 金額을 軍人年金 特別会計에서 每会計年度마다 年4回로 나누어 分期別로 公務員年

金特別会計에 移替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처음의 分期別移替事由가 발생한 때, 또는 分期別移替를 하는 途中에 그 退役年金 또는 遺族年金額의 4倍에 상당하는 金額을 一時에 移替함으로써 앞으로의 分期別 移替責任을 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年金額의 算出基礎인 俸給月額은 그 一時移替하는 다음 달을 基準으로 한다.

第 5 章 審査의 請求

第 55 條 (審査의 請求) ①給与에 関한 決定, 寄与金의 徵収 其他 이 法에 依한 給与에 関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公務員年金給与審査委員会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審査의 請求는 同項에 規定하는 処分이 있은 날로부터 60日, 그 事実을 안 날로부터 30日 以内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内에 正当한 事由가 있어 審査의 請求를 할 수 없었던 것을 証明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 56 條 (委員会의 設置) 前條의 審査請求에 関한 事項을 審査하게 하기 為하여 総務処에 公務員年金給与審査委員会 (以下 委員会라 한다)를 둔다.

第 57 条 (委員会의 組織) ①委員会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委員 7人이상 9人 이내로 構成한다. <改正75.4.1法 2747>

②前項의 委員은 関係機関의 公務員, 医療界, 法曹界 및 社会保障에 関한 学識経験이 豊富한 人士中에서 国務総理가 任命 또는 委嘱한다.

第58條(委員의 任期와 改任) ①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公務員인 委員이 退職 또는 転補될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③委員은 再任할 수 있다.

第59條(委員長) ①委員会에 委員長을 두되, 委員長은 委員中에서 互選한다.

②委員長은 会務를 統理한다.

③委員長이 事故로 因하여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60條(議事) ①委員会의 会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委員会의 会議는 在籍委員 過半数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数인 때에는 委員長이 決定権을 가진다.

第61條(関係人에 対한 通知) ①委員会는 第55條의 規定에 依한 審査의 請求가 있을 때에는 当該審査

의 請求에 関係되는 公務員, 機関長 其他 関係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通知를 받은 者는 委員会에 対하여 当該事件에 対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62條(審査를 為한 報告等) 委員会는 審査를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審査를 請求한 者 其他 関係人에게 報告를 하게 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게 하거나 出席을 要求하여 質問할 수 있다.

第63條(審査의 決定) ①審査의 決定은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決定書에는 主文과 理由를 記入하고 委員長 및 会議에 参席한 委員이 署名捺印한 後 그 謄本을 請求人 및 機関長 其他 関係人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64條(決定의 効力) 委員会에서 決定한 事項은 請求人에게 決定書謄本이 送達된 때로부터 그 効力이 発生한다.

第65條(旅費 및 手当) 第62條의 規定에 依하여 出席케 한 関係人에 対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旅費 및 手当을 支給한다.

第 6 章　補　　則

第 66 條 (時效)　①이 法에 依한 給与를 받을 權利는 그 給与의 事由가 発生한 날로부터, 短期給与에 있어서는 1年間, 長期給与에 있어서는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②過誤納된 寄与金의 還付를 받을 權利는 2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된다.

第 67 條 (効力発生期間)　이 法의 規定에 依한 給与 또는 審査의 請求, 申告等에 関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가 郵送에 依한 때에는 이에 所要된 日数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削除 (75.4.1 法 2747)

第 69 条 (機関長의 確認)　①機関長은 이 法에 依한 給与事由의 発生, 寄与金의 納付, 在職期間의 計算에 必要한 履歷事項 其他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의 身分에 関한 事項을 調査確認하여야 한다.

②機関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確認事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必要한 때에는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 其他 関係人에게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求할 수 있다.

第70條(寄与金徵収義務者의 責任) 寄与金徵収義務者는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寄与金을 徵収하지 아니하여 本 会計에 損害를 끼쳤을 때에는 그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71條(総務処長官의 権限) ①総務処長官은 이 法에 依한 給与의 適正을 期하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給与에 関聯된 者에 対하여 報告를 하게 하거나 帳簿書類 其他 物件의 提示 또는 出席説明을 要求하거나 所属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検査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検査할 때에는 当該公務員은 그 権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携帶하고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72條(特別会計) 이 法을 運営하기 為하여 特別会計를 設置한다.

第73條(費用負担의 特例) 戰争 또는 事変으로 因하여 発生하는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은 当該年度의

寄与金, 負担金 및 運用收益金을 超過하는 金額에 限하여 国庫가 負担한다.

第73條의 2 (年金制度審査委員会) ①年金制度에 관한 重要事項에 대하여 総務処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総務処에 年金制度審査委員会를 둔다.

②前項의 年金制度審査委員会는 公務員과 社会保障에 관한 学識과 経験이 풍부한 자 중에서 総務処長官이 任命 또는 委嘱한 委員으로 構成하되 그 委員의 定数 기타 委員会의 組織과 運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7章 罰 則

第75條 (罰則) 第71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報告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報告를 하거나 検査를 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3万원 以下의 罰金에 처한다.

附 則

①(施行日) 本 法은 公布後 30日을 経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規定) 軍人에 対한 給与에 関하여는 軍人에

関한 年金法이 制定될 때까지 従前의 例에 依한다.

③(在職期間에 関한 経過措置) 1960年1月1日 法律第533号 公務員年金法 施行当時 公務員으로 在職하고 있던 者에 対하여는 第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1960年1月1日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本 法에 依한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다만, 1960年1月1日 法律第533号 公務員年金法 附則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1948年8月15日 부터 1959年12月31日 까지의 在職期間에 対하여 1960年1月1日 以後에 同額의 寄与金을 納附하고 있는 者에 対하여는 例外로 하되 그 遡及寄与金을 納付하는 期間에 限한다.

④(廃疾程度의 再判定) 本 法 施行当時 1960年1月1日 法律 第533号 公務員年金法에 依한 障害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는 本 法 施行日로 부터 60日 以内에 廃疾程度의 再判定을 받아야 한다.

⑤内閣事務処長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廃疾程度의 재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재판정된 폐질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액을 개정 통지 하여야 한다.

附　　則　（1963．2．28）

①（施行日）　이　法은　1963年3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에　대한　경과措置）　이　法　施行당시　1962年8月31日　法律第1133号　公務員年金法改正法律　附則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者는　1948年8月15日부터　1959年12月31日까지의　在職期間에　대하여　이法施行日이　속하는　月부터　당해　月分의　寄与金과　同額의　遡及寄与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遡及寄与金을　納付한　者에　대하여는　그　納付하는期間　遡及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하고　第3條의　規定에　在職期間을　計算한다.

附　　則　（1963．11．1法143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第15條第2項의　規定은　1963年8月1日부터　適用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障害補償金　또는　遺族扶助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를　支給할　수　있다.

③（同前）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害補償金이나

遺族扶助金을 支給할 경우에는 그 者에게 미리 支給한 障害年金 또는 遺族年金總額을 控除하여 支給한다.

附 則 (1963. 12. 16 法 1613)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4. 5. 2 法 163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 12. 15 法 1851)

①(施行日) 이 法은 196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公務員으로서 在職중인 第3條第2項 또는 同條 第3項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12條의3 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附 則 (1968. 12. 18 法 2054)

이 法은 196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9. 7. 28 法 2119)

①(施行日) 이 法은 197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중 第12條의3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거나 法律第1851 附則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로서 同條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在職期間을 合算하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2月이내에 第12條3의 第1項에 의한 在職期間合算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附 則 (1972. 12. 6法2354)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在職期間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在職하고 있는 公務員中 在職期間의 合算을 받지 못한 자는 이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內에 第3條의2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在職期間의 合算申請書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法 第3條의2 第2項 및 第3項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在職期間計算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休職·職位解除 또는 停職의 処分을 받은 期間은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이 法 施行후에 있어서도 第3條第4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休職 또는 職位解除期間은 在職期間에서 減하지 아니하고 停職期間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消滅時効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규정에 의한 退職一時金 및 遺族一時金의 消滅時効期間이 滿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消滅時効期間은 그 給与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5年으로 한다.

⑤(給与事由発生의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与의 事由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附則에 特別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施行이후에 있어서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附　　則 < 75.4.1 法 2747 >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在職期間에 대한 經過措置) 1949年 8月 15日부터 1959年 12月 31日 사이에 在職한 期間중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在職期閑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通算받지 못한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每月 俸給月額의 1,000분의 55에 상당하는 遡及寄与金을 따로 納付하는 때에는 給与計算에 있어서 그 期間을 通算한다. 이 경우 通算되는 在職期間의 計算에 있어서는 軍人年金法 第16条第4項의 규정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年金受給権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年金受給権者에 대하여는 第2条第3項, 第31条 및 第37条第1項의 규정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支給하여야 할 年金에 한하여 이를 適用한다.

④(在職중인 委員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公務員年金 給与審査委員会의 委員으로 在職중인 자는 第57条第1項에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에 의한 任期동안 繼続 在職한다.

⑤(이미 給与事由가 발생한 경우의 経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給与의 事由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이 法 第46条第3項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軍人年金法〔1973.1.28 法律第1260号〕

改正 1970. 1. 1 法律第2173号
1973.10.10 法律第2629号
1974.12.26 法律第2728号

第 1 章 總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軍人이 相当한 年限 誠実히 服務하고 退職하였거나 心身의 障碍로 因하여 退職 또는 死亡한 때에 本人이나 그 遺族에게 適切한 給与를 支給함으로써 本人 및 그 遺族의 生活安定과 福利向上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適用範囲) 이 法은 現役 또는 召集되어 実役에 服務하는 軍人에게 適用한다. 다만, 長期服務를 願하지 아니하는 者로서 下士官으로 任用된 者 및 兵에게는 第31条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
〈改正 70.1.1法 2173〉

第3条(用語의 定義) ①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70.1.1 法 2173〉

1. 俸給月額이라 함은 軍人의 階級에 따라 法律로 定하는 報酬의 月給与額을 말한다.

2．俸給年額이라 함은 俸給月額의 12倍에 相当하는 金額을 말한다

3．退職이라함은 転役，退役 및 除籍의 境遇를 말한다

4．遺族이라함은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当時 그에 依하여 扶養되고 있던（第31条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金의 支給에 있어서는 扶養의 与否에 불구한다）配偶者（事実上 婚姻関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子，父母，孫 및 祖父母를 말한다〈改正 74.12.26 法 2728〉

5．賦与金이라 함은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軍人이 負担하는 金額을 말한다.

6．負担金이라 함은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으로서 国庫가 負担하는 金額을 말한다.

②第1項第4号의 規定中 子는 18歳미만인 者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状態에 있는 18歳이상인 者에 限한다.〈改正74.12.26 法 2728〉

③第1項第4号의 規定中 孫은 父가 없는 경우 또는 父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状態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에 限한다.

1. 18歲 미만인 者

2. 18歲 이상인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정도의 廢疾狀態에 있는 者. <改正74.12.26 法2728>

④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当時의 胎児에 関하여는 民法第988条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条(寄与金의 返還) ①軍人이었던 者로서 이 法에 依한 給与를 받을 権利가 없는 者 또는 그 遺族에 対하여는 그 軍人이 服務時 納付한 寄与金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을 返還한다. <改正 70.1.1 法 2173>

②前項의 規定은 給与額이 寄与金総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合한 額에 未達할 때에도 適用한다. <改正 70.1.1 法 2173>

第5条(審査) ①이 法에 依한 給与에 関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国防部에 設置하는 軍人年金給与審査委員会에 그 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70.1.1 法 2173>

②軍人年金給与審査委員会의 構成, 運営 및 審査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0.1.1 法 2173>

第 2 章　給　与

第 1 節　通　則

第 6 条 (給与의　種類)　給与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 退役年金

2 . 退職一時金

3 . 傷痍年金

4 . 遺族年金

5 . 遺族一時金

6 . 災害補償金

第 7 条 (権利의　保護)　給与를　받을　権利는　이를　譲渡 , 押留하거나　担保에　供할　수　없다. 다만 ,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金融機関의　担保로　供하거나 , 軍人年金特別会計法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貸付에　따라　国家에　担保로　供하는　경우　및　国税徴収法의　規定에　의하여　滞納処分을　하는　경우에는　例外로　한다. <改正　70.1.1　法 2173)

第 8 条 (時効)　①退役年金 , 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을　받을　権利는　그　給与의　事由가　発生한　날로　부터　5年間　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効로　因하여　消滅된다.

②退職一時金 및 遺族一時金을 받을 權利는 그 給与의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年間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③寄与金返還을 받을 權利는 그 給与의 事由가 発生한 날로부터 2年間이를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된다.

④戰時, 事変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第3項의 權利를 行使할 수 없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2年의 範囲內에서 그 時效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70.1.1 法 2173>

第9条(效力発生期間) 이 法에 依한 給与 또는 審査의 請求에 関한 期間計算에 있어서 그 書類가 時效完成前에 郵送된 것인 때에는 이에 所要된 日数는 그 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10条(給与事由의 確認 및 給与의 認定) 給与를 받을 權利는 그 權利를 가진 者가 当該軍人이 所属하였던 軍의 参謀総長의 確認을 얻어 請求하는 바에 依하여 国防部長官이 認定한다. 다만, 退職一時金 遺族一時金 및 寄与金 返還에 関한 權利는 각군참모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개정 73.10.10 법 2629>

第11条(支給事務의 委託) 国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給与의 支給에 関한 事務를 通信部長官 또는 金融機関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70.1.1 法 2173>

第 12 条(遺族의 優先順位) 給与를 받을 遺族의 順位는 財産相續의 順位에 依한다.

第 13 条(同順位者의 競合) 遺族에게 同順位者가 2人 以上있을 때에는 그 給与는 等分하여 支給하되 支給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0.1.1 法 2173>

第 14 条(給与의 受給者에 対한 特例)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死亡한 境遇에 給与를 받을 遺族이 없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限度의 額을 그 直系卑属 또는 直系尊属에게 支給하고 直系卑属 또는 直系尊属도 없을 때에는 当該軍人이었던 者를 為하여 使用한다.

第 15 条(不正受給者로 부터의 返還) 虛偽 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給与를 받은 者가 있을 때에는 国防部長官은 그 給与와 이에 所要된 費用에 相当하는 金額의 返還을 받을 수 있다.

第 16 条(服務期間의 計算) ①軍人의 服務期間은 그 任用된 날이 属하는 月로부터 退職 또는 死亡한 날이 属하는 月까지의 年月数에 依한다.

②下士官으로 부터 准士官 또는 将校로 任用된

者 및 准士官으로 부터 將校로 任用된 者의 服務期間은 相互通算한다

③服務期間의 計算에 있어서 休職期間은 그 期間의 2分의 1을 減하고 停職期間은 그 期間의 3分의 2를 減한다.

④戰鬪에 從事한 期間은 이를 3배로 計算한다.

⑤軍人이 退職한 後 다시 実役에 服務하게 된 때의 服務期間은 前後의 服務期間을 通算한다. 다만, 寄与金返還또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한 服務期間은 이를 通算하지 아니한다.

⑥服務期間計算에 있어서 殘餘6月以上은 1年으로 한다.

⑦服務期間計算은 政府樹立의 年 以前에 遡及하지 못한다.

第17条(年金支給方法) ①退役年金, 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은 月額으로 하여 이를 받을 權利가 発生한 날이 属하는 月의 翌日부터 그 權利가 消滅하는 날이 属하는 月까지 支給한다. 다만, 退役年金에 있어서는 1年分의 支給額을 最初支給時에 支給한다.

②退役年金, 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의 支給을 停止할 事由가 생긴 때에는 그 事由가 생긴날이 属하는 月의翌月부터 그 事由가 消滅된 날이 属하는 月까지 그 支給을 停止한다.

③退役年金, 傷痍年金 및 遺族年金의 支給額을 改定한 때에는 그 改定한 날이 属하는 月의翌月부터 改定한 金額을 支給한다.

第18条(給与額算出의 特例) ①軍人의 報酬의 改定으로 因하여 退職 또는 死亡当時의 俸給月額과 改定当時의 俸給月額에 差異가 있을 때에는 退職 또는 死亡当時의 号俸에 該当하는 改定된 俸給月額에 依하여 給与額을 定한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国防部長官은 給与를 받을 権利가 있는 者에게 改定된 給与額을 通知한다.

第18条의2(年金支給의 特例) 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外国에 移民하게 된 때에는 本人의 願하는 바에 따라 年金에 갈음하여 出国한 다음달을 基準으로 한 1年 年金額의 4倍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그러나 第17条第1項 但書의 規定

에 의하여 支給받은 者가 退役후 1年이내에 移民하는 경우에는 이미 支給받은 金額中 基準이 되는 달 以後의 該当分은 그 支給받을 金額에서 控除하여야 한다.

〔本条新設 70.1.1 法 2173〕

第19条(給与의 調整) ①同一人에게 退役年金과 傷痍年金을 支給할 事由가 発生한 때에는 本人에게 有利한 給与를 択一하게 하여 支給한다

②傷痍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에게는 退職一時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20条(受給権者에 対한 書類의 提出要求) ①国防部長官은 이 法에 依한 給与의 支給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에 対하여 身分上의 移動, 癈疾状態 其他 給与에 関하여 必要한 書類 또는 物件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給与를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正当한 事由없이 이에 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者에 対한 給与의 支給을 이에 応할때까지 中止할 수 있다.

第 2 節　退 役 年 金

第21条(退役年金) ①軍人이 20年以上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그때 부터 死亡할 때까지 退役年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退役年金의 額은 俸給年額의 100分의 50에 相当하는 金額으로하되 服務期間이 20年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하는 每1年에 対하여 俸給年額의 100分의2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算한다. 다만 그 金額은 俸給年額의 100分의70을 超過하지 못한다.

③退役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機関으로부터 報酬 기타 給与를 支給받고 있는 때에는 그 支給期間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退役年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支給을 停止할 수 있다.

1.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機関.

2.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資本金의 2分의1 이상을 出資한 機関 및 韓国銀行(이하 "政府投資機関"이라 한다)과 国家地方自治団体 및 政府投資機関이 単独 또는 共同으로 出資한 総額이

資本金의 2分의 1 이상인 機関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関.

3.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出捐金·補助金등 財政支援을 하는 機関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関. <改正 74.12.26 法27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年金의 支給停止事由가 발생된 者가 年金인 給与를 過分受領한 것이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過分受領額에 利子를 붙여 国庫에 返還하여야 한다.

<新設 70.1.1 法 2173.74.12.26 法 2728>

第 3 節 退 職 一 時 金

第22条(退職一時金) ①軍人이 5年以上 20年未満 服務하고 退職한 때에는 退職一時金을 本人에게 支給한다.

②前項의 退職一時金의 額은 退職하는 날이 属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服務年数를 乘한 金額에 相当하는 金額으로하되 服務期間이 5年을 超過할 때에는 超過하는 每1年에 대하여 退職한 날이 属하는 月의 俸給月額에 服務年数를 乘한 金額의 100分의 2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算한다.

第 4 節　傷 痍 年 金

第23条(傷痍年金) ①軍人이 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廢疾状態로되어 退職한 때에는 그 때부터 死亡할 때까지 다음 区分에 依하여 傷痍年金을 支給한다.

1. 第1級 俸給年額의 100分의80에 相当하는 金額
2. 第2級 俸給年額의 100分의60에 相当하는 金額
3. 第3級 俸給年額의 100分의40에 相当하는 金額

②前項의 級別에 関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0.1.1 法 2173〉

第24条(傷痍年金의 改定等) ①傷痍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의 廢疾의 程度가 減退되거나 増進한 境遇에 国方部長官은 本人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権으로 그 該当하는 級을 改定할 수 있다.

②傷痍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의 廢疾状態가 前条의 各級에 該当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権利는 消滅된다 이 境遇에는 軍人年金給与審査委員会의 審査를 거쳐야 한다.

③退役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第19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傷痍年金의 支給을 받던中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그 權利가 消滅된 때에는 그 翌月부터 退役年金을 支給한다.

④服務期間이 20年未滿으로서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傷痍年金의 支給을 받지 못하게된 境遇에 이미 支給받은 傷痍年金의 總額이 그 者가 退職할 때에 받을 수 있었던 退職一時金의 額보다 적을 때에는 그 差額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⑤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支給된 差額에 相当하는 金額은 이를 退職一時金으로 본다.

第25条(傷痍年金의 支給停止) 傷痍年金의 支給停止등에 관하여는 第21条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74.12.26 法 2728〕

第 5 節 遺族給与

第26条(遺族年金) ①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年金을 支給한다.

1. 退役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2. 傷痍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死亡한 때

3．公務上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服務中에 死亡한 때

②前項의 遺族年金의 額은 다음과 같다．

1．前項第1号 또는 第2号에 該当하는 境遇에는 軍人이었던 者의 退職当時의 俸給年額의 100分의 30에 相当하는 金額

2．前項3号에 該当하는 境遇에 있어서 그 軍人이 20年未満服務한 者인 때에는 그 死亡当時의 俸給年額의 100分의40에，20年以上 服務한 者인 때에는 俸給年額의 100分의 50에 相当하는 金額

③第17条但書의 規定에 依하여 退役年金을 받은 者가 退役後 1年以内에 死亡한 境遇에 遺族年金을 받게 되는 遺族에 対하여는 그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当時에 過分히 支給된 年金額에 相当하는 그 遺族年金額에 해당하는 期間이 経過한 翌月부터 그 遺族年金을 支給한다．

第27条（遺族年金의 停止） 遺族인 父母 또는 祖父母에 대한 遺族年金은 그 者가 60歳에 達할때까지 그 支給을 停止한다．다만，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癈疾状態에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70．1．1 法 2173〉

第28条(行方不明者에게 支給할 遺族年金) 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1年이상 行方不明인 경우에는 同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의 請求에 의하여 그 行方不明된 期間에 해당하는 당해 年金을 同順位者 또는 次順位者에게 支給할 수 있다.
〔全文改正 74.12.26 法 2728〕

第29条(遺族年金의 受給權喪失) ①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權利를 喪失한다.

1. 死亡한 때
2. 再婚한 때(事実上婚姻関係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死亡한 軍人과의 親族관계가 終了된 때
4.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状態에 있지 아니한 子 또는 孫이 18歲에 達한 때
5.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程度의 廢疾状態로 인하여 遺族年金을 받고있던 者의 廢疾状態가 解消된 때

②遺族年金을 받을 權利가 있는 者가 그 權利를 喪失한 때에, 同順位者가 있을 때에는 그 同順者에게, 同順位者가 없을 때에는 次順位者에게 그 權利가 移転한다.

第30条(遺族一時金) ①軍人이 5年以上 20年未満 服務하고 公務外로 死亡한 때에는 그 遺族에게 遺族一時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遺族一時金의 額은 第22条의 退職一時金에 死亡当時의 俸給月額을 加算한 金額으로 한다.

③軍人이 5年未満 服務하고 公務外로 死亡한 때에는 그 軍人이 服務時 納付한 寄与金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利子를 合한 額에 死亡当時의 俸給月額을 加算한 金額을 그 遺族에게 遺族一時金으로서 支給한다.

④第28条 및 第29条의 規定은 遺族一時金의 支給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6 節 災害補償金

第31条(災害補償金) ①軍人이 罹病, 負傷 또는 死亡하거나 災害를 입었을 때에는 災害補償金을 支給한다.

②前項의 災害補償金의 額과 그 支給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条(国庫負担) 前条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되는 災害補償金은 国庫가 負担한다.

第 7 節　給与의 制限

第33条(給与의 制限) ①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服務中의 事由로 因하여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된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資格停止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이 確定된 때

2. 罷免된 때

②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가 国籍을 喪失한 때에는 給与의 全部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34条(同前) ①이 法의 被適用者로서 故意로 疾病, 負傷 또는 廢疾을 発生하게 하여 給与를 받을 수 있는 権利를 取得한 者에 対하여는 이 法에 依한 一切의 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遺族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軍人, 軍人이었던 者 또는 遺族給与를 받고 있는 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境遇에는 그 者에 対한 遺族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軍人 또는 軍人이었던 者의 死亡前에 그 者의 死亡으로 因하여 遺族給与를 받을 수

있는 同順位者 또는 先順位者를 故意로 死亡하게 한 者에 対하여도 또한 같다.

③이 法에 依한 給与를 받을 수 있는 者가 重大한 過失에 依하거나 正当한 事由없이 療養에 関한 指示에 不応함으로써 疾病, 負傷, 廢疾을 発生하게 하거나 死亡하거나 또는 疲病, 廢疾의 程度를 増進하게 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하거나 또는 故意로 疾病, 廢疾의 程度를 増進하거나 그 回復을 妨害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이 定한 바에 依하여 그에 対한 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5条(同前) 이 法에 依한 給与의 支給에 関하여 身体의 診断을 받아야할 境遇에 正当한 事由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国防部長官은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対한 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6条(同前) ①遺族給与를 받을 権利가 있는 者가 禁錮以上의 刑을 받은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遺族給与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服務中의 事由가 아닌 事由로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中에 있는 者에게 支給될 年金인 給与는 그 刑의 執行期間中 그 支給을 停止한다.

第 3 章 基金과 費用負担

第37条(基金의 造成) 이 法을 運営하기 為한 基金은 軍人이 納付하는 寄与金과 国庫가 負担하는 負担金 및 그 利子로 造成한다.

第38条(寄与金) ①軍人은 每月 俸給月額의 1000分의 55에 該当하는 金額을 寄与金으로 国庫에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寄与金을 納付한 期間이 30年을 초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70.1.1 法 2173, 74.12.26 法 2728>

②第16条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服務期間에 算入되지 아니하는 月의 寄与金의 額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9条(負担金) ①国庫의 負担金은 軍人의 定員에 依하여 每会計年度의 그 俸給豫算의 1000分의 55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한다. <改正 70.1.1 法2173>

②第16条第4項의 規定에 依한 所要의 寄与金과 負担金은 国庫가 이를 負担한다.

③年金業務에 所要되는 費用은 国庫가 負担한다.

第39条의2(費用負担의 特例) 戦争 또는 事変으로 因하여 발생하는 給与에 所要되는 費用은 当該年度의 寄与金·負担金 및 基金運用収益金을 초과하는 金額에 限하여 国庫가 負担한다.

〔本条新設 70.1.1 法2173〕

第40条(特別会計) 이 法을 運営하기 為하여 特別会計를 設置한다.

다만, 第31条의 運営에 関하여는 따로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 4 章 補 則

第41条(他法令에 依한 給与와의 調整) 他法令에 依하여 国庫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負担으로 이 法에 依한 給与와 同類의 給与를 받는 者에게는 그 給与金에 相当하는 額에 対하여는 이 法에 依한 給与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42条〈削除 74.12.26 法 2728〉

第43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本法은　1963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②他法令中本法에　抵触되는　規定은　그　抵触되는　範囲内에서　그　効力을　喪失한다

③本法　施行当時　従前의　法에　依한　退職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退役年金을　받을　権利가　있는　者로　보며　그　給与額은　本法에　依하여　調整한다

④本法　施行前에　退職한　者로서　本法　施行当時給与(退職年金을　除外한다)를　받을　権利가　確認되지　아니한　者에　対하여는　本法의　規定에　不拘하고　従前의　例에　依한다

⑤本法　施行当時在職中인　軍人으로서　本法　施行以前에　戦闘에　従事한　者는　그　戦闘에　従事한　期間에　相当하는　期間의　2倍를　그　全服務期間에　加算한다　但　그　期間과　戦闘에　従事한　者의　範囲에　関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70.1.1法2173>

①(施行日) 이 法은 1970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遡及寄与金에 관한 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服務中인 軍人으로서 1948年8月15日부터 1959年12月31日까지의 사이에 任用된 者는 그 任用된 날로부터 1959年12月31日까지의 期間에 해당하는 寄与金으로 1970年以後 毎月 俸給 月額의 1,000分의 35에 상당하는 金額을 退職 또는 死亡할 때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③(過分支給額에 관한 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年金受給権者로서 이 法 施行이전에 年金인 給与를 過分히 支給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이내에 그 過分支給額을 国庫에 返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第21条第4項의 規定에 의한 利子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　　칙 <73.10.10법26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해병대에 소속하였던 자에 대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인정은 해군참모총장이 행한다.

附 則 <74.12.26 法 2728>

①(施行日) 이 法은 1975年3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年金受給権者에 대한 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年金受給権者에 대하여는 第3条第3項, 第21条第3項 및 第4項과 第25条의 規定은 이 法 施行日 이후에 支給하여야 할 年金에 限하여 이를 適用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3. 12. 20 법률제 2650 호〕

개정 1974.12.26 법률제 2737 호
1975.12.31 법률제 2832 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교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75.12.31 법 2832〉

1. "교원"이라 함은 제 3 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에서 학생 또는 원아를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명예교수와 시간강사 또는 조건부로 임명된 자를 제외한다)로서 사립학교법 제 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거나 감독청에 보고된 자를 말한다.
2. "유족"이라 함은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부모·손 및 조부모를 말한다.

3. "퇴직"이라 함은 면직·사직 기타 사망이외의 모든 해직의 경우를 말하되, 교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익일에 다시 교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봉급월액"이라 함은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받고 있는 봉급액에 불구하고,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봉급월액을 말한다.

5. "학교경영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

6. "부담금"이라 함은 국가부담금과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개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국가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9. "법인부담금"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제 1 항 제 2 호의 유족중 자는 18 세 미만인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18세 이상인 자에 한한다. <개정 75.12.31 법2832 >

③제 1 항 제 2 호의 유족중 손은 부가 없는 경우 또는 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신설 75.12.31 법 2832 >

1. 18 세 미만인 자
2. 18 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

④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의 태아에 대하여는 민법 제 988 조를 준용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의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 3 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2. 제 1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중에서 특히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제 2 장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제 4 조 (설립)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의 징수

2. 제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기타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관리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관리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사무소) ①관리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관리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제7조(정관) ①관리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직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관리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등기) ①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관리공단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해산) 관리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임원) ①관리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상무이사 각 1인과 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중에는 교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과 감사는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상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관리공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②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 이사장·상무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관리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한다.

제 13 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제 14 조 (이사회) ①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상무이사와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5조(임원의 신분) 관리공단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관리공단의 임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문교부장관의, 직원은 관리공단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 17조(보수의 제한) 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비의 보상만을 할 수 있다.

제 18조(직원의 임면) 관리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19조(보고징수 및 장부등의 검사) ①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시 또는 출석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관리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할 때에는 이에 응할 때까지 그에 대한 요양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20 조 (업무의 위탁) ①관리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및 기타의 세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1 조 (자산의 운용방법) 관리공단의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에의 예탁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교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사업

③제1항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년도) 관리공단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23조(계리의 원칙) 계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정규부기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 ①이사장은 매회계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회계년도개시 전까지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은 예산총칙·추정대차대조표·추정손익계산서를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이사장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말한다)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6 조(책임준비금의 계상) 관리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 27 조(이익금의 처리) ①관리공단의 매회계년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 21 조 제 1 항 제 4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28 조(감독) 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 29 조(임원의 해임) 문교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제 13 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집행이 곤란하게 된 때

제 30 조(보고와 검사) 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리공단에 대하여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공단의 업무상황 또는 장부·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3 장 재 직 기 간

제 31 조 (지직기간의 계산) ①이 법에 의한 급여의 계산에 있어서의 교원의 재직기간은 교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고, 정직기간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재직기간의 합산) ①퇴직한 교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종전의 재직기간을 제 31 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②퇴직한 교육공무원이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그의 의사에 따라 퇴직 당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당해 교육공무원

의 재직기간을 제31조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 당시에 수령한 퇴직급여액(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 또는 반환받은 개인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관리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교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퇴직연금액은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다.

④관리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 및 이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하던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반환금의 납부액에 상당하는 기간만을 재직기간에 합산한다.〔전문개정 75.12.31 법 2832〕

제 4 장 급 여

제 33 조 (급여) 교원의 건강진단 • 질병 • 부상 • 분만 및 장제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원의 퇴직 •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

제 34 조 (급여의 결정) ①급여는 그 권리를 가질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공단이 결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급여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5 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①급여액산정의 기초가 될 봉급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 한다. 이하 같다) 이 속하는 달의 봉급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

②승진·강임이나 전직 또는 재임용으로 인하여 봉급월액이 증감된 후 1년이내에 장기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증감되기 전달의 봉급월액과 급여사유가 발생한 달의 봉급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 다만, 봉급월액이 감액된 자에 대하여는 관리공단은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 경영기관의 장이 동의할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감액전의 호봉 또는 호급에 상당하는 봉급월액을 급여액산정의 기초로 한다. <개정 75.12.31 법2832>

제36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한다.

제37조(동순위자의 경합) 유족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급여는 등분하여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의 액을 그 직계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에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관리공단은 관계학교 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39 조 (급여의 환수) 관리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가 있은 때에는 그 급여액 (제 1 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 을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기타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

제 40 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공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41 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동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에 관리공단은 공제한 금액을 학교경영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당해 급여사유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액의 범위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종류와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13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총무처장관"은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로 하며,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2항 중

"제 3 조의 2 "와 동법 제 30 조 제 4 항중 "제 3 조 제 2 항"은 이 법 "제 32 조"로, 동법 제 48 조 중 "제 52 조제 2 항"은 이 법 "제 45 조제 2 항"으로 하고, 동법 제 31 조 제 1 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사립학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75.12.31 법 2832 〕

제 5 장 비 용 부 담

제 43 조 (비용의 부담) 급여 기타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부담금·국가부담금·법인부담금과 그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44 조 (개인부담금) ①개인부담금은 교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이를 부담한다.

②교원이 퇴직한 달에 다시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재임용 후 다시 그 달의 개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재임용 후의 그 달의 개인부담금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기간이 30년을 초과한 자는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개인부담금의 액은 봉급월액의 1,000분의 55로 한다. 〔전문개정 75.12.31 법 2832〕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①개인부담금은 당해 학교의 장이 매월 봉급에서 징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원이 봉급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인하여 당해 월의 봉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부담금을 봉급지급일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학교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교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의 봉급을 지급할 때 징수하여야 한다.

제46조(국가부담금) ①국가부담금은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20으로 한다.

②국가는 제 1 항의 부담금을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7 조 (법인부담금) ①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②제 1 항의 법인부담금의 액은 당해 학교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의 55분의 35로 한다.

③학교경영기관은 제 2 항에 규정된 법인부담금을 매년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인부담금의 소요재원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 48 조 (법인부담금의 납부) 법인부담금은 학교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49 조 (전출시의 부담금) 교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의 장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50 조 (과오납의 정산)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의 납부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제 51 조 (연체금) 관리공단은 개인부담금 또는 법인 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담금에 대한 법정이자 해당액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 52 조 (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부담금 또는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관리공단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부담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 53 조 (심사의 청구) ①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의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 (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 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심사의 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60 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

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 1 항에 규정된 급여심사위원회는 관리공단에 두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제 54 조 (시효) ①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 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②과오납된 개인부담금의 환부를 받을 권리는 과오납이 있었던 날로 부터 2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 55 조 (효력발생기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 또는 심사의 청구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 그 서류가 우송에 의한 때에는 이에 소요된 일수는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6 조 (단수처리) 부담금의 징수와 급여의 지급에

있어 단수처리는 국고금단수계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75.12.31 법 2832〕

제 57 조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①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급여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 기타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②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기타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 58 조 (학교의 장의 책임) 학교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인부담금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관리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9 조 (전시 · 사변의 특례) 전시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해 연도의 개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 법인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리공단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급여 시기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제 60 조 (국고보조) 국가는 관리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 61 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장 벌 칙

제 62 조 (벌칙) ①관리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제 30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 19 조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197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 3 호에 의해 1974 년 12 월 31 일까지 효력정지)

제 2 조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74.12.26 법 2737〕

제 3 조 (재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1970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학교 (학교경영기간이 동일한 다른 학교를 포함한다) 에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한하여 1975년 1월부터 매월 당해 월분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납부하는 외에 그와 동액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따로 소급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소급 납부한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한다. 다만, 소급부담금을 납부하던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통산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 그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74.12.26 법 2737〕

제 4 조 (설립위원) ①문교부장관은 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5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감사의 임기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감사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으로 한다.

부 칙 <74.12.26 법 2737>

이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2.31 법 283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급여사유발생의 유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급여사유가 발생한 유족에 대하여는 이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1974. 1. 4 대통령령제7005호〕

개정 1974.12.26 대통령령 제7437호
1975. 6.14 대통령령 제7649호
1976. 6.25 대통령령 제817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유족의 폐질등급 및 입증방법) ①법 제 2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폐질상태는 제 5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폐질등급 제 6 급 이상으로 한다.

②법 제 2 조 제 1 항 제 2 호의 유족인 사실의 증명은 그 유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던 자의 경우는 그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호적등본과 읍·면·동(서울특별시·부산시와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 학교의 장의 확인서에 의한다.

③태아와 제 1 항의 폐질상태에 있던 사실의 증명은

제 38 조의 요양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한다.

〔전문개정 76. 6.25 대령 8174〕

제 3 조 (표준봉급월액) 법 제 2 조제 1 항제 4 호에 규정된 표준봉급월액은 당해 교원의 직위와 자격등에 따라 교육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 또는 호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74.12.26 대령 7437〕

제 2 장 관리공단

제 4 조 (설립등기)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방법

제 5 조 (지부의 설치등기) ①관리공단이 법 제 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새로 설치된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

②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주일안에 그 지부의 명칭 및 소재지만을 등기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갈음한다.

제6조(이전등기) ①관리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구 소재지에 있어서는 이전의 뜻을, 신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제4조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안에 이전의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 7 조 (변경등기) 관리공단은 제 4 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안에, 지부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안에 각각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8 조 (등기신청인) 관리공단과 지부의 등기에 있어서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다만, 관리공단이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공단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의 등본

2. 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 6 조 및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등기기간의 기산) 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중 문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관리공단에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

을 계산한다.

제 11 조 (관할등기소) ①법과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부의 소재지의 등기소의 관할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준용규정) 관리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 192 조 내지 제 2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 200 조제 2 항제 1 호·제 203 조 및 제 208 조중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한다.

제 13 조 (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 16 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제 1 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 14 조 (업무위탁의 범위 및 협약) ①법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한다.

1. 부담금의 현금수납에 관한 업무

2. 제급여의 현금지급에 관한 업무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공단이 체신관서의 장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 15 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①법 제 21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은행법 제 3 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 21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으로 한다.

③법 제 21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 채

2. 산업금융채권

3.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최근 5 년간의 연간배당실적이 1 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주식

제 16 조 (수익사업) 법 제 21 조제 1 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이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

2. 판매업

3. 관광업

제 3 장 재직기간의 합산

제 17 조 (재직기간의 감축사유의 통보) ①학교경영기관이 법 제 31 조제 2 항의 재직기간의 감축사유인 휴직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 (재직기간의 합산절차) ①법 제 32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원으로 다시 임용된 날로부터 3 월이내에 합산될 재직기간, 법 제 3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할 급여액 및 이자 (이하 "반납금"이라 한다) 의 납부방법 등을 기재한

재직기간 합산승인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8174>

②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7 일안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합산기간·반납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반납금의 납부방법) ①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의 반납금의 납부는 일시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의 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분할반납의 경우에는 합산승인 결정서가 송달된 월의 익월부터 매월 봉급수령시에 학교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를 하는 자가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의 장은 봉급지급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반납금의 분할납부는 월별로 하되 그 분할납부의 회수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회수의 범위 안에서 합산받을 자의 선택에 의한다.

1. 합산기간이 5년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2회 내지 6회

2. 합산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24회

3. 합산기간이 10년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36회

③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을 받은 자가 일시반납금 또는 분할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때 관리공단은 그 합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기간은 이를 재직기간의 합산기간으로 본다. <신설 76. 6.25 대령 8174>

제20조(반납금액의 산정) ①반납금을 일시 반납할 경우에 이미 지급된 급여액에 가산징수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그 급여의 지급증서가 발송된 월의 익월부터 재직기간의 합산승인의 결정이 있은 월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12개월마다 그 이자를 당해 급여액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의 반납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다시 가산할 이자의 계산기간은 합산승인의 결정이 있은 월의 익월부터 분할납부가 끝나는 월까지로 하되

그 분할납부할 1회 금액은 분할납부의 회수에 따라 원리금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자율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승인 결정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봉급수령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2배로 한다.

제 4 장 급 여

제 1 절 통 칙

제21조(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관리공단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공단의 상무이사가 되고, 위원은 문교부의 3급이상 공무원 2인과 교원중에서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급여심의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다음 각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75. 6.14 대령 7649>

1.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승인

2. 제 55조 또는 제 57조의 규정에 의한 폐질 등급의 결정 또는 조정

3. 제 62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결정

제 22조 (급여액산정의 기초) ①법 제 3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인 급여의 산정기초로 되었던 호급 또는 호봉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종전의 호급 또는 호봉에 상당하는 지급기일에 시행되는 호급 또는 호봉에 따라 관리공단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 3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산정기초가 되는 호급 또는 호봉에 상당하는 급여의 지급기일에 시행되는 각 호급 또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 23조 (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지급방법) ①유족중 유족급여를 받을 동 순위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그 동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관리공단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분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임은 대표자선정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원연금액의 2년분
2. 단기급여와 재직기간이 5년미만인 퇴직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1

②제1항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친등의 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

로 한다.

③유족이 아닌 직계비속도 없는 때에는 관리공단은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의 소속학교의 장에게 지급하여 교원이었던 자의 분묘·제기·기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급여의 환수)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급여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과 이에 가산 징수할 이자액 및 비용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급여액: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지급당시 공제된 제금액을 포함한다)
2. 이자액: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환수결정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비용: 급여의 환수에 관한 조사여비 기타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급여를 받았던 자 또는 그 소속학교의 장이 법 제3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신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신고 또는 통보 기타의 방법으로 급여의 환수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고 환수금 반납통보서를 급여를 받았던 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환수금반납통보서를 송부받은 급여를 받았던 자는 30일 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공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한한다.

제27조(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공제액청구)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경영기관이 관리공단이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이 교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급여사유, 지급받은 교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을 기재하여 관리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지체없이 학교경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①교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폐질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직무상 요양비·직무상요양일시금·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순직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와 그 자의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소속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그 가해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지체없이 그 조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단기급여

제1관 직무상요양비 및 요양일시금

제29조(직무상요양비의 액) ①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법 제42조로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이하 "준용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비는 제41조의 의료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의료비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75.6.14 대령 7649>

1. 직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으로서 평소의 질병 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가 사고발생의 주된 요인이 아닌 경우

2. 직무수행중에 라디움 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의 취급으로 인한 질병

3. 직무수행중의 화상 또는 동상

4. 직무수행장소의 심한 분진의 발생으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폐결핵

5. 직무수행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궤병

6. 유해가스 또는 유해독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7. 기타 건강을 해할 우려가 큰 특수한 직무수행만으로 발생된 질병

②교원이 평소의 질병 발생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상태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평소의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는 제41조의 의료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의료비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75.6.14대령 7649>

1.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 아래에서의 계속적인 직무의 수행

2.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수행

3.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의료비 부분은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부조금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제 30 조 (직무상 요양승인) ①교원이 요양기관에서 제 29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지체없이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에 진단서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를 첨부하여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 일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교원 건강 카-드

2. 상병경위조사서

③제 2 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직무상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을 요양기관과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31 조(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①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개시한 자(제 29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준용법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3 월을 초과하는 요양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3 월이 만료되기 전에 당해 교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연장승인신청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중의 요양비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제 1 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7 일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제 30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직무상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의 지급) ①교원이 제30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을 마친 때에는 당해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직무상요양비청구서에 일일 의료비계산서를 첨부하고 환자와 그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은 직무상요양을 개시한 후 요양기간이 3월을 경과할 때마다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②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을 하는 자가 1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청구서에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③제2항의 직무상요양일시금의 액은 요양기간이 만료되기전 최근 3월간의 평균 일일 의료비에 소요요양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제 1 항 및 제 2 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관리공단이 직무상 요양비 또는 직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원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

제 33 조 (개호비 및 이송비의 지급) ①준용법 제 14 조제 1 항제 5 호 또는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개호비 또는 이송비를 그 개호자 또는 이송자가 직접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개호비 또는 이송비 청구서에 당해 요양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개호비는 직무상 요양을 받은 자가 신체적 활동이 극히 곤란하여 식사와 배설에 있어 계속 14 일이상 의료기관 종사원 이외의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76.6.25 대령 8174>

1.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경우는 500 원

2. 퇴원후의 경우는 300 원

③제 1 항의 이송비는 직무상 요양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거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까지 옮기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리공단이 결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34 조 (보철구의 교부) ①준용법 제 14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철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보조기

2 . 의수족

3 . 의 안

4 . 의 치

5 . 보청기

②관리공단은 요양기관에서 제작할 수 없는 보철구를 교부하기 위하여 보철구를 제작하는 자와 그 교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직접 요양을 받는 자에게 제작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보철구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철구 교부신청서에 당해 요양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공단은 그 교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및 요양기관 또는 보철구를 제작하는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제작하는 자가 보철구를 교부한 때에는 보철구대금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 관 요양부조금

제 35조 (가족의 범위) ①준용법 제 15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원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교원의 수입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 (이하 "가족"이라 한다) 를 말한다. 다만, 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은 그 교원의 재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되 60 세 미만의 남자인 배우자는 제외한다).

2. 60 세 이상의 부·조부, 55 세 이상의 모·조모

3. 20 세 미만의 자

② 60 세 미만의 남자인 배우자·부·조부와 55 세 미만의 모·조모 및 20 세 이상의 자로서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제 6 급 이상의 폐질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족으로 본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인 사실의 증명에 관하여는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6 조 (질병·부상의 범위와 부조금액) ①교원 및

그의 가족이 요양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와 부조금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동시에 2종 이상의 질병 또는 부상을 요양할 경우에는 다액인 부조금액에 다른 부조금액의 2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부조금 총액으로 한다. <개정 74.12.26 대령 7437>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부조금의 교원 세대당 연간 총액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교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1.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
2. 재직기간이 10년이상 20년미만인 경우에는 7만원
3.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인 경우에는 8만원

제 37 조 (요양부조의 승인 및 부조금의 지급절차)

①교원 또는 그 가족이 요양기관에서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직무외 또는 가족요양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서 미리 그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1. 진단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2. 가족이 요양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그 결정서의 부본을 요양기관 및 관리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원 또는 그 가족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마친 때에는 당해 요양기관은 지체없이 요양부조금청구서에 일일의료비 계산서를 첨부하고, 환자와 그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6.25 대령 8174>

④제3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관리공단이 요양부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원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제 3 관 요양기관 및 의료비산정기준

제 38 조 (요양기관의 범위) ①교원이 준용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요양을 받고자 하거나 또는 교원 및 그 가족이 준용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 또는 가족요양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다만, 제 2 호·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의료기관은 관리공단과 요양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또는 대한결핵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기관
3.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료기관
4. 시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소재지의 시는 제외한다)·군에 소재하는 사설의료기관

②관리공단은 제 1 항제 2 호·제 3 호 또는 제 4 호의 의료기관과 요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약이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요양기관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 또는 그 가족은 준용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8조제1항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받을 수 있다. <개정 74.12.26 대령 7437>

1. 의식불명이 되어 타인의 조력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을 경우
2. 위급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교통두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받는 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그 요양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승인신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 요양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외 요양신청을 받은 소속학교의 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학교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 38 조제 1 항의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마친 때에는 그 요양을 받은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요양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직무상요양비청구서 또는 요양부조금청구서에 일일의료비계산서를 첨부하여 환자와 그 담당의사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6.25 대령 8174>

제 40 조 (요양기관의 변경) ①관리공단은 요양승인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양기관을 변경시킬 수 있다.
②요양승인 자가 요양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기관 변경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이유로 미리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공단이 요양기관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학교의 장 및 관계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1 조 (의료비의 산정기준) ①교원이 준용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을 받거나 교원 또는 그의 가족이 준용법 제 1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직무외 또는 가족요양을 받는 경우에 그 요양에 대한 의료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별표2에 규정되지 아니한 의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국·공립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의료기관의 수가규정에 의한 금액, 그 이외의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시설정도가 유사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74.12.26 대령 7437>

②국·공립의료기관은 수가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42 조 (요양기관에의 약제공급) ①관리공단은 요양 또는 건강진단을 함에 있어서 다량의 약제 기타 재료가 소요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용법 제 19 조 제 3 항에 의하여 그 소요량을 미리 구입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②요양기관이 제 1 항의 약제 기타 재료를 준용법 제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양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환가금액과 기타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 제 36 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부조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 기타 재료를 공급

받는 요양기관은 관리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사용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관 분만비 및 건강진단

제 43 조 (분만비) ①준용법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분만비청구서에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 소속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분만비는 그 교원의 봉급월액의 3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분만비는 1 만원으로 한다.

제 44 조 (건강진단) ①관리공단은 교원의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대한 요양 및 이에 관련되는 급여사유에 대한 심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준용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2 년에 1 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제 1 항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담당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학교의 장 및 당해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제 90 조의 교원건강카드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그 의료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이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수진기간중 해당 의료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관리공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건강진단을 한 의료기관이 준용법 제 21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건강진단비청구서에 계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5 관 휴업급여 및 재해급여

제 45 조 (상병수당 및 분만수당) ①준용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수당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병수당청구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준용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수당의 지급

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분만수당청구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 1 항 및 제 2 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7 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46 조 (장제비) 준용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장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장제비청구서에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첨부하여 교원이 소속하였던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 45 조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7 조 (재해부조금) ①준용법 제 25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부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해의 범위는 화재 또는 홍수·호우·폭설·폭풍·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교원소유의 주택 (아파트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 또는 그 가족의 대부분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

2. 건평이 15 평 이하인 주택

②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이 완전 소실되거나 완전 유실된 경우 봉급월액의 3배

2. 주택건물의 2분의 1 이상의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봉급월액의 2배

3. 주택건물의 3분의 1 이상이 소실 또는 파괴된 경우 봉급월액에 상당하는 금액

③재해부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해부조금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피해 상황 확인서(화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 발행)

2. 주민등록표 등본

3. 가옥대장등본

제 3 절 장 기 급 여

제 1 관 총 칙

제 48 조(연금증서의 교부) ①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하 "연금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연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연금수급권자가 제1항의 연금증서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연금증서를 훼손한 경우에는 훼손된 연금증서를 재교부신청시에 첨부·반환하여야 한다.

제 49 조 (연금수급권자의 주소·성명의 변경신고) 연금수급권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주소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초본과 연금증서를, 성명을 변경한 때에는 성명 변경신고서에 호적초본과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0 조 (연금지급일과 연금청산지급) ①준용법 제 27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②외국에 이민하는 연금수급권자가 준용법 제 27 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인 급여를 일시에 청산받고자 할 때에는 연금청산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금증서
2. 출국증명서 또는 출국예정증명서 기타 이민을 증명하는 서류

제 51 조 (퇴직연금 및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해당 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복무하는 경우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별정직공무원중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②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별표 5 내지 별표 7에 게기된 기관에 재직하고 봉급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중 이사급 이상의 임원(이사가 아닌 기관의 장과 감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연금의 전액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고 그 임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다.

③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임용 또는 재퇴직신고서에 소속연금취급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1항 각호의 교원, 공무원, 군인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임하거나 퇴직 또는 퇴역한 때

2. 제 2 항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취임하거나 퇴직한 때

3. 제 2 항의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거나 임원이 직원으로 강등하거나 또는 소속기관이 변경된 때

〔전문개정 75. 6.14 대령 7649〕

제 52 조 (연금수급권자의 신상조사) ①관리공단은 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그 수급권자의 상실사유·급여의 제한 또는 중지사유 기타 연금인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 회이상 신상조사를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의 장에게 각각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②제 1 항의 조사의뢰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제 2 관 퇴직급여

제 53 조 (퇴직급여청구) ①준용법 제 30 조 또는 동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퇴직급여청구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재직기간의 감축사유·급여의 제한사유·표준봉급월액 및 개인부담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교원연금카드 및 교원건강카드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74.12.26 대령 7437〉

제 54 조(퇴직일시금의 이자액) ①준용법 제 32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할 이자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월의 개인부담금액에 재직월수를 곱한 금액의 1 할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 31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이 감축된 자로서 준용법 제 3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일시금의 액이 납부한 개인부담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개인부담금액에 1 할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76. 6.25 대령 8174〕

제 3 관 장 해 급 여

제 55 조 (폐질등급 및 장해급여액) ①준용법 제 3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의 폐질등급은 별표 3 과 같이 한다. 다만, 제 2 급 이하 제 10 급 이상의 폐질이 2 개 부위 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폐질 2 개에 대하여 별표 3 에 의한 각각의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그 등급에 따라 별표 4 에 의하여 종합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개정 74.12.26 대령 7437 >

②제 29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이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은 준용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 분의 1 로 한다.

제 56 조 (장해급여의 청구) ①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청구시에 장해급여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해급여의 사유가 퇴직급여를 청구한 후에 발생한 때에는 장해급여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76. 6.25 대령 8174 >

②제 1 항의 청구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교원연금카드

2. 교원건강카드

3. 폐질경위조사서

제 57 조 (폐질등급의 조정) 준용법 제 35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연금의 수급권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 년내에 폐질정도가 더 악화되거나 감퇴된 때에는 폐질등급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장해연금증서

제 4 관 유 족 연 금

제 58 조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의 청구) ①준용법 제 39 조 또는 동법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청구서류에 연금증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망진단서

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교원이었던 자의 교원연금카드 및 교원건강카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제 59 조 (유족연금수급권의 이전신청) ①유족연금수급권자가 1 년이상 행방불명되거나 또는 그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에 준용법 제 42 조 또는 동법 제 4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의 유족이 유족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이전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동 순위의 유족중 그 대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1년이상 행방불명이 된 사실의 증명 또는 수급권이 상실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족연금증서(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그 신청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족연금증서에 연금수급권의 이전사실을 기재하거나 새로이 연금증서를 발행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0조(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 또는 행방불명사실 증명) ①준용법 제4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에 대한 사실증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망·재혼·친족관계의 종료사실: 해당사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2. 폐질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 또는 손이 18세에 도달한 사실: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3. 폐질상태에 있던 18세 이상의 자 또는 손이 그 폐질상태가 해소된 사실: 요양기관에서 발행하는 진단서

②제 1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상실사유를 증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와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③준용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수급권자가 1 년이상 행방불명상태에 있는 사실의 증명은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에 의한다.
〈개정 76. 6.25 대령 8174〉

제 61 조 (순직부조금의 액) ①준용법 제 4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부조금의 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개정 75. 6.14 대령 7649〉

1. 제 29 조제 1 항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봉급월액의 36 배

2. 제 29 조제 2 항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봉급월액의 12 배. 다만, 재직기간이 13 년 이상인 경우에는 봉급월액의 36 배의 범위안에서 봉급월액에 재직년수 (1 년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장해보상금을 받았거나 장해연금을 받던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순직부조금의 액에서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액을 공제하고 이를 지급한다.

제 62 조 (순직자의 신고) ①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제 29 조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 (이하 "순직"이라 한다) 한 때에는 그 유족은 지체없이 순직신고서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사망경위를 조사한 후 순직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교원건강카드

2. 사망경위조사서

③제 2 항의 신고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순직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유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63 조 (순직부조금의 청구) ①제 62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확인 결정서를 받은 유족은 순직부조금청구서에 제 58 조제 1 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원이었던 자의 소속 학교의 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 58 조제 1 항의 유족 급여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확인한 후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4 절 급여의 제한

제 64 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 46 조제 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이후에 속하는 그 자에 대한 직무상 요양비·직무상 요양일시금·직무상 상병수당·장해연금·장해보상금·순직부조금은 해당 급여액의 2 분의 1 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 65 조 (건강진단 불응시의 급여의 감액)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44 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이나 관리공단 또는 학교의 장이 급여의 지급에 관련하여 지시하는 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준용법 제 4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에 관련된 직무상 요양비·직무상 요양일시금·직무상 상병수당·장해연금·장해보상금

순직부조금은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6조(형벌등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 ①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준용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급여의 액은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된 날이 속하는 월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재직기간이 5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류중에 있는 때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지급은 그에 대한 불기소가 확정되거나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급여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③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가 파면 기타 면직처분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 때에는 그 재심사건을 접수한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퇴직급여의 지급은 그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중지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형벌 등에 의한 유족연금의 감액)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준용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형을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그 자에 대한 유족연금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68조(미납금의 공제지급) 교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까지 다음 각호의 미납금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액에서 이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미납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의 원리금
2.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미납금의 원리금

3.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 대출되는 대여금의 원리금

4. 기타 관리공단에 대한 채무

〔전문개정 76. 6.25 대령8174〕

제5장 비용부담

제69조(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 등의 납입) ①학교의 장이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반납금 및 환수금 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관리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체결된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납부서에 납입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에 납입내역서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은 제2항의 납입내역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 6.25 대령8174〕

제 70 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관리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익년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1 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2월까지 문교부장관이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 영수증을 문교부장관에게 교부하고, 지체없이 관리공단에게 그 입금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가부담금의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다음 기의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정산한다.

제 72 조 (개인부담금의 자진납부) ①봉급의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학교의 장이 봉급지급시에 당해 교원의 개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교원은 법 제 4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3일내에 그 개인부담금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교원이 병역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으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해당 교원이 복직된 후 최초로 봉급이 지급되는 월의 개인부담금액에 미납월수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되, 이를 10등분하여 최초의 봉급지급일로부터 매월 봉급 지급시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을 납기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해당 교원의 봉급지급시에 징수하거나 또는 해당 교원이 납기후에 납부할 때에 가산할 이자액은 납기초과일수에 365분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3조(강제징수) ①관리공단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과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부터 1월이상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독촉장에는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74 조 (봉급월액이 변동된 경우의 개인부담금산정) 학교의 장은 교원의 봉급월액이 변동되어 같은 달에 2이상의 표준봉급월액이 있게된 때에는 당해월의 봉급지급일 현재의 표준봉급월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월의 개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 75 조 (퇴직 등 사유에 대한 납입내역서에의 기재등) ①학교의 장은 교원이 퇴직·사망·전출 (교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익월에 다시 교원으로 임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개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6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는 납입내역서에 연금번호·성명 및 그 사유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교원이 전출한 때에 새로 전출받은 학교의 장은 전출전의 학교의 장에게 당해 교원의 연금카드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사의 청구

제 76 조 (급여심사위원회의 조직) ①법 제 53 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연금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위원은 문교부의 3급이상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7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8조(위원장) ①급여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다.

②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9조(의사) ①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급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80 조 (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 등) ①급여심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관리공단은 급여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리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1 조 (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 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의의가 있는 자가 법 제 5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 53 조제 2 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연금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학교의 장을 거쳐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청구서를 받은 관리공단은 10 일이내에 변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급여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 82 조 (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기각) ①급여심사

위원회는 제81조제1항의 심사청구서 또는 동조 제2항의 변명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처분을 행한 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제1항의 보완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심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원·학교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4조(보고 또는 의견의 진술) 급여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를 청구한 자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입하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86 조 (결정의 효력) 급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청구인에게 결정서등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87 조 (관계인의 실비보상) 관리공단은 제 8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실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 88 조 (시효기산일) ①법 제 53 조제 1 항과 이 영 제 8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심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 54 조제 1 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②준용법 제 49 조제 3 항과 이 영 제 66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법 제 54조 제 1 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 89 조 (교원 연금카드의 비치 • 관리) ①관리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연금번호를 부여한 교원 연금카드 정본 및 부본을 작성하여 그 정본을 직접 비치관리하고, 그 부본은 소속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신규임용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리공단에 대하여 교원 연금카드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교원연금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감축사유

2 . 제 66 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의 감액사유 또는 중지사유

3 . 제 67 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의 감액사유

4 . 제 68 조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 미급자의 급여 감액사유

제 90 조 (교원 건강카드의 비치 • 관리) ①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교원 건강카드를

작성하여 제89조의 교원연금카드부본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하여 그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교원건강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의 승인결정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상 요양기간의 연장결정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두외 요양 또는 가족요양의 승인 결정과 요양부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변경결정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분만비의 청구
6.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순직 확인 결정
7. 제64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감액사유

제91조(인영의 등록 및 연금문서수발부 등의 비치)

①학교 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을 관리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6.6.25대령 8174>

②관리공단은 연금인 급여의 지급사실을 기록하기

위하여 수급권자별로 연금급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③관리공단과 학교의 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 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접수부와 연금문서발송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연금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사립학교 교원연금"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의 장에 의뢰하여 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3조(서식)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관리공단이 정하여 이를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교원이 법 부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통산받고자 하는 재직기간을 명시한 재직기간통산신청서를 이 영 시행 후 3 월이내에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직기간에 통산받고자 하는 근무기간중에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될 때에는 그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과 학교경영기관이 동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의 동의서와 당해 교원이 소속학교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7 일이내에 관리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제 2 항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관리공단은 통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재직기간의 통산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74.12.26 대령 7437>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 6.14 대령 7649>

①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이 영 시행후에 요양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급여는 이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1975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통산 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부 칙 <76. 6.25 대령 817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직기간 통산신청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통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 제7005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재직기간 통산신청서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76.6.25 대령 8174〉

질병부상의 범위 및 부조금액

구 분	질병부상의 범위	부조금액 (단위 원)
법정 전염병	폐결핵 중등증 및 중증	50,000
	폐결핵 경증	40,000
	공수병·유행성 뇌염	20,000
	급성전각회 백수염·마진·유행성이하선염	10,000
중 상	입원 수술을 요하는 골절	30,000
	2도이상의 화상	20,000
수술 질병	뇌수술·간수술·위수술·척주수술·심장수술·폐수술	80,000
	복막염수술·취장수술·신장수술·담낭염수술·갑상선수술·화농성중이염수술 하지괴저수술	60,000
	충수염수술·방광수술·자궁외임신수술 협소골반수술·외상성기흉수술·각막박리증수술·배내장수술·관절염수술·골수염수술·식도이물제거수술·기관지수술·치핵수술·기타 개복수술	50,000
기 타	뇌막염·뇌출혈·매혈증·늑막염·일산화탄소중독	30,000
	입원비를 제한 총 요양비가 40만원 이상 소요된 질병	80,000

〔별표 2〕 〈개정 76.6.25 대령 8174〉

의 료 비 기 준

1. 입원료 및 식대

구 분	입원료	식 대	합 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서 지정된 병원	1,200 원	600 원	1,800 원 이 하
기타 병원 또는 의원	750 원	450 원	1,200 원 이 하

2. 마취료

구 분	요 금
전 신 마 취	8,000원
	(추가시간당 4,000원) 이 하
척 추 마 취	6,000원이 하
정 맥 마 취	6,000원이 하
신 경 차 단 마 취	6,000원이 하
국 소 마 취	3,000원이 하

3. 촬영료 (방사선)

구 분	요 금
단 순 흉 부 검 사	2,000 원 이 하
단 순 사 지 촬 영	2,000 원 이 하
단 순 두 부 검 사	3,500 원 이 하

구 분	요 금
단 순 척 추 검 사	4,000 원이하
척 추 강 조 영 검 사	10,000 원이하
단 순 복 부 검 사	2,000 원이하
복 부 조 영 검 사	10,000 원이하
심 장 연 쇄 검 사	8,000 원이하
치 과 촬 영	500 원이하
골 반 검 사	5,000 원이하
방 사 선 판 독 료	500 원이하

〔별표 3 〕

폐질상태의 정도구분

(제 55조제 1 항)

제 1 급

1 . 두 눈이 실명된 자

2 . 저작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 반신불수가 된 자

5 . 두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8.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제 2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제 3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2.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4 급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다리를 슬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제 5 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두 발을 "리스푸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팔의 외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4. 한 다리를 족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5.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두 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6 급

1.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자
2.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3.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4.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관절이 폐용된 자
5. 한 손의 5개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제 7 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있는 자
3.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제 8 급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2.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4. 한 다리에 기관절이 있어 현저한 운동장해가 있는 자

5.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여자

6.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7.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8.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 9 급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있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2. 한 발에 기관절이 있어 현저한 운동장해가 있는 자

3. 한 눈이 실명되거나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제 10 급

1.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치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2. 정신에 장해가 있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3.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한 팔에 기관절이 남은 자
5. 한 다리에 기관절이 남은 자
6.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자
7. 두 눈에 반맹종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있는 자
8.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자

제 11 급

1. 척추에 운동장해가 있는 자
2.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단축된 자
3.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4. 한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5. 두 눈의 안검에 현저한 결손이 있는 자

제 12 급

1. 저작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자
2.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에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3.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4. 한 발에 제1족지 또는 그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제 13 급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있는 자

2.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3.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제 14 급

1.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이각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

2.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3. 한 다리가 3센터미터 이상 단축된 자

4.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자

5.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있는 자

〔별표 4〕

2이상 폐질시의 종합평가등급표

(제 55조제 1항단서)

등급	10	9	8	7	6	5	4	3	2
10	9	8	7	6	5	4	4	3	2
9	8	7	6	5	5	4	3	3	2
8	7	6	6	5	4	4	3	2	3
7	6	5	5	4	4	3	3	2	2
6	5	5	4	4	4	3	3	2	1
5	4	4	4	3	3	3	3	2	1
4	4	3	3	3	3	3	2	2	1
3	3	3	3	2	2	2	2	1	1
2	2	2	2	2	1	1	1	1	1

예 : 별표 4의 폐질등급표에 의한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폐질자는 이 표에 의하여 5급이 된다.

〔별표 5〕 〈개정 76. 6.25 대령 8174〉

정 부 투 자 기 관

1. 한국은행	2.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	6. 한국조폐공사
7. 한국증권거래소	8. 대한재보험공사
9. 한국전력주식회사	10.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11.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12. 대한석탄공사
13. 대한광업진흥공사	14. 대한무역진흥공사
15. 대한준설공사	16. 대한주택공사
17. 한국도로공사	18. 한국산업기지개발공사
19. 농어촌개발공사	20. 농업진흥공사
21. 한국방송공사	22. 한국관광공사
23. 국정교과서주식회사	24. 토지금고
25. 조선은행청산위원회	26. 식산은행청산위원회
27. 삼국석탄공업주식회사 청산위원회	28. 한국투자공사

〔별표6〕 〈개정 76. 6.25 대령8174〉

재 투 자 기 관

1. 성업공사	2.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
3. 인천제철주식회사	4. 한영공업주식회사
5.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	6. 한국엔지니어링주식회사
7.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8. 대한석유공사
9. 대한알미늄공업주식회사	10. 한국비철금속주식회사
11. 한국주택개발공사	12. 부국상호신용금고
13. 유아흥업주식회사	14.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15. 한국에탄올주식회사	16. 주식회사석유화학지원공단
17. 남해화학주식회사	18. 진해화학주식회사
19. 영남화학주식회사	20. 여수석유화학주식회사
21. 대한화학펄프주식회사	22. 한성프레훼브주식회사
23. 한국전력안전공사	24. 대한전기협회
25. 한국종합제철주식회사	26. 한국냉장주식회사
27. 한국물산주식회사	28. 한국고압벽돌
29. 동신인조주식회사	30. 한국감정원
31. 조선호텔	32. 한국외환은행
33. 한국대체결제주식회사	34. 서울신문사
35. 호남에틸렌주식회사	

〔별표 7〕 〈신설 75. 6.14 대령 7649〉

출 연 보 조 기 관

1. 국방과학연구소
2. 한국과학원
3. 한국해양개발연구소
4. 한국선박연구소
5. 한국원자력연구소
6. 한국과학기술정보쎈터

船員保険法 〔1962. 1. 10 法律第964号〕

改正 1975.12.31法律第2886号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 本法은 船員에 対한 保険制度를 実施하여 船員과 그 家族의 福利増進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保険給与) 船員保険은 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의 疾病, 負傷, 老齢, 癈疾, 脱退 또는 死亡에 関하여 保険給与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第3条(保険의 管掌) ①船員保険은 政府가 이를 管掌한다.

②政府의 船員保険에 関한 重要企劃, 運営等에 関한 事項의 諮問을 為하여 船員保険中央審議会와 船員保険地方審議会를 둔다.

③前項에 審議会에 関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条(報酬의 定義) ①本法에서 報酬라 함은 船員의

職務執行의 対償으로 船舶所有者로부터 받은 給料 및 이에 準하는 것을 말한다.

②給料에 準하는 報酬의 種類, 範囲와 評価에 関하여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5条(標準報酬) ①報酬의 額에 따라 保険料 또는 保険給与의 額을 定하는 境遇에는 標準報酬에 依하여 이를 算定한다.

②本法에서 平均報酬月額이라 함은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標準報酬月額을, 平均報酬日額이라 함은 平均標準報酬月額의 30分의 1에 相当하는 額을 말한다.

③標準報酬에 関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6条(消滅時効) 保険料 其他 本法에 依한 徴収金을 徴収하거나 그 返還을 받을 権利 및 療養費, 傷病手当金, 癈疾手当金 또는 死亡手当金을 받을 権利는 2年을 経過한때, 養老年金, 癈疾年金, 脱退手当金 또는 第36条, 第37条, 第41条나 第48条의 規定에 依한 一時金을 받을 権利는 5年을 経過한 때에는 消滅時効가 完成한다.

第7条（期間의 計算） 本法 또는 本法에 依拠하여 発하는 命令에 規定하는 期間의 計算은 本法에 따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의 期間計算에 関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8条（印紙税의 免除） 船員保険에 関한 書類에는 印紙税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9条（戸籍의 無償証明） 交通部長官 또는 保険給与를 받을 者는 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 및 그의 被扶養者의 戸籍에 関하여 戸籍事務를 管掌하는 者나 그 代理者에 対하여 無償으로 証明을 要求할 수 있다.

第10条（報告，文書의 提出 其他의 命令） ①港湾庁長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被保険者를 雇傭하는 船舶所有者로 하여금 雇傭하는 者의 異動및 報酬에 関하여 報告를 하게 하고 文書를 提出하게 하며 其他 船員保険의 施行에 必要한 事務를 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75.12.31 法 2886 政府組織法>

②港湾庁長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被保険者 또는 保険給与를 받을 者로 하여금 港湾庁長 또는

船舶所有者에게 船員保險의 施行에 必要한 報告, 申請 또는 申告를 하거나 文書를 提出하거나 出席을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75.12.31 法 2886 政府組織法>

第11条 (公務員의 檢査, 質問權等) ①港湾庁長은 保險給与에 関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当該公務員으로 하여금 関係医療機関에 対하여 그 診療録 其他의 帳簿書類를 檢査하게할 수 있다.

<改正 75.12.31 法 2886 政府組織法>

②港湾庁長은 保險業務処理上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保險者의 異動 및 報酬 또는 保險給与의 決定에 関하여 当該公務員으로 하여금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勤務場所에 出入하여 関係者에게 質問를 하거나 書類, 其他帳簿의 檢査를 하게할 수 있다. <改正 75.12.31 法 2886 政府組織法>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当該公務員이 質問 또는 檢査를 할때에는 그 権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携帯하여 関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2条(船舶所有者) 本法 또는 本法에 依하여 発하는 命令中 船舶所有者라 함은 船舶共有의 境遇에는 船舶管理人, 船舶賃借의 境遇에는 船舶貸借人을 말한다.

第13条(被保険者의 資格喪失) ①船舶이 滅失 또는 沈没할 当時 그 船舶에 乘務하는 被保険者 또는 그 船舶에 乘務中 被保険者의 資格를 喪失하고 継続하여 船舶内에 있는 者가 滅失 또는 沈没의 날로부터 3月間 그 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法의 適用에 関하여는 그 期間満了의 날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②船舶의 存否가 1月以上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는 船舶은 滅失한 것으로 推定한다.

③条1項의 規定은 被保険者 또는 船舶에 乘務中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하고 継続하여 船舶内에 있는 者가 船舶航行中 行方不明이된 境遇에 3月間生死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条(保険料의 徴収) ①保険料 其他 本法에 依

한 徵収金을 滯納한 者가 있을 때에는 港湾庁長은 期限을 指定하여 督促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法2886政府組織法>

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督促을 한 境遇에는 閣令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督促手数料 및 滯納手数料를 徵収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督促을 받은 者가 그 指定된 期限까지 保険料 其他 本法에 依한 徵収金을 納付하지 아니할 때에는 港湾庁長은 国税滯納処分의 例에 依하여 이를 処分하거나 滯納者 또는 그의 財産이 있는 市長(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区庁長 以下 같다)郡守에게 이의 処分을 委託할 수 있다.

<改正 75.12.31法2886政府組織法>

④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市長, 郡守에게 処分의 委託을 할때에는 市長, 郡守는 市·郡税의 例에 依하여 이를 処分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는 港湾庁長은 徵収金額의 100分의 3에 相当하는 金額을 当該自治団体에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法2886政府組織法>

第15条（保険料徴収의 優先順位） 保険料 其他 本法에 依한 徴収金에 対하여는 国税 및 地方税의 다음으로 優先辨済를 받을 権利를 가진다.

第16条（国家 및 自治団体所有船舶의 乗務員） 国家, 地方自治団体 其他 이에 準하는 者의 所有에 属하는 船舶에 乗務하는 船員에 対하여는 本法의 適用에 関하여 閣令으로 따로 規定할 수 있다.

第2章 被保険者

第17条（被保険者） 船員法에 規定하는 大韓民国国民인 船員으로서 国内에 船籍港을 定한 船舶에 乗務하는 者는 船員保険의 被保険者로 한다. 但, 다음에 掲記하는 者는 例外로 한다.

1. 船舶所有者에 雇傭되지 아니한 者
2. 公務員（俸給, 給料를 받지 아니하는 者를 除外한다）
3. 前2号에 掲記하는 者外에 閣令으로 指定하는 者

第18条(資格의 取得) 被保険者는 船舶에 乗務한날, 前条但書 各号의 規定에 該当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大韓民国의 国籍을 取得한 날로부터 그 資格을 取得한다.

第19条(資格의 喪失) 被保険者는 死亡한 날, 船舶에 乗務하지 아니하게 된 날, 第17条但書各号의 1에 該当하게된 날 또는 大韓民国의 国籍을 喪失한 날의 翌日로부터 그 資格을 喪失한다.

但, 그 事実이 있은 날에 다시 前条의 規定에 該当하게 된때에는 그 날로부터 그 資格을 喪失한다.

第20条(資格의 確認) ①前2条의 規定에 依한 被保険者의 資格取得 및 喪失은 港湾庁長의 確認에 依하여 그 効力을 発生한다.

<改正 75.12.31 法2886 政府組織法>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確認은 関係者의 請求 또는 職権에 依하여 이를 行한다.

第21条(資格의 持続) ①10年以上 15年未満 被保険者이었던 者가 被保険者가 아닌 者로된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継続하여 被保険者로 할

수 있다. 但, 그者가 大韓民国의 国籍을 喪失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被保険者에 対하여는 養老, 脫退 또는 死亡에 関한 保険給与에 限하여 이를 行한다.

第22条(持続資格의 喪失) 前条의 規定에 依한 被保険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된 翌日(第3号에 該当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그 資格을 喪失한다.

1. 死亡한때
2. 養老年金의 受給資格을 가지게 된때
3. 第17条의 規定에 依한 被保険者로 된때
4.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하고자 申請을 한 때
5. 保険料를 滞納하고 第14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指定期限까지 그 保険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第 3 章　保険給与　및　福祉施設

第 1 節　通　則

第23条（被保険期間의　計算）　①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은 被保険者의　資格을　取得한　달로부터　起算하고　그 資格을　喪失한달의　前月로써　終了한다.　但，한달의 16日以後에　있어서　被保険者의　資格을　取得한　때에는　그　달은　半月로　計算한다.

②16日以後에　있어서　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달은　半月로　하여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에　加算한다.

③被保険者의　資格을　喪失한　後　다시　그　資格을 取得한　者에　対하여　保険給与를　하는　境遇에는　前後의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은　이를　合算한다.　但, 脫退手当金의　支給을　받은　境遇에는　그　計算의　基礎로된　期間은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④前項但書의　規定은　第48条의　規定에　依하여　差額의　支給을　받은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第24条（遺族의　範囲및　順位）　第36条，第37条　및

第41条의 規定에 依한 一時金 또는 死亡給与金을 받은 遺族의 範囲 및 順位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25条(支給의 期間) ①養老年金 및 癈疾年金의 支給은 이를 支給할 事由가 発生한 달의 翌月부터 開始하고 権利消滅의 달로써 終了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年金은 毎年3月, 6月, 9月, 12月의 4期로 区分하여 그 前月分까지를 支給한다.

第26条(賠償請求権) 政府는 事故가 第三者의 行為로 因하여 発生한 境遇에 保険給与를 한 때에는 그 給与한 価額의 限度에서 保険給与를 받을 者가 第三者에게 対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의 権利를 取得한다.

第27条(公課金等의 免除) 保険給与로서 支給받은 金品에 対하여는 이를 標準으로하여 租税其他의 公課金을 課하지 못한다. 但, 養老年金에 対하여는 例外로한다.

第28条(譲渡等의 禁止) 保険給与를 받을 権利는 이를 譲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2節 療養措処 및 傷病手当金

第29条(療養指処) ①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의 疾病 또는 負傷에 関하여는 다음에 掲記하는 療養措処를 行한다. 但, 被保険者의 資格喪失前의 疾病 또는 負傷으로 因하여 発生한 疾病을 除外하고 被保険者의 資格喪失後에 発生한 疾病 또는 負傷에 関하여는 例外로 한다.

1. 診 察
2. 薬剤 또는 治療材料의 支給
3. 処置, 手術其他의 治療
4. 病院 또는 診療所에의 収容 또는 自宅以外의 場所에서 療養에 必要한 宿泊料 및 食事의 支給
5. 看 護
6. 移 送

②前項의 第4号 乃至 第6号의 規定에 依한 措処는 行政官庁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限하여 이를 行한다. 但, 閣令에서 따로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③被保險者이었던 者는 閣令으로 定하는 期間內에 療養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없다. 但,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療養措処에 있어서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를 為한 診察, 調剤 또는 治療를 行하는 病院, 診療所 또는 薬局은 港湾庁長이 指定한다. <改正 75.12.31法2886政府組織法>

⑤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病院, 診療所 또는 薬局의 長은 正当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第30条(療養費의 支給) 療養措処를 行하기 困難한 境遇 또는 被保險者나 被保險者이었던 者의 申請이 있거나 緊急不得已한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療養措処에 갈음하여 療養費를 支給할 수 있다.

第31条(傷病手当金)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療養을 為하여 労務에 就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期間中 傷病手当金으로서 1日에 対하여 被保險者의 資格喪失当時의 平均報酬日額의 100分의 60에 相当하는

金額을 支給한다.

第32条(収容된 者의 傷病手当金의 減額) 病院 또는 診療所에 収容된 被保険者이었던 者에 対하여 支給한 傷病手当金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減額할 수 있다.

第33条(支給対象의 期間) ①療養의 給与 및 傷病手当金의 支給은 同一한 疾病 또는 負傷 및 이로 因하여 発生한 疾病에 関하여 그 保険給与를 開始한 날로부터 起算하여 6月을 経過한 때에는 行하지 아니한다.

②港湾庁長이 指定한 疾病에 関하여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前項의 期間을 超過하여 다시 6月以内의 期間을 継続하여 療養措処 및 傷病手当金의 支給을 할 수 있다. 但, 그 保険給与를 開始한날 以前에 閣令으로 定하는 期間 継続하여 被保険者이었던 者에 限한다.

③傷病手当金은 그 支給期間을 経過하지 아니한 때라도 療養措処를 할 수 있는 期間을 経過하게 된 때에는 이를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3節 養老年金

第34条(養老年金) 15年以上 被保険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를 喪失한 後 55歲를 넘은때 또는 56歲를 넘어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그가 死亡할 때까지 養老年金을 支給한다.

第35条(養老年金額) ①養老年金의 額은 被保険者이었던 期間 15年以上 16年未滿에 対하여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年額의 100分의 25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하고 被保険者이었던 期間 15年以上 1年을 增加할때마다 그 1年에 対하여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年額의 100分의 1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한 金額으로 한다.

②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이 40年을 넘는 者에게 支給할 養老年金의 額은 이를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을 40年으로하여 計算한다.

第36条(死亡者에 対한 養老年金의 残額) 養老年金 支給을 받는 者가 死亡한 境遇에 이미 支給을 받은 養老年金의 総額이 養老年金의 5年分에 相当

하는 金額에 未達할때에는 그 差額을 一時金으로서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第37条(死亡者에 対한 養老年金一時金) 15年以上 被保険者이었던 者가 養老年金의 支給을 받지 아니하고 死亡한 境遇에는 그者가 支給을 받을 수 있었던 養老年金의 5年分에 相当하는 金額을 一時金으로서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第38条(養老年金 支給의 停止) ①傷病手当金의 支給을 받는 者에게는 閣令이 定하는바에 依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 期間中 養老年金의 支給을 停止한다.

②養老年金의 支給을 받는 者가 被保険者로된 때에는 그달로부터 養老年金의 支給을 停止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養老年金의 支給을 停止当한 被保険者가 그 資格을 喪失한 境遇에는 前後의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을 合算하여 養老年金額을 改定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養老年金의 額을 改定하는 境遇에 그 額이 従前의 養老年金의 額보다 적을

때에는 從前의 養老年金의 額으로써 改定養老年金의 額으로 한다.

第4節 癈疾年金과 癈疾手当金

第39条(癈疾年金, 癈疾手当金) 被保険者의 資格喪失前6年間에 3年以上 被保険者이었던 者의 資格喪失前에 発生한 疾病 또는 負傷 및 이로因하여 発生한 癈病이 閣令으로 定하는 期間内에 治癒된 境遇 또는 治癒되지 아니 하였으나 그 期間을 経過한 境遇에 있어서 閣令으로 定하는 程度의 癈疾状態에 있는 者에게는 그 程度에 따라 그 者가 死亡할때까지 癈疾年金을 支給하거나 一時金으로서 癈疾手当金을 支給한다.

第40条(癈疾年金等의 額) ①癈疾年金의 額은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年額의 百分의 25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하고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이 15年以上 1年을 増加할때마다 그 1年에 対하여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年額의 100分의 1에 相当하는 金額을 加한 金額으로 한다.

②第35条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準用한다.

③癈疾手当金의 額은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月額의 7月分에 相当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41条(死亡한 者에 対한 癈疾年金의 一時金) 癈疾年金의 支給을 받는 者가 死亡한 境遇에는 다음의 区別에 의한 金額을 一時金으로서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1.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이 15年未満인 境遇에 이미 支給을 받은 癈疾年金의 総額이 被保険者의 資格喪失時에 支給을 받을 수 있었던 脱退手当金 및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月額의 7月分의 合算額(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月額의 13月分을 超過할때에는 13月分에 그친다)에 相当하는 金額에 未達할때에는 그 差額

2.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이 15年以上인 境遇에 이미 支給을 받은 癈疾年金의 総額이 癈疾年金의 5年分에 相当하는 金額에 未達할때에는 그 差額

第42条(競合된 年金의 支給) 養老年金 및 癈疾年金을 받을 権利를 가진 者에게는 다음의 区別에

依하여 그中의 1을 支給한다.

1. 養老年金과 廢疾年金額이 다를 때에는 그 年金中 最高額

2. 養老年金과 廢疾年金額이 같을 때에는 廢疾年金

3. 2以上의 廢疾年金額이 서로같을 때에는 從前의 廢疾年金額

第43条(廢疾年金의 支給廢止) 廢疾年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廢疾年金을 받을 만한 程度의 廢疾의 狀態에 該当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廢疾年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44条(養老年金 受給權者에 対한 廢疾手当金의 支給禁止) 養老年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에게는 廢疾手当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5節 脫退手当金

第45条(脫退手当金의 支給) 3年以上 15年未滿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死亡한때 또는 그 資格을 喪失한 後 다시 被保險者로 되지 아니하고 1年6月을 經過한 때에는 脫退手当金을 支給한다. 但, 그者가

癈疾手当金의 權利를 가진 者인 때에는 1年6月을 經過하지 아니한 境過라도 이를 支給한다.

第46条(脫退手当金의 額) 脫退手当金의 額은 平均報酬月額에 被保険者이었던 期間에 依하여 다음의 表에 定하는 月数를 乘하여 얻은 金額으로 한다. 但, 癈疾手当金의 支給을 받는 者에게 支給할 額은 癈疾手当金의 額과 合算하여 被保険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月額의 13月分에 相当하는 金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被保険者이었던 期間	月 数
3年以上	0.9月
4年以上	1.2月
5年以上	1.5月
6年以上	1.8月
7年以上	2.1月
8年以上	2.5月
9年以上	2.9月
10年以上	3.3月
11年以上	3.7月

12年以上　　4.2月

13年以上　　4.7月

14年以上　　5.3月

第47条（廢疾年金受給者의 脫退手当金） 廢疾年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에게는 脫退手当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第48条（差額의 支給） 廢疾年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 者가 第43条의 規定에 依하여 廢疾年金의 支給을 받을 수 없게된 境遇에 이미 支給을 받은 廢疾年金의 總額이 그 者가 被保險者의 資格을 喪失한때 支給을 받을 수 있었던 脫退手当金의 額에 未達할 때에는 그 差額을 支給한다.

第6節 死亡手当金

第49条（死亡手当金）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境遇에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3年以上 被保險者이었던 때에는 그 遺族에게 対하여 被保險者이었던 全期間의 平均報酬月額의 3月分에 相当하는 死亡手当金을 支給한다.

1. 被保險者가 死亡한때

2.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그 資格喪失 後 3月以內에 死亡한때

3. 被保險者이었던 者로서 療養措処를 받는 者가 死亡한때

第7節 保險給与의 制限

第50条(故意의 犯罪等에 起因한 事故에 対한 給与의 制限) ①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가 自己의 故意의 犯罪行為로 因하거나 故意로 事故를 発生시킨 때에는 療養措処 또는 傷病手当金, 癈疾年金, 癈疾手当金, 또는 死亡手当金은 支給하지 아니한다.

②第36条, 第37条 또는 第41条의 規定에 依한 一時金 또는 死亡手当金의 支給을 받을 者가 被保險者 또는 被保險者이었던 者를 故意로 致死하게 한때에는 그 者에게 対하여는 支給을 하지 아니한다. 이 境遇에 後順位者가 있을 때에는 그 者에

게 支給한다.

第51条(指揮不服従으로 事故를 発生시킨 者에 対한 給与의 制限) 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가 争闘, 泥酔 또는 顕著한 不良行為로 因하여 故意로 危害豫防에 関한 業務上의 監督者의 指揮에 服従하지 하니하거나 正当한 理由없이 療養에 関한 指揮에 服従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事故를 発生시킨 때에는 療養措処의 全部 또는 一部를 하지 아니하거나 傷病手当金, 廢疾年金 또는 廢疾手当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2条(徵集·召集 其他의 境遇의 給与制限) ①被保険者 또는 被保険者이었던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中 療養措処 또는 傷病手当金의 支給을 하지 아니한다. 但, 閣令으로 따로 定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1. 兵役法에 依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때
2. 国内에 있지 아니할때
3. 船舶内에 있을때
4. 感化院 其他에 準하는 施設에 入院됨에 이르렀

을때

5. 刑務所, 留置場 또는 労役場에 拘禁 또는 留置된때

②다른法令에 依하여 国家 또는 公共団体의 負担으로 療養費의 支給 또는 療養措処가 있을 때에는 그 限度内에서 療養費의 支給 또는 療養措処를 하지 아니한다.

③第32条의 規定은 前項에 掲記하는 者로서 病院 또는 診療所에 収容된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53条(療養指揮에 不応한 者의 傷病手当金) 正当한 理由없이 療養에 関한 指揮에 服従하지 아니하는 者에 対하여는 傷病手当金의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4条(不正行為者에 対한 保険給与) 詐偽 其他 不正의 行為에 依하여 保険給与를 받거나 받고자 한 者에 対하여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期間을 定하여 保険給与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5条（診断，診断拒否者에 対한 傷病手当金等） ①療養措処，傷病手当金 또는 癈疾手当金의 支給을 받은 者에 対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診断을 行할 수 있다.

②正当한 理由없이 前項의 規定에 依한 診断을 받지 아니한 者에 対하여는 診療措処의 全部나 一部또는 傷病手当金，癈疾手当金 또는 癈疾年金의 全部나 一部의 支給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56条（必要한 書類의 提出命令과 不応者에 対한 措処） ①養老年金 또는 癈疾年金을 받은 者에 対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그 身分 関係의 異動 및 癈疾状態의 継続의 有無에 関하여 그 者로 하여금 必要한 書類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書類를 提出하지 아니하는 者에 対하여는 養老年金 또는 癈疾年金의 支給을 一時 保留할 수 있다.

第 8 節　福祉施設

第 57 条 (福祉施設)　政府는　被保険者 , 被保険者이었던 者　또는　保険給与를　받는　者의　福祉増進을　為하여 必要한　施設을　할　수　있다.

第 4 章　　費用의　負担

第 58 条 (国庫의　負担)　①国庫는　療養措処　및　傷病 手当金을除外하고　　保険給与에　要하는　費用의　4 分의　1 을　負担한다.

②国庫는　前項에　規定하는　費用外에　毎年度豫算의 範囲内에서　船員保険事業의　事務執行에　必要한　費用을　負担한다.

③国庫는　前 2 項에　規定하는　費用外에　毎年度豫算의 範囲内에서　船員保険事業을　為한　財源을　造成할 수 있다.

第 59 条 (保険料의 徴収)　①政府는　船員保険事業에　必要한　費用에　充当하기　為하여　保険料를　徴収한다.

②保険料의　算定에　関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60 条 (保険料負担의　義務)　①被保険者　및　被保険

者를 雇傭한 船舶所有者는 各各 保險料의 2分의 1을 負担한다. 但, 第21条의 規定에 依하여 繼續하여 被保險者가 된 者는 그 全額을 負担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船舶所有者의 負担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比率을 增加할 수 있다.

第61条(船舶所有者의 保險料納付義務) 船舶所有者는 그가 雇傭한 被保險者가 負担한 保險料를 納付할 義務를 진다. 但, 第21条의 規定에 依한 被保險者가 負担하는 保險料에 関하여는 例外로 한다.

第62条(保險料의 控除) ①船舶所有者는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前条의 規定에 依하여 納付할 保險料를 被保險者에게 支給할 報酬에서 控除할 수 있다.

②船舶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料를 控除한 때에는 이에 関한 計算書와 함께 그 控除額을 被保險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 5 章　　補　　則

第 63 条 (特別会計)　本法에 依한 会計에 関하여는 따로 法律로써 定한다.

第 63 条 (職権委任)　交通部長官은 本法에 規定된 職権의 一部를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地方港湾管理庁長·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75.12.31 法 2886 政府組織法>

第 65 条 (施行令)　本法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6 章　　罰　　則

第 66 条 (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5 萬圓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1. 第 10 条 1 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 文書의 提出 또는 事務執行의 命令을 拒否하거나 故意로 怠慢하거나 虛偽의 報告 또는 不実文書의 提出을 한者.

2. 第 10 条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報告, 申請, 文書의

提出 또는 出席命令을 拒否하거나 故意로 怠慢하거나 虛偽의 報告 또는 不実文書의 提出을 한者

3. 第11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当該公務員의 検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11条第2項의 規定에 依한 当該公務員의 検査를 妨害, 拒否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한 者.

5. 第29条第5項 또는 第62条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67条(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従業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関하여 前条第1号, 第3号乃至第5号의 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罰하는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対하여도 同条의 規定에 依한 罰金 또는 科料의 刑을 科한다.

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　1962年　7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1940年 2月　勅令　第65号船員保険法을 朝鮮에　施行하는　件은　이를　廢止한다.

③(経過措置)　本法施行当時　第17条의　規定에　該当하는　者는　第18条의　規定에　不拘하고　本法施行日에 被保険者의　資格을　取得한다.

生 活 保 護 法

1961.12.30 法律第913号

第 1 章 総 則

第1条(目的) 本法은 老齢, 疾病 其他勤労能力의 喪失로 인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 등에 대한 保護와 그 方法을 規定하여 社会福祉의 向上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用語의 定義) ①本法에서 要保護者라 함은 前条에 規定된 者로서 本法에 의한 保護를 必要로 하는 状態에 있는 者를 말한다.

②本法에서 被保護者라 함은 本法에 의한 保護를 받고있는 者를 말한다.

③本法에서 保護金品이라 함은 本法에 의하여 被保護者에게 給与하거나 貸与하는 金銭 또는 物品을 말한다.

④本法에서 保護機関이라 함은 本法에 의한 保護를 行하는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를 말한다.

第3条(保護対象의 範囲) ①本法에 의한 保護対象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解当하는 者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扶養義務者가 있어도 扶養할 能力이 없

는 경우의 者에 限한다.

1. 年齡 65歲以上의 老衰者

2. 年齡 18歲未滿의 兒童

3. 妊産婦

4. 不具, 廢疾, 傷痍其他精神 또는 身体의 障碍로 인하여 勤勞能力이 없는 者

5. 其他保護機関이 本法에 의한 保護를 必要로 한다고 認定하는 者

② 18歲未滿의 兒童을 保護하는 경우에 그의 養育上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兒童과 함께 그의 母를 保護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規定에 該当하는 者로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따로 保護를 받고있는 경우에는 本法에 의한 保護対象에서 除外한다.

④第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로서 臨時急迫한 事由가 있는 경우와 其他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一時扶養을 받을수 없게된 경우에는 第1項 本文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事由가 終了될 때까지 一時本法에 의한 保護対象者로 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扶養義務者의 扶養能力有無

의 区分과 同項 第3号의 規定에 의한 妊産婦의 保護期間과 前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急迫 또는 不得已한 事由의 範囲는 閣令으로 定한다.

第4条(保護의 水準) 本法에서 保障되는 保護의 水準은 健康하고 文化的인 最低生活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第2章 保護의 種類와 方法

第5条(保護의 種類) ①本法에의한 保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生計保護
2. 医療保護
3. 解産保護
4. 喪葬保護

②前項各号의 保護는 要保護者의 事情에 따라 数種類를 함께 実施할 수 있다.

第6条(生計保護) ①生計保護는 要保護者에 대하여 衣服, 飮食其他日常生活의 需要를 充足하기에 必要한 金品을 給付하여 그 生計를 維持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生計保護를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要保護者의 移

送其他生計保護実施에 必要한 措処를 行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의 給付의 標準은 保健社会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7条(生計保護의 方法) ①生計保護는 金銭給付에 의하여 行한다. 但 이에 의할수없을 때나 이에 의함이 適当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現物給付로써 行할 수 있다.

②保護金品은 1月分以内를 限度로 前渡한다. 但 이에 의하기 困難한 때에는 1月分을 超過하여 前渡할 수 있다.

③保護金品은 被保護者에게 直接交付한다. 但 本法에 의한 保護施設에 収容하거나 다른 保護施設이나 個人의 家庭에 委託하여 生計保護를 行할 때에는 그 保護施設 또는 保護를 委託받은 者에게 이를 交付할 수 있다.

第8条(生計保護를 行할 場所) ①生計保護는 被保護者의 住居에서 行한다.

②被保護者가 住居가 없거나 住居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保護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때와 被保護者가 特히 希望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被保護者를 本法에 의한 適当한 保護施設에 収容하

거나 다른 保護施設이나 個人의 家庭에 委託하여 保護를 行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保護者를 個人의 家庭에 委託保護할 경우에 居室의 賃借料 其他居室의 維持에 必要한 費用은 이를 保護金品에 加算하여 給付하여야 한다.

第9条(医療保護) 医療保護는 医療를 必要로 하는 要保護者에 대하여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保護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1. 診 療
2. 医学的処置, 手術과 其他의 治療와 施術
3. 薬剤 또는 治療材料의 給付
4. 病院 또는 診療所에의 収容
5. 看 護
6. 移送, 運搬其他医療目的의 達成을 위한 措処

第10条(医療保護의 方法) ①医療保護는 被保護者로 하여금 国家가 経営하거나 地方自治団体가 経営하는 医療施設이나 保護機関이 特히 指定하는 医療施設에서 必要한 医療措置를 받게하는 것으로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할수 없거나 前項의 規定에 의함이 適当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被保護者

로 하여금 前項의 規定에 의한 医療施設以外의 医療施設에서 医療措置를 받게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医療施設의 指定에 관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을 받은 医療施設은 正当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医療措置에 대한 医療의 限界, 医療費用의 標準과 그 計算, 支払方法은 保健社会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한 医療措置에 必要한 費用은 現金으로써 給付한다.

第11条(解産保護) 解産保護는 要保護者에 대하여 다음의 保護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1. 助 産

2. 分娩前과 分娩後의 必要한 措置와 保護

第12条(解産保護의 方法) 第10条의 規定은 解産保護에 이를 準用한다.

第13条(喪葬措処) 喪葬措処는 要保護者가 死亡하였을 때에 初喪과 葬礼의 措処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第14条(喪葬措処의 方法) ①喪葬措処는 死体의 検案 死体의 運搬火葬 또는 埋葬 其他喪葬에 必要한 措処를 行하는 것으로 한다.

②喪葬措処는 金銭給付에 의하여 行한다.

但 이에 의할수 없을때나 이에 의함이 適当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現物給付로써 行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金品은 喪葬措処를 行하는 者에게 給付한다.

④喪葬措処에 대한 費用의 標準은 保健社会部長官의 定하는 바에 의한다.

第 3 章 保護機関

第15条(保護機関) ①保護 要保護者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가 行한다. 但 居住地가 一定하지 아니할 때에는 要保護者調査 当時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市長, 郡守 또는 保護의 申請을 받은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가 行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国家는 直接要保護者를 国家가 経営하는 保護施設에 의하거나 다른 保護施設에 委託하여 保護를 行할 수 있으며 道는 直接要保護者를 道가 経営하는 保護施設에 의하거나 다른 保護施設에 委託하여 保護를 行할 수 있다.

③毎年度 保護事業開始前 또는 保護事業実施中에 要

保護者 또는 被保護者의 移動이 생긴 경우의 処理方法과 其他 保護機関相互間의 業務処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16条(保護委員会) ①本法에 의한 保護事業의 企劃, 調査와 実施其他保護事業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와 서울特別市, 道市, 郡에 各各 保護委員会를 둔다.

②保護委員会의 組織, 運営과 審議事項의 範囲와 其他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4 章 保護의 実施

第17条(要保護者의 調査) ①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每年 1回以上管轄区域内의 要保護者를 調査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의 結果는 서울特別市長은 保健社会部長官에게, 市長 또는 郡守는 道知事에게 遲滯없이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③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의 集計를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保健社会部長官, 서울特別市長, 道知事와 市長, 郡守는 要保護者와 被保護者의 実態에 관한 事項을 記録整理하는 台帳을 作成備置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保護者調査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과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機関相号間의 業務処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 및 前項의 規定에 의한 台帳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18条(保護의 申請) 要保護者와 그 親族其他関係人은 要保護者의 保護를 管轄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請할 수 있다.

第19条(調査와 検診) ①保護機関은 保護의 決定 또는 그 実施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要保護者의 資産状況, 健康状態其他의 事情을 調査하기 위하여 関係公務員으로 하여금 要保護者의 居所에 가서 調査를 하며 質問을 하거나 要保護者에게 保護機関이 指定하는 医療機関에서의 検診을 받을것을 命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行하는 関係公務員은 閣令으로 定하는 権限을 証하는 証票를 携帯하고 関係人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이를 提示하여야 한다.

③保護機関은 要保護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答辯하지

아니한때 또는 檢診命令에 不応하였을 때에는 保護決定의 取消 保護의 変更, 停止 또는 廃止를 하거나 保護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第20条(調査의 委嘱 또는 報告의 請求) 保護機関은 保護의 決定 또는 그 実施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要保護者나 그 扶養義務者의 資産과 収入状況에 관하여 関係機関에 調査를 委嘱하거나 要保護者 또는 扶養義務者의 雇傭主 其他 関係人에게 報告를 要求할 수 있다.

第21条(保護의 決定과 開始) ①第17条와 第18条의 規定에 의한 調査結果 또는 保護申請에 대하여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遅滞없이 保護의 与否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護를 要한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要旨와 保護의 種類 및 方法 其他 必要한 事項을 書面으로써 要保護者 또는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申請人에 대한 通知는 申請이 있는 날로부터 14日以内에 하여야 한다. 但 扶養義務者의 資産状況등의 調査에 時日을 要하는 特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이를 30日까지 延長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同書面에 그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

④保護의 申請을 한날로부터 30日以內에 通知가 없을 때에는 却下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22条(指導와 指示) ①保護機關은 被保護者에 대하여 保護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指導 또는 指示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 또는 指示는 被保護者의 自由를 尊重하여 必要한 最少限度에 그쳐야하며 被保護者의 意見에 反하는 指導 또는 指示를 強制하는 것으로 解釈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3条(保護의 変更) ①保護機關은 被保護者의 実態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職権 또는 申請에 의하여 被保護者에 대한 保護의 種類 또는 方法을 変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의 変更은 書面으로써 被保護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24条(保護措置의 停止, 廃止) ①被保護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때에는 保護機關은 [redacted] 保護措置의 一部 또는 全部를 停止 또는 廃止한다.

1. 被保護事由의 一部 또는 全部가 消滅한 때
2. 被保護者가 第3条의 規定에 該当하지 아니하는 것이 発見되었을 때
3. 被保護者가 保護의 一部 또는 全部를 拒否한때

②前条 第2項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5 章 保護施設

第25条(保護施設) ①本法에서 保護施設이라 함은 保護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会福祉施設로서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施設을 말한다.

1. 養老施設
2. 養育施設
3. 保護施設
4. 再活施設
5. 医療施設

②養老施設은 老衰로 인하여 独立하여 日常生活을 営為할 수 없는 要保護者를 収容하여 生計保護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③養育施設은 年少者로서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있어도 扶養받을 수 없으므로 因하여 生活할 수 없는 要保護者를 収容하여 生計保護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④保護施設은 身体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로 인하여 独立하여 日常生活을 営為할 수 없는 要保護者를 収容하여 生計保護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⑤再活施設은 身体上 또는 精神上의 障碍가 있는 者로서 医療와 職業輔導를 行함으로써 再活할 수 있는 要保護者를 収容하여 医療再活과 職業輔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⑥医療施設은 医療를 必要로 하는 要保護者에 대하여 医療保護를 行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26条(保護施設에 관한 細則) 保護施設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27条(委託된 要保護者収容의 義務) ①保護施設은 保護機関으로 부터 要保護者의 保護実施를 위하여 委託을 받은 때에는 正当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하지 못한다.

②保護施設에서의 要保護者에 대한 保護의 基準은 保健社会部長官이 定하는 最低基準以上 이어야 한다.

③保護施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된 要保護者의 収容 또는 処遇에 있어서 性別, 信仰 또는 社会的身分에 의하여 差別的待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保護施設은 委託된 要保護者에 대하여 宗教上의 行為를 強制하거나 그 祝典, 儀式 또는 行事에 参

与할것을 強制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6 章 被保護者의 權利와 義務

第28条(保護変更의 禁止) 被保護者에 대한 保護는 正当한 理由없이 이를 不利하게 変更하지 못한다.

第29条(公課禁止) 被保護者에게 給与되는 保護金品을 対象으로 하여 被保護者에게 租税 其他의 公課를 賦課하지 못한다.

第30条(押留의 禁止) 被保護者에게 給与된 保護金品과 이를 받은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31条(譲渡禁止) 被保護者는 保護를 받을 權利를 他人에게 譲渡하지 못한다.

第32条(申告의 義務) 被保護者는 収入, 支出其他生活状態에 관하여 顯著한 変動이 있을 때 또는 居住地나 世帶의 構成에 変動이 있을 때에는 遅滞없이 当該保護機関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 7 章 異議申請

第33条(道知事等에 대한 異議申請) ①被保護者 또는 保護나 그 保護変更의 申請을 한者는 保護機関인 市長 또는 郡守의 処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0日以内에 書面으로써 当該保護機関을 거쳐 道知事에게 異議를 申請

할 수 있다.

②保護機関은 前条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이 있을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10日以内에 意見書와 関係書類를 添附하여 道知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③保護機関인 서울特別市長의 処分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被保護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内에 書面으로써 서울特別市長에게 再決定을 申請할 수 있다.

第34条(서울特別市長, 道知事의 決定) ①道知事는 前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의 送付를 받았을 때에는 必要한 審査를 行하고 이를 却下하거나 当該処分을 変更 또는 取消하거나 其他 必要事項을 命하여야 한다.

②서울特別市長이 前条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決定의 申請書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却下하거나 当該処分을 変更 또는 取消하거나 其他 必要한 保護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道知事 또는 서울特別市長이 前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申請書를 받은 날로부터 30日以内에 道知事는 申請人과 当該保護機関에, 서울特別市長은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35条(保健社会部長官에 대한 異議申請) ①前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以內에 書面으로써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를 거쳐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의 申請書를 받았을 때에는 接受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意見書와 関係書類를 添附하여 이를 保健社会部長官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第36条(保健社会部長官의 裁決) ①保健社会部長官은 前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書의 送付를 받았을 때에는 必要한 審査를 行하고 이를 却下하거나 当該処分의 変更 또는 取消의 裁決을 하여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와 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保健社会部長官의 裁決의 通知는 異議申請書를 接受한 날로부터 30日以內에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第 8 章 保 護 費 用

第37条(保護費用) 本法에서 保護費用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費用을 말한다.

1. 本法에 의한 保護業務에 必要한 人件費와 行政

事務費

2. 第16条의 規定에 의한 保護委員会에 관한 費用

3. 第6条乃至 第14条의 規定에 의한 保護実施의 費用

4. 其他 本法에 의한 保護業務上 必要한 費用

第38条(保護費用의 負担区分) ①前条의 規定에 의한 保護費用은 다음 各号의 区分에 의하여 国家 또는 当該地方自治団体의 負担으로 한다.

1. 国家 또는 道가 直接行하는 保護業務에 要하는 것은 国家 또는 当該道의 負担으로 한다.

2. 第15条의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의 費用은 国家 또는 当該道의 負担으로 한다.

3. 서울特別市와 市, 郡이 行하는 保護業務에 要하는 前条 各号의 費用中 前条第1号와 第2号의 費用은 当該 서울特別市와 市, 郡의 負担으로 한다.

4. 서울特別市와 市, 郡이 行하는 保護業務에 要하는 前条 各号의 費用中 前号의 費用을 除外한 費用은 그 総額의 10分의 8以上을 国家가, 10分의 1以上을 当該道가, 10分의 1以内를 当該市郡이 負担한다. 但 서울特別市에 대하여는 国家가 10分의 5以内, 서울特別市가 10分의 5以上을 負担한다.

②国家는 每年度 서울特別市에 대하여는 前項 第4号의 規定에 依한 保護費用中 国家負担予定額을, 道에 대하여서는 当該道管轄市, 郡의 保護費用中 国家負担予定合計額을 各各 補助金으로서 交付하고 그 過不足은 精算에 의하여 追加交付하거나 返納하게 한다.

③道는 每年度前項의 規定에 의한 国家의 補助額과 第1項 第4号의 規定에 의한 道의 負担予定額을 合算하여 補助金으로서 当該市, 郡에 交付하고 過不足은 精算에 의하여 追加交付하거나 返納하게 한다.

④前2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額의 算出節次와 補助金의 過不足에 대한 精算方法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39条(保護基金의 積立) ①本法에 의한 保護費用의 財源에 充当하기 위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一定한 金額과 年限을 定하여 保護基金을 積立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基金積立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40条(代替支払) ①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그 管轄区域内에서 実施된 保護의 費用中 国家가 直接支払하여야 할것 또는 다른 地方自治団体나 被

保護者 또는 그 扶養義務者가 支払하여야할 것으로서 이들이 直時支払할 수 없는 事情이 있을 때에는 이를 一時代替支払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支払費用이 1年을 経過하여도 回収되지 아니한때에는 国家가 支払하여야 한다. 但 이경우에는 支払義務者에 대한 債権은 国家에 帰属 한다.

第41条(遺留金品의 処分) 喪葬措置를 行하는 경우에 当該 서울特別市長, 市長, 또는 郡守는 死亡者의 遺留金銭 또는 有価証券으로써 그 費用에 充当하고 不足할 때에는 遺留物品을 売却하여 그 代金으로써 이에 充当할 수 있다.

第42条(費用의 徴収) ①被保護者에게 이를 扶養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진 扶養義務者가 있을 때에는 保護費用을 支出한 保護機関은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그 扶養義務의 範囲内에서 徴収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扶養義務者가 負担하여야할 金額에 관하여 保護機関과 扶養義務者 사이에 協議가 되지 아니할때 또는 協議할 수 없을때에는 保護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保護機関이 定한다.

③許偽 其他 不正한 手段에 의하여 保護를 받거나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받게한 者가 있을때에는 保護費用을 支出한 保護機関은 그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本人 또는 当該人으로 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43条(返還命令) 保護機関은 保護의 変更, 停止 또는 保護措置의 廃止에 따라 被保護者에게 前渡한 保護金品에 過剩 또는 殘餘가 있을 때에는 即時 被保護者에 대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한다. 但 이미 消費하였거나 喪失한 경우에 被保護者에게 不得已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返還을 免除할 수 있다.

第44条(同前) 被保護者가 急迫한 事情으로 인하여 資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 本法에 의한 保護를 받았을 때에는 保護金品을 給与한 保護機関은 그 給与한 保護金品에 相当한 金額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第 9 章 罰 則

第45条(罰則) 詐偽 其他 不正한 手段에 의하여 保護를 받거나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받게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万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46条(同前) 第10条 第4項, 第27条 第1項 또는

同条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万원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47条(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従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条의 違反行為를 하였을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前条의 罰金 또는 科料의 刑을 科한다.

附 則

①本法은 檀紀 4295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檀紀 4277年3月制令 第12号 朝鮮救護令은 本法 施行日에 이를 廃止 한다.

③本法施行当時 本法 第25条의 規定에 의한 保護施設에 該当하는 保護施設에 収容 또는 委託된 被保護者는 国家가 直接収容 또는 委託한 것으로 본다.

생활보호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18호

제1조(부양능력 유무의 구분) 생활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남자로서 연령 65세 이상인 때.
2. 부녀자로서 50세 이상인 때.
3.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을 때.

제2조(임산부의 보호기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임산부의 보호기간은 출산전·후 각 1월 이내로 한다.

제3조(보호기관이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관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실직 기타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하여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궁하여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는 생계의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보호기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보호기관은 전항에 규정된 자에게 생계보호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함께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시급박 또는 부득이 한 사유의 범위)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일시 부양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2. 원거리에 거주하는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전달되는 생활비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로 인하여 생활비의 전달이 일시 불가능하게 된 때.

제5조(보호비용의 가산급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금품에 가산할 임차료 기타 거실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급부의 표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료시설의 지정) 보호기관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그 관할 구역내의 의료보호 대상자의 수를 참작하여 지역별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료시설 공고) 보호기관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의료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2. 진료과명

3.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원의 성명과 담당 진료과명

4. 지정년월일

제8조(거주지 변경과 보호기관간의 업무처리) ①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가 그 거주지를 다른 보호기관의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과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신고자와의 관계

3. 보호의 종류

4.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신구주소

②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가 동일보호기관의 관할구역내에서 그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호기관에 전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에 관한 대장의 부본을 첨부하여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보호기관은 전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기관에서 실시하던 보호 또는 실시하려던 보호를 계속하거나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전2항의 규정은 보호기관이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기관의 관할구역으로 이동하게 하였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생활보호위원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및 시·군에 각각 지방생활보호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 지방위원회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써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차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및 부산시 부시장 또는 도 보건사회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 시 및 군에 있어서는 부시장 또는 군 내무과장이 된다.

③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각 위원회의 위원중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각각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생활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임기) ①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의사)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5조(직원) ①각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16조(위원수당) 당해 위원회가 소속되는 보건사회부·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시·군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하는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요보호자 조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자를 조사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요보호자의 주소(또는 거소),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거주기간
3. 자산상황
4. 건강상태
5. 가족 및 가동능력
6.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의 유무
7. 보호를 요하는 이유

제19조(조사업무처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자 조사의 시기·조사방법과 보호기관 상호간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대장)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는 제1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결과와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여부 및 그 이유, 보호

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보호의 종류 및 방법과 피보호자에 대하여 현재 실시중인 보호의 종류 및 방법 기타 요보호자 또는 피보호자의 실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증표 및 대장의 서식)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의 서식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호시설에 관한 규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은 그 수용중인 피보호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시설 수용기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의 설비의 기준, 그 수용인원 및 피보호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호비용의 교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장에 기록된 요보호자중 보호의 결정을 한 요보호자 및 현재 보호를 실시중인 피보호자의 총수와 그 보호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산출한다

제25조(정산방법과 추가보조금)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출한 보호비용의 총액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

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의 합계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정산에 의하여 그 초과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법 제38조제1항 제4호의 비율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를 추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의 합계액중 정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그 잉여금에서 법 제38조 제1항제4호의 비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공제하고 잔여잉여금은 이를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기금 적립)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보호기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지방세 수입액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기금의 적립년한은 10년으로 하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27조(보호기금의 관리) ①지방자치단체는 보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보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보호기금은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

한다.

제 28 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활보호시설설치기준령

1969.6.4 보건사회부령 제26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보호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의 설비·피보호인원 및 피보호자의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시설의 설비·피보호인원 및 피보호자의 처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다만, 시설중 양육시설에 관하여는 아동 복리법을, 의료시설에 관하여는 의료법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설비 및 구조) ①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거 실
3. 식당·조리실·창고
4. 도서실 또는 오락실
5. 목욕실·세면장·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6. 급수 및 배수설비

7. 위험성 없는 변소

8. 등화설비

9. 소화설비

②거실의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조명·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피보호자 1인이 2.5평방미터 이상을 점하여야 하며, 1실의 정원은 8인이하이어야 한다.

4. 남녀를 같이 수용보호하는 경우에는 남녀 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5. 출입구는 비상재해의 대피에 용이하도록 공지·정원·마루 등의 가까운 곳에 설비하여야 한다.

6. 외기에 접하는 창호중 방충을 요하는 곳에는 방충망을 장치하여야 한다.

③식당과 조리실에는 채광 및 환기장치와 창호에 대한 방충망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도서실 또는 오락실에는 자유로 이용될 수 있는 신문·잡지등 및 피보호자용으로 적당한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변소의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용인원 15인까지 1개이상으로 하고, 매 15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를 증설하여야 한다.

2. 남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남자용에는 대소변기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급수설비가 우물등에 의한 지하수일 때는 그 우물이 주위 반경 6미터 이내에는 변소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수는 토관 또는 내수재료로된 하수도에 의하여야 한다.

⑦매 건물마다 1개 이상의 비상구와 소화설비를 하는 외에 경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건물·거실·변소의 출입구와 마루 등에는 야간상용등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⑨계단에는 난간을, 목욕실 및 변소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맹인을 보호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승강의 장소·출입구·마루와 거실·변소 목욕실의 출입구에는 피보호자가 손으로 만져서 식별할 수 있는 방향표시·남녀실용 및 실별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피보호인원 기준) 시설의 피보호인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직원) 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에 시설의 장, 사무원 기타 노무직원을 두어야 하며, 피보호자의 지도 및 보호에 필요한 직원은 상시 시설내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위생) ①거실·식당·조리실 및 변소와 사용중인 식기 침구 의류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위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실은 년4회 이상 소독하여야 하며, 건물 주변은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2. 식당과 조리실은 상시 소독하고 청결하여야 한다.
3. 변소는 매일 청소하고 매주 1회이상 소독 하여야 한다.
4. 식기는 사용 후 비누물로 닦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소독하여야 한다.
5. 침구는 매주 1회이상 일광소독을 하여야 하며 자주 세탁하여 항상 깨끗한 것을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의류는 항상 깨끗한 것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위생조치외에 피보호자에 대하여는 월2회 이상 목욕을 시켜야 한다.

제7조(급식위생) ①피보호자에 급여되는 식품은 변화가 있고 그 건강유지에 필요한 식품이어야 한다.

②수도 이외의 음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시 소독하고, 적어도 년2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

증표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피보호자의 식량·부식물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항상 청결하고 쥐의 피해 등이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피보호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특히 신체를 청결히 하고 식사를 조리할 때마다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 또는 화농성 창상이 있는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건강진단) ①시설의 설치자는 피보호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할 때와 입소 한후에 있어서는 연1회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강진단을 행한 의사는 진단결과를 피보호자의 기록표에 기입하고 시설의 설치자는 그 건강상태와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내 기거자) 시설내에는 시설의 장 및 직원과 그 가족 이외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10조(장부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연혁에 관한 기록
2. 재산목록과 재산의 소유권 증빙서류
3. 시설운영과 관계있는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4. 법인의 정관·시설운영규정 및 시설운영일지
5. 시설의 장과 직원의 이력서 및 사진
6. 피보호자 입퇴소 서류
7. 피보호자 명단
8.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경과·지도 및 신상에 관한 기록표
9. 시설의 수지예산서 및 결산서
10. 금전출납부·수입지출내역부 및 각종 증빙서류
11. 물품출납부
12. 보고 및 관계관청과의 문서철

제 2 장 양로시설보호시설

제11조(직원) 양로시설 및 보호시설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 외에 피보호자의 간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 3 장 재활시설

제12조(시설의 기준) ①재활시설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외에 부속의원설비와 직업보도 또는 점자등 특수교육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속의원에는 의료재활설비를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시설의 인근에 물리치료

기관이 있을 때에는 물시치료 설비의 부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 (직원) 재활시설에는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외에 의사, 간호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보도원 및 특수교육지도원을 두어야 하되, 신체장애자 재활시설에 있어서는 외과를, 정신장애자 재활시설에 있어서는 정신과를 전공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제 14 조 (재활보도) 신체장애자, 정신장애자, 맹농아자 및 기타 재활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직업보도나 특수교육지도에 있어서는 피보호자의 희망, 입소목적, 질병 치유의 정도, 경력, 직업적응성과 희 지역적 실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종목과 시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재활보도 후에는 그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결과조치) 이 영은 시행 이전에 인간 설치된 시설로서,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은, 보건사회부령 제 236 호 생활보호시설 설치기준령 시행일부터 3 년이내에 이 영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생활보호기금적립관리요령

1970. 8. 18 훈령제 121 호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생활보호법 제 39 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 시행령 " 이라 한다) 제 26 조 및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기금 (이하 " 기금 " 이라 한다) 의 적립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립시기) 시행령 제 26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년한 10 년의 기산은 1964 년도부터로 한다.

제 3 조 (기금의 적립시기) ①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에 계상된 기금전액을 당해년도중에 적립하되 적어도 그 2 분의 1 이상액을 연도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과년도분의 지방세 수입결산 결과 추가적립을 요하는 기금은 당해지방세수입결산연도의 5 월말일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예치로 인한 매년도의 이자 수입금은 당해년도 또는 익년도초에 기금으로 편입 예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적립금의 관리) ①기금과 이자수입금은 매년

누적예치하되 가급적 그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적립금의 사용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기간 중에는 기금과 이자수입금등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보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는 매년 6월말일까지 별지 서식에 의거 적립중에 있는 기금과 이자수입금등의 관리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요령은 197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예규) 1966년 12월 1일 보건사회부예규 제225호 생활보호기금 적립관리 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요령 시행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적립관리중인 기금 및 이자수입금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적립관리된 것으로 보며 미적립된 기금 및 이자수입금등은 이 요령에 의하여 추가적립을 요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으로 본다.

○○시도 생활보호기금적립관리상황보고서

19 년도분

처리 제한기한 매년 6월 30일
기표 검산 보고통제관

내역 / 구분	전년도 분지방세수입 결산액	적립 및 관리 내역										적립금의 예금종류
		전년도적립상황					현년도적립상황				합계	
		2년전년도말현재적립금총액	2년전년도기금추가적립액	2년전년도말현재적립금의이자수입금액	전년도분기금적립액	소계	전년도기금추가적립액	전년도말현재적립금의이자수입금액	현년도분기금적립액	소계		
시도분												
시군분												
계												

주의사항

1. 본 보고서는 1통을 제출한다.
2. 2년전년도말 현재 적립금총액란에는 당해년도말까지 적립된 기금과 이자에 총액을 합산 기입한다.
3. 2년전년도말 및 전년도 기금 추가적립액란과 전년도분 및 현년도분기금 적립액란에는 요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적립상황을 각각 기입한다.
4. 2년전년도말 및 전년도말 현재 적립금의 이자수입란에는 당해년도말현재 총 적립금의 년도말이자 결산수입액을 각각 기입한다.
5. 적립금의 예금종류란에는 "금전신탁" "정기예금" 등의 예금종류를 구분 기입한다.

생활보호시설 피수용 사망자 상장조처에 관한 규정

1970.8.10 예규270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생활보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양도시설, 보호시설, 재활시설의 피수용 사망자에 대한 상장조처 비용의 급부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서 및 첨부서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이 생활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조처비용의 급부를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에게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또는 연령
2. 사망자의 본적지 시설수용전의 주소지 또는 주민등록지와 주민등록번호
3. 사망자의 시설수용 년월일
4. 사망원인
5. 매장, 화장의 예정 년월일 또는 그 완료 년월일과 장소
6.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있다면 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자와의 관계

7. 유류금품의 관리상황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매장 또는 화장신고 서류 사본

3. 상장조처비용명세서(개산액 또는 실지 지출액)

4. 유류금품명세서(종류, 수량, 물품의 환가예정액 또는 매각 금액등)

③사망자가 수용되었던 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동장의 사망확인 서류로써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에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유류금품의 처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시장 군수는 생활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사망자의 유류 금품을 매각케하거나 그 매각대금 또는 유류금전, 유가증권을 상장조처에 따르는 부족비용의 일부로 사용케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1967 년 3 월 13 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災害救護法

1962. 3. 20 法律第 1034 号

第 1 條 (目的) 本法은 非常災害가 발생하였을때에 応急的인 救護를 行함으로써 災害의 復旧, 罹災民의 保護와 社会秩序의 維持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救護의 対象) 本法에 依한 救護는 旱害, 水害, 火災, 其他의 災害로 因하여 同一한 地域内에서 多数의 罹災者가 発生하여 応急的인 救護의 必要가 있을때에 이를 行한다.

第 3 條 (救護機関) ①救護는 罹災者의 現在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行한다.

②서울特別市 또는 救護의 萬全을 期하기 為하여 이에 関한 必要한 計劃의 樹立과 救護組織을 確立하여 常時 災害豫防措置를 取하는 同時에 災害가 発生하였을때에는 迅速히 救護하여야 한다.

第 4 條 (災害救護対策委員会) ①本法에 依한 災害救護事業의 企劃調査 其他救護実施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을 審議하게하기 為하여 保健社会部와 서울特別市, 道에 各各 災害救護対策委員会를 둔다.

②災害救護対策委員会의 組織, 運営, 審議事項의 範囲 其他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5 條 (救護의 種類) ①救護의 種類는 다음과 같다.

1. 收容施設 (応急仮設住宅을 包含한다) 의 提供.

2. 給食 또는 食品, 衣類, 寢具, 学用品 其他生活必需品의 給与

3. 医療 및 助産

4. 罹災者의 救出

5. 罹災住宅의 応急修理

6. 生業에 必要한資金, 器具또는 資材의 給与나貸与

7. 生業斡旋

8. 葬事

9. 其他 保健社会部長官이 指定하는 事項

②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지 아니하고 罹災者에게 現金을 支給하여 이를 救護할 수 있다.

③救護의限度, 方法및 期間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6 條 (協助義務) ①大韓赤十字社 및 救護関係団体는 本法에 依하여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行하는 救護에 協助하여야한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大韓赤十字社로 하여금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行하는 救護에 関하여 地方自治団体

以外의 団体 또는 個人이 行하는 協助를 連絡調整케 한다.

第 7 條(土地또는建物의使用) ①서울特別市 또는 道는 救護를 実施하기 為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他人의 所有에 属하는 土地또는 建物等을 使用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미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 그 承諾을 얻어야 한다.

③土地또는 建物의 所有者나 占有者는 正当한 事由없이 前項의 規定에 依한 承諾을 拒絶하지 못한다.

④第 1 項의 規定에 依한 使用으로 因하여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받은 損失에 対하여는 当該 서울 特別市 또는 道가 相当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第 8 條(現場調査) ①서울 特別市 또는 道는 前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他人의 土地 또는 建物을 使用하기 為하여 必要할 때에는 関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当該 土地또는 建物을 調査하게 할수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미리 所有者또는 占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第 1 項의 境遇에 関係公務員은 그 権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9條(協力要求) ①서울特別市 또는 道는 救護를 行하기 為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医療土木, 建築또는 運送을 業으로하는 者에게 救護에 関한 協力을 要求할 수 있다.

②医療, 土木, 建築또는 運送을 業으로 하는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要求를 받았을 때에는 正当한 事由없이 이를 拒絶하지 못한다.

③서울特別市 또는 道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救護業務에 協力하는 医療. 土木, 建築또는 運送을 業으로하는 者에게는 相当한 費用을 支辨하여야한다.

第10條(住民等의 協力) 罹災者와 그 近隣居住者는 救護에 関한 業務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11條(救護業務의委任) ①서울特別市또는 道는 救護의 迅速을 期하기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救護業務의 一部를 区(서울 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또는 市, 郡에 委任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道는 그 委任한 救護業務에 必要한 費用을 市, 郡에 交付하여야 한다.

第12條(救護業務의委託) ①서울特別市 또는 道는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救護業務의 一部를 大韓赤十字社에 委託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서

을 特別市또는 道는 그 委託한 救護業務에 所要된 費用을 大韓赤十字社에 支辨하여야 한다.

第13條(救護費用의 支辨) 第5條의 規定에 依한 救護費用(事務費用을 包含한다)는 当該 서울特別市長또는 道가 支辨한다.

第14條(国庫負担) 政府는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第7條 第4項, 第9條 第3項, 第12條 第2項 및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支辨하는 損失補償金, 実費辨償金手当, 委託費用과 救護費用(以下 救護経費라 한다)의 100分의 70에 該当하는 金額을 負担한다. 但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現金에 갈음하여 当該金額에 相当하는 現物로서 負担할 수 있다.

第15條(地方 自治団体의 災害救護 基金의 積立) 서울特別市와 道는 救護의 支辨財源에 充当하기 為하여 每年 災害救護基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第16條(地方 自治団体의 災害救護基金의 最低積立額)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災害救護基金의 每年度最低積立額은 前 3年間에 있어서의 地方税法에 規定된 普通税의 收入決算額의 平均年額의 千分의 5에 該当하는 金額으로 한다. 但 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千分의 2.5에 該当하는 金額으로 한다.

②서울特別市와 道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積立된

基金의 範囲内에서 本法에 依한 救護経費의 100分의 30을 限度로 負担한다.

第17條(收入金의 編入) 災害救護 基金에서 생기는 收入은 그 全額을 災害救護基金에 編入하여야 한다.

第18條(罰則)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5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7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자
2.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関係公務員의 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者
3.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者
4. 許偽其他 不正한 方法으로 本法에 依한 救護를 받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救護를 받게한者

第19條(施行令) 本法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 第14條乃至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負担金과 積立金에 関한 事項은 1963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재해구호법시행령

1962. 12. 12각령 제1072호
개정 1970. 3. 14대통령령 제4735호

제1조(구호의 대상)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적인 구호의 필요가 있을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기타의 시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군에 있어서는 20세대이상의 이재자가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경우.
2. 동일지역내에서 동시에 집단적으로 백명이상의 이재자가 발생한 경우
3. 기타구호기관이 특히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조(재해구호대책위원회)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재해 구호대책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지방재해구호대책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총칭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과 부위

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 지방위원회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③부위원장은 중앙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하고 지방위원회에 있어서는 그 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국방부, 농림부, 문교부, 재무부, 건설부, 체신부, 교통부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사무총장, 금융기관대표와 구호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 자로하며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계국장 및 대한적십자사지사장, 금융기관대표와 구호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직무) 각 위원회는 재해의 예방, 긴급구호와 재해복구에 따르는 물자나 자금조달 또는 인력의 동원등에 관한 계획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 7 조 (회의) 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8 조 (의사)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9 조 (직원) ①각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당해보건사회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10 조 (구호기간) 법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간은 이재자의 피해정도와 생활정도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그 기간은 3 월이내로 한다.

제 11 조 (구호의 신고) ①이재자중 구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호기관은 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7 일이내의 구호를 실시한다.

1. 가족수

2. 피해정도

3. 구호를 받고자하는 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구호기관은 지체없이 그 신고된 사항에 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구호결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수용시설의 제공) 법 제 5 조제 1 항제 1 호에 규정된 수용시설의 제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재자를 공공시설 기타천막등에 임시거처하게 함을 말한다.

1. 이재자가 재해로 인하여 그 거소를 상실하여 기거할 곳이 없게된 경우

2.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어 사전대피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 13 조 (급식 및 기타구호품의 급여한도) 법 제 5 조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급식 및 구호품의 급

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급식은 1일 1인당 주식용양곡 3합과 부식대 9원을 한도로 한다.

2. 기타의 구호품은 피해의 정도 및 가족수를 감안하여 급여한다.

제 14 조 (의료 및 조산) 법 제 5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 및 조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재해로 인한 부상자 및 질환자에 대하여는 보건소, 기타 구호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가료하게 한다.

2. 이재자인 임산부에게 그 구호기간중 조산비로서 1인당 천원을 급여한다. 다만, 구호기관이 전호의 의료기관에 입원시킨 자는 이를 급여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이재주택의 응급수리대상) 법 제 5 조제 1 항제 5 호에 규정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대상자는 재해로 인하여 직접기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괴, 소실 또는 유실되어 그 수리에 자재를 소요하게 된 자로서 자력으로 수리할 능력이 없는 자로 한다.

제 16 조 (이재주택의 응급수리한도)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재주택의 응급수리에 있어서의 보조한도는

주택의 100의 80이상이 파괴·소실 또는 유실된 대상자에게는 3만6천원 주택의 100의 25이상 80미만이 파괴, 소실 또는 유실된 대상자에게는 1만4천원을 한도로 각각 그에 상당하는 주택수리 용자재 또는 소요자재 대금을 보조한다.

<개정 1970. 3. 14. 대통령령 4735>

제17조(생업자금 및 생업기구의 급여) 재해로 인하여 생활방도가 없게된 이재자에게는 그 정상에 따라 1세대당 만원을 한도로 생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구를 급여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제18조(사망자에 대한 장사)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연고자에게 장사비로 일구당 3천원을 급여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때에는 구호기관에서 장사한다.

제19조(토지 또는 건물의 손실보상범위)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보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하게된 경우 그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파괴된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었거나 감소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파괴된 부분의 복구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

제20조(손실보상의 청구)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사유와 그 정도

2. 청구액(내역첨부)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고자 할때에는 당해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1조(의료, 운송, 토목, 건축업자 등에 대한 실비지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이재자를 치료하거나 입원하게 하는 의료업자에게는 시약 실비 또는 입원비를 지변하되, 동원되는 의료업자와 간호원에게는 상당액의 일당과 시약 실비를 지변한다.

2. 운송업자에게는 수송실비를 지변한다.

3. 기타 구호업무에 동원되는 인부에게는 80원 이내의 일당을 지변한다.

제22조(구호업무의 위탁 범위) ①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할 수 있는 구호업무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된 구호업무에 한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상황과 구호실시 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재해구호 기금의 관리) ①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 기금은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災害救済로 인한 義死傷者救護法

1970.8.4法 第2216号

第1条(目的) 이 法은 他人의 危害를 救済하다가 身體의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한 者의 遺族을 救護하기 위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定義) ①이 法에서 "義死者"라 함은 職務외의 行為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済하다가 死亡한 者와 義傷者로서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義傷者"라 함은 職務외의 行為로서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의 急迫한 危害를 救済하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身體의 傷痍를 입은 者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義死遺族"이라 함은 義死者의 配偶者·未成年子女·父母 또는 祖父母중 第4条의 規定에 의한 義死傷者 審査委員会에서 義死者의 遺族으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第3条(適用範囲) 이 法은 다음 各号의 경우에 適用된다.

1. 自動車·汽車 기타 乘用物의 事故 또는 기타의 理由로 危害에 処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

를 救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2. 他人의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窃盜 또는 強盜를 逐出하거나 逮捕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3. 天災地変 기타 水難·火災·建物의 倒壞·築臺의 崩壞 등으로 인하여 危害에 処하여진 他人의 生命 또는 身體를 救하다가 義傷者 또는 義死者가 된 때

第4条(義死傷者 審査委員会) ①義傷者와 義死者 遺族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에 義死傷者 審査委員会를 둔다.

②義死傷者 審査委員会(이하 "委員会"라 한다)는 審議에 必要한 때에는 関係者를 召喚하거나 調査할 수 있으며 国家 또는 公共団體에 대하여 関係事項의 보고 또는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③委員会의 組織과 運営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条(報告) ①第3条各号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한 때에는 管轄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지체없이 保健社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

은 때에는 5日 이내에 委員会에 그 事実을 回付하여 審議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6条(義傷者 및 義死者 遺族救護) 義傷者 및 義死者 遺族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生計救護, 医療救護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救護를 実施한다.

第7条(未成年인 子女의 教育保護) 義死者 및 勤労能力을 상실한 義傷者의 未成年인 子女에 대하여는 그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教育保護를 実施한다.

第8条(葬礼費補助)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葬礼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하여야 한다.

第9条(救護機関) 第6条 및 第7条의 規定에 의한 救護의 実施는 管轄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가 행한다.

第10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시행령

1971.1.18 대통령령 제 5483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상자의 범위 및 구분) 법 제 2 조제 2 항에 규정하는 의상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자를 말하며, 의상자는 그 상이의 정도에 따라 1 등급·2 등급·3 등급으로 구분한다.

제 3 조 (의사상자의 발생보고) 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의사상자의 발생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의상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해의 종류 및 발생년월일
2. 의사상자의 주소·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3. 의사상자의 구분 및 상이등급
4.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의 유무
5. 구호를 요하는 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 및 의사상자와의 관계

6. 구호를 요하는 사유 및 구호의 종류

제4조(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구호) ①의상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 및 의료구호를 의사자유족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생계구호를 각각 실시한다.

③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계구호신청서 또는 의료구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 호적등본 1통

3. 진단서(의상자에 한한다) 1통

제5조(생계구호) 구호기관이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구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호의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때까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생계구호를 하여야 한다.

1. 구호를 요하는 자 1인당 1일 양곡 300그람과 부식비 9원을 급양비로 지급한다.

2. 구호를 요하는 자의 수를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책정한 금액을 매월 의류비·광열비 기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한다.

제 6조 (의료구호) ①구호기관이 제 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구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상자로 하여금 구호기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의 치료에 소요되는 진료비는 당해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제 7조 (교육보호) ①구호기관은 의사자 또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의상자의 미성년인 자녀로서 중학교·고등학교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학비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경우 연 7,000 원

2.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경우 연 9,600 원

②전항의 교육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 통

2. 호적등본 1 통

제 8조 (장례비보조) 구호기관은 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의 보조로서 의사자 1구당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일시보상금) 구호기관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생계구호·의료구호 및 교육보호에 갈음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경우 500,000원
2. 의상자인 경우
   1등급 300,000원
   2등급 250,000원
   3등급 200,000원

제10조(의사상자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은 위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하며, 기타의 위원은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재해구호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 14 조 (위원수당) 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위원회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6 조 (시행세칙)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보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의사상자신체상이등급표

1등급

1) 양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4) 3지이상의 상실 또는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 양 상지가 완관절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6) 양 하지가 슬관절이상 상실된 자

7) 양 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8) 양 하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9) 10손가락 및 편지가 족관절 이상 각각 상실된

자

10) 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1) 편상·하지가 공히 상단에서 상실되어 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2등급

1) 언성기관 및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2) 반신불수가 된 자

3) 1사지가 주관절이상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흔·단축 또는 강직으로 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4) 양 하지가 족관절이상 상실된 자

5) 1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06이하 또는 양안의 시력이 0.06이하인 자(교정시력)

6) 고막의 전부의 결손 기타로 인하여 양이의 기능이 전폐된 자

7) 언성기관 및 음식물 씹는 기관의 사용력이 상실된 자

8)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9)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종신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10) 1상·하지가 상실 또는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1) 양 하지의 족관절이상 사용이 전폐된 자

12) 양 상지의 완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3) 10손가락의 상실 또는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4) 1하지가 슬관절이상 상실되고 환부의 심한 상흔·단축 또는 갱직으로 의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15) 뇌골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16) 1상지의 수장부이상이 상실되고 편상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17) 1상지가 완관절이상 상실되고 1하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18) 양 하지중 1족부 및 편하지가 슬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

19) 양족부 및 편상지가 완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

20) 외안에 현저한 추상을 남기고 양외이 및 코가 변형 또는 상실된 자

21) 쇠골·견골 및 전척추가 현저하게 갱직 또는 전만된 자

22)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 불완전이 있는 자

23) 편하지가 족관절이상 상실되고 편하지고관절이의 슬 및 갱직된 자

24) 편하지의 사용이 전폐되고 동측 좌골 또는 신경의 손상으로 정상좌위가 불가능한 자

3등급

1)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된 자

2) 편상지의 주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늑 위축 또는 신경이 마비된 자

3) 1상하지의 3대관절중 각 1관절에서 상실된 자

4) 1상지가 주관절이상 상실된 자

5) 1하지가 슬관절이상 상실된 자

6) 1상지 또는 1하지의 사용이 전폐된 자

7) 편하지의 슬관절 이하 또는 이상에서 늑위축 또는 신경이 마비된 자

8) 전척추가 갱직된 자

9) 음성기관 및 음식물 씹는 기관에 지장을 받는 자

10) 1하지의 완관절이상 상실된 자 또는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1) 1하지의 족관절이상 상실된 자 또는 그 사용

이 전폐된 자

12) 10개의 발가락이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13) 고막의 전부가 파열 및 기타로 인하여 양이의 기능이 0.1미터 이상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자

14) 1상지 또는 1하지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사용이 전폐된 자

15) 양족부가 상실된 자

16)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경노무만이 가능한 자

17) 흉복부 장기의 결손으로 경노무만이 가능한 자

18) 신경에 장애를 주어 경이한 노무 이외는 종사치 못하게 된 자

19) 1안이 실명되고 타안의 시력이 0.3이하인 자 (교정시력)

20) 양안중 1안시력이 0.06이하 및 타안시력이 0.1인 자

21) 1수장부 또는 족부가 상실된 자

22) 1수4개의 손가락이 상실된 자

23) 1수장부 또는 족부기능이 상실된 자

24) 1안이 실명된 자

25)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게 된 자

軍事援護報償法〔1961. 11. 1 法律第758号〕

改法 1962.12.24 法律第1230号
1963. 4.11 法律第1323号
1963. 8. 7 法律第1390号
1963.12.16 法律第1614号
1967. 3.30 法律第1946号
1968. 7.10 法律第2026号
1974.12.24 法律第2726号
1975.12.31 法律第2887号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軍事援護対象者의 保護와 그 犠牲에 対한 報償에 関한 基本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68.7.10 法2026〉

第2条(適用対象者) ①이 法의 適用対象者는 다음과 같다. 〈改正 68.7.10 法2026〉

1. 除隊軍人
2. 傷痍軍警
3. 戦歿軍警의 遺族

②第1項第3号의 戦歿軍警의 遺族이 戸籍과 相違할 때에는 援護処長은 事実上의 適用対象者를 決定할 수 있다.

第3条 削除

第4条(対象의 区分) 이 法의 適用対象者는 軍事援護의 目的에 따라 다른 法律에 依하여 区分하여 保護 또는 報償(이하 "援護"라 한다)한다.

〈改正 68.7.10 法2026〉

第5条(定義) ①이 法에서 "除隊軍人"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兵으로서 兵役法·軍人事法 기타 法令에 의한 現役義務服務期間을 마치고 転役된 者.

2. 将校·准士官 또는 下士官으로서 軍人事法 기타 法令에 의한 義務服務期間을 마치고 転役된 者.

②이 法에서 "傷痍軍警"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傷痍程度가 極甚하여 他人의 介護없이 活動이 不可能한 者를 1級 傷痍者로, 傷痍程度가 重하여 活動에 甚한 障碍가 있는 者를 2級傷痍者로, 傷痍로 인하여 身体의 機能障碍가 있는 者를 3級傷痍者로 하고 援護処長이 実施하는 身体検査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傷痍区分에 해당하는 身体의 障碍를 입은 者를 말한다.

〈改正 74.12.24 法2726〉

1. 軍人으로서 戦闘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公務上

의 疾病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転役·退役 또는 免役된 者.

2. 軍属으로서 1959年12月31日 이전에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傷痍를 입고 退職된 者.

3. 警察官으로서 1959年12月31日 이전에 戰鬪 또는 対共作戰에 參加하여 傷痍를 입고 退職된 者.

③이 法에서 "戰歿軍警"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軍人으로서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死亡한 者.

2. 軍属으로서 1959年12月31日 이전에 戰鬪 또는 公務遂行중 死亡한 者.

3. 警察官으로서 1959年12月31日 이전에 戰鬪 또는 対共作戰에 參加하여 死亡한 者.

4. 第2項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

④이 法에서 "戰歿軍警의 遺族"이라 함은 戰歿軍警의 死亡当時 그와 親族関係에 있던 者(第2号중 死後養子의 경우에는 入養当時 그와 同姓同本인 者)로서 現在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74.12.24 法2726〉

1. 妻

2. 未成年인 子女(直系卑屬이 없는 경우에는 戶主相續을 위한 未成年인 死後養子).

〈改正 74.12.24 法2726〉

3. 父母

4. 成年男子인 直系卑屬이 없게된 祖父母

5. 60歲未滿의 男子 또는 55歲未滿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게된 未成年 弟妹(妹에 있어서는 出嫁한 者를 除外한다). 다만, 成年男子인 兄이 있더라도 軍에 服務중인 때에는 그 服務期間중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60歲未滿의 男子 또는 55歲未滿의 女子인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있더라도 그들이 心身障碍로 인하여 生活能力이 없거나 그 兄이 軍에 服務중인 때에는 兵役法에 의한 現役義務服務期間중에 限하여 直系尊屬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것으로 본다. 〈改正74.12.24 法2726〉

⑤이 法에서 "戰歿軍警의 遺子女"라 함은 第4項第2号 및 第5号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⑥이 法에서 "傷痍軍警의 子女"라 함은 傷痍軍警의 未成年인 子女를 말한다. 다만, 養子(親生 子

女가 없는 때에 限한다)인 경우에는 戶主相続先順位者 1人에 限한다. 〔全文改正 68.7.10 法2026〕

第6条(援護対象者의 登録등) ①第2条第1項第2号 및 第3号에 해당하는 者로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法律이 規定하는 援護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住所地를 管轄하는 地方援護支庁에 登録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2726〉

②〈削除 74.12.24 法2726〉

第2章 国家報償

第7条(年金 支給) 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族에 対하여는 따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年金을 支給한다. 〈改正 74.12.24 法2726〉

第8条(手当등 支給) 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族에 対하여는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諸手当 기타 給与金을 支給한다. 〈改正 74.12.24 法2726〉

第9条(戰歿軍警의 遺子女등의 保護) 戰歿軍警의 遺子女, 傷痍軍警 및 傷痍軍警의 子女에 対하여는 따로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保護를 実施한

다. 〔全文改正 68.7.10 法2026〕

第10条(職場의 斡旋) ①이 法의 適用対象者에 対하여는 따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職場을 斡旋한다. 〈改正 68.7.10 法2026〉

②傷痍軍警·傷痍軍警의 子女·戦歿軍警의 妻 및 戦歿軍警의 遺子女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職業輔導技術 教育을 実施할 수 있다. 〈改正 74.12.26 法2726〉

③職業訓練法에 依하여 公共職業訓練 또는 私立職業訓練으로 労動庁長의 認定을 받아 職業訓練을 実施하는 者와 職業訓練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依하여 職業訓練을 実施하는 事業主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의 範囲안에서 第2項에 規定된 者중 援護処長이 労動庁長과 協議하여 추천하는 者를 그 職業訓練対象者에 優先的으로 包含시켜야 한다. 〈新設 75.12.31 法2887〉

第11条(輸送施設의 利用) 傷痍軍警에 対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陸路·海路·空路의 輸送施設을 無料 또는 그 運賃을 割引하여 利用하게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2026〉

第12条(租税等免除) 이 法에 依한 年金·諸手当 기타 給与金에 対하여는 租税 其他의 公課金을 免除한다. 〈改正 68.7.10 法2026,74.12.24法2726〉

第13条(定着事業) 이 法의 適用対象者는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定着貸付를 받을 수 있다.
〔全文改正 68.7.10 法2026〕

第14条(賦役의 免除) 傷痍軍警 및 戦歿軍警의 遺族에 対하여는 賦役을 免除한다.

第14条의2(公演의 観覧) 傷痍軍警에 対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가 主催하는 公演을 無料 또는 그 料金을 割引하여 観覧하게 할 수 있다.
〔本条新設 68.7.10 法2026〕

第3章 加療保護

第15条(加療) ①傷痍軍警으로서 転役·退役·免役 또는 退職의 原因이 된 傷処의 加療가 継続 必要하거나 그 傷処가 再発되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医療施設에서 加療를 받을 수 있다.
〈改正 68.7.10 法2026,74.12.24 法2726〉

②第 1 項의 加療는 国家医療施設以外의 医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 2026, 74.12.24 法 2726 〉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団体의 医療施設에서 加療한 경우의 治療費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一部를 国家가 負担하며,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委託加療費는 国家가 負担한다.

〈新設 74.12.24 法 2726 〉

第 16 条(静養) 傷痍軍警으로서 身体的条件으로 因하여 活動이 不可能하고 縁故者가 없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静養施設에서 静養을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 2026 〉

第 17 条(収容保護) 傷痍軍警으로서 公共秩序에 支障을 招来할 憂慮가 있는 者에 対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収容保護를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 2026 〉

第 18 条(養老保護) ①第 2 条第 1 項第 2 号 및 第 3 号에 해당하는 者로서 60 歳以上이 된 男子 또는 55 歳以上이 된 女子中 扶養義務者가 없거나 기타 援護処長이 養老保護를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者는 養老施設에 収容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26〉

②〈削除 68.7.10 法2026〉

第19条(養育保護) 戰歿軍警의 遺子女 및 傷痍軍警의 子女로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養育施設에 收容할 수 있다.

1. 保護者가 없거나 保護者를 離脫한 者
2. 保護者가 養老施設에 收容된 者
3. 其他 援護処長이 養育保護를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者

〔全文改正 74.12.24 法2726〕

第4章 雜 則

第20条(戶籍変動의 報告) 区庁長 또는 市, 邑, 面의 長은 傷痍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族의 戶籍上의 変動이 있을 때에는 遲滯없이 援護処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1条(司法警察官吏의 職務執行) ①援護処 또는 그 所属機関의 公務員은 第15条 乃至 第19条의 規定에 依한 施設内에서 発生하는 犯罪에 関하여 4級以上의 公務員은 司法警察官의, 5級公務員은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公務員은 援護処長의 提請

에 依하여 勤務地를 管轄하는 地方檢察庁檢事長의 指名을 받아야 한다.

第22条(援護団体組織의 禁止) ①軍事援護를 目的으로 하는 団体의 組織이나 団体的 또는 個人的인 援護活動은 이를 禁止한다. 다만, 善意의 援護行為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어떠한 団体든지 그 団体의 名称에 軍事援護対象者의 称号나, 軍事援護対象者의 称号로 誤認될 우려가 있는 用語를 使用하지 못한다.

〈新設 63.4.11 法1323〉

第23条(罰則) ①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虚偽의 供述, 偽計其他의 方法으로 本法의 適用対象者로 造作한 者
2. 第1号의 方法으로 保護 또는 報償을 받은 者
3. 第22条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改正 63.4.11 法1323〉

②第1項의 未遂犯은 이를 処罰한다.

③第1項第2号 및 第3号의 境遇에 収受한 報償金品은 이를 没収한다. 다만, 没収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価額을 追徵한다.

第23条의2 (同前) 第22条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本条新設 63.4.11 法1323〕

第24条 (援護等의 停止) ①援護処長은 이 法의 適用対象者中 軍事援護의 法令 또는 그 法令에 依하여 発한 命令에 違反한 者에 対하여는 1年以下의 範囲内에서 期間을 定하여 一切의 援護를 停止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2026〉

②이 法의 適用対象者가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刑이 執行中인 때에는 그 期間中 一切의 援護는 停止된다. 〈改正 68.7.10 法2026〉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援護가 停止된 者가 戦歿軍警의 遺族인 境遇 当該遺族中 未成年子女 또는 未成年弟妹가 있을 때에는 그 停止期間中 年金은 次順位者에게 支給한다.

第25条 (援護委員会) ①援護에 관한 중요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援護処에 援護委員会를 둔다.

②援護委員会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委員 11人以内로 構成한다.

③委員長 및 委員은 援護에 관한 学識과 経験이

있는 者중에서 援護処長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63.12.26 法1614〉

④委員長 및 委員은 常任으로 한다.

⑤委員長과 委員의 資格·待遇 및 援護委員会의 運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68.7.10 法2026〉

〔全文改正 63.8.7 法1390〕

第25条의2(援護委員会의 審議事項) 援護委員会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審議한다.

1. 第24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援護停止의 審査에 관한 事項

2. 기타 援護処長 또는 委員 3人以上이 提出하는 援護에 관한 事項

〔本条新設 63.8.7 法1390〕

第25条의3(従軍者에의 準用)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法律의 規定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1. 軍事的 目的으로 外国에 派遣된 軍属 및 公務員으로서 戦闘 또는 軍作戦上의 職務遂行中에 傷痍를 입은 者 또는 死亡한 者(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의 遺族

2. 政府의 承認을 얻어 戰時 또는 事変時에 戰闘 또는 軍作戰에 従軍하는 記者나 国軍과 함께 外国에 派遣되어 戰闘 또는 軍作戰에 従軍하는 記者로서 그 戰闘 또는 軍作戰에 従軍중 傷痍를 입은 者 또는 死亡한 者의 遺族

〈新設 68.7.10 法2026〉

第26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8.7.10 法2026〉

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軍事援護法과 警察援護法은 이를 廃止한다.

附 則 〈62.12.24 法1230〉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1959年12月31日 이전에 戰時勤労動員法에 依하여 動員된 者, 青年団員, 郷土防衛隊員, 消防官, 義勇消防官, 其他愛国団体員으로 軍警과 行動을 같이하여 戰闘 또는 戰闘에 準한 行為로 因하여 傷痍를 받은 者 또는 死亡한 者의 遺族은 本法에 規定된 傷痍軍警 또는 戰歿軍警의 遺族으로 본다. 〈改正 68.7.10 法2026〉

附　　則 〈 63.4.11 法 1323 〉

①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이 法 施行当時 第22条第2項의 規定에 該当하는 団体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内에 그 名称을 変更하여야 한다.

附　　則 〈 63.8.7 法 1390 〉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63.12.16 法 1614 〉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 67.3.30 法 1946 〉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 68.7.10 法 2026 〉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第2条第1項第2号 및 第3号에 該当하는 者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第6条第1項의 登録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法律이 規定하는 援護를 하지 아니한다.

③(同前) 이 法 施行当時 다른 法令에서 傷痍軍警의 傷痍区分을 表示한 "看護対象者"는 "1級"으로, "就業不能者"는 "2級"으로, "就業可能者"는 "3級"으로 본다.

附 則 〈74.12.24 法 2726〉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4.12.24 法 288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未登録援護対象者에 대한 特別措置) 第2条第1項第2号 및 第3号에 該当하는 者중 이 法 施行日까지 第6条의 登録을 하지 아니한 者는 法律第2,026号(1968年7月10日) 附則 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 法에 의한 援護를 받을 수 있다.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1969. 10. 7 대통령령제4124호〕

개정 1970. 6 .12 대통령령제5030호
1974.12 .31 대통령령제7498호
1975. 8 .14 대통령령제7726호
1976. 1 .10 대통령령제7946호

제1조(원호대상자의 등록) 군사원호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적용대상자"라 한다)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때는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이군경등록신고서, 동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유족등록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장(이하 "관할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74.12.31 대령 7498〉

1. 전공사확인증 또는 전공상확인증(이하 "전공사상확인증"이라 한다).
2. 호적등본

3. 삭제 〈 70.6.12 대령 5030 〉

4. 사망진단서, 사망경위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 (법 제 5 조제 3 항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5. 주민등록표등본

제 2 조 (호적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 ①적용대상자는 호적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호적변동신고서에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적용대상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주소변경신고서에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실상의 적용대상자확인신청) 법 제 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몰군경의 유족이 그 호적과 상이하여 사실상의 적용대상자로 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군사원호대상자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청장을 거쳐 원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진술서

3.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 4 조 (사실상의 적용대상자결정) 원호처장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의 적용대상자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70.6.12 대령 5030 〉

제 4 조의 2 (상이사망자의 인정) 법 제 5 조제 3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자 (상이군경의료규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의 인정은 원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호처장이 행한다. 〈 개정 74.12.31 대령 7498 〉

〔 본조신설 70.6.12 대령 5030 〕

제 5 조 (전공사상확인통보) 국방부장관은 전공사상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호처장에게 통보하되, 전공상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세부기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정 75.8.14 대령 7726 〉

제 6 조 (정의) ①법 제 5 조제 2 항제 1 호에서 "공무상의 질병"이라 함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공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 5 조제 3 항제 4 호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상이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의3 제2호에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라 함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종군의 승인을 받은 기자로서 군의 작전지역에서 전투 또는 군작전의 취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5조제4항제5호 단서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구분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정신박약·질병등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74.12.31 대령7498〉

제7조(생활무능력자의 인정등) ①법 제5조제4항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몰군경의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고자 하는 전몰군경의 미성년제매는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의 심신장애로 인한 생활무능력 또는 형의 군복무중인 사실에 관하여 원호처장의 인정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생활무능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생활무능력자인정신청서를 관할지청장을 거

쳐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호처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남자인 형의 군복무확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복무확인신청서에 관할 병무청장이 발행한 입대확인증을 첨부하여 관할지청장을 거쳐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는 군에 복무중인 형이 제대한 때에는 그 형이 제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청장에게 제대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4.12.31 대령7498〕

제8조(구청장등에의 통보) 관할지청장은 적용대상자의 등록이 끝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원호대상자 통지서를 그 적용대상자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대상자의 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은 적용대상자의 호적의 난외에 "원호대상자"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청장등의 보고사항)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시·읍·면의 장이 원호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몰군경의 유족이 사망·제적·개명 또는 실종신고를 받은 때

2. 상이군경 또는 그의 미성년자녀가 사망·제적·개명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때

3. 적용대상자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때

제10조의2 (직업보도기술교육) 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은 다음의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6〉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을 알선하는 경우에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직업보도 교육

2. 자립하기 위한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기술교육

3. 전몰군경의 유자녀, 상이군경 및 상이군경의 자녀에게 장차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교육

②제1항의 직업보도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이하 이 조에서 "직업보도기술교육"이라 한다)은 국립원호원직업보도소 또는 국립직업재활원기술교육소에서 실시하거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행하여야 할 자가 실시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6〉

③직업보도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직업보도기술교육희망신청서를 관할지청장을 거쳐 관할지방원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직업보도기술교육희망신청서를 받은 관할지방원호청장은 당해 신청인의 직업보도기술교육실시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직업보도기술교육의 교육기간·교육과목 및 교육비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74.12.31 대령 7498〕

제10조의3(공동직업훈련소 등의 직업훈련)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의 직업훈련인

원비율은 그 직업훈련대상자 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원호처장은 매년도초에 노동청장과 협의하여 수립한 원호대상자 직업훈련계획을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원호처장이 직업훈련을 받을 원호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 직업훈련계획에 따라 직업훈련희망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직업훈련대상자 추천서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자에게 송부하고 관할지방원호청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10 대령7946〕

제11조(공연의 관람) ①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을 상이군경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자(동반한 간호원 1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료로, 3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요금의 5할을 할인하여 관람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을 무료 또는 그 요금을 할인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지청장이 발급하는 무료관람확인증 또는 관람료 할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료관람확인증 또는 관람료 할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제11조의2 (종군기자의 승인절차) 법 제25조의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또는 군작전에 종군하는 기자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70.6.12 대령 5030〕

제12조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원호정책 또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타 덕망이 있고 원호행정에 관한 조예가 깊은 자

제13조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당연퇴직 및 직권면직) 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요건을 결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장기요양을 필요로 할 때.
2.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위원의 정원에 과원이 생기거나 폐직될 때.
3.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심히 태만할 때.

제15조(대우) ①위원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공무원 1급 해당자가 받는 보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8, 76.1.10 대령 7946〉

②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반직공무원 2급 갑류 해당자가 받는 보수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8, 76.1.10 대령 7496〉

제 16 조 (회의 소집)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원호처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19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는 원호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원호처장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보고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없이 원호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법 제25조의2 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 의결할 때에는 원호를 정지하고자 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인이 문서로써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이상 불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가 법 제25조의2 제1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심사의결서에 주문과 이유를 기재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원호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원호정지여부를 결정하고, 원호를 정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원호정지결정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0.6.12 대령 5030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4.12.31 대령 749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5.8.14 대령 772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6.1.10 대령 7946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개정 74.12.31 대령 7498〉

원호번호		상이군경등록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①본적			③보상금 지급 기간	
②주소				
④주민등록번호		⑤성명	⑥ . . . 생	
⑦군별	⑧계급	⑨군번	⑩입대 일자	⑪제대 일자	⑫제대당시소속	
전공상 확인증	⑬발급번호		⑮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일시 퇴직금 또는 상이연금수령 여( ) 부( )	⑯상이처	급 호	
	⑭발급일자					
상훈관계	⑰훈격		⑱수령일자			

⑲학력		⑳경력		㉑자격	㉒면허	㉓비고
부터 까지		부터 까지				
〃 〃		〃 〃				
〃 〃		〃 〃				

취업희망	㉔직종	(1)	(2)	㉕취업희망 년도	구입( ) 구입( ) 구입( )
		(3)	(4)	년도	농장 주택 사업체
					확장( ) 신축( ) 전세( )

직업보도기술교육	㉗희망 여( ) 부( )	㉘희망과목	
㉙보철구장착	여( ) 부( ) 19 년도	㉚장착중인 제작비	국 고( ) 자 비( )

	㉛관 계	㉜주민등록번호	㉝성 명	㉞생년월일	㉟학력	㊱관계	㊲주민등록번호	㊳성 명	㊴생년월일	㊵학 력
가족사항										

㊶ 비 고

0703-2-1A-1
1971.12.21 승인

190㎜×268㎜백상지 60 g/㎡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성명 ㊞

원 호 처 장 귀 하

지 방 청		
담 당 자	과 장	청 장

구 비 서 류

1. 전공상 확인증 원본 2. 호적등본 2통

3. 주민등록표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4. 신고인의 증명용사진 4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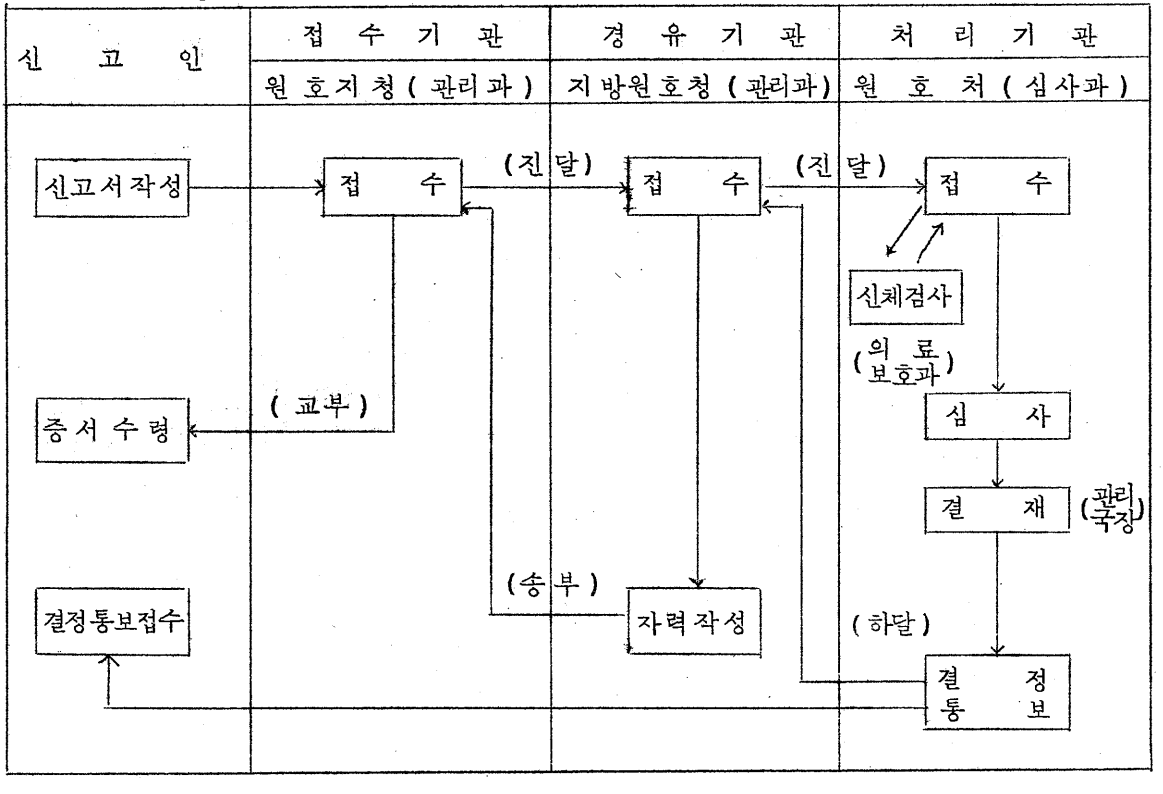

〔별지 제 2 호서식〕〈개정 74.12.31 대령 7498〉

유 족 등 록 신 고 서

처리기간
20 일

신고인	①주민등록번호		②　.　.　.생		③군별		④계급		⑤군번	
	⑥성명		⑦입대일자		⑧전사일자		⑨전사당시소속			
	전공사확인증	⑩발급번호		⑫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에 의한 일시 퇴직금 또는 유족 연금수령 여(　) 부(　)						
		⑪발급일자								
	상훈관계	⑬훈격		⑭수훈년월일						
유족	⑮본적					⑰보상금지급기산				
	⑯주소									

연금수	⑱고인과의관계	⑲주민등록번호	⑳성명	㉑생년월일	㉒학력	경력 ㉓사항	경력 ㉔년한	㉕직업	㉖자격면허	㉗수용보호희망여부

족	권자 및 기타가족									
사	유자녀	㉘고인과의관계	㉙주민등록번호	㉚성 명	㉛생년월일	㉜재학교명	㉝학 년	㉞소재지		
항										
	보호자	㉟성명		㊱ . . . 생		㊲관계		㊳직업		

0703 -2 -2A -1
1971.12.21 승인

190 mm × 268 mm 백상지 60 g / m²

㊴대부희망	희망 불희망	㊵구입농장확장	㊶구입주택신축	㊷구입사업체전세
취업희망	㊸직 종	(1)	(2)	(3)
	㊹미망인이 55세이상으로서 24세이상의 남자의 유자녀가 없을 경우 취업 희망여부	여( ) 부( )		
㊺비 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

원 호 처 장 귀 하

신청인 성명 ㊞

지 방 청		
담 당 자	과 장	청 장

구 비 서 류

1. 전공사 확인증 원본
2. 호적등본 2통
3. 주민등록표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4. 증명용사진 (신고인) 4매
5. 사망진단서 , 사망경위서 또는 의사소견서 2통 (보상법제 5조3항4호 해당자)
6. 사망원인 사실증명원 2통 (보상법제 5조 3항 4호 해당자로 무의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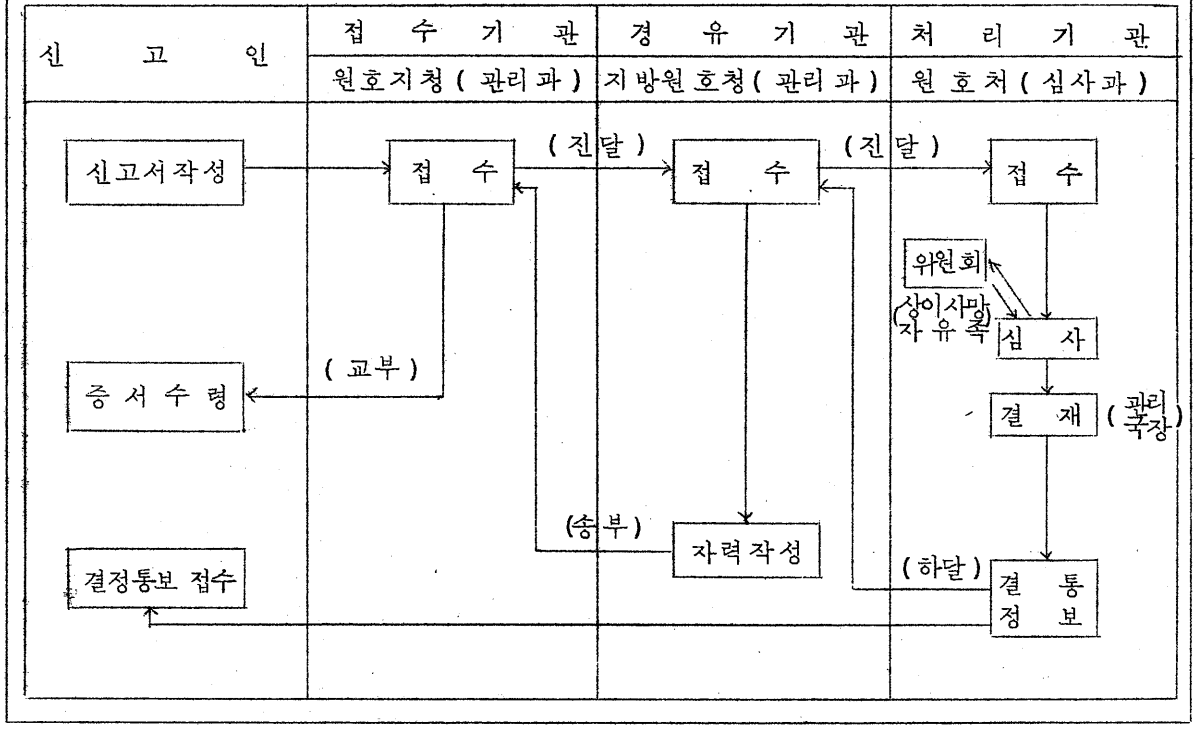

〔별지 제3호서식〕

번호	제 호	군사원호대상자확인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글 ( )	구분	신규 ( ) 가등록 ( )	원호번호	제 호
	전사자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사자	군별	계급	군번	성명	한글 ( ) 한문 ( )
	생년월일 년 월 일	입대 년월일 년 월 일		전시 년월일 년 월 일	

확인사항	전사자와의 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위와 같이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원호처장 귀하

〔별지 제 4 호서식〕〈개정 74.12.31 대령 7498〉

복 무 확 인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일)
신청인	①본 적				
	②주 소				
	③주민등록번호		④입대자와의 관계	입대자의 ( )	
	⑤성 명		⑥ . . . 생		
군복무자	⑦성 명		⑧군별	⑨군번	
	⑩입대년월일		⑪제대예정일		
확인사항	⑫전사자와의관계	⑬주민등록번호	⑭성 명	⑮생년월일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자 성명 ㊞

원호처장 귀하

구비서류
입대확인증 (관할 병무청장 발행) 2 통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0703 - 2 - 3A - 1
1971.12.21 개정

190㎜ × 268㎜백상지 60 g /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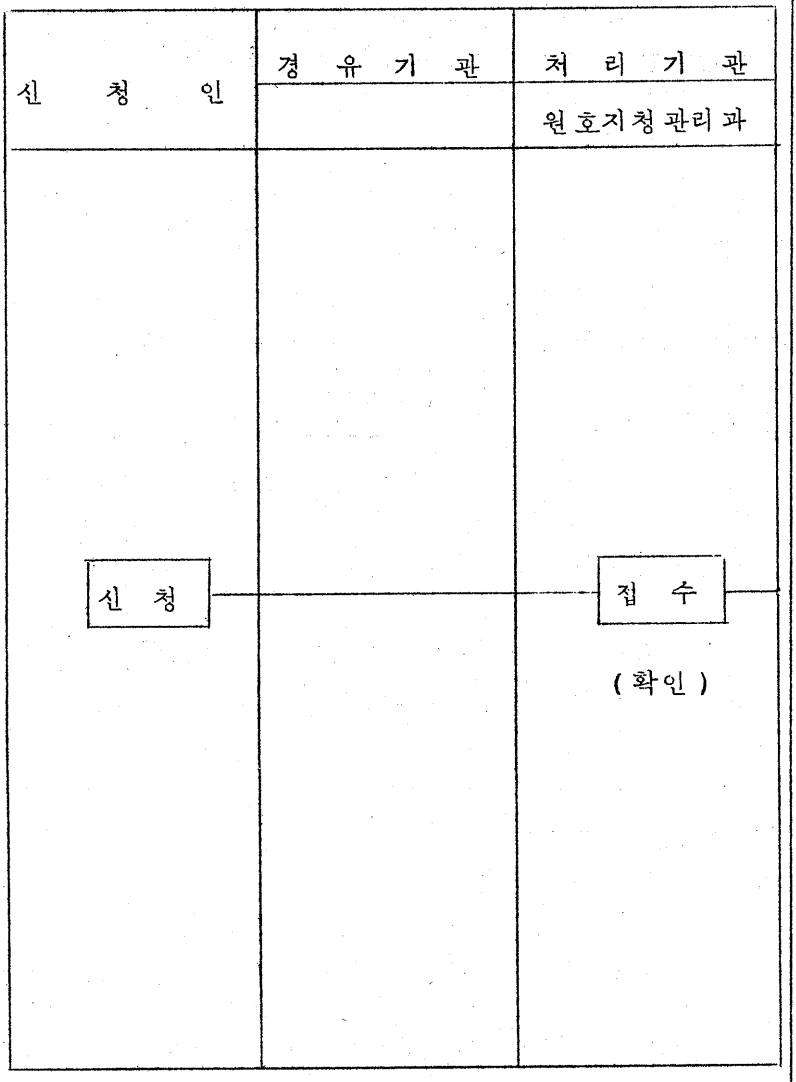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원호대상자통지서

번호	원호번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구분	전사자와의 관계	본 적

위와 같이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원호지청장 ㊞

구·청·장
시·읍·면장 귀하

〔별표 제 6 호서식〕〈개정 74.12.31 대령 7498〉

원호위원회 심의의결서
(원호정지)

인적사항	①원호번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성 명		④ . . .생		⑤대상구분	
의결사항	⑥의결번호		⑦의결년월일		⑧회의차수	제 차
	⑨정지기간	. . .부터 . . .까지				
	⑩정지사유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 18 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위원장	가	부	의 견

위원성명	가	부	의 견	위원성명	가	부	의 견

간 사 인

C703-2-28A
1971.12.21 승인

190 mm × 268 mm 백상지 60 g / m²

〔별지 제 7 호서식〕〈개정 74.12.31대령 7498〉

원호번호		원호정지결정서 번호			
① 본적					
② 주소					
③ 주민등록 번호		④ 성명		⑤ 생년 월일	
⑥ 정지기간	부터		. . .		
	까지		. . .		
⑦ 주문					
⑧ 이유					

위와 같이 군사원호보상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원호가 정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 .

원호처장 인

귀하

0703 - 2 - 85A
1971.12.21 승인

190㎜×268㎜백상지 60 g/㎡

〔별지 제 8 호서식〕〈신설 74.12.31 대령 7498〉

원호번호		생활무능력자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연금수급권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 . . 생
심장애신자	주민등록번호		. . . 생
	성명		
심애신사장항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 7 조(군사원호보상금여금법시행령제 2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성명 ㊞

원 호 처 장 귀 하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음

07 03-2-8 A-1
1971.12.21 승인

190 mm × 268 mm 백상지 54 g / m²

〔별지 제 9 호서식〕〈신설 74.12.31 대령 7498〉

①원호번호		직업보도기술교육희망신청서			처리기간
②본적					
③주소					
④주민등록번호		⑤성명		⑥생년월일	
⑦원호대상자구분		⑧수급권자성명		⑨수급권자와의관계	
⑩교육희망과목		⑪학력		⑫성별	
⑬교육희망구분	㉮직업보도소입소 ㉯기술교육소입소 ㉰위탁교육				
⑭가족중법정취업유무	유 무	⑮정착대부수혜여부	수혜자 비수혜자		
⑯기타특기사항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 10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보도 기술교육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지방원호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190㎜×268㎜신문용지 54g/㎡

〔별지 제 10 호서식〕〈신설 76.1.10 대령 7946〉

제 호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원호번호			대상구분		
추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본적				
학력			특기		
훈련직종		1지망		2지망	
훈련기관	성명(대표자)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 10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원호대상자 직업훈련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원호처장

귀하

인

1803-3-20E
1975.12.24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 g/㎡

国家有功者등特別援護法〔1962. 4. 16 法律才1053号〕

改正 1963. 7. 26 法律才1370号
1965.12. 14 法律才1717号
1966.12. 15 法律才1852号
1968. 7. 10 法律才2029号
1968.12. 31 法律才2071号
1973. 3. 10 法律才2589号
1974.12.24 法律才2715号
1975.12.31 法律才2888号

才1章 総 則

才1条(目的) 이 法은 国家와 民族을 守護하기 위하여 活動한 者와 그 遺族에 대한 特別援護에 関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65.12. 14 法1717)

才2条(適用対象者) 이 法의 適用対象者는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로 한다. (改正 75.12.31 法2888)

1. 愛国志士 및 그 遺族
2. 4.19 義挙傷痍者
3. 4.19 義挙死亡者의 遺族
4.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 (新設 68. 7. 10 法2029)
5. 反共捕虜傷痍者 (新設 68.7.10 法2029)

6. 越南帰順者 (改正 68.7.10 法2099)

7. 公傷公務員 및 殉職公務員의 遺族 (新設 74.12.24 法2715)

8. 太極武功勲章 및 乙支武功勲章을 받은 者로서 生計가 어려운 者 (이하 "武功受勲者"라 한다)

才2条의 2 (援護審査委員会) ① 才2条의 適用対象者를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第2條才1号·才2号·才3号·才5号 및 才8号의 者에 대하여는 援護処에 国家有功者援護審査委員会·4.19 義挙者援護審査委員会·反共捕虜傷痍者援護審査委員会 및 武功受勲者援護審査委員会를, 同条才4号 및 才6号의 者에 대하여는 国防部에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援護審査委員会 및 越南帰順者援護審査委員会를, 同条才7号의 者에 대하여는 総務処에 殉職 및 公傷公務員援護審査委員会를 둔다. (改正 75.12.31 法2888)

② 才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의 基準·各委員会의 構成 및 運用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条 新設 74.12.24 法2715)

才3条 (定義) ① 이 法에서 愛国志士라 함은 韓日合併前後로부터 1945年 8月 14日까지 国内外에서 韓日合併을 反対하거나 独立運動을 하기 위하여 積極

抗拒한 事実이 있는 者와 그 抗拒로 因하여 死亡 또는 身体的障碍를 입은 者중 国家有功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改正 63.7.26 法1370, 65.12.14 法1717)

②이 법에서 "애국지사의 유족"이라 함은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다음의 순위에 따라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제2호의 규정중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73.3.10 법2589)

1. 배우자 (사실혼을 포함한다)
2. 호주 상속자인 자녀 및 손자녀
3. 자녀 (출가한 자를 제외한다)
4. 부 모

③이 法에서 4.19義挙傷痍者라 함은 1960年4月19日을 前後한 革命에 参加하여 이로 因하여 軍事援護報償法 第5條才2項의 規定에 의한 1級내지 3級에 該当하는 身体的傷痍를 입은 者中 4.19義挙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改正 63.7.26 法1370,

65. 12. 14 法 1717, 74.12.24 法2715)

④ 이 法에서 4.19 義挙死亡者라 함은 1960年 4月 19日을 前後한 革命에 參加하여 死亡한 者와 4.19 義挙傷痍者로서 그 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中 4.19 義挙者 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改正 63.7.26 法1370, 65.12.14 法 1717)

⑤ 이 法에서 4.19 義挙死亡者의 遺族이라 함은 4.19 義挙死亡者의 死亡当時 그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親族関係가 있는 者중 4.19 義挙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다만, 成年男子이라도 心身障碍로 因하여 生活能力이 없다고 認定된 者는 未成年者로 본다. (改正 63.7.26 法1370, 65.12.14 法1717, 68. 7.10 法2029)

1. 妻, 未成年子女, 父母
2. 成年男子인 直系卑属이 없는 祖父母
3. 直系尊属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게된 未成年弟妹

⑥ 이 法에서 "在日学徒義勇軍參加者"라 함은 大韓民国国民으로서 日本国에 居住하던 者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国軍 또는 国際聯合軍에 志願入隊하여 6.25 事変에 参戦하고, 除隊後 日本国에 帰郷하지 못하고 国内에 滞留하는 者(龍免 또는 刑의 宣告를 받고 除隊된 者를 제외한다) 中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新設 68.7.10 法2029, 68.12.31 法2071)

⑦ 이 法에 "反共捕虜傷痍者"라 함은 北韓傀儡集団의 軍人 또는 軍属으로서 1950年 6月 25日부터 1953年 7月 27日까지의 사이에 6.25 事変에 参戦하여 捕虜가 된 者로서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중 反共捕虜傷痍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新設 68.7.10 法2029)

1. 捕虜収容所에 収容中 大韓民国을 支持하다가 北韓傀儡集団을 支持하는 者로부터 軍事援護報償法 才5条才2項의 規定에 의한 1級 내지 3級에 해당하는 身体上의 傷痍를 입은 者. (改正 74.12.24 法2715)
2. 大韓民国에 帰順할 目的으로 捕虜収容所를 脱出하려다 才1号의 規定에 의한 身体上의 傷痍를 입은 者.

⑧이 法에서 越南帰順者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中 越南帰順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改正 63.7.26 法1370, 65.12.14 法1717, 68.7.10 法2029)

1. 北韓傀儡集団의 軍人으로 服務中 그 集団에 抗拒하여 大韓民国에 帰順한 者

2. 北韓傀儡集団 및 그 所属団体의 幹部로 在職中 그 集団에 抗拒하여 大韓民国에 帰順한 者

3. 北韓傀儡集団의 民間人으로서 그 集団의 重大한 機密을 가지고 大韓民国에 帰順한 者

⑨이 法에서 "公傷公務員"이라 함은 国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으로서 公務遂行중 軍事援護報償法 才5条才2項의 規定에 의한 1級 내지 3級에 해당하는 身体上의 傷痍(公務上 疾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은 者중 殉職 및 公傷公務員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新設 74.12.24 法2715)

⑩이 法에서 "殉職公務員의 遺族"이라 함은 国家公務員 및 地方公務員으로서 公務遂行중 死亡한 者와 親族관계에 있는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중 殉職 및 公傷公務員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新設 74. 12.24 法2715)

1. 妻 (事実上의 妻를 포함).

2. 未成年 子女.

3. 父母.

⑪이 法에서 "武功受勳者"라 함은 太極武功勳章 및 乙支武功勳章을 받은 者 (軍人·警察官의 경우에는 転役·退役·免役 또는 退職한 者에 限한다) 중 生計가 어려운 者로서 武功受勳者援護審査委員会에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決定된 者를 말한다. (改正 75.12.31 法2888)

⑫이 法에서 "家族"이라 함은 妻와 55歲 이상의 父母·祖父母 및 未成年者인 子女·孫子女를 말한다. (改正 68.7.10 法2029)

才4条 (軍事援護에 関한 法律의 準用) ①이 法에 의한 援護를 함에 있어서 그 施行方法과 節次에 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各号에 掲記하는 軍事援護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68.7.10 法2029, 75.12.31 法2888)

1. 軍事援護報償法(以上 報償法이라 한다)

2. 軍事援護対象者任用法(以下 任用法이라 한다)

3. 軍事援護対象者雇傭法(以下 雇傭法이라 한다)

4. 軍事援護対象者 子女教育保護法(이하 "教育保護法"이라 한다)(改正 68.7.10 法2029)

5. 援護特別会計法(以下 "会計法"이라 한다)(改正 63.7.26 法1370)

6. 軍事援護報償給与金法(以下 報償給与金法이라 한다)

7. 軍事援護対象者定着貸付法(以下 "貸付法"이라 한다)(新設 65.12.14 法1717)

②才1項의 경우에는 이 法의 適用対象者를 各各 다음과 같이 본다.(改正 65.12.14 法1717)

1. 이 法에서 規定된 遺族은 軍事援護에 関한 法律의 遺族으로 본다.(改正 65.12.14 法1717)

2. 이 法에서 規定한 未成年子女·未成年孫子女·未成年弟妹는 軍事援護에 관한 法律의 戦歿軍警의 遺子女 또는 傷痍軍警의 子女로 본다.(改正 68.7.10 法2029)

3. 이 法에서 規定된 4.19 義挙傷痍者·反共捕虜傷痍者·公傷公務員 및 武功受勲者는 軍事援護에 関

한 法律의 傷痍軍警으로 본다. (改正 65.12.14 法1717, 68.7.10 法2029, 74.12.24 法2715)

4. 이 法에서 規定된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 및 越南帰順者는 任用法 및 雇傭法에 限하여 同法의 傷痍軍警으로 본다. (改正 65.12.14 法1717, 68.7.10 法2029)

5. 이 法에서 規定된 愛国志士로서 生存한 者는 軍事援護에 관한 法律의 傷痍軍警으로 본다. (改正 65.12.4 法1717)

6. 이 法에서 規定된 愛国志士의 遺族中 指定되어 就業되는 者는 任用法 및 雇傭法에 限하여 同法의 遺族으로 본다.

才4条의2 削除 (74.12.14 法2715)

才2章 年金 및 手当

才5条 (愛国志士에 대한 年金 및 手当) ①愛国志士에게는 年金을 支給한다.

②愛国志士로서 老衰 또는 心身의 障碍로 인하여 生活能力이 없는 者에게는 生活扶助手当을 支給한다. (改正 74.12.24 法2715)

③愛国志士로서 家族이 있는 者에게는 家族手当을

支給한다.

④愛国志士로서 身体上의 障碍로 看護를 필요로 하는 者에게는 看護手当을 支給한다.

⑤愛国志士가 死亡하였을 때에는 死亡一時金을 그 遺族에게 支給한다.

⑥才1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과 才6条才1項의 規定에 의한 年金의 受給権이 同一人에게 二重으로 발생한 때에는 受給権者로 하여금 有利한 給与를 択하게 하여 그중 하나의 年金을 支給한다.

⑦同一人이 二重으로 才3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手当과 才6条才2項의 規定에 의한 家族手当의 支給対象이 된 때에는 그중 하나의 家族手当만을 支給한다.

〔全文改正 68.7.10 法2029〕

才6条(愛国志士의 遺族에 대한 年金 및 手当)

①愛国志士의 遺族에게는 年金을 支給한다.

②愛国志士의 遺族인 妻에 家族이 있는 때에는 家族手当을 支給한다.

〔全文改正 68.7.10 法2029〕

才6条의2(年金 및 手当의 額) 才5条 및 才6条의 規定에 의한 年金·手当 및 死亡一時金의 額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68.7.10 法2029〕

才7条(4.19義挙傷痍者의 年金 및 手当) 4.19義挙傷痍者에게는 報償給与金法에 規定된 年金 및 手当과 기타의 給与金을 支給한다.

才8条(4.19義挙死亡者의 遺族의 年金 및 手当) 4.19義挙死亡者의 遺族에게는 報償給与金法에 規定된 年金 및 手当과 기타의 給与金을 支給한다.

才8条의2(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에 대한 定着手当)

①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着手当을 支給한다.

②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援護審査委員会는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의 決定을 받지 못하고 死亡한 者의 死亡当時의 妻(事実上의 妻를 포함하되, 改嫁한 者는 除外한다) 및 子女(出嫁한 者는 제외한다) 중 1人에 限하여 才1項의 規定을 準用받을 者로 審査·決定할 수 있다.(改正 74.12.24 法2715)

〔全文改正 68.12.31 法2071〕

才8条의3(反共捕虜傷痍者의 年金 및 手当) 反共捕虜傷痍者에게는 報償給与金法에 規定된 年金 및 手当과 기타의 給与金을 支給한다.(改正 63.12.31

法 2071)

〔本条新設 68.7.10 法 2029〕

才9条(越南帰順者에 대한 定着手当) ①越南帰順者에게는 그 功績에 따라 1級부터 5級까지 等級을 정하여 定着手当을 支給한다.

②才1項의 規定에 의한 定着手当의 金額, 等級의 基準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越南帰順者중 帰順時에 報償法 才5条才2項의 規定에 의한 1級 내지 3級에 해당하는 身体上의 傷痍를 입은 者(이하 "越南帰順傷痍者"라 한다)에게는 報償給与金法중 傷痍軍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하여 同法의 規定에 의한 手当 및 기타의 給与金을 支給한다. (新設 68.7.10 法 2029, 改正 74.12.24 法 2715)

〔全文改正 66.12.25 法 1852〕

才9条의2 (殉職 및 公傷公務員의 年金등 支給排除) 公傷公務員 및 殉職公務員의 遺族에게는 이 法에 의한 年金 및 諸手当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本条新設 74.12.24 法 2715〕

才9条의3 (武功受勲者의 年金등 支給排除) 武功受勲者에게는 이 法에 의한 年金 및 諸手当을 支給하

지 아니한다.

〔本条新設 75.12.31 法2888〕

才3章 其他報償

才10条(職場斡旋) ①이 法의 適用対象者에게는 任用法 및 雇傭法을 準用하여 職場을 斡旋한다. 愛国志士 및 그 遺族의 境遇에는 任用法 才15条와 雇傭法 才7条는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68.7.10 法1370)

②愛国志士 및 그 遺族으로서 才1項의 規定에 依한 就業이 不可能할 때에는 本人의 妻, 子女中 本人이 指定하는 者 1人에 限하여 代理就業을 할 수 있다. (改正 63.7.26 法2029)

才11条(子女의 教育保護)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는 教育保護法을 準用하여 教育保護를 実施한다. (改正 75.12.31 法2888)

1. 愛国志士의 未成年子女와 未成年孫子女.
2. 4.19 義挙傷痍者의 未成年子女.
3. 4.19 義挙死亡者의 未成年子女와 60歳未満의 男子 및 55歳未満의 女子인 直系尊属과 成年男子인 兄이 없는 4.19 義挙死亡者의 未成年弟妹

4. 反共捕虜傷痍者의 未成年子女.

5. 越南帰順者의 未成年子女.

6. 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의 未成年子女.

7. 殉職 및 公傷公務員의 未成年子女.

8. 武功受勲者의 未成年子女.

〔全文改正 68.7.10 法2029〕

才12条(4.19 義挙傷痍者·反共捕虜傷痍者 및 越南帰順者의 教育保護) ① 4.19 義挙傷痍者중 国·公·私立의 中学校·高等学校 또는 大学에 在学중이던 者와 反共捕虜傷痍者 및 越南帰順者로서 中学校 이상의 学校에 在学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学을 卒業할 때까지 모든 公納金을 免除하고 学資金을 支給한다. (改正 74.12.24 法2715)

②才1項의 規定에 의한 学資金의 支給은 中学校·高等学校(実業高等専門学校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準하는 学校에 在学하는 者에 대하여는 教育保護法중 戦歿軍警의 遺子女에 관한 規定을, 大学에 在学하는 者에 대하여는 同法중 傷痍軍警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改正 74.12.24 法2715)

③各級学校는 4.19 義挙傷痍者의 身体上의 条件을 理由로 入学을 拒否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68.7.10 法 2029〕

才12条의 2 (定着貸付) 4.19 義挙傷痍者·反共捕虜傷痍者와 4.19 義挙死亡者의 遺族중 妻 또는 父母로서 遺族年金을 받는 者에게 대하여는 貸付法을 準用하여 貸付를 実施한다. (新設 65.12.14 法 1717, 68.7.10 法2029)

才13条 (加療等保護) 愛国志士, 4.19 義挙傷痍者, 反共捕虜傷痍者·越南帰順傷痍者 및 公傷公務員에 대하여는 報償法 才15条와 才16条를 準用하여 加療 또는 静養保護를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 2029, 74.12.24 法2715)

才14条 (養老 및 養育保護) 이 法의 適用対象者에 대하여는 報償法 才18条 및 才19条를 準用하여 養老 및 養育保護를 할 수 있다. (改正 66.12. 15 法1852)

才15条 (住宅斡旋) 愛国志士와 그 遺族, 4.19 義挙死亡者의 遺族·越南帰順者·公傷公務員 및 殉職公務員의 遺族과 武功受勲者에 대하여는 国家나 自治団体에 의하여 또는 国家의 融資에 의하여 建立하는 住宅에 優先権을 賦与하여 入住케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2029, 74.12.24 法2715, 75.

12.31 法 2888)

才16条 (輸送施設의 利用) 愛国志士, 4.19 義挙傷痍者, 反共捕虜傷痍者·越南帰順傷痍者 및 公傷公務員에 대하여는 報償法 才11条를 準用하여 国家의 輸送施設을 利用케 할 수 있다. (改正 68.7.10 法2029)

才4章 削除 (63.7.26 法1370)

才17条 削除 (63.7.26 法 1370)

才18条 削除 (63.7.26 法 1370)

才19条 削除 (63.7.26 法 1370)

才20条 削除 (63.7.26 法 1370)

才5章 罰 則

才21条 (罰則) ①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1. 虚偽의 供述·偽計 기타의 方法으로 이 法의 適用対象者로 造作한 者.
2. 才1号의 方法으로 이 法에 의한 보호 또는 報償을 받은 者.
3. 才23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②才 1 項의 未遂犯은 이를 処罰한다.

③才 1 項才 1 号 및 才 2 号의 경우에 収受한 報償金品은 이를 没収한다. 그러나, 没収할 수 없을 때에는 그 価額을 追徴한다.

〔全文改正 63.7.26 法 1370〕

才 6 章 補 則

才22条(国立墓地에의 安葬) 愛国志士의 遺骨 또는 屍体는 遺族이 願하는 경우에는 国立墓地에 安葬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15)

才23条(援護活動의 禁止) 이 法의 適用対象者의 援護를 目的으로 하는 団体의 組織이나 또는 被援護対象者의 団体的 또는 個人的인 援護活動은 이를 禁止한다. (改正 63.7.26 法 1370, 66.12.5 法 1852)

才23条의 2 (賦役의 免除) 愛国志士 및 그 遺族, 4.19 義挙傷痍者, 4.19 義挙死亡者의 遺族, 反共捕虜傷痍者·越南帰順傷痍者·公傷公務員 및 殉職公務員의 遺族과 武功受勲者에 대하여는 賦役을 免除한다. (改正 75.12.31 法2888)

〔全文改正 68.7.10 法2029〕

才24条(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5.12.4 法 1717)

附 則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本法 施行当時의 本法의 適用対象者를 위한 各種의 援護를 目的으로 하는 団体는 本法 施行日부터 60日以内에 이를 解散하고 清算을 하여야 한다.

③(定着手当의 支給) 才9条才1項에 規定된 定着手当은 1962年以後에 帰順한 者부터 支給한다.

④削除 (68.7.10 法2029)

⑤削除 (68.7.10 法2029)

附 則 (63.7.26 法137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5.12.14 法17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実施될 4.19 義挙傷痍者 및 反共捕虜傷痍者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教育保護중 公納金의 免除와 学費補助金의 支給은 1966年 3月 1日부터 実施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遺子女保護法의 規定

에 의한 各学校에 在学중인 4.19 義挙傷痍者 및 反共捕虜傷痍者의 未成年子女는 이 法에 의하여 就学한 것으로 본다.

附 則 (66.12.15 法 185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8.7.10 法 202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援護의 未申請者에 대한 整理措置) 才2条才1項才2号 내지 才6号에 해당하는 者중 이 法 施行当時까지 이 法에 의한 援護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그 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法에 의한 援護를 하지 아니한다.

附 則 (68.12.31 法 2071)

①(施行日) 이 法은 196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才8条의2의 規定에 의한 定着手当을 支給받고자 하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내에 支給을 請求하여야 한다.

부 칙 (73.3.10 법 258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애국지사의 유족

으로 결정되어 원호를 받고 있는 자와 애국지사 유족확인신청서를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附 則 (74.12.24 法27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法 施行으로 인하여 実施될 越南帰順者·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 및 公死傷公務員의 未成年子女에 대한 教育保護중 学資金의 支給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各 学校에 在学中인 越南帰順者·在日学徒義勇軍参加者 및 公死傷公務員의 未成年子女는 이 法에 의하여 就学된 것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当時 다른 法令에서 引用되고 있는 "国家有功者 및 越南帰順者特別援護法"은 "国家有功者등 特別援護法"으로 본다.

④(公死傷公務員에의 準用에 의한 援護申請) 이 法 施行당시 이미 公務上傷痍를 입고 退職하였거나 公務遂行中 死亡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에 傷痍를 입고 退職하였거나 死亡한 것으로 본다.

附 則 (75.12.31 法288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援護의 未申請者에 대한 特別措置) 才2条才1項才2号 내지 才6号에 해당하는 者중 이 法 施行日까지 援護의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는 法律 才2,029号 (1968年 7月 10日) 附則 才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에 의한 援護를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1970. 8. 5 대통령령제 5262호〕

개정 1973. 6.21 대통령령 제 6738호
1973.12.31 대통령령 제 6984호
1974.12.31 대통령령 제 7495호
1976. 1.10 대통령령 제 794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제2조(심사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애국지사에 있어서는 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8)

1. 애국지사

가. 의병을 일으켜 일본식민통치와 투쟁하여 널리 그 공적이 알려진 자.

나. 을사보호조약을 솔선반대하여 국내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투쟁을 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다. 한일합병을 서두른 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 인하여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라. 일본제국주의 침략의 원흉을 제거한 자와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 인하여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마.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의 지도자 또는 독립운동단체의 중요간부로서 활동한 공적이 널리 알려진 자.

바. 기미독립운동을 지도한 자 또는 민중을 봉기시켜 일본식민통치에 항거함으로 인하여 옥사 또는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사. 독립운동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재를 기증한 자 또는 독립운동자금의 모금운동을 함으로 인하여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아. 민족자본을 육성하여 일본제국주의 경제침략에 대항한 공적이 현저한 자.

자. 언론, 출판, 교육, 저작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 인하여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차. 독립운동의 중요인사를 은익한 사실로 인하여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카. 독립운동 또는 기타의 항일사건에 관련되어 3년이상 영어생활을 한 자.

타. 일본관헌에 피검된 독립운동지사를 무료로 변

호하여 민족의식을 앙양한 공적이 현저한 자.

파.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에서 그 독립운동을 한 공적이 가목 내지 타목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자.

2. 애국지사의 유족

가. 애국지사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인본관헌의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품위를 지킨 자.

나. 애국지사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항상 일본관헌의 감시하에 있던 자.

다. 애국지사의 유족임으로 인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자.

라. 국내외에서 애국지사와 행동을 같이 하면서 애국지사를 원조한 유족.

마. 기타 애국지사의 유족으로서 품위를 지켜온 자.

3. 4.19 의거 상이자.

가. 정치적인 배후조종이 없이 4.19 혁명에 가담하여 이를 진압하는 관헌 또는 폭력배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

나. 정치적인 배후조종이 없이 4.19 혁명에 가담

한 협의로 관헌의 고문에 의하여 부상을 입은 자.

4. 4.19의거 사망자의 유족.

가. 정치적인 배후조정이 없이 4.19혁명에 가담하여 이를 진압하는 관헌 또는 폭력배의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하여 사망하였거나 그 총탄 또는 폭행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나. 정치적인 배후조종이 없이 4.19혁명에 가담한 협의로 관헌의 고문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그 고문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5. 월남귀순자

가. 1 급

(1) 북한괴뢰집단의 장성급의 군인, 국장급이상의 내각간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던 자와 과학자 또는 중요산업분야의 권위있는 기술자.

(2) 북한괴뢰집단의 군사작전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이나 막대한 손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국방상에 중요한 첩보를 제공한 자.

(3) 북한괴뢰집단안에서 정치투쟁, 정치요인의 살해, 태업등 각종 파괴공작을 수행하여 그 집단에 중대한 영향과 손해를 주고 대한민국을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한 자.

(4) 2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군장비 또는 기타의 물자를 제공한 자.

(5) 북한괴뢰집단안에서 선전, 계몽등으로 대한민국에의 귀순을 권고하여 3인이상 (부양가족일 경우에는 2인이상)을 귀순하게 한 자.

(6) 기타 귀순자의 귀순동기, 귀순시기, 북한괴뢰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심리전상의 가치등을 고려하여 그 공이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에서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나. 2 급

(1) 북한괴뢰집단의 좌관급의 군인, 과장급 이상의 내각간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던 자와 중요산업분야의 기술자 또는 체육계의 직업적인 선수.

(2) 북한괴뢰집단의 군사작전에 불리한 영향이나

손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군사 작전에 중요한 첩보를 제공한 자.

(3) 1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군장비 또는 기타의 물자를 제공한 자.

(4)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으로서 간첩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자수하여 연루간첩 3인 이상을 검거하게 한 자.

(5) 북한괴뢰집단안에서 선전 계몽등으로 대한민국에의 귀순을 권고하여 2인이상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1인이상)을 귀순하게 한 자.

(6) 기타 귀순자의 귀순동기, 귀순시기, 북한괴뢰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심리전상의 가치등을 고려하여 그 공이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에서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다. 3 급

(1) 북한괴뢰집단의 위관급의 군인, 시·군인민위원회의 과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던 자.

(2) 북한괴뢰집단의 군사작전에 많은 손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에 유리한 첩보를 제

공한 자.

(3) 북한괴뢰집단의 언론기관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단체의 요원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제공한 자.

(4)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군장비 또는 기타의 물자를 제공한 자.

(5)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에 자수하여 연루간첩 1인이상을 검거하게 한 자.

(6) 북한괴뢰집단안에서 선전, 계몽등으로 대한민국에의 귀순을 권고하여 1인이상을 귀순하게 한 자.

(7) 기타 귀순자의 귀순동기, 귀순시기, 북한괴뢰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심리전상의 가치등을 고려하여 그 공이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에서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라. 4 급

(1) 북한괴뢰집단의 중사급 이상의 군인, 리·동 인민위원회의 위원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던 자.

(2) 북한괴뢰집단의 군사작전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대한민국의 군사작전수행에 이익을 주는 첩보를 제공한 자.

(3) 북한괴뢰집단의 언론기관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단체의 요원으로서 그 집단의 중대한 기밀을 제공한 자.

(4) 3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북한괴뢰집단의 군장비 또는 기타의 물자를 제공한 자.

(5)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에 자수하여 그 집단의 간첩활동을 해롭게 한 자.

(6) 기타 귀순자의 귀순동기, 귀순시기, 북한괴뢰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심리전상의 가치등을 고려하여 그 공이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에서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자.

마. 5 급

(1) 북한괴뢰집단의 하사이상의 군인 및 리·동 인민위원회의 지도요원.

(2) 북한괴뢰집단의 간첩으로서 대한민국에 자수하여 그 집단의 기밀을 제공한 자.

(3) 기타 귀순자의 귀순동기, 귀순시기, 북한괴뢰

집단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 심리전상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그 공이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에서 5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자.

6. 공상공무원 (신설 74.12.31 대령 7495)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군사원호보상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퇴직한 자.

7. 순직공무원의 유족 (신설 74.12.31 대령 7495)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제6호의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8. 무공수훈자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생계가 어려운 자의 기준은 매년 민간의 임금·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을 참작하여 내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원호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와 애국지사에 있어서는 국시에 위배되는 행위, 정치적과오 또는 친일행

위등으로 변절한 자, 애국지사의 유족에 있어서는 자발적인 친일행위 등으로 변절한 자, 월남귀순자에 있어서는 귀순의 동기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사상이 건전하지 못한 자, 무공수훈자에 있어서는 훈장이 치탈된 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76.1.10 대령 7948)

③심사의 기준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적용대상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 4.19 의거자 원호심사위원회,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원호심사위원회, 반공포로상이자 원호심사위원회,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 순직 및 공상공무원 원호심사위원회 또는 무공수훈자 원호심사위원회 (이하 "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76.1.10 대령 7948)

제3조 (유족의 순위) 애국지사의 유족, 4.19 의거사망자의 유족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중 제2조의 심사기준에 해당되는 적용대상자의 결정은 애국지사의 유족에 있어서는 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순으로, 4.19 의거 사망자의 유족에 있어서는 법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순으로, 순직공무원의 유족에 있어

서는 법 제3조 제10항에 규정된 순으로 하되, 동 순위자가 수인일 때에는 남자는 여자에, 연장자는 연소자에 우선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전문개정 73.6.21 대령 6738〕

제4조 (정착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재일교포 참전자의 유족) ①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원호심사위원회가 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받을 자를 심사·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사망이래 계속 국내에 거주하는 처 또는 자녀중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지급대상자의 결정은 처, 자녀의 순으로 하되, 자녀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에, 연장자는 연소자에 앞선다.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정착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 (타법령의 준용) 이 영 시행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률의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 6 조 (위원회의 구성) ①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 4.19 의거자 원호심사위원회, 반공포로상이자 원호심사위원회 및 무공수훈자 원호심사위원회는 군사원호보상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원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이를 겸임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8)

②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원호심사위원회와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는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순직 및 공상공무원 원호심사위원회는 공무원 연금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각각 이를 겸임한다. (신설 74.12.31 대령749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원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적용대상자의 사정에 정통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각 위원회의 소속부·처의 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각 위원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⑥간사는 각 위원회의 소속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부·처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장의 명을 받

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 7 조 (각 위원회의 소집)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3인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8 조 (의결)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의견청취) 각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10 조 (수당)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애국지사의 확인신청) 애국지사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애국지사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호적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진술서).

2. 건국훈장증의 사본.

3. 주민등록표 등본

제12조(애국지사에 대한 연금 및 수당액)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은 월 15,600원으로 한다.(개정 76.1.10 대령 7948)

②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부조 수당의 액은 월 6,200원으로 한다.(개정 76.1.10 대령 7948)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액은 가족 1인에 대하여 월 3,200원으로 한다.(개정 76.1.10 대령 7948)

④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액은 월 4,700원으로 한다.(개정 76.1.10 대령 7948)

⑤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의 액은 애국지사에 대한 연금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애국지사의 유족의 확인신청) 애국지사의 유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애국지사 유족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애국지사의 전국훈장증 사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전부를 포함한 호적등본(호적의 기재내용과 사실이 서로 다를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진술서).
4. 애국지사를 원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가한 자녀에 한한다).

제14조(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액)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의 액은 애국지사의 유족이 처인 경우에는 월 8,700원으로 하고, 기타의 유족인 경우에 월 6,600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8)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수당의 액은 가족 1인에 대하여 월 3,200원으로 한다. (개정 76.1.10 대령 7948)

제15조(4.19 의거상이자의 확인신청) 4.19 의거상이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19 의거상이자

확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4.19 의거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4 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4.19 의거당시에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증명하는 4.19 의거참가 확인증서.

3. 4.19 의거당시의 치료병원의 진단서.

4. 주민등록표 등본.

제 16조 (4.19 의거사망자의 유족의 확인신청) 4.19 의거사망자의 유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4.19의거사망자 유족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4.19 의거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 3 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4.19 의거자가 4.19 의거당시에 소속하였던 단체 또는 학교의 장이 증명하는 4.19 의거참가 확인증서.

3. 주민등록표 등본.

제 17조 (월남귀순자 확인신청) 월남귀순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월남귀순자 확인신청서를 월남귀순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8조 (월남귀순자의 정착수당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남귀순자에 대한 정착수당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급	100만원
2급	70만원
3급	50만원
4급	30만원
5급	20만원

제 19조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확인신청)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제 20조 (정착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신청) 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착수당 지급대상자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처의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의 정착수당)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착수당(이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정착수당"이라 한다)은 50만원으로 한다.

제22조(정착수당 지급신청)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정착수당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정착수당 지급신청서에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원호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착수당의 사용목적) ①원호처장은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정착수당을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주택·점포 또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받기 위한 경우.

2. 정착을 위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정착을 위하여 원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원호처장은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정착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전항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반공포로상이자 확인신청) 반공포로 상이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공포로상이자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공포로상이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2. 경찰서장의 사실증명서.

3. 탈출경위서.

제24조의2(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의 확인신청)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족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 유족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순직 및 공상공무원 원호심

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등본

2. 순직(공상)확인증(별지 제6호서식)

3. 상이진단서(공상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

4. 주민등록표 등본.

〔본조신설 74.12.31 대령7495〕

제24조의3(공상확인 통보) 총무처장관이 순직(공상)확인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직(공상)확인서를 원호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되, 공상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상 요양을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4.12.31 대령 7495〕

제24조의4(무공수훈자의 확인신청) 무공수훈자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무공수훈자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공수훈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

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무공수훈자원호 추천서.

2. 무공훈장증 사본.

3. 소득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4. 호적등본.

5. 주민등록표 등본.

〔본조신설 76.1.10 대령 7948〕

제24조의5 (무공수훈자의 원호추천) ①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무공수훈자 원호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인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경찰관 및 민간인으로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이하 "무공수훈자 원호추천권자"라 한다)에게 무공수훈자 원호추천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무공수훈자 원호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수훈자 원호추천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무공수훈자 원호추천확인서를 지체없이 원호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무공수훈자 원호추천권자는 원호추천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호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6.1.10 대령 7948〕

제 25조 (심사 및 통보) ①각 위원회는 제 11조·제 13조·제 15조 내지 제 17조·제 19조·제 24조·제 24조의 2 및 제 2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용대상자를 결정하여 원호처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애국지사의 확인신청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심사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76.1.10 대령 7948)

②제 20조·제 27조·제 29조 및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도 또한 제 1항에 의한다.

제 26조 (대상자의 등록) 원호처장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27조 (생활무능력자의 신청) 법 제 3조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활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8호서식에 의한 생활무능력자 인정신청서를 해당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조 (연금증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밖의 재일학도의용군참가자 동 법 적용대상자에게는 별지 제 10호서식에 의한 원호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74.12.31 대령 7495)

제 29조 (수당의 지급신청) 애국지사로서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부조수당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수당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생계부조·간호수당 지급신청서를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4. 12.31 대령 7495)

〔전문개정 73.6.21 대령 6738〕

제 30조 (재학 확인신청) 4.19 의거상이자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납금의 면제와 학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를 4.19 의거자 원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3.6.21 대령 6738, 74.12.31 대령 7495)

제 30조의 2 (독립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교육보호)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에 규정된 국가의 독립에 유

공한 애국지사로서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사업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그의 미성년 자녀와 미성년 손자녀에 대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74.12.31 대령 7495〕

제31조 (준용규정)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4.19 의거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및 월남귀순자중 대학에 재학중인 자에 대한 공납금의 면제절차에 관하여는 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보호법 시행령중 상이군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호처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6.21 대령 673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12.31 대령 6984)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715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녀교육보호와 이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호는 197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학자금의 지급은 1975년 9月 1日부터 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시행령"으로 본다.

③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의 순직 및 공상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연금법 시행전에 순직하거나 공상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제2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④ (독립유공자등에 대한 애국지사심사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독립유공자 사업기금법 제2조에 의하여 동법의 독립유공자로 심사·결정된 자는 이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원호심사위

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자로 본다.

부 칙 (76.1.10 대령 7948)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73.6.21 대령 6738)

원호번호		애국지사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 본적		③기산 년월일	19 .
② 주소			
④ 주민등록번호		⑤ 직업	
⑥ 성명		⑦ 19 . . . 생	

경력	기간 ⑧ 부터	기간 ⑨ 까지	⑩ 경력사항	⑪ 참고

상훈	⑫ 년월일	⑬ 명칭	⑭ 참고

⑮ 건강상태	

가족사항	⑯애국지사와의 관계	⑰주민등록번호	⑱성명	⑲생년월일	⑳학력	㉑직업	경력 ㉒사항	경력 ㉓연한	㉔면허	㉕자격	㉖특기	㉗참고

<table>
<tr><td rowspan="5">요망사항</td><td rowspan="4"></td><td>㉘성 명</td><td></td><td>㉙애국지사와의관계</td><td></td></tr>
<tr><td>㉚직 종</td><td>①</td><td>②</td><td>③</td></tr>
<tr><td>㉛지 방</td><td></td><td></td><td></td></tr>
<tr><td>㉜직종번호</td><td></td><td></td><td></td></tr>
<tr><td>㉝가료희망</td><td>여( )부( )</td><td>㉞정양보호희망</td><td>여( )부( )</td><td>㉟주택희망</td><td>여( )부( )</td></tr>
</table>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자 성명 ㊞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전국훈장증 사본
2. 호적등본(호적등본과 사실이 상위할 때에는 그 사실에 대한 진술서)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4. 신청인의 증명용사진 1매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0703-2-4A-1
1972. 12. 21개정

190 mm × 286 mm
백상지 60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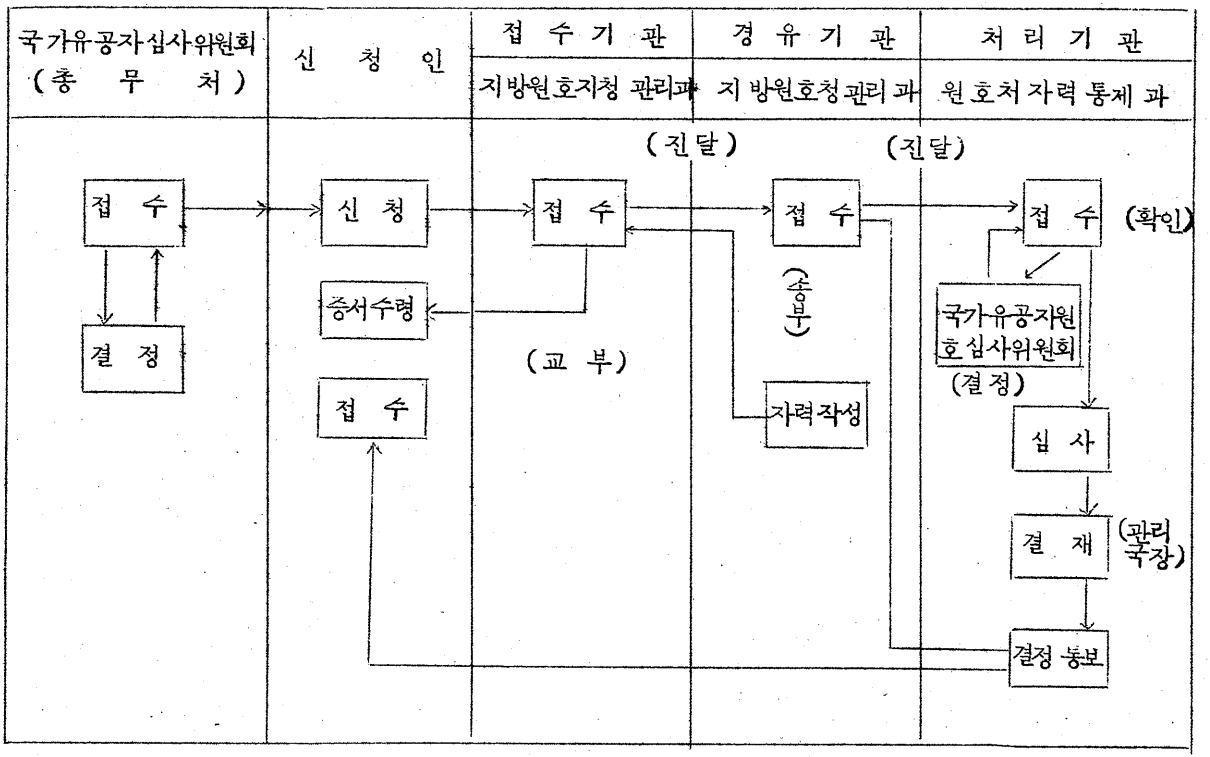

〔별지 제 2 호서식〕 (개정 73.6.21 대령 6738)

원호번호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애국지사

① 본적				
② 주소				
③ 주민등록번호		④ 성명		⑤ 19 . . . 생
⑥ 사망년월일		⑦ 사망장소		

유족사항

신고인

⑧ 본적		⑩ 기산년월일	19 . .
⑨ 주소			
⑪ 성명		⑫ 19 . . . 생	
		⑬ 애국자사와의 관계	⑭ 직업

가족사항

⑮ 애국지사와의 관계	⑯ 주민등록번호	⑰ 성명	⑱ 생년월일	⑲ 학력	⑳ 직업	경력 ㉑ 사항	경력 ㉒ 연한	㉓ 면허	㉔ 특기	㉕ 자격	㉖ 참고

유자녀

㉗ 애국지사와의 관계	㉘ 주민등록번호	㉙ 성명	㉚ 생년월일	㉛ 학력	학력 ㉜ 출신학교	학력 ㉝ 출신년도	학력 ㉞ 학교명(재학)

요망사항	취직희망	㉟ 성명		㊱ 애국지사와의 관계	
		㊲ 직종			
		㊳ 지방			
		㊴ 직종번호			
	㊵ 주택희망		여 ( ) 부 ( )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자 성명 ㉑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전국훈장증 사본
2. 호적등본 (2촌이내 직계존비속 전부 포함) 2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4. 애국지사에게 원조한 사실증명의 서류 (출가자녀에 한함)
5. 신청인의 증명용사진 4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 음

0703-2-5A-1
1973. 12. 21개정

196mm × 268mm
백상지 60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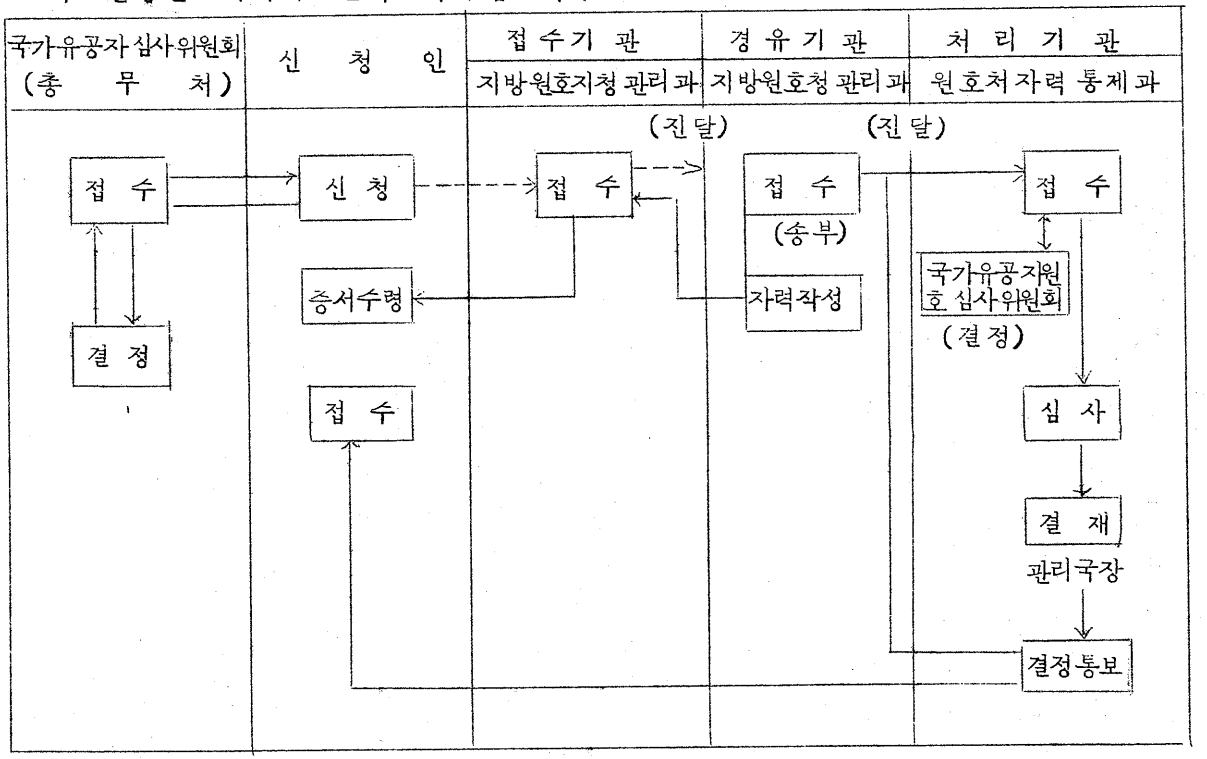

〔별지 제 3 호서식〕 (개정 73.6.21 대령 6738)

원호번호		4.19 의거사망자유족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① 본 적		③ 기산일자	19 . . .
② 주 소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성명	⑥ 19 . . .
⑦ 사망일자		⑧ 사망장소	⑨ 사망사유

유족사항

연및금기수타급가권족자수

⑩고인과의 관계	⑪주민등록번호	⑫ 성명	⑬ 생년월일	⑭ 학력	⑮ 직업	경력 ⑯ 사항	경력 ⑰ 연한	⑱ 자격	⑲수용보호희망여부

유자녀

⑳고인과의 관계	㉑ 주민등록번호	㉒ 성명	㉓ 생년월일	㉔ 재학학교명	㉕ 학력	㉖ 학교소재지

㉗ 보호자성명		㉘ 19 . . . 생	㉙ 관계		㉚ 직업	

㉛취업희망직종	①	②	③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인 성명 ㊞

4.19 의거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호적등본 2통
2. 4.19의거 참가확인증명서 2통
3. 주민등록 등본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4. 신청인의 증명용 사진 4매

수입인지
없 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0703-2-6A-1
1971.12.31개정

190 mm × 268 mm
백상지 60 g/m²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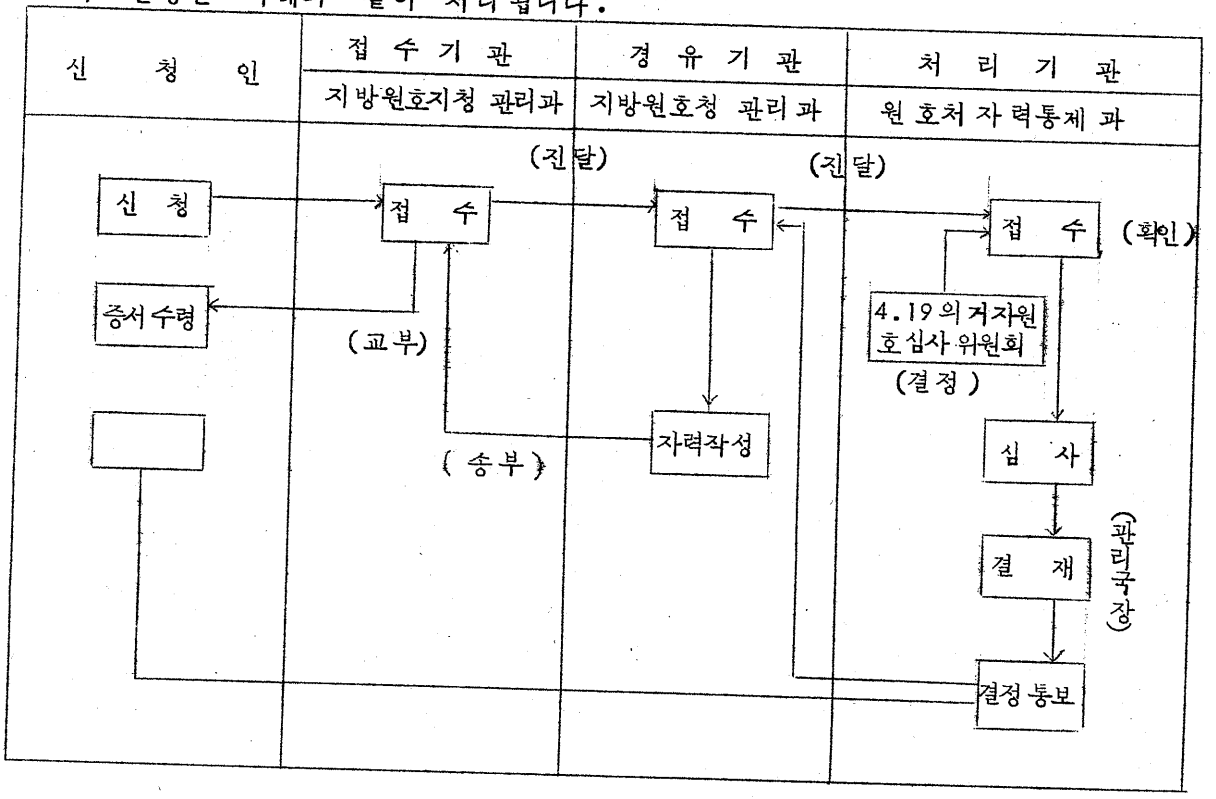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개정 73.6.21 대령 6738)

원호번호		월남귀순자확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본적		③정착수당등급	급
②주소			
④주민등록번호		⑤성명	⑥ 19 . . .생
⑦귀순년월일		⑧직업	

	⑨부터	⑩까지	⑪학교명	⑫학교소재지
학력				

	⑬부터	⑭까지	⑮경력사항	⑯참고
경력				

⑰면허	(1)	⑱자격	(1)	⑲특기	(1)
	(2)		(2)		(2)

	⑳년월일	㉑명칭	㉒참고
상벌			

취직희망	㉓직 종	①	②	③
	㉔지 방			
	㉕직종번호			
㉖주택희망		여 ( )	부 ( )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19 . . .

신청자 성명 ㊞

월남귀순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입인지
없 음

구비서류

1. 귀순경위서 1통
2. 학력 및 경력서 1통
3. 증명용 사진 4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0703-2-7A-1
1971.12.21승인

190㎜ × 268㎜
백상지 60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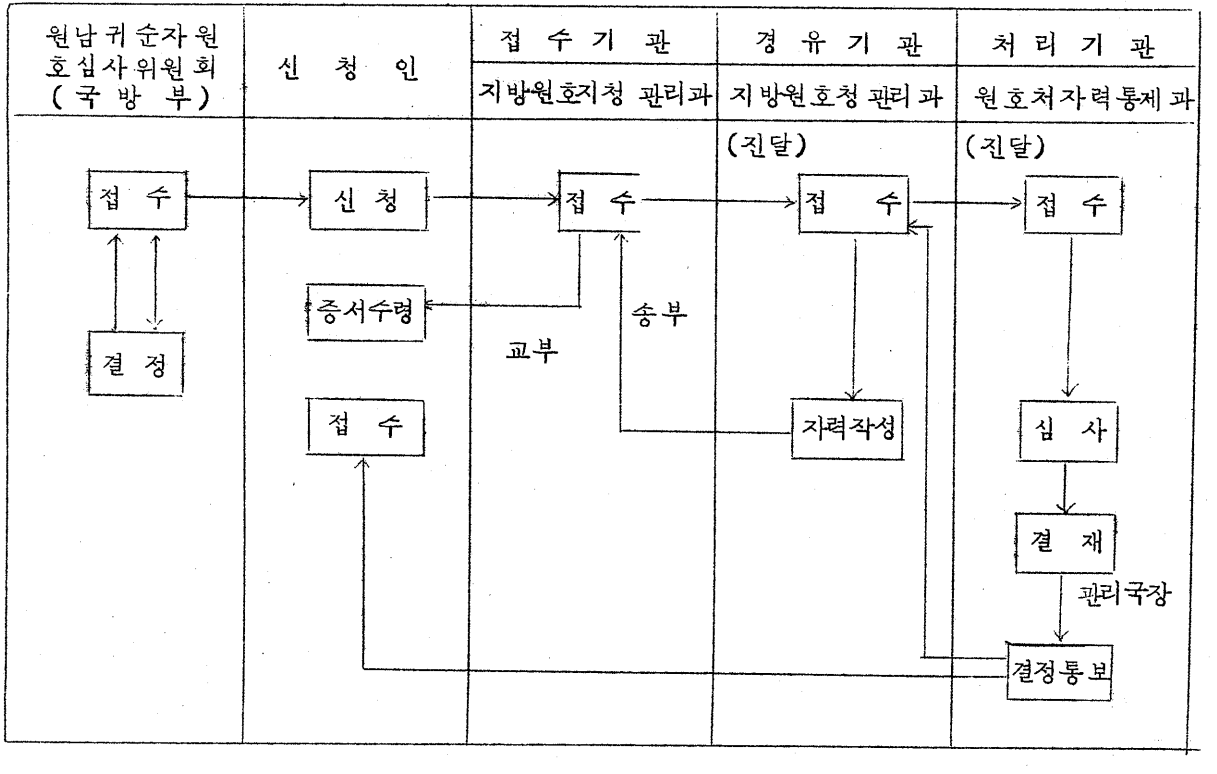

〔별지 제5호서식〕 (개정 74.12.31 대령 7495)

발급번호	제 호	공상공무원및순직공무원유족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일

공상및순직자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 . .생				
	공상·순직 년월일	. . .		공상·순직 당시소속			구분	공상( ) 순직( )				
유족사항	가족	순직(공상)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경력		자격면허	특기	
								사망	년한			
	유자녀	순직(공상)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학력사항						
						졸업(재학)학교명			연도및학년			
요망	취업	성명		자격		면허		특기				
		희망직종		희망임금		희망지역		희망년도				

사항	가의료보호 및 호	상이처		보철구 정착	여( ) 부( )	보철구 종류			
		보철구 희망	여( ) 부( ) 가료희망 여( ) 부( )						

위와 같이 확인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순직및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입인지
없 음

구비서류

1. 순직(공상)확인용 1통
2. 상이진단서 1통
3. 호적등본 2통
4. 주민등록표 등본 2통
5. 신고인 사진(2×3) 4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함.

. . .

순직및공상공무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원호청장 귀하

1802-02-A
19 . . . 승인

190 mm × 268 mm
백상지 60 g/m²

〔별지 제 6 호서식〕 (개정 74. 12. 31 대령 7495)

순 직 (공 상) 확 인 증

번 호

소 속				
직 명		성 명		. . .생

위 자는 년 월 일 공무수행중 애석하게도 사망·상이를 입고(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총 무 처 장 관 인

귀하

1802-02-A
1977. . . 승인

190 mm × 134 mm
백상지 60 g/m²

〔별지 제 7 호서식〕

순 직 (공 상) 확 인 서

순직상이자	소 속				
	직 명		퇴직년월일		
	성 명		한자 ( )	. . . 생	
	본 적				
	주 소				
	사망(상이) 연월일		사망(상이) 장 소		사망(상이) 구 분	순직 공상
	사망(상이) 사 유				상이 등급	
유족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순직자와 관 계	
	주 소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 24 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순직 (공상)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년 월 일

총 무 처 장 관

원호처장 귀하

1802-02-A
197. . .승인

190㎜ × 268㎜
백상지 60g/㎡

〔별지 제8호서식〕 (개정 73.6.21 대령 6738)

원호번호	제 호	생활무능력자인정 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연금수급권자	① 본 적		
	② 주 소		
	③ 주민등록번호		
	④ 성 명		⑤ 19 . . . 생
심신장애자	⑥ 주민등록번호		⑧ 19 . . . 생
	⑦ 성 명		
⑨ 심애신사장항			

군사원호보상금여금법 시행령 제20조 및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 성명 ㊞

○ ○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입인지
없 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0703-2-8A-1
1971.12.21 승인

190 ㎜ × 268 ㎜
신문용지 50 g/㎡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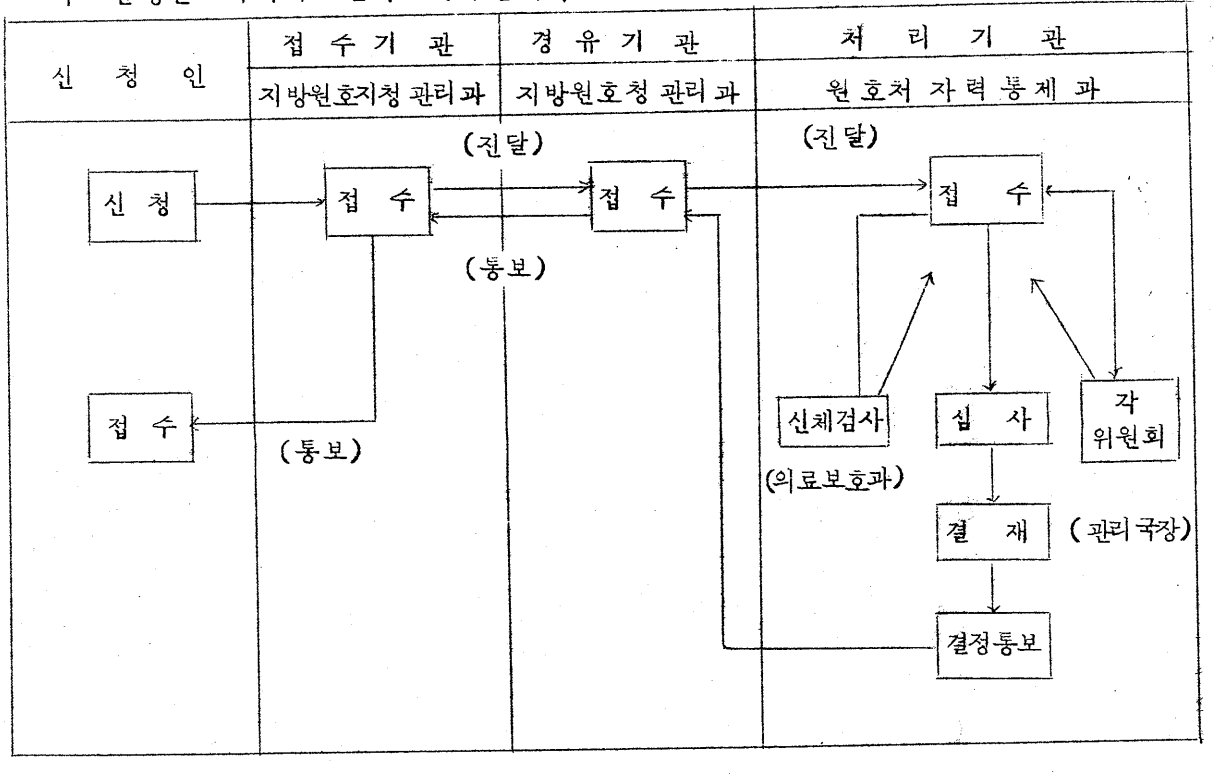

〔별지 제9호서식 (1)〕

(표 지)

애국지사연금증서



원 호 처

(표지안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귀중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증서를 관할 지방원호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보상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권리를 상실한 때.
   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라. 기타 원호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
3. 이 증서의 소지자는 후란에 명시된 의료 및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읍니다.
4.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군사원호관계법령에 의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5. 매기 또는 매월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 연금 또는 제수당의 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1면) (개정 73.6.21 대령 6738)

애국지사연금증서

사진

원호번호 제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인감	

보상금종목	발생년월일	적 요	지정주무자인
연 금			
간호원수당			
생계부조			
가족수당(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과 높은 공훈을 찬양하여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

19 년 월 일

원호처장

0703-2-77A
1971.12.21 승인

75㎜ × 140㎜
백상지 60g/㎡

(2 면 및 3 면)

보 상 금 지 급 정 지 사 항

기 간		보 상 금 종 목	금 액	정 지 사 유	지 청 주 무 자 인	
부 터	까 지				시	종

(4면 및 5면)

주 소 변 경 사 항

년 월 일	주 소	지청주무자인

(6면 내지 23면)

보 상 금 지 급 사 항

지 급 년월일	년 도	월	보상금 종 목	지급액	적 요	지급자인

(24면 및 25면)

특 기 사 항

(26면 내지 27면)

원호대상자 각종 신고에 대한 안내

1. 원호관계법령에 규정된 원호업무를 일층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호청 및 지방원호지청에 원호대상자 개인별 자력기록을 비치하고 원호대상자에게 시혜한 원호실적은 물론 원호대상자의

신고 또는신청서명	통수	첨 부 서 류
주소변경신고서	1통	없 음
호적변경 신고서	1통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추가입적할때에 한함)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	2 통	보상금수급권자가 환자일때에는 의사진단서 1통 기타사유일때에는 시·읍·면·동장의 확인증 1통
취업불이행 사유서	2통	없 음
대리취업신청서	1 통	취업희망직종신고서 1통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	1 통	호적초본 2통, 연금증서
취업희망신고서	2 통	없 음
철도무임승차확인증 또는 철도운임할인증 교부신청	구 두	없 음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서식은 지방원호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원호대상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니

신상변동사항을 각종 신고 또는 신청서에 의하여 부단히 기록 정리하고 있으니 원호대상자는 이점 유의하여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소정의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신고 및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 고 또 는 신 청 사 유	신고또는신청자
주소를 변경할때, 국립원호병원·국립원호원·직업재활원에 입·퇴원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의 호적상에 변동이 있을때 (출생, 사망, 제적, 개명, 실종, 자격정지 형확정, 전적등)	보상금수급권자 또는 가족
보상금을 대리수령하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취업명령을 받고 취업을 불이행한때	보상금수급권자
대리취업을 시키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애국지사의 사망일시금을 수급하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로서 취업을 희망할때	보상금수급권자
교통시설 (철도) 을 이용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이에 관계된 사항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방원호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면)

의료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안내

1. 의료 관계

가. 상이가 재발한 때에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가료를 요할 때에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 의료 및 응급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나. 상이로 인한 응급가료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3일내에 관할지방원호지청장에게 가료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 일체는 원호처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교통 관계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가시설인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철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에서 발행한 철도무임승차 확인증을 교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요 금 : 무임 (간호원 1명 포함)

나. 이용회수 : 연왕복 6회

〔별지 제9호서식(2)〕

(표 지)

애국지사유족연금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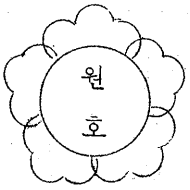

원 호 처

(표지 안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귀중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증서를 관할지방원호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보상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권리를 상실한 때.

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라. 기타 원호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

3.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군사원호관계법령에 의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4. 매기 또는 매월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 연금 또는 제수당의 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1 면)

애국지사 유족 연금증서

원호번호 제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그 외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2 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3면) 〈개정 73.6.21 대령 6738〉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사 진
인 감	

년 월 일 지청장

보상금종목	발생년월일	지청주무자인	소멸년월일	지청주무자인
연 금				
가족수당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바친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높은 공훈을 찬양하여 국가 유공자 특별원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

19 년 월 일

원호처장

0703-2-78A
1971.12.21 승인

75㎜ × 140㎜
백상지 60g/㎡

(4면 및 5면)

보상금수급권 변경사항

보상금수급권자 성명	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보상금수급권발생년월일	보상금수급권소멸년월일	소멸사유	지칭 주무자인

(6면 및 7면)

보상금 지급정지사항

기간		보상금 종목	금액	정지사유	지청주무자인	
부터	까지				시	종

(8면 및 9면)

주 소 변 경 사 유

년 월 일	주 소	지청주무자인

(10면 내지 25면)

보상금지급사항

지급년월일	연도	월	보상금 종목	지급액	적 요	지급자인

(26면 및 27면)

특 기 사 항

(28면)

원호대상자의 각종신고등에 대한 안내

1. 원호관계법령에 규정된 원호업무를 일층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호청 및 지방원호지청에 원호대상자 개인별 자력기록을 비치하고 원호대상자에게 시혜한 원호실적은 물론 원호대상자의

신고또는신청서명	통수	첨 부 서 류
주소변경신고서	1통	없 음
호적변경신고서	1통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입적할 때에 한함)
차순위 연금지급신청서	1통	소재불명확인증 2통, (소재불명자에 한함)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	2통	보상금수급자가 환자일때에는 의사진단서 1통, 기타 사유일때에는 시·읍·면·동장의 확인증
취업불이행사유서	2통	없 음
대리취업 신청서	1통	취업희망직종신고서 1통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서식은 원호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원호대상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니 이에

신상변동사항을 각종신고 또는 신청서에 의하여 부단히 기록 정리하고 있으니 원호대상자는 이점 유의하여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소정의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신고 및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 고 또 는 신 청 사 유	신고또는신청자
주소를 변경할때, 국립원호병원·국립원호청·직업재활원에 입원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의 호적상에 변동이 있을때 (출생, 사망, 제적, 개명, 실종, 자격정지, 형확정, 전적 등)	보상금수급권자 또는 가족
보상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소재불명되었거나 원호정지가 되어 차순위자가 연금을 수급하고자 할 때	차순위자
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취업명령을 받고 취업을 불이행한 때	연금을 받는자
대리취업을 시키고자 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관계된 사항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원호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9호서식(3)〕

(표 지)

(4.19 반공) 상 이 연 금 증 서 (철 인) 원 호 처

(표지 안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귀중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증서를 관할 지방원호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보상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권리를 상실한 때.
   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라. 대부를 받을 때.
   마. 보철구를 장착 또는 수리할 때.
   바. 이 증서의 소지자는 후란에 명시된 의료 및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읍니다.
3.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다만, 군사원호관계법령에 의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4. 매기 또는 매월 의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 연금 또는 제수당의 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1면) (개정 73.6.21 대령6738)

상 이 연 금 증 서

사 진

원호번호 제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상이호수

인감	

보상금종목	발생년월일	적 요	지청주무자인
연 금			
간호수당			
생계부조수당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친 숭고한 희생정신과 높은 공훈을 찬양하여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원 호 처 장

0703-2-79A
1971.12.21 승인

75㎜ × 140㎜
백 상지 60g/㎡

(2면 및 3면)

보상금지급정지사항

기간		보상금 종목	금액	정지사유	지청주무자인	
부터	까지				시	종

(4면 및 5면)

주 소 변 경 사 항

년 월 일	주 소	지청주무자인

(6면 내지 21면)

보 상 금 지 급 사 항

지급년월일	연도	월	보상금종목	지급액	적 요	지급자인

(22면 및 23면)

대 부 사 항

대부 년월일	대부기간 부터	대부기간 까지	대부종목	대부번호	대부금액	지청 주무자인

보 철 구 공 급 사 항

장착 년월일수리	보철구명	수명기간	적 요	지청주무자인

(24면 및 25면)

특 기 사 항

(26면 및 27면)

원호대상자의 각종신고등에 대한 안내

1. 원호관계법령에 규정된 원호업무를 일층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호청 및 지방원호지청에 원호대상자 개인별 자력기록을 비치하고 원호대상자에게 시혜한 원호실적은 물론 원호대상자의

신고또는신청서명	통수	첨부서류
주소변경신고서	1통	없음
호적변동신고서	1통	호적등본2통, 주민등록표등본2통 (추가입적할때에 한함)
대리수령인 지정승인신청서	2통	보상금수급권자가 환자일때에는 의사진단서 1통, 기타사유일때에는 시·읍·면·동장의 확인증 1통
취업불이행사유서	2통	없음
봉급또는임금신고서	2통	없음
상이연금일시금지급신청서	1통	호적초본2통 연금증서
보철구 공급 및 수리신청	2통	없음
취업희망신청서	2통	없음
철도무임승차확인증 및 철도운임할인증 교부신청	구두	없음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서식은 지방원호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니 이에

신상 변동 사항을 각종 신고 또는 신청서에 의하여 부단히 기록 정리하고 있으니 원호대상자는 이점 유의하여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소정의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신고 및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신 고 또 는 신 청 사 유	신고또는신청자
주소를 변경하였을때, 국립원호원·국립원호병원·직업재활원에 입원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의 호적상에 변동이 있을때 (출생·사망·제적·개명·실종·자격정지·형확정·전적 등)	보상금수급권자 또는 가족
보상금을 대리수령하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취업명령을 받고 취업을 불이행한 때	보상금수급권자
근로수당을 받고자 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사망자의 사망일시금을 수급하고자 할 때	보상수급권자의 유족
상이자 (보철구 수요대상자)로 신규등록하였을때, 특별한 사유로 보철구를 장착 또는 수리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로서 취업을 희망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교통시설 (철도 이용할 때)	보상금수급권자

관계된 사항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방원호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면)

의료 및 교통시설의 이용에 대한 안내

1. 의료 관계

가. 상이가 재발할 때에나 상이가 원인이 되어 가료를 요할 때에는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 의료 및 응급가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나. 상이로 인한 응급가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3일 이내에 관할 지방원호지청장에게 가료비용을 청구하면 비용 일체는 원호처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교통 관계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국가시설인 교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철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원호처에서 발행한 철도무임승차확인증 또는 철도운임 할인증을 교통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1 급 해 당 자	2 급해당자	3 급해당자
요 금	무 임 (간호원 1명 포함)	무 임	5 할
이용회수	연 왕복 6 회		

〔별지 제9호서식(4)〕

(표 지)

4.19 유족연금증서



원 호 처

(표지 안면)

"알아두어야 할 일"

1. 이 증서는 귀하의 보상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귀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 증서를 관할지방원호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 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

나. 보상금수급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권리를 상실한 때.

다. 보상금을 수령할 때.

라. 대부를 받을 때.

마. 기타 원호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

3. 이 증서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군사원호관계법령에 의한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4. 매기 또는 매월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그 연금 또는 제수당의 지급기일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1면)

원호번호 제 호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관계 그의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2면)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

사 진

인			
감			

년 월 일 지청장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

사 진

인			
감			

년 월 일 지청장

(3면) (개정 73.6.21 대령 6738)

주민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공자와의 관계	사 진

인감	

년 월 일 지청장

보상금종류		발생년월일	지청주무자인	소멸년월일	지청주무자인
연 금 ( )					
생계보조수당	미망인				
	노령자				
	학생( )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몸을 바친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높은 공훈을 찬양하여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함.

년 월 일

원호처장

0703-2-80A
1971.12.21승인

75㎜ × 140㎜
백상지 60g/㎡

(4면 및 5면)

보상금수급권변경사항

보상금수급권자 성명	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보상금수급권발생년월일	보상금수급권소멸년월일	소멸사유	지청주무자인

(6면 및 7면)

보상금지급정지사항

기간		보상금종목	금액	정지사유	지청주무자인	
부터	까지				시	종

(8 면 및 9면)

주 소 변 경 사 항

년 월 일	주 소	지청주무자인

(10 면 내지 25면)

보 상 금 지 급 사 항

지급년월일	연도	월	보상금종목	지 급 액	적 요	지급자인

(26 면 및 27 면)

대 부 사 항

대부월일	대부기간		대부종류	대부번호	대부금액	지 청 주무자인
	부터	까지				

특 기 사 항

(28면)

원호대상자 각종신고등에 대한 안내

1. 원호관계 법령에 규정된 원호업무를 일층 더 효 청에 원호대상자 개인별 자력기록을 비치하고 대상 동 사항을 각종 신고 또는 신청서에 의하여 부단 여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주소지를 기 바라며 각종 신고 및 신청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고또는신청서명	통수	첨 부 서 류
주소변경신고서	1통	없 음
호적변경신고서	1통	호적등본 2통, 주민등록표등본2통 (추가입적할 때에 한함)
차순위연금 지급 신청서	1통	소재불명확인증 2통 (소재불명자에 한함)
대리수령인 지정 승인 신청서	2통	보상금수급권자가 환자일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1통, 기타사유일 때에는 시·읍·면·동장의 확인증1통
대리취업신청서	1통	취업희망직종신고서 1통
취업불이행사유서	2통	없 음
봉급또는임금신고서	1통	없 음

2. 신고서 또는 신청서 서식은 지방원호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상자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무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니 이에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원호청 및 지방원호지자에게 시혜한 원호실적은 물론 원호대상자의 신상변히 기록 정리하고 있으니 원호대상자는 이점 유의하관할하는 지방원호지청에 소정의 신고를 필하여 주시안내합니다.

신 고 또 는 신 청 사 유	신고또는신청자
주소를 변경한때, 국립원호병원·국립원호원·직업재활원에 입원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원호대상자의 호적상에 변동이 있을때 (출생·사망·제적·개명·실종·자격정지, 형확정, 전적등)	보상금수급권자
보상금수급권자가 1년이상 소재불명되었거나, 원호정지가 되어 차순위자가 연금을 수급하고자 할때	차 순 위 자
보상금을 대리수령하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대리취업시키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취업명령을 받고 취업을 불이행한 때	보상금수급권자
근로수당을 받고자 할때	보상금수급권자

관계된 사항중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방원호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74.12.31 대령7485)

원 호 증 서

사 진

주 소

원호번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구분

상기자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대상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원 호 처 장 ㊞

0703-2-81A(1)
1971.12.21 개정

87 mm × 65 mm
백상지 120 g/m²

〔별지 제 11호서식〕 (개정 73. 6. 21 대령 6738)

원호번호		생계간호 부조 수당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① 본적				
② 주소			③ 인정번호	애국지사 제 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성명		⑥ 19 . 생
심신장애 및 간호사항	⑦ 원인			
	⑧ 현황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 2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 성명 ㊞

국가유공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2통 (생활보조수당 해당자에 한함)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3. 사진 (2 cm × 3 cm) 2매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입인지 없음

0703-2-53A
1971. 12. 21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0 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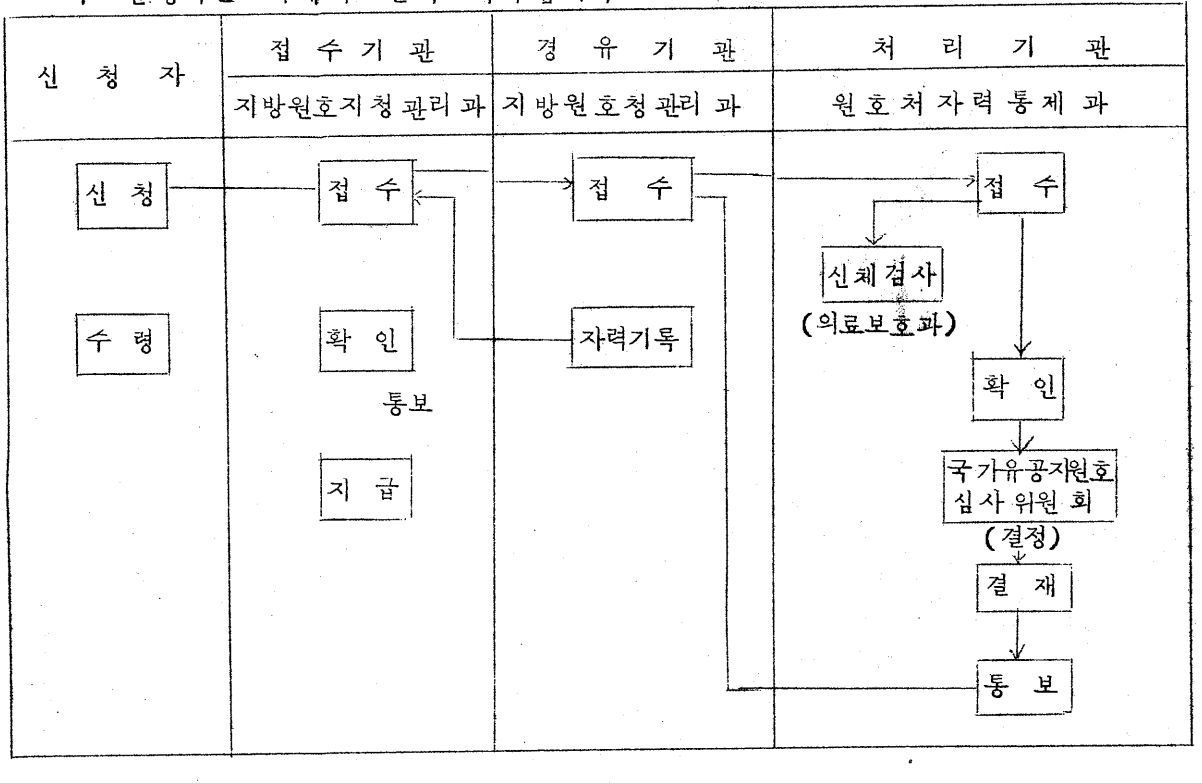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76.1.10 대령 7949)

발급번호		무공수훈자확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생
	④주소					
	⑤본적					

수훈사항	훈장증	⑥발급번호		⑧무공훈장등급	등급	원호추천서	⑨발급번호	
		⑦년월일	. .				⑩년월일	. .
	⑪신분	군인 경찰 민간인	⑫수훈당시계급		⑬수훈당시소속		⑭전역(퇴역)면역, 퇴직일자	

가족사항	⑮관계	⑯주민등록번호	⑰성명	⑱생년월일	⑲학력	⑳경력	㉑자격	㉒면허	㉓직업	㉔비고

취업희망	㉕ 직종		직업보도기술교육	㉖ 희망과목		재산사항	동산		부동산		
	①	②		㉗ 불희망			㉘ 종류	㉙ 금액	㉚ 종류	㉛ 규모(평)	㉜ 금액
	③	④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성명 ㊞

무공수훈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내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무공수훈자 원호추천서 원본
2. 훈장증 사본 2통
3. 소득신고서 (소정서식) 2통
4. 호적등본 2통
5. 주민등록표등본 1통 (주민등록증 미제시자에 한함)
6. 증명용 사진 4매

수입인지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위의 자는 국가유공자등록특별원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원호대상자임을 확인함.

무공수훈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

원호처장 귀하

0703-20-114-표
1975.12.24 승인

190㎜ × 268㎜
백상지 60g/㎡

〔별지제 12 호서식〕(후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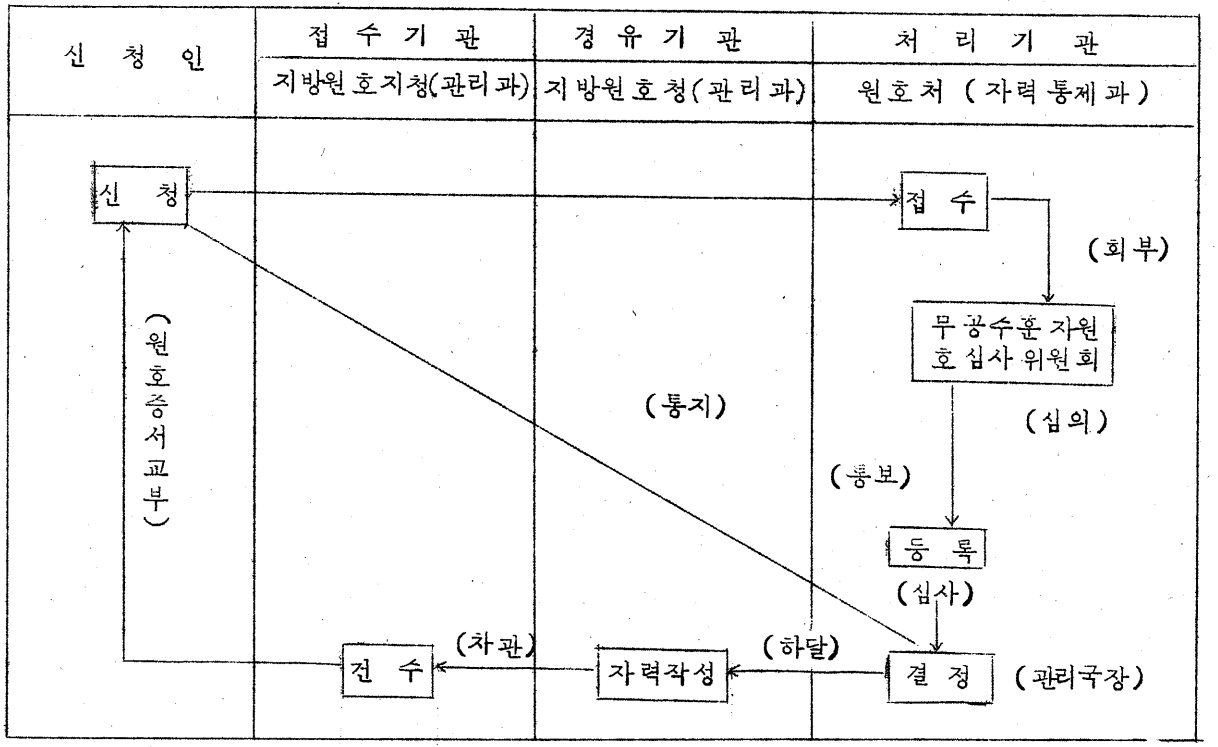

〔별지 제 13 호서식〕 (신설 76. 1. 10 대령 7948)

소 득 신 고 서										처리기간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 . 생		
	④ 주 소									
	⑤ 본적									
수훈사항	훈장증	⑥ 발급 번호		⑧ 무공훈장 등 급		등급	원 호 추천서	⑨ 발급 번호	. .	
		⑦ 년월일	. . .					⑩ 년월일		
	⑪ 신 분	군인 · 경찰 · 민간인	⑫ 수훈당시계급		⑬ 수훈당시소속			⑭ 전역(퇴역, 면역, 퇴직) 일자	. . .	

가족사항	⑮ 관계	⑯ 주민 등록번호	⑰ 성 명	⑱ 생년월일	⑲ 월 소득액	⑳ 직업및 근무처	㉑ 특기사항

재산상태	동산		부동산		
	㉒종류	㉓ 금액	㉔종류	㉕ 규모 (평)	㉖ 금액

위와 같이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성명 ㊞

무공수훈자원호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입인지
없 음

0703-2-116-ㅌ
1975. 12. 24 승인

190 ㎜ × 268 ㎜
백상지 60 g/㎡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76.1.10 대령 7948)

제 호	무공수훈자원호추천확인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생년월일	. . 생			
	④주소								
	⑤본적								
수훈사항	훈장증	⑥발급번호		⑧무공훈장등급	등급	원호추천서	⑨발급번호		
		⑦년월일	. .				⑩년월일		
	⑪신분	군인·경찰·민간인	⑫수훈당시계급		⑬수훈당시소속		⑭전역(퇴역, 면역, 퇴직)일자		
추천확인	가족사항	⑮관계	⑯주민등록번호	⑰성명	⑱생년월일	⑲월소득액	⑳직업및근무처	㉑특기사항	

내용	재산사항	부동산		동산		
		㉒ 종 류	㉓ 규 모 (평)	㉔ 평가액	㉕ 종 류	㉖ 금 액

위의 자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시행령 제2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무공수훈자 원호추천서를 발급한 자임을 확인함.

. . .

장 관 인

원호처장 귀하

1802-02-145-A
1975, 12, 24 승인

190 mm × 268 mm
백상지 60 g/m²

社會福祉事業法

1970.1.1 法律第2191号

第1条(目的) 이法은 社会福事業에 관한 基本的 事項을 規定하여 그 運営의 公正適切을 期함으로써 社会福祉의 增進을 도모함을 目的으로한다.

第2条(定義) ①이法에서 "社会福祉事業"이라함은 다음 各 号의 事業을 말한다.

1. 生活保護法에 의한 各種 保護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営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2. 児童福利法에 의한 各種 福祉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営을 目的으로하는 事業
3. 淪落行為等 防止法에 의한 各種 善導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営을 目的으로하는 事業
4. 社会福祉相談·災害救護·浮浪人 善導·職業補導·老人休養·隣保無料宿泊·顚完治者 社会復帰事業등 各種 福祉事業 및 福祉施設의 運営등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

②이法에서 "社会福祉法人"(이하 法人이라한다.)이라함은 社会福祉事業을 행할것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또는 그 聯合体를 말한다.

③이 法에서 社会福祉施設(이하"施設"이라한다.)

이라함은 社会福祉事業을 행할것을 目的으로 設置된 施設을 말한다.

④이 法에서 共同募金이라함은 第24条의 規定에 의한 社会福祉 共同募金会(이하"募金会"라한다)가 이 法에의한 法人에 配分하기 위하여 寄附金品 募集禁止法 第3条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어 全国的으로 또는 서울特別市·釜山市나 道単位로 寄附者의 自発的인 寄附行為에 의하여 金品을 募集하는 것을 말한다.

第3条(社会福祉委員会) ①社会福祉事業의 重要한 事項에 관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中央社会福祉委員会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地方社会福祉委員会를 둔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社会福祉委員会와 地方社会福祉委員会의 組織運営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条(指導訓練) ①保健社会部 長官은 이 法 生活保護法, 児童福利法 기타 社会福祉 関係法律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과 社会福祉事業에 종사하는 者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指導와

訓練을 행하거나 또는 命할 수 있다.

② 訓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5条(社会福祉事業従事者資格) 保健社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에게 社会福祉事業 従事者 資格証을 交付한다.

第6条(資格証所持者의 定数) ①法人은 前条의 規定에 의한 資格証을 가진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数 이상 그 従事者로 하여야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定数에는 単純한 労務에 종사하는者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7条(法人의 設立認可) ①法人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한다.

第8条(定款) 法人의 定款에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記載하여야한다.

1. 目 的
2. 名 称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의 種別

5. 資産에 관한 事項

6. 任員에 관한 事項

7. 会議에 관한 事項

8. 収益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관한 事項

9 解散에 관한 事項

10. 定款変更에 관한 事項

第9条(任員) ①法人은 代表理事를 포함한 理事5人 이상과 監事2人 이상을 두어야한다.

②民法第777条의 規定에 의한 親族은 任員総数의 3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③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한다. 다만, 補闕된 理事와 監事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④任員은 重任할 수 있다.

第10条(任員의 欠格事由)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法人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破産者로서 復権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후 3年을 経過하지 아니한 者.

4. 法律에 의하여 公民権이 停止 또는 喪失된 者

5. 第16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員의 認可가 取消된 날로부터 2年이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11条(闕位任員의 選任) ① 理事総数의 3分의 1이상 闕位가 있을 때에는 1月이내에 이를 選任하여야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選任을 하지아니하는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은 利害関係人의 請求 또는 職権으로 臨時理事를 選任할 수 있다.

③ 前項의 規定에 의한 臨時理事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12条(資産) ① 法人은 社会福祉事業運営에 필요한 資産을 所有하여야 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資産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13条(補助金등) ①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法人에 대하여 補助를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등은 그 目的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第14条(類似名称使用禁止) 法人이 아닌者는 社会福祉法人 또는 이와 類似한 名称을 使用할 수 없다.

第15条(書類의 備置) 法人은 法人設立日로부터

30日이내에 다음 各号의 書類를 作成하여 그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1. 定 款
2. 任員의 住所·姓名
3. 財産目録
4. 会議録
5. 기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하는 書類

第16条(検査監督등) ①保健社会部長官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法人의 業務 및 財産状況에 관하여 検査監督할 수 있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法人 또는 任員이 이 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甚히 害할 憂慮가 있는 行為를 한 때에는 그 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任員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③募金会가 행하는 寄附金品의 募集 및 그 사용에 관한 監督은 寄附金品 募集禁止法 第7条 및 第8条의 規定에 不拘하고 保健社会部長官이 행한다.

第17条(収益事業) ①法人은 그가 행하는 事業에 支障이 없는 範囲内에서 그 事業運営에 充当하기 위하여 収益事業을 행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収益事業에 관한 会計는 社会福祉事業에 관한 会計와 区分하여야한다.

第18条(収益事業의 停止命令) 保健社会部長官은 法人이 前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収益을 그가 행하는 事業이외의 目的에 사용할 때에는 그 収益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19条(合併) 法人은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이法에 의한 다른 法人과 合併할 수 있다.

第20条(定款変更등의 許可) 法人은 定款의 変更과 基本財産의 処分에 관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한다

第21条(準用規定) 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法人에 관한 規定과 非訟事件節次法中法人에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2条(施設의 設置) ①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施設을 設置運営할수있다. 다만, 市·郡이 이를 設置하고자 할때에는 管轄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한다.

②法人으로서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은 者가 아니면 施設을 設置運営할 수 없다. 다만, 이 法에 의한 法人이외의 法人이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施設의 設置基準과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23条(許可取消등) 保健社会部長官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는 施設이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施設의 改善 또는 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施設이 設置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正当한 理由없이 事務檢查를 拒否하거나 忌避한 때

3.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処分에 違反하였거나 虛偽의 報告를 한 때

第24条(社会福祉共同募金会) ①保健社会部長官은 共同募金의 目的을 達成하게 하기 위하여 募金会의 設立을 許可할 수 있다.

②募金会는 法人으로 한다.

③募金会에 관하여는 第7条내지 第11条 및 第21条를 準用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募金会의 運営 및 共同募金의 方法과 配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条(罰則) ①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0万원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1. 第13条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24条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募金 또는 配分된 金品을 目的外에 사용하거나 任意로 処分한

者

第26条(同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万원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1. 第18条의 規定에 의한 停止命令을 받고도 継続 그 収益事業을 행하는 者

2. 第22条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아니하고 施設을 設置運営한 者

第27条(同前) 第4条第1項, 第6条第1項, 第9条, 第14条 또는 第15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万원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第28条(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従事者가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3条의 規定에 의한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그 行為者를 罰하는 外에 当該法人에 대하여도 各 本条의 罰金形을 科한다.

第29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民法 第32条의 規

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된 社会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財団法人과 社団法人 韓国社会福祉聯合会는 이 法에 의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 본다.

③(同前) 이 法 施行当時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認可를 받아 設置된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로 본다.

④(同前) 第6条의 規定은 이 法 公布後 2年이 경과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197.4.15대통령령 제4916호〕

개정 1975.9.23 대통령령제7825호
개정 1976.9.18 대통령령제8246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 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사회복지 위원회(이하"중앙위원회"라 한다)와 지방사회복지 위원회(이하"지방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서 구성한다.

③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차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제2부시장, 부산시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해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위원회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3.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연합체의 대표자.

⑤전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①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능)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각 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서기) ①각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격)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사업종사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1.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업복지사업과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하고 문교부에 학사학위등록을 한 자.

2.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문교부에 학사학위등록을 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사회사업 종사자훈련(이하"훈련"이라 한다)을 4주이상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1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초급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훈련을 12주이상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훈련을 24주이상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5. 전 각호의 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훈련을 32주이상 받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7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제10조(자격증 소지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고용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법인의 설립인가신청)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하는 자는 법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및 자산에 관한 서류와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법인의 지도감독) ①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검사하게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게 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수익사업의 신고등) ①사회복지법인의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내용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의 종류와 내용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회복지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수익사업의 명칭·종류·사업내용 및 사업장소
3. 수익사업의 운영에 관한 자금 총액
4.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주소·성명
5. 수익사업의 개시년월일 및 그 실시기간
6. 기타 수익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4조(법인의 합병)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하는 법인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합병결의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합병에 있어 합병에 의하여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인이 각각 지명한 5인이상의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정관·재산목록·대차대조표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합병에 의한 법인설립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법인의 일체의 권리·의무(당해 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인가·기타 처분에 의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④ 사회복지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민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채권신고의 공고절차에 준하여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법인에 대한 채권신고를 그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일안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법인이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

출 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은 그 임원중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를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1일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정관의 변경,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16 조 (공동모금의 방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하 "모금회"라한다)가 모금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동모금의 기간, 목표액, 배분대상 기타 모금에 관한 계획에 관하여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모금회가 모금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내용을 보건사회부장관과 모금하고자 하는 모금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사회부장관 및 모금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모금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모금회가 모금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모금총액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사회부장

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 기타 모금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모집금품의 배분) ①모금회가 모집한 금품을 배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배분의 시기·배분방법 기타 배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모금회가 모집한 금품의 배분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 부터 1월안에 배분총액·배분받은 법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배분액을 지체없이 공고하는 동시에 그 공고내용과 수입지출결산 상황을 보건사회부장관 및 모금지역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서류의 비치) 모금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금품의 모집계획에 관한 서류
3. 금품의 모집허가지령서
4. 금품의 배분에 관한 서류
5. 모집금품의 수입에 관한 대장
6. 모집금품의 출납에 관한 대장

7. 모집금품의 수불에 관한 대장

8. 금품모집에 필요한 비용지출 대장 및 증빙서류

제19조(금품의 모집 비용등) ①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5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모금회는 모집금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금품의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②모금회는 배분하기로 결정한 모집금품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체로 하여금 배분의 대상자에게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제11조·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모금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1970. 8. 28〕

〔보건사회부령제356호한글화〕

개정 1975.9.17 보건사회부령제491호

개정 1976.9. 4 보건사회부령제53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의 교부신청)

①법 제5조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이하"자격증"이라 한다)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의한 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17 보사령 491)

1. 주민등록표 초본 및 신원증명서 각1부
2. 신원진술서(사진첨부) 4부
3. 사유란을 기재한 호적등본 1부
4. 영 제9조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명함판 사진 2매

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 3 조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인가신청 절차) ① 영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2. 임원의 주민등록표초본 . 취임승락서 . 및 인감증명서 각 2 부
3. 임원의 신원 진술서 (사진첨부) 각 5 부
4. 사유란을 기재한 임원의 호적등본 각 2 부
5. 자산에 관한 서류 각 2 부
6. 설립후 1 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2 부
7. 임원의 명함판 사진 각 5 매

② 전항의 법인설립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다.

③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인가증은 별지 제 4 호 서식과 같다.

제 4 조 (사회복지법인의 합병) ① 제 10 조의 규정은 법 제 19 조 및 영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정관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 19 조 및 영 제 1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설립허가 신청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5.9.17 보사령 4915)

1. 임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취임승낙서 및 인감증서 각 2 부

2. 임원의 신원진술서 (사진첨부) 각 5 부

3. 사유란을 기재한 임원의 호적등본 각 2 부

③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합병으로 인하여 새로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임시 이사의 선임청구)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제1항의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자산) ①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그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기타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사회복지법인의 연간운영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을 포함한다) 에 필요한 경비의 수입은 기본재산수입이 10분의 2 이상이여야 한다. (개정 75.9.17 보사령 491)

③기본재산의 가격과 그 연간 수입은 금융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구성할 수 없다.

1. 매수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납입하지 아니한 ~~공유 또는~~ 공유 재산

2. 부동산으로서 수익을 얻지 못할 재산. 다만,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및 그 대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인의 비치서류) 사회복지법인은 법 제15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이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사업계획서

2. 예산서

3. 전회계년도의 사업실적서

4. 결산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포함한다)

5. 물품 및 현금의 출납대장

6. 기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제8조(검사공무원의 자격증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익사업의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및 경영방법 손익추정 수익금의 사용방법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에 관리책임자의 신원진술서 1부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정관 변경등) ①법 제20조 및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결의서 1부
2. 정관 변경안 또는 기본재산의 변경내역서 1부
3. 정관 또는 기본재산 목록의 신구 대조표 1부
4.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증명서 각 1부

②제1항의 정관의 변경 또는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한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 11 조(임원의 취임인가 신청) 사회복지법인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업의 범위가 2개 도(서울특별시·부산시를 포함한다)이상으로 되어있는 법인은 그 신청서를 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9.17 보사령 491)

1. 선임결의서 1부
2. 취임승락서 1부
3. 주민등록표초본 1부
4. 신원증명서 1부
5. 사유란을 기재한 호적등본 2부
6. 신원진술서 (사진첨부) 4부

제12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모금회"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제10조(정관변경에 관한 부분)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모금회는 공동모금에 관한 허가 사항을 2개 이상의 중앙 또는 지방의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고, 모금종사자에게는 당해 모금지역이 2개 시·도이상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당해 모금지역이 1개 시·도인 경우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도지사가 발행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동모금종사자의 자격증을 소지하게하여야 하며, 금품을 기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모금의 완료시에는 모금기간 모금총액 모금비용등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등) ①사회복지법인이 법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설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시장·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결의서·사업계획서·예산서 재산목록·운영규정·위치도·평면도(설비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할 것)및 사진 각 1부
2. 사회복지시설의 설비·구조내역서 1부
3.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 및 시설의 장과 그 직원의 사회복지 사업종사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4. 법인의 정관 1부

②법 제22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이 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서류이외의 당해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제1항제1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당해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1부씩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에 의한 시설허가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4조(시설의 폐지 및 정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2. 사회복지시설 폐지결의서 또는 사업정지 결의서 1부
3. 재소자 조치계획서(명단을 포함한다.) 1부
4. 재산처리 계획서 1부

③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시설장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 호서식의 신청서에·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신청서에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제 1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허가증
2. 명칭·시설의 장·사업목적 또는 소재지의 변경에 대한 결의서와 주무장관의 정관변경허가서 각 1 부
3. 사업계획서·예산서·재산목록(사업목적 및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시에 한한다) 각 1 부
4. 사회복지시설의 장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사본(시설의 장의 변경허가 신청시에 한한다) 1 부
5.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의 명단 및 시설의 장과 그 직원의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증 사본(시설의 소재지 변경허가 신청시에 한한다) 1 부

제 15 조 (시설의 설치 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사무실 및 숙직실
2. 거실, 식당, 조리실, 창고, 도서실 또는 오락실, 목욕실, 세면장, 세탁장, 세탁물건조장, 변소
3. 급수 및 배수시설, 동화설비, 소화설비

② 거실의 설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와 채광, 조명, 방습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재소자 1인이 2.5평방미터 이상을 차지하여야 하며, 1실의 정원은 8인 이하이어야 한다.
3. 남녀를 입소시키는 경우에는 남녀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4. 출입구는 비상재해의 대피에 편리하도록 공지, 정원, 마루등의 가까운 곳에 설비하여야 하며 외기에 접하는 창문 중 방충을 요하는 곳에는 방충망을 장치하여야 한다.

③ 식당과 조리실에는 채광 및 환기장치와 창문에 대한 방충망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도서실 또는 오락실에는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신문, 잡지등 재소자용으로 적합한 서적류와 오락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변소는 재소자 15인까지 1개 이상으로 하고, 매 15인을 초과할 때 마다 1개를 증설하여야 하며, 남녀를 입소시키는 시설에서는 남녀용으로 구분하되, 남자용에는 대소 변기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급수 설비가 우물등에 의한 지하수에 의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 주위반경 6미터 안에에는 변소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수는 토관 또는 내수재료로 구조된 하수도에 의하여야 한다.

⑦매 건물마다 1개 이상의 비상구와 소화설비를 하는 외에 경보장치를 하여야 하며, 건물, 거실, 변소의 출입구와 마루 등에는 야간 사용 등의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⑧계단에는 난간을 목욕실 및 변소에는 손잡이를 설비하여야 하며, 맹인을 입소시키는 시설에 있어서는 승강의 장소, 마루와 거실, 변소, 목욕실등의 출입구에는 재소자가 손으로 만져서 식별할 수 있는 방향표시, 남녀실 및 실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소 인원의 기준) 시설의 재소 인원은 상시 20인이상 이어야 한다.

제17조(직원) 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에 시설의장, 사무원 과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

어야 한다. 다만, 재소자의 보호 및 지도에 필요한 직원은 상시 시설내에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 18 조 (위생조치 등) 시설의 설비와 재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거실은 매년 4회이상, 식당·조리실은 매일 1회이상, 변소는 매주 1회이상 소독하여야 하고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이외의 음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항시 소독하고 적어도 매년 2회 그 수질검사를 받은 후 검사증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 식량·부식물·침구·의류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항시 청결히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재소자에 대한 식기는 사용후 소독하여야 하며 침구는 매주 1회이상 일광소독을 하고 자주 세탁하여 항상 깨끗한 것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의류는 항상 깨끗한 것을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5. 재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특히 신체를 청결히 하고, 식사를 조리할 때 마다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전염병 질환 또는 화농성 창상이 있는 자가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재소자에게는 월 2회 이상 목욕 및 이발을 시켜야 하며, 그 입소시와 재소기간 중 매년 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로 나타난 질병에 대하여는 치료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9 조 (시설내 거주자) 시설내에서는 재소자 이외에 시설장 및 직원과 그 가족 이외자는 거주하지 못한다.

제 20 조 (장부등의 비치) 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재산 목록과 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서류, 운영규정, 운영일지, 시설의장 및 직원의 이력서와 사진, 예산서 및 결산서,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보고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

2. 법인의 정관 및 관계 결의 서류

3. 재소자의 입퇴소 서류. 명단. 보호의 경과 및 지도와 신상에 관한 기록표

제 21 조 (사회복지 상담시설) 사회복지 상담 시설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사회복지 상담 및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담당하는 전문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 22 조 (부랑인 선도시설) ①부랑인 선도시설에는 제 15 조 각항의 설비를 하는 외에 직업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소자의 소질에 따라 장래독립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업의 이론 및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부랑인 선도시설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입소자의 감별을 위한 직원 신상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직원생활 지도원 직업보도원 특수교육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③부랑인 선도시설 입소자의 재소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재소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3조(직업보도시설) ①직업보도 시설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입소자의 신상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직원 심리 및 직업 적응성의 판정을 위한 직원, 생활지도원, 직업보도원 및 특수교육 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직업보도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직업보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직업보도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서 재소자의 직업지도를 행할 수 있다.

③직업보도 시설의 장은 당해 직업보도 시설 또는 다른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의 직업지도에 따른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재소자가 퇴소후에 생업자 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정당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은 직업보도 시설의 설비에 이를 준용한다.

제 24 조 (노인휴양 시설) ①노인휴양 시설에는 제 15 조 각항의 설비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1. 옥내 또는 옥외의 휴게 설비

2. 가벼운 운동 또는 작업에 적합한 설비

3. 강당, 음악 또는 영화 감상 설비

②노인 휴양시설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생활지도원과 재소자의 간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제 25 조 (인보무료숙박시설) ①인보무료숙박시설에는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입소자의 신상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직원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제 22 조제 3 항의 규정은 인보무료숙박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재소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 26 조(나환자 사회복귀시설) ①나환자 사회복귀 시설에는 제15조 각항의 설비를 하는 외에 입소자의 질병재발에 대비한 부

속의원 설비와 그 퇴소후에 독립생계 유지에 필요한 직업보도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나완치자 사회복귀 시설에는 제17조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을 두는 외에 의사와 간호원을 두어야 한다.

③나완치자 사회복귀시설의 장은 그 입소자에 대한 직업보도나 특수 교육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그 기간 질병치유의 정도, 경력, 직업적응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실시하되 퇴소후의 독립생계 유지에 필요한 정착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2조제3항의 규정은 나완치자 사회복귀시설의 입소자에 대한 재소기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적용예) ①시설의 설치기준과 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복지 시설은 생활보호법을 아동복리법에 의한 복지시설은 아동복리법을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은 윤락행위등 방지법을 각각 적용한다.

②사회복지 상담시설, 부랑인 선도시설, 직업보도시설 노인 휴양시설, 인보무료숙박시설, 나완치자 사회복귀 시설로서 그 입소자를 상시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

시설은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중 의·식·주의 조치와 급식 위생 또는 의료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9.17 보사령 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교부신청서

① 본 적			
② 주민등록지 (현주소)			
③ 주민등록번호		④ 생년월일	
⑤ 성 명			

학 력

⑥ 부터	⑦ 까지	⑧ 학력	⑨ 수업년한	⑩ 전공과목	⑪ 학위

주요경력 (훈련 및 시찰)

⑫ 부 터	⑬ 까 지	⑭ 부 서	⑮ 직위 (업무)	⑯ 발 행 처

사회복지사업법 제 5 조에 의한 자격증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 청 인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경유 : 시장
도지사

9004-2-14A 190㎜×218㎜ (신문용지 50g/㎡)
1970.6.20 승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

①본적		사진 4×5
②주민등록번호		
③성명		
④생년월일		

위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자격이 있음을 증명함.

19 . . .

보건사회부장관 ㊞

9004-2-15A
1970.6.20 승인

190㎜×268㎜ (백상지 120g/㎡)

[별지 제 3 호서식]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신청서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목 적			④사업의종류		
임 원					
⑤주민등록번호	⑥성명	⑦직위	⑧임기	⑨주소	⑩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번호
재 산					
기본	⑪종 류	⑫규 모	⑬가 액	⑭연간수익액	⑮소재지
보통		⑲수 량	⑳가 액	㉑비 고	
	⑯부 동 산				
	⑰기구(집기)				
	⑱기 타				
㉒참 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청인(설립자)의 주소

성명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경유: 시 장
도지사

9004-2-16A
1970.6.20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①소 재 지	
②명 칭	
③대 표 자	
④목 적	
⑤사업의 종류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인가함.

19 . .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

조 건

9004-2-17A
1970.8.20 승인

190㎜×268㎜ (백상지 120/㎡)

[별지 제 5 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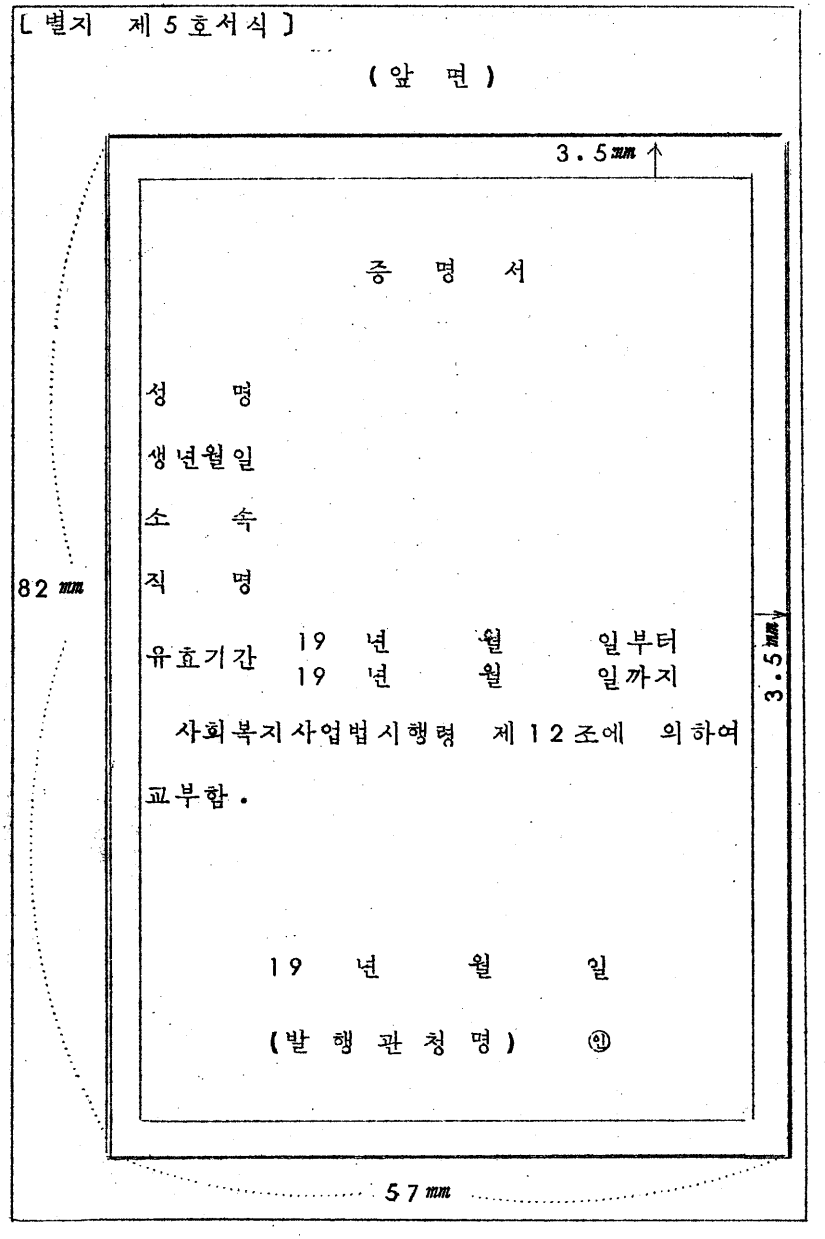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명

유효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12 조에 의하여 교부함.

19 년 월 일

(발 행 관 청 명) ㊞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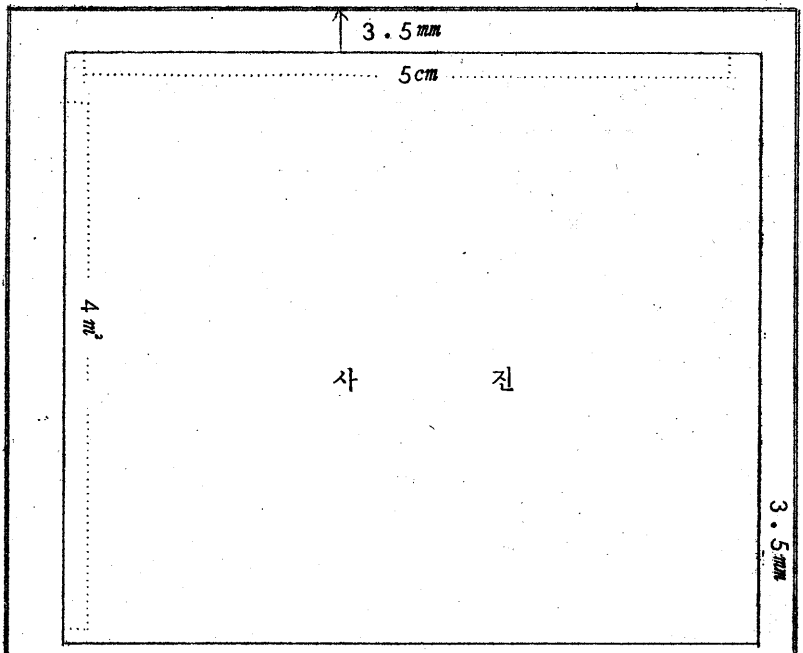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 증은 사회복지법인의 검사 감독시에 만 유효함.

2. 검사감독시는 이 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제시하여 야 함.

3.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9004-2-20A
1970.6.20 승인

(백상지 57㎜×82㎜ 120g/㎡)

[별지 제6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

①사 유	
②변경 또는 처분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의 정관 / 기본재산을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 / 처분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소

명 칭

대표자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경유 : 시장 / 도지사

9004-2-21A
1970.6.20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별지 제7호서식〕

사회복지법인 임원인가신청서

①주민등록번호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선임일자	⑤직위	⑥입기	⑦주소	⑧사회복지사업종사자자격증번호

위와 같이 임원을 선임하였으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소

명 칭
대표자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시 장
도지사

9004-2-23A
1970.6.20 승인

190㎜×268㎜ (서문용지 50g/㎡)

[별지 제8호서식]

(앞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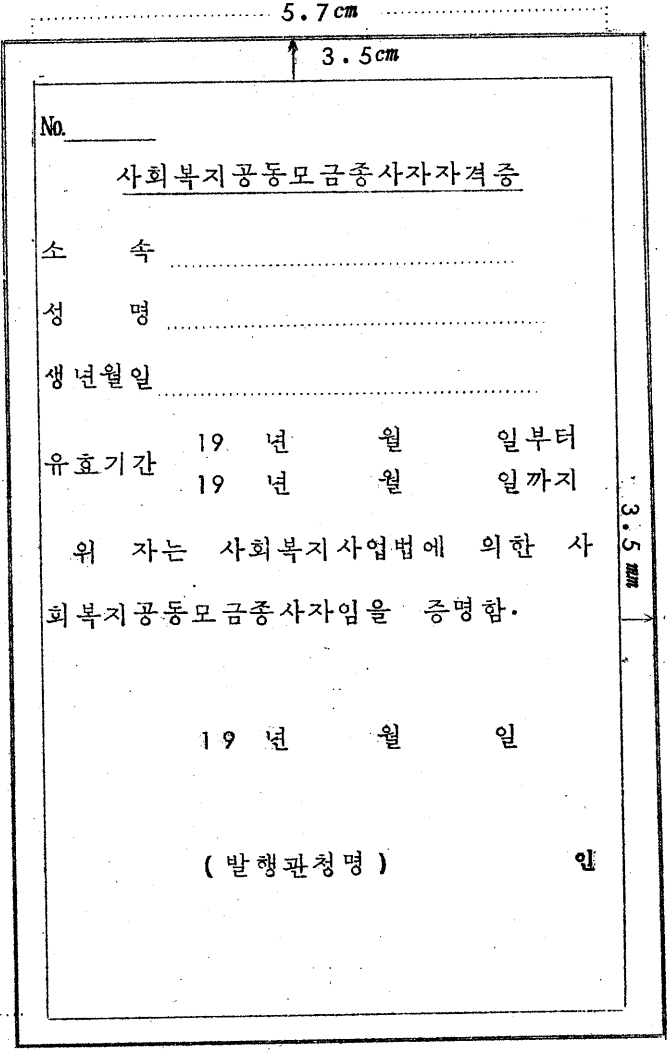

No.

사회복지공동모금종사자자격증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유효기간 19 년 월 일부터
19 년 월 일까지

위 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종사자임을 증명함.

19 년 월 일

(발행관청명) 인

(뒷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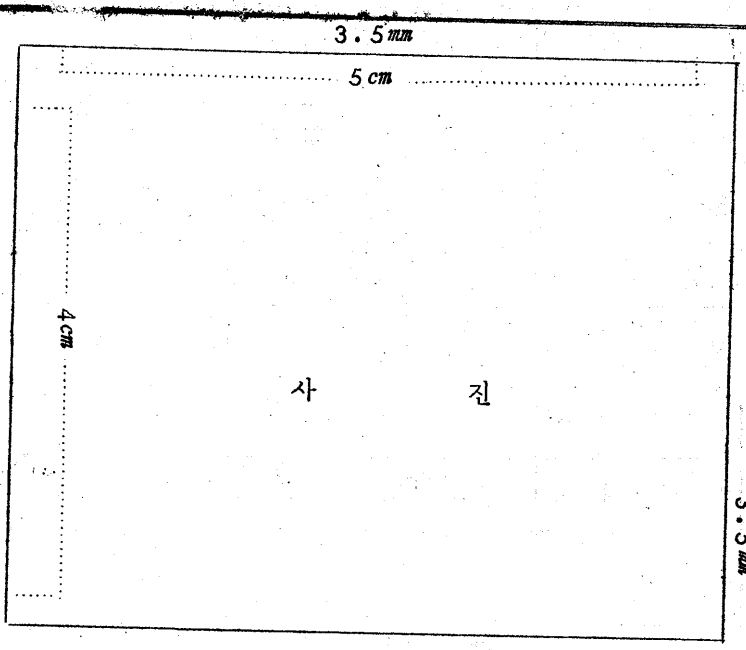

유 의 사 항

1. 이 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에만 유효함.

2. 이 증은 사회복지공동모금시에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함.

3. 이 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함.

9004-2-25A
1970.6.20 승인

57mm×82mm (백상지 120g/m²)

[별지 제9호서식]

사회복지시설설치허가신청서

①명 칭		②사업목적	
③소 재 지		④최초시설허가 년월일	⑤최종시설의허가 갱신년월일
⑥설 립 자		⑦시 설 장	
⑧개설(예정) 년 월 일		⑨종 교	
⑩수 용 능 력		⑪수용(예정) 인 원	

시설개선	⑫종 류	⑬규 모	⑭용 도	⑮비 고

직 원	⑯총인원수	⑰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소지자수	⑱기 타

예 산	⑲수 입 액	⑳지 출 액	㉑비 고

㉒시장·도지사의 의 견	19 . . . 시장(도지사) ㊞
㉓구청장·시장 군수의 의견	19 . . . 구청장(시장·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회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소
명 칭
대표자 ㊞

보건사회부장관
시장·도지사 귀하

9004-2-26A (190㎜×268㎜신문용지 50g/㎡)
1970.6.20 승인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사회복지시설허가증

①소재지			
②명칭			
③시설장			
④경영체			
⑤사업목적		⑥수용정원	명
⑦유효기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위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로 허가함.

19 . . .

보건사회부장관

시장
도지사 ㊞

9004-2-27A
1970.6.20 승인

(190㎜×268㎜백상지 120g/㎡)

[별지 제11호서식]

사회복지시설(폐지 / 사업정지) 승인신청서

①소재지		②시설장	
③명칭		④수용인원	
⑤사업폐지정지 예정 년월일		⑥최초설치허가 년 월 일	
⑦사유			
피보호자의 조치계획	⑧귀가조치 명	⑨취직 명	
	⑩전원조치 명		
	⑪무료위탁(가정) 명		
	⑫유료위탁(가정) 명		
	⑬거택보호 명	⑭함계 명	
⑮주요실적			
⑯시장·도지사의 의견	19 . . . 시장(도지사) ㊞		
⑰구청장·시장·군수의 의견	19 . . . 구청장(시장·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시된 사회복지시설을(폐지 / 사업정지)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소
명칭
대표자 ㊞

보건사회부장관
시장
도지사 귀하

9004-2-28A
1970.6.20 승인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 12 호서식〕

명 칭
사회복지시설시 설 장변경허가신청서
사업목적

①명 칭		②사업목적	
③소 재 지		④시 설 장	
변경사항	⑤명 칭		
	⑥시 설 장		
	⑦사업목적		
⑧변경사유			
⑨시장·도지사의 의견	19 . . . 시장(도지사) ㊞		
⑩구청장·시장 군수의 의견	19 . . . 구청장(시장·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명칭·시설장·사업목적)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 소
명 칭
대표자 ㊞

보 건 사 회 부 장 관
시 장 · 도 지 사 귀하

9004-2-29A
1970.6.20 승인

(190㎜×268㎜신문용지 50g/㎡)

〔별지 제 13 호서식〕

사회복지시설소재지변경허가신청서

①명 칭			②사 업 목 적		
③개설 년월일			④최초시설허가 년월일		
⑤설 립 자			⑥시 설 장		
⑦현수용능력		⑧변경후 수용능력		⑨현수용인원	
⑩현시설소재지		⑪변경후 소재지			
⑫변 경 사 유					
시설재산	⑬종 류	⑭규 모	⑮용 도	⑯비 고	
직 원	⑰총인원수	⑱사회복지종사자 자격증소지자수		⑲기 타	
예 산	⑳수 입 액	㉑지 출 액		㉒비 고	

㉓ 시장·도지사의 의견	19 . . . 시장(도지사) ㊞
㉔ 구청장·시장 군수의 의견	19 . . . 구청장(시장·군수)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법인의 주 소
명 칭
대표자 ㊞

보건사회부장관

시장
도지사 귀하

9004-2-30A
1970.6.20 승인

(190㎜×268㎜ 신문용지 50g/㎡)

사회복지사업종사자훈련규정

[1971.9.6 보건사회부령제 379 호제정
[개정 1972.3.24 〃 394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 관계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훈련기관) 훈련은 국립사회사업지도자훈련원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훈련기관(이하 "훈련기관"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72.3.24보사령 394)

제3조(훈련구분) 훈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호의 훈련은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만이 할 수 있다.(개정 72.3.24 보사령 394)

1.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훈련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훈련
3. 사회복지행정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훈련

제4조(훈련과목) 전조의 훈련에 필요한 과목과 훈

련기간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전조 제3호의 훈련에 필요한 과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72.3.24 보사령 394)

제5조(훈련 시간등) ①훈련에 필요한 과목별 시간은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훈련에 있어서는 필수과목의 시간은 당해 훈련기간중 1과목마다 5교시 이상이어야 한다.

②1주간의 훈련시간은 33교시로 하고 1교시는 50분으로 한다.

제6조(훈련대상자의 차출등) ①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훈련을 받을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차출한다. 다만, 보건사회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이 차출한다.

②제3조제3호의 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훈련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72.3.24 보사령 394)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원증명서

③훈련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을 받고 서류심사를 한 후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훈련의 시기, 훈

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72.3.24 보사령 394)

제7조(퇴교등) ①훈련기관의 장은 피훈련자가 훈련기관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훈련을 받는 태도가 극히 불성실할 때에는 당해 피훈련자에게 퇴교를 명할 수 있다.(개정 72.3.24 보사령 394)

②훈련기관의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를 명한 때에는 당해 피훈련자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료증등) ①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훈련기관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료증 교부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적부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성적부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2(훈련실시 상황보고) 훈련기관의 장은 훈련을 개시한 때와 종료한 때에는 그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훈련의 개시 년월일 또는 종료 년월일
2. 훈련기간
3. 피훈련자의 현직 구분
4. 피훈련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5. 수료증 번호(훈련을 종료한 때에 한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하는 것 외에 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훈련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이수 또는 수료한 자는 그 훈련원 또는 훈련기관에서 받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훈련을 이 영에 의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2.3.24 보령 394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1971년 9월 6일후 이 영 시행전까지 훈련을 이수 또는 수료한 자는 그 훈련기관에서 받은 훈련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훈련을 이 영에 의하여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　　표〕

양 성 훈 련 과 목

필수과목 : 사회사업개론, 개별지도, 집단지도, 사회조사, 사회복지 행정, 지역사회조직사업, 인간성장발달, 사회복지 관계법규

선택과목 : 사회복지론, 사회문제, 사회학, 심리학, 사회정책, 사회심리학, 정신위생, 보건위생, 보육학, 아동복지, 부녀복지, 노인복지, 사회개발, 사회보장, 산업복지, 심신장애자복지, 비행소년, 의료사회사업, 학교사회사업, 정신사회사업, 교육학교육심리, 상담기술, 학습지도, 생활지도중 5 과목 이상

〔별지서식 생략〕

사회복지기탁금관리규정

1976. 9.22 보건사회부훈령제225호
개정 1976.10. 8 보건사회부훈령제226호

제1조(목 적) 이 영은 이웃돕기성금, 불우아동결연사업후원금, 재해구호의연금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협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건사회부에 기탁되는 모든 금전(이하 "기탁금"이라 한다)을 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식의 도모) 이 영에 의한 기탁금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식을 도모할 수 있다.

제3조(기탁금의 용도) 기탁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웃돕기(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거택보호대상자, 정착촌음성나환자, 영세민중실업자, 자활단정착자, 가두직업소년등 불우환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불우아동, 노인등과의 결연

3. 구료사업

4. 사회복지시설 또는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5. 재해구호사업

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기탁금의 관리) ①기탁금은 사회국 사회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주관과장은 "별표1"에 의한 기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각국·과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기탁되는 기탁금은 당해국장 또는 과장이, 그 이외의 기탁금은 이를 접수한 자가 그 책임하에 주관과장에게 인계한다.

제5조(기탁금의 수입계정) ①주관과장은 인수한 기탁금을 보건사회부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기탁금을 사회복지기탁금 수입으로 별도 계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탁금의 지출사용) ①기탁자가 특히 그 용도를 명시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탁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의 주관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보건사회부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결과보고) ①보건사회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지출된 기탁금의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증자 또는 수증기관으로 하여금 기탁금의 사용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과장은 보건사회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매년도 기탁금 관리상황을 결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 계정되어 있는 이웃돕기성금, 불우아동결연사업후원금, 재해구호의연금, 사회복지기금, 공익신탁금, 유골향전금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이 영에 따라 계정한다.

③(폐지규정) 사회복지기금관리규정(보건사회부훈령제140호)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社会福祉寄託金管理簿

年 月 日	摘　　要	収　入	支　出	残　額

児 童 福 利 法

〔1961.12.30 法律第912号〕

第1條 (目的) 本法은 児童이 그保護者로부터 遺失, 遺棄 또는 離脫되었을 境遇, 그保護者가 児童을 育成하기에 不適当하거나 養育할 수 없는 境遇 児童의 健全한 出生을 期할 수 없는 境遇 또는 其他의 境遇에 児童이 健全하고 幸福하게 育成되도록 그 福利를 保障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児童 및 妊産婦) ①本法에서 児童이라함은 18 歲未滿의 者를 말한다.

②本法에서 妊産婦라 함은 出産前後 3月以內의 女子를 말한다.

③本法에서 要保護児童 또는 要保護妊産婦라 함은 本法에 依하여 保護를 받을 児童과 妊産婦를 말한다.

第3條 (児童福利施設) ①本法에서 児童福利施設이라 함은 児童相談所, 保育施設, 助産施設, 精神薄弱児保護施設, 盲聾啞児養護施設, 身体虛弱児保護施設, 肢体不自由児保護施設, 母子保護施設, 託児施設, 児童休養施設,

教護施設, 浮浪児保護施設과 少年職業輔導施設, 其他 児童福利를 為한 施設을 말한다.

②本法에서 児童福利施設의 長이라함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児童福利施設을 管理 運営하는 者를 말한다.

第4條 (児童福利委員会) ①児童福利에 関한 事項을 調査研究하게 하기 為하여 保健社会部에 中央児童福利委員会를, 서울特別市와 道에 各各 地方児童福利委員会(以下 児童福利委員会라 総称한다.)를 둘 수 있다.

②児童福利委員会는 児童福利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을 関係行政機関에 建議할 수 있다.

③児童福利委員会의 組織과 運営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5條 (児童福利指導員) ①児童福利에 関한 事項을 指導하게 하기 為하여 서울特別市와 道에 児童福利指導員을 둘 수 있다.

②児童福利指導員은 그 職務에 関하여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監督을 받는다.

第6條 (児童委員) ①区(서울特別市에 限한다 以下 같다) 市, 邑, 面에 児童委員을 둘 수 있다.

②児童委員은 그管轄区域内 児童에 대하여 恒時 그 生活状態 또는 家庭環境을 詳細히 把握하고 児童福利에 관하여 必要한 援助와 指導를 行하며 児童福利指導員 및 関係行政機関과 協力하여야 한다.

③児童委員은 그職務에 관하여 그区域을 管轄하는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監督을 받는다.

④児童委員은 名誉職으로 하되 手当을 支給할 수 있다.

第7條 (児童福利指導員 및 児童委員의 選任免等) 児童福利指導員과 児童委員의 選任免, 定数와 職務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8條 (区庁長, 市長, 郡守가 取할 措置) ①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가 그管轄 区域内에서 要保護児童 또는 要保護姙産婦를 発見하였을 때에는 이를 一時保護하고 遅滞없이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但 保護者 또는 配偶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保護를 위하여 必要할 때에는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는 그 管轄区域内의 児童福利施設에 그保護를 委託할 수 있다.

第9条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取할 措置)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報告된 要保護兒童 또는 要保護姙産婦에 대하여는 報告된 날로부터 10日以內에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1. 兒童 및 그保護者에 대하여 說諭処分을 하거나 誓約書를 提出시키는 것

2. 兒童福利指導員 또는 兒童委員에게 兒童 또는 保護者에 대한 指導를 行하게 하는것.

3. 兒童의 保護를 希望하는 者에게 그 保護를 委託하는것.

4. 保育施設, 助産施設, 精神薄弱兒保護施設, 盲聾啞養護施設, 身体虛弱兒保護施設, 肢体不自由兒保護施設, 母子保護施設, 託兒施設, 教護施設 또는 浮浪兒保護施設에 入所시키는 것.

第10條 (兒童에 대한 一時委託保護)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前條의 措置를 取할 때까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兒童을 適当하다고 認定되는 者에게 一時 委託하여 保護하게 할 수 있다.

第11條 (兒童福利施設에 入所中인 兒童에 대한 措置) ①第9條 第4号의 教護施設에 入所한 兒童에

대하여 그 施設의 長이 敎護의 目的을 達成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入所의 措置를 取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退所시킬 수 있다.

②敎護施設에 入所한 兒童의 保護者는 그 兒童의 入所의 措置를 取한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그 退所를 要請할 수 있으며 그 要請을 받은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当該敎護施設의 長의 意見을 들어 退所하게 할 수 있다.

第 12 條 (親權喪失宣告의 請求)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兒童의 親權者가 그親權을 濫用하거나 또는 顯著한 非行 其他 親權을 代行할 수 없는 重大한 理由가 있는것을 発見하여 兒童의 福利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에 그親權 喪失의 宣告를 請求할 수 있다.

第 13 條 (兒童의 後見人選任請求)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없는 兒童을 発見한 경우 그福利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法院에 後見人의 選任을 請求하며 必要에 따라 그解任을 請求할 수 있다. 但 兒童福利施設에 入所中인 兒童에 대하여는 保護施設에 있는 孤兒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第 2 條의 規定을 適用한

다.

第14條 (報告) 区庁長, 市長 또는 郡守가 前2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児童을 発見하였을 때에는 遅滞없이 이를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5條 (禁止行為) 누구든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行為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不具畸型의 児童을 公衆에 観覧시키는 行為
2. 児童에게 乞食을 시키거나 또는 児童을 利用하여 乞食하는 行為
3. 公衆의 娯楽 또는 興行을 目的으로 14歳未満의 児童에게 曲芸를 시키는 行為
4. 14歳未満의 児童에게 酒店其他接客営業에 従事시키는 行為
5. 児童에게 淫行을 시키는 行為
6. 淫行을 媒介시키는 行為
7. 正当한 職業紹介機関以外의 者가 児童의 教育을 斡旋하고 金品을 取得하는 行為
8. 児童에게 有害한 興行, 映画 其他 이에 準하는 興行物을 観覧시키는 行為

9. 児童에게 有害한 遊技를 시키거나 또는 有害한 遊技를 行하는 場所에 出入시키는 行為

10.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児童을 虐待하는 行為

11. 児童을 為하여 贈与 또는 給与된 金品을 그 目的以外의 用途에 使用하는 行為

第16條 (児童에 대한 調査의 権限) ①保健社会部長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関係公務員, 児童福利指導員 또는 児童委員으로 하여금 児童福利施設 또는 保護受託者와 児童의 住所 또는 居所나 児童의 雇傭場所에 出入하여 児童 또는 関係人에 대하여 必要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関係公務員, 児童福利指導員 또는 児童委員은 그 権限을 証明하는 証票를 提示하여야 한다.

第17條 (児童福利施設의 設置) ①国家와 地方自治団体는 児童福利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但 市, 郡이 児童福利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②財団法人은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의 認可를

얻어 兒童福利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③兒童福利施設의 設置에 관하여 必要한 基準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 18 條 (委託拒否의 禁止) 兒童福利施設의 長은 서울特別市長, 道知事 또는 区庁長, 市長, 郡守로 부터 兒童收容의 委託을 받았을 때에는 正当한 理由없이 이를 拒否할 수 없다.

第 19 條 (兒童福利施設에서의 兒童教育) 兒童福利施設의 長은 教育法에 의한 保護者에 準하여 收容中인 兒童을 就学시켜야 한다.

第 20 條 (兒童의 健康管理) 兒童을 保護 또는 監督할 義務가 있는 者는 兒童의 健康維持와 向上을 為하여 最善의 注意와 努力을 하여야 한다.

第 21 條 (費用補助)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費用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必要한 條件을 부칠 수 있다.

1. 兒童福利委員会, 兒童福利指導員 및 兒童委員에 要하는 費用
2. 兒童福利施設이 設置 및 運営에 要하는 費用 또는 受託保護中인 兒童養育에 要하는 費用
3. 서울特別市 또는 道가 行하는 兒童福利事業의

指導監督 및 啓蒙宣伝에 要하는 費用

4. 児童保護管理에 要하는 費用

第22條 (費用의 徵收)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第9條第1項第3号 및 第4号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行함에 必要한 費用을 各各 그本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23條 (補助金의 返還命令)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는 児童福利施設의 長 또는 保護受託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할 때에는 이미 交付한 補助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할 수 있다.

1. 補助金의 交付條件에 違反하였을 때

2. 詐旗 其他 不正한 手段으로 補助金의 交付를 받았을 때

3. 児童福利施設의 経営에 관하여 個人의 営利를 図謀하는 行為가 있었을 때

4. 児童福利施設이 本法 또는 本法에 의한 命令이나 処分에 違反하였을 때

第24條 (免税措置) 収容児童이 直接的으로 使用하는 建物 및 土地에 대하여는 租税 其他의 公課를

免除할 수 있다.

第25條 (秘密漏泄禁止) 兒童福利事業 또는 兒童福利事業에 從事하였거나 從事하는 者는 그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지 못한다.

第26條 (認可取消와 事業停止)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兒童福利施設이 本法 또는 本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였을 때에는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는 그 認可를 取消하거나 事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27條 (罰則) 第1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다음 各号에 의하여 處罰한다.

1. 第1号 乃至 第4号 또는 第7号에 該当하는 行為를 한 者는 2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處한다.

2. 第5号 또는 第6号에 該当하는 行為를 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5萬원以上 50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3. 第8号 또는 第9号에 該当하는 行為를 하게한 業者는 3月以下의 懲役 5萬원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4. 第10号에 該当하는 行為를 한 者는 30萬원以

下의 罰金 또는 拘留에 処한다.

5. 第11号에 該当하는 行為를한 者는 1年以上 3年以下의 懲役에 処한다.

第28條 (同前)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1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関係公務員, 児童福利指導員 또는 児童委員의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対하여 答辯을 拒否 또는 虚偽의 答辯을 하거나 또는 児童에게 答辯을 拒否, 忌避하게 하거나 虚偽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妨害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를 얻지 아니하고 児童福利施設을 設置한 法人

3. 第25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26條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가 取消되거나 事業의 停止命令을 받고 事業을 継続한 者

第29條 (施行令) 本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本法은　壇紀 4295 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壇紀 4256 年 9月　制令　第12号　朝鮮感化令은　이를 廢止한다.

③本法施行　当時　朝鮮感化令에　依하여　設置된　感化院과　朝鮮救護令에　依하여　設置된　救護施設은　各各　本法에　依하여　設置된　児童福利施設로　看做한다. 但, 本法에　依한　設置基準에　未達한　것은　本法施行日로부터 6月以内에　그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동 복 리 법 시 행 령

1969. 11. 10 대통령령 제 4226 호
개정 1975. 8. 14 대통령령 제 7722 호
1976. 8. 21 대통령령 제 8219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아동복리시설의 의의)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상담소

아동의 복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가. 아동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

나.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와 지도를 행하는 것.

2. 보육시설

보호자가 없는 아동 또는 이에 준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

가. 영아시설 (5 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한다.)

나. 육아시설 (5 세이상 18 세미만의 요보호아동을 수용 보호한다.

3. 조산시설

요보호임산부를 입소시켜 조산을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정신이 박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보호하고 생활지도와 학습을 교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맹농아아 양호시설

눈먼 아이·귀먹어리 아이·벙어리 아이를 입소시켜 보호하고 적절한 생활환경속에서 훈육하여 지능 및 운동기능을 높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와 기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신체가 허약한 아동을 입소시켜 적절한 급양과 치료를 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팔·다리 또는 척추의 기능이 부자유한 아동을 입소시켜 치료하고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

능을 습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모자보호시설

보호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에 있는 여자로서 그가 감호하여야 할 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아동과 함께 그모를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시설.

9. 탁아시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양육하여야 할 아동을 보호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그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0. 아동휴양시설

어린이 놀이터·아동관 기타 아동에게 건전한 유희를 하게 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조장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1. 교호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송치된 아동을 입

소시켜 이를 선도하여 건전한 국민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2. 부랑아 보호시설

부랑아를 일시 입소시켜 특별한 보호를 가하고 아동개인별로 내력·성정 및 희망등을 조사·감별하여 그 아동에 대한 장래의 양호대책 또는 기타의 보호조치를 행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13. 소년직업보도시설

아동복리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2세이상의 아동과 빈곤아동을 입소시켜 독립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킴으로써 자활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4. 아동입양위탁시설

요보호아동을 일반가정에 입양 또는 위탁보육하게 하거나 직장에 고용을 주선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 3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직무)

①아동복리지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그 가족 및 관계인으로부터의 상담에 응하는 일.

2.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및 입양·위위탁 또는 거탁구호에 관한 일

3.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하여 전문적·기·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개별지도 또는 집단지도의 담당 또는 알선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시설 또는 요보호아동의 조사·지도 및 감독

5. 아동위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일.

6. 기타 아동복리증진에 관한 일

②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일

2.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에 관한 일

3. 아동수탁가정에 대한 조사 및 지도에 관한 일

4. 아동복리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력 및 의견진술에 관한 일

제4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선임) ①아동복리지도원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선임한다.

1.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사회 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보건사회부장관

이 지정하는 학과를 전공한 자.

2. 중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②아동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리에 대하여 열의가 있으며 아동위원으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같다.)·시장 또는 군수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동복리지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였거나 아동위원을 위촉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복리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정수) ①아동복리지도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각

도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②아동위원회의 정수는 구·시·읍·면의 인구수 및 아동수의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 6 조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의 관할구역) 아동복리지도원과 아동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 7 조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 아동복리지도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55 조 내지 제 6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 (위탁보호의 신청) ①법제 9 조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자는 요보호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의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보호아동을 신청인에게 위탁 양육하게 한다.

제 9 조 (입소조치) ①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아동복리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요보호자수용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②법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를 위탁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발행하는 위탁보호의뢰서에 의하여 수용한다.

③국가에서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의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조치는 그 시설의 장이 행한다.

제 10 조 (보고사항) ①법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아동의 성명·성별·생년월일·본적·주소·이력·가정환경·성행·건강상태 기타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는 전항에 규정된 서류외에 호적등본·친권상실 또는 후견인의 선임이나 해임이 필요한 이유서를 첨부하고 후견인 선임을 요할 경우에는 후견인의 본적·주소·아동과의 관계·성명·생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변경·폐지·이전)

①법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동복리시설을 폐지하고자 할 때, 아동복리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위치·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아동복리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이를 인가하였거나,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6.8.21 대령 8219〕

제 12 조 삭제 〈75.8.14 대령 7722〉

제 13 조 (아동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아동복리시설은 입소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그 환경이 아동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14 조 (입양위탁담당기관의 설치) ①국가 및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입양위탁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하여 설치된 입양위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비용의 징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관할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아동복리시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 (실지조사) 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면세등의 범위)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가 면제되는 아동복리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 물

아동숙사·강당·실습장과 기타 아동수용시설에 부속된 부속건물

2. 토 지

전호의 건물의 대지와 아동을 위한 운동장 및 직접 경작하는 실습지

제18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8.14대령 77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6.8.21대령 8219>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접수된 아동복리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인가신청은 이 영에 의한 신고로 본다.

아동복리법시행규칙

〔1969. 6. 4 보건사회부령 제 269호〕
개정 1975.12.26 보건사회부령 제 504호
1976. 8.21 보건사회부령 제 535호

제 1조 (학과 지정과 보수교육) ①아동복리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 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학과
2. 교육학과
3. 심리학과
4. 보육학과
5. 가정학과
6. 간호학과
7. 의 학 과

②보건사회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리지도원에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조 (아동복리지도원의 정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각각 40명이내의 아동복리지도원을 둔다.

제 3 조 (협조의 요구등)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 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아동복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의 일시보호조치와 아동복리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아동위원회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 (정의) ①영 제 8 조제 1 항에 규정된 위탁보호는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무료위탁보호
2. 유료위탁보호
3. 고용위탁보호
4. 입양위탁보호

②전항에서 "무료위탁보호"라 함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③제 1 항에서 "유료위탁보호"라 함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④제 1 항에서 "고용위탁보호"라 함은 사업을 경영

하는 자가 요보호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자기의 사업장에 이를 취업시킴으로써 장차 요보호아동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위탁보호를 말한다.

⑤제 1 항에서 "입양위탁보호"라 함은 수탁자가 요보호아동을 그 양자로 하기 위한 무료 위탁보호를 말한다.

제 5 조 (위탁보호신청) ①영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보호신청서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위탁보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무료위탁보호 또는 유료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 2 호 서식과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의 가정과 위탁보호 대상 아동에 관하여 조사케 할 것.

2. 고용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 4 호 서식과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

및 그 사업장과 위탁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것.

3. 입양위탁보호의 신청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위탁보호신청자의 가정과 위탁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것

③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의 위탁보호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요보호아동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당해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아동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송부하여 비치하게 하고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아동에 관한 사후지도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급여상황을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보호결정의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당해 요보호아동과 그 아동에 관한 기록 및 그 아동소유 금품을 즉시 그 위탁보호신청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귀가조치)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으로써 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있는 아동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아동을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에게 인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양의무자 또는 연고자가 성행이 불량하거나 심신장애·마약 또는 유독물질중독·전염병질환으로 인하여 아동양육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사후지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보호 또는 귀가조치한 아동의 가정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당해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입 소)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보호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아동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그 사본 1부를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9조제1항의 요보호자수용의뢰서와 동조 제2항의 위탁보호의뢰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를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 또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일시 보호를 위탁할 때에는 요보호아동 또는 요보호임산부의 보호자 또는 배우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조치의 변경)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아동복리지도원·아동위원·관계공무원 또는 아동의 보호자나 연고자의 의견에 의하여 당해 아동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위탁보호조치 또는 시설에의 입소조치를 취소하거나 다른시설에 전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을 다른 시설에 전원하게 할 때에는 이를 그 보호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다른 시설에 전원되는 때에는

당해 시설에 비치된 그 아동에 관한 기록을 그 전원되는 시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망등의 보고) 시설의 장은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아동이 사망 또는 퇴소한 때에는 즉시 이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1 조 (증표의 서식) 법 제 16 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10 호 서식에 의한다.

제 12 조 (시설의 설치·변경·폐지, 이전) ①법 제 1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시설운영규정·재산목록과 정관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 12 호 서식에 의한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3 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재산관계 서류와 인가증(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5.12.26 보사령 504>

④시설의 소재지, 사업목적 또는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14 호서식 내지 제 16 호서식에 의한 변경인가 신청서에 각각 인가증을 첨부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8.21 보사령 533>

⑤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 17 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6.8.21 보사령 533>

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고 이를 인가하였거나,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인가증을 개시하여 그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76.8.21 보사령 533>

제 13 조 삭제 < 75.12.26 보사령 504 >

제 14 조 (비용징수)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비용의 계산서를 첨부하되 납부할 기간을 명시할 것.

2. 비용은 아동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징수할 것.

3. 아동의 부양의무자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요보호자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2.26 보사령 5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 76.8.21 보사령 533>

이 규칙은 197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table>
<tr><td colspan="11">위 탁 보 호 신 청 서 No.</td></tr>
<tr><td rowspan="5">1
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성 별</td><td colspan="2">생년월일</td><td colspan="3">(세)</td></tr>
<tr><td>본 적</td><td colspan="9"></td></tr>
<tr><td>주 소</td><td colspan="9">전화번호</td></tr>
<tr><td>직 업</td><td colspan="3"></td><td colspan="2">월간수입</td><td colspan="3">원</td></tr>
<tr><td>종 교</td><td colspan="3"></td><td colspan="2">학 력</td><td colspan="3"></td></tr>
<tr><td>재 산</td><td>부동산</td><td colspan="8">대지평방미터, 건물평방미터, 기타평방미터
(자가, 차가, 전세, 월세)</td></tr>
<tr><td></td><td>동 산</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2">2
가족관계</td><td>신청인과의 관계</td><td>성 명</td><td>연령</td><td>성 별</td><td>학 력</td><td>직 업</td><td>건강상태</td><td>성 격</td><td colspan="2">비 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5">3
희망아동</td><td>성 별</td><td>남 여</td><td>연 령</td><td colspan="2"></td><td>출생지 부모의 국적</td><td colspan="3"></td></tr>
<tr><td>성 격</td><td colspan="2"></td><td>체 구</td><td colspan="2"></td><td>기타희망사항</td><td colspan="3"></td></tr>
<tr><td>보호종별</td><td colspan="5">위탁(무료, 유료, 고용) 입양</td><td>피부색</td><td></td><td>안색</td><td></td></tr>
<tr><td rowspan="2">지정일경우</td><td>아동성명</td><td colspan="2"></td><td>연령</td><td></td><td>성별</td><td colspan="3"></td></tr>
<tr><td>관계</td><td colspan="2"></td><td colspan="2">수용시설명및 소재지</td><td colspan="3"></td></tr>
</table>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 귀하

(후면에 주소약도)

〔별지 제2호서식〕

무료 유료	입양위탁보호신청가정조사서						
1. 신청인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직 업		월수입		원	동산		
학 력		종 교					
주 택	자가, 차가, 전세, 월세, 사택 (건평 평방미터)				부동산		
2. 신청인 배우자		생년 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직 업		학력		종교			
희망아동	성별	남여	연령	세 월	기타		

3	성 명	신청인과 의 관계	성별	연령	학력	직 업	동거여부	비 고
가관 족계								

4. 위탁 또는 입양의 동기

5. 특기사항

6. 건강 진단 결과

7. 조사자 의견

조 사 년월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별지 제3호서식〕

무료
유료 위탁보호대상아동조서

1 아동관계	성 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추정확실) (세)	
	출생지				입소 년월일		
	종 교		학교명 및학년		학 교 성 적		
	가입외원 단체명		취 적 관 계		건강상태 외 모		
	시설명		시 설 소재지		특 기 또는소질		

2 연고자	아동과의 관 계	성 명	연령	성별	직업	가족수	주 소	비 고

3. 입소동기 및 경로

4. 아동에 관한 특기사항

5. 시설장의 의견

6. 조사자의 의견

7. 기타 참고 사항

조 사 년월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고용위탁보호신청자 및 그 사업장조서

No

1 고용주관계	성 명		성별	남 여	연령	
	종 교		학력		직장직위	
	직 장 명		직장소재지		전화	
	주 소					

2. 고용동기 및 취업조치계획

3. 특기사항

4. 조사자의견

조 사 년월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고용위탁보호대상아동조사서

No

1 아동관계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추정확실) (세)
	출생지			입소년월일		
	학력	학교명				(졸업 년중퇴)
	종교			가입회원단체명		
	취적관계			병역관계		
	특기			희망직업		
	건강			신체적결함		
	외모			신장및흉위		신장 cm 흉위 cm

2 연관고자계	아동과의관계	성명	연령	성별	직업	가족수	주소	비고

3. 수용동기 및 경로

4. 특기사항

5. 시설장의 의견

6. 조사자의 의견

7. 기타 참고 사항

조사 년월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별지 제 6 호서식〕

입 양위 탁보호대 상아 동조 사서

No

1 아동관계	성 명		성 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추정확실) (세)		
	출 생 지			입소년월일				
	종 교			학교명및학년		학교성적		
	가입회원단체명			취 적 관 계				
	시 설 명			시설소재지				
2 가족관계	성 명	아동과의 관계	연령	학력	직 업	주 소	비 고	

3 . 입소경로

4 . 특기사항

5 . 건강진단결과

6 . 시설장 의견

7 . 조사자 의견

8 . 기타 참고사항

조 사 년월일		조사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별지 제 7호서식〕

(앞면)

<table>
<tr><td colspan="8">아 동 카 - 드 No</td><td rowspan="2">사
진</td></tr>
<tr><td rowspan="4">아
동</td><td>성명</td><td></td><td>성별</td><td>남여</td><td>생년
월일</td><td colspan="2">년 월 일생
(추정확실) 세</td></tr>
<tr><td>본적</td><td colspan="2"></td><td colspan="2">취적관계</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 colspan="2">보호자와 의관계</td><td>성격</td><td></td></tr>
<tr><td>학력</td><td colspan="2"></td><td colspan="2">신체장애 여부</td><td>기타</td><td></td></tr>
<tr><td rowspan="4">보
호
자</td><td>성명</td><td></td><td>성별</td><td>남여</td><td>생년
월일</td><td colspan="3">년 월 일생</td></tr>
<tr><td>본적</td><td colspan="2"></td><td>직업</td><td colspan="2"></td><td>주택</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재산</td><td colspan="3">동산 원
부동산 원</td></tr>
<tr><td>가족
관계</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조
치
사
항</td><td>년 월 일</td><td colspan="2">명칭</td><td colspan="2">주 소</td><td>조치내용</td><td>비 고</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d></td></tr>
</table>

기재상 주의할 사항

1. 조치상황 중 명칭에는 입양위탁과 귀가조치시에는 보호자 명을 기입하고 고용위탁시에는 사업장명, 시설 입소시에는 시설명칭을 기입할 것.
2. 주소에는 보호자 주소 사업장 또는 시설소재지를 기입할 것.
3. 조치내용에는 위탁(무료, 유료, 고용) 귀가조치, 시설입소등으로 기입할 것.

(뒷면)

금 품 급 여 상 황

급여일자	보조액	급여자 성명	영수자인	급여일자	급여품명	수량	급여자 성명	영수자인

〔별지 제8호서식〕

No

요 보 호 자 수 용 의 뢰 서

1. 요보호아동 또는 임산부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2. 보호자 또는 후견인

주 소

성 명 직 업

아동 또는 임산부와의 관계

3. 아동복리시설입소이유

위의 자의 수용을 의뢰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 ○ ○ ㊞

도 지 사

귀 하

(3절지)

〔별지 제9호서식〕

No

위 탁 보 호 의 뢰 서

1. 요보호아동 또는 임산부

본 적

현 주 소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직 업

2. 보호자 또는 후견인

주 소

성 명 직 업

아동 또는 임산부와의 관계

3. 기타 필요한 사항

위의 자의 일시 위탁보호를 의뢰함.

년 월 일

구 청 장

시 장 ○ ○ ○ ㊞

군 수

귀 하

(32 지)

〔별지 제 10 호서식〕

No

조 사 원 증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직 명 _____

성 명 _____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조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위의 자는 아동복리법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도 지 사 ㊞

(32 지)

〔별지 제 11 호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법인소재지
명 칭 ㊞
대 표 자

아동복리시설인가신청서

아래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칭		사업종별	
시설소재지			
개설(예정)년월일	년 월 일	종교	
설립자		시설장	
수용능력		수용(예정)인원	

시설	소재지	지번	종류	용도	수량	소유자	비고
설비							

직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보수	비고
업								

예	수	재단수입	원조단체원조금	기부금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합계
	입						

산	지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오락비	건물유지비	직원인건비	기타	합계
	출									
비고										

구청장·시장·군수의견	

구청장·시장·군수 경유 ㊞

〔별지 제 12 호서식〕 <개정 75.12.26 보사령 504>

제 호

아동복리시설인가증

1. 성명(대표자) 2. 주민등록번호

3. 시설명

4. 소재지

5. 경영법인체

6. 사업목적

7. 정 원

아동복리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시설로 인가함.

년 월 일

○ ○ ○ 인

〔별지 제 13 호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법인소재지
명 칭
대 표 자
폐 지
아동복리시설 인가신청서
사업휴지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칭		사업종별	
소 재 지		시설장성명	
폐지, 사업휴지 예정 년월일			
폐지사업 정지이유			
입양아동 조치계획	귀가조치 명	거래구호 명	
	입 양 명	취 직 명	
	무료위탁 명	정 착 명	
	유료위탁 명		
	고용위탁 명	합계 명	
설립이후 중요업적	설립이후 중요업적		
※입소아동을 조치계획은 별도로 아동명단을 작성하고 조치내용을 기입하여 첨부할 것.		구청장 시 장 군 수 경유 ㉿	

【별지 제14 호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법인소재지
명 칭
대 표 자 ㊞

아동복리시설소재지변경인가신청서

아래와 같이 시설설비를 갖추고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칭			사업종별		
개설년월일	년 월 일		인가년월일	년 월 일	
설립자			시설장		
현수용능력		소재지변경 후수용능력		현수용인원	
현시설소재지					
변경후소재지					

변경후시설설비

소재지	지번	종류	용도	수량	소유자	비고

변경후직위

직위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종사년수	보수	비고

<table>
<tr><td rowspan="4">예산</td><td rowspan="2">수입</td><td>재단수입</td><td>원조단체
원조금</td><td>기부금</td><td>국고보조</td><td>지방비
보조</td><td></td><td>합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지출</td><td>주식비</td><td>부식비</td><td>피복비</td><td>교육비</td><td>오락비</td><td>건물
유지비</td><td>직원
인건비</td><td>직원
교육비</td><td>기타</td><td>합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취학사항</td><td colspan="9">유치원 명 국민학교 명 중학교 명 고등학교 명</td></tr>
<tr><td colspan="9">대학교 명 기술학교 명 고등기술학교 명 기타 명</td></tr>
<tr><td colspan="9">직장동원 명</td></tr>
<tr><td colspan="2">변경후
취업대책</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비고</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2">구청장
시장
군수
의견</td><td colspan="8"></td></tr>
<tr><td colspan="10">변경이유서 별첨함.
구청장
시장 경유 ㊞
군수</td></tr>
</table>

〔별지 제15호서식〕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법인소재지
명 칭 ㊞
대 표 자

아동복리시설사업목적변경인가신청서

아래와 같이 사업목적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명칭					
소재지					
개설년월일			인가년월일		
설립자			시설장		
현수용능력		변경후 수용능력	현수용인원		변경후수 용정인원
현사업목적			변경후사업목적		
현수용아동에 대한조치					
재산처리상황					
비고					
구청장 시장 군수 의견					

변경이유서 별첨함.	구청장 시장 군수 경유 ㊞

별지 제 16 호서식] < 개정 75.12.26 보사령 504 >

아동복리시설수용정원변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 일
신청인	①성 명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 호	
	③주 소		
④시설명		⑤현 수용 정원	
⑥사업목적		⑦변경예정 수용정원	
⑧소재지			
⑨변경사유			
⑩구청장 시장 군수 의견			

아동복리법시행령 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수용정원을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원

년 월 일

신청인 ㊞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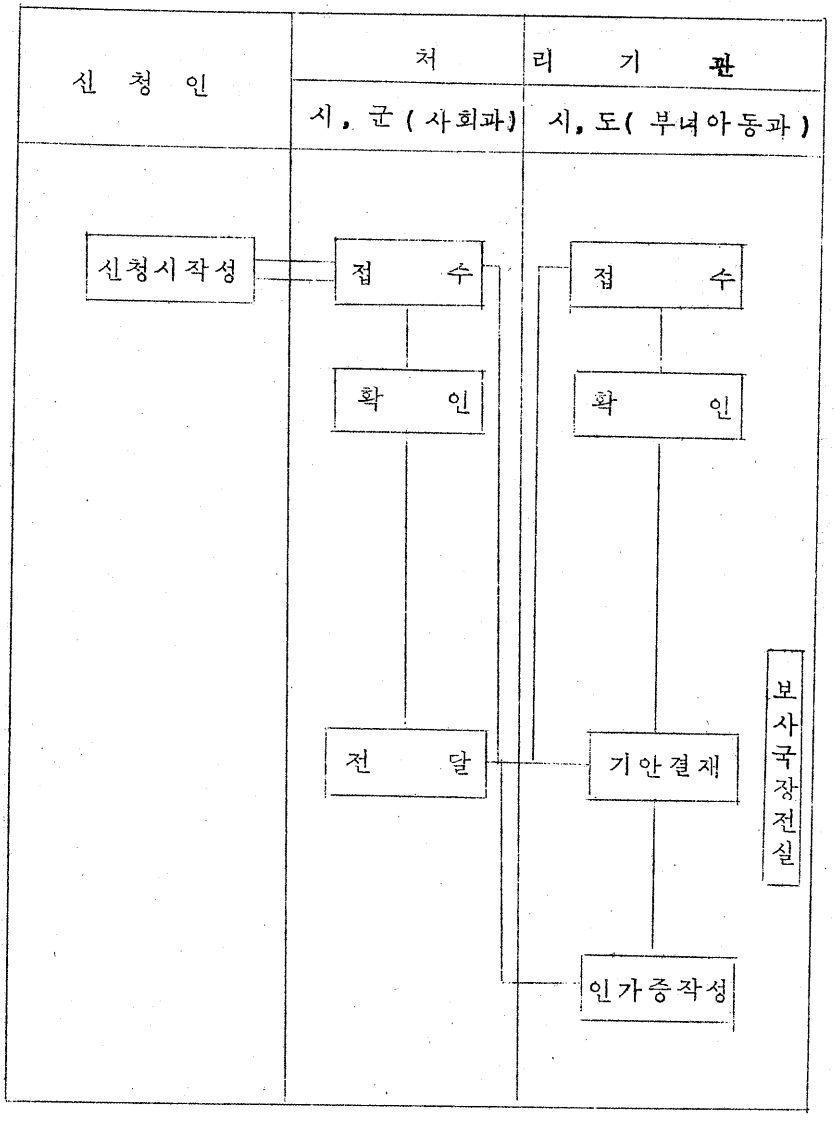

〔별지 제 17 호서식〕 <개정 76.8.21 보사령 533>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법인소재지
명 칭
대 표 자 ㊞

아동복리시설 명칭 대표자 변경신고서

아래와 같이 시설 명칭 대표자 를 변경하였으므로 신고합니다.

시설 소재지					
시설 대표자				사업목적	
변경내용					
명칭	현시설명칭				
	변경후명칭				
변경후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본적				
	주소				
	이력사항				
비고					
구청장·시장·군수 의견					
※변경이유서 신원증명서 대표자 변경시 별첨함.				구청장·시장·군수 경유	㊞

아동복리시설설치기준령

〔1969.6.12. 보건사회부령 제274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리 시설의 설치기준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독) 보건사회부장관은 국가가 설치한 아동복리 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가이외의 자가 설치한 아동복리시설에 대하여 각각 그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2회 이상 검사하게 한다.

제3조 (아동복리 시설의 구조 및 설비) 아동복리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거실에는 적당한 난방시설을 하고 5세미만의 아동의 거실은 1인당 1.7평방미터 이상 5세이상의 아동의 거실은 1인당 2.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1실의 정원은 15인 이하로 할 것.

다만, 조산시설과 아동휴양시설 기타 아동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환기, 채광, 조명, 방습과 배수설비를 할 것.

3. 변소는 남자용·여자용으로 구분하되 남자용 변소에는 대변기와 소변기로 구분설치하며, 변소의 창호에는 방충망과 방취시설을 설치할 것.

4. 욕실과 세면설비를 할 것.

5. 외기에 접하는 창호에는 방충망을 할 것. 다만, 방충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변소의 수는 아동 15인까지 1개이상으로 하되, 15인을 초과할 때마다 1개를 증설할 것. 다만, 영아시설, 조산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은 예외로 한다.

제4조 (비상재해대비시설) 아동복리시설에는 소화용기구, 비상구 기타 비상재해에 대비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평등대우) 아동복리 시설에 입소된 아동에 대하여는 그 국적, 인종, 신앙, 사회적신분, 심신장애

또는 양육비의 부담여부 기타의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환경위생) ①아동복리시설의 식기, 침구, 의류 거실, 식당, 조리실과 변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기는 사용 후 비누물로 닦고 냉수로 씻은 다음 섭씨 100도의 물에 2분이상 담근 후 그대로 건조시켜 사용할 것.

2. 침구는 적어도 매주 1회이상 일광소독을 하고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히 할것.

3. 의류는 자주 세탁하여 항상 청결히 하고 필요한 수선을 할 것.

4. 거실 기타 입소된 아동이 사용하는 방은 적어도 3월에 1회이상 소독하고 건물, 정원과 그 주위는 항상 청결히 할 것.

5. 식당과 조리실은 항상 소독하고 청결히 할 것.

6. 변소는 매일 청소하고 적어도 매주 1회이상 소독할 것.

②아동복리시설(영아시설, 조산시설, 탁아시설과 아동휴양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에 있어서는 입소된 아동에 대하여 적어도 매주 1회이상 목욕시켜야 한다.

제7조 (급식위생) ①아동복리시설에 입소된 아동에게 급여하는 식품은 변화가 있고 그 심신의 건전한 발육에 필요한 영양식품이어야 한다.

②아동복리시설에서 수도이외의 음료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어도 매년 2회이상 수질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증명한 검사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아동복리시설 (아동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에서는 식량을 저장하는 창고 기타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항상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아동복리시설에 입소된 아동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특히 신체를 청결히 하고 식사를 조리할 때마다 손을 소독하여야 하며; 전염성 질환 또는 화농성 창상이 있는 자는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건강진단) ①아동복리시설 (아동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의 장은 아동의 입소시와 입소 후 적어도 매년 1회이상 문교부령 제15호 학교신체검사규정에 준하여 건강진단과 혈액검사, 분뇨검사, 매독반응검사, 결핵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건강진단을 행한 의사는 그 진단결과를 입소된 각 아동의 건강기록표에 기입하고 그 건강상태와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것을 아동복리시설의 장에게 권고하여 관계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아동복리시설에 종사하는 직원과 그 시설내에 기거하는 자 전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조(장부) 아동복리시설의 장은 그 운영에 관한 일지, 재산과 수지상황을 명시하는 장부와 설립자, 관리자 및 직원의 이력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거실에서의 기거자) 아동복리시설(아동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의 장은 아동의 거실 또는 아동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생활지도원이나 보모 기타 필요한 직원중 1인을 아동과 함께 기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복리시설내에서의 기거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아동복리시설내에서 거주하지 못한다.

1. 당해 아동복리시설의 장과 그 직원
2. 당해 아동복리시설의 장과 그 직원의 가족

②아동복리시설내에서 거주하는 자는 당해 아동복리시설의 아동복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영 아 시 설

제12조(설비의 기준) 영아시설의 설비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아의 거실·관찰실(의료기관)·포복실·일광욕실(포복실을 겸할 수 있다)·오락실(일광욕실을 겸할 수 있다)·조리실·위험성 없는 변소 및 정원과 세탁 및 그 세탁물의 건조를 위한 설비를 할 것. 다만, 당해 영아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관찰실의 면적은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아동의 거실에 준할 것.
3. 전2호의 영아용 각실과 변소는 가급적 1층에 두어야 하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2층이상에 두어야 할 경우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 13 조 (직원) ①영아시설에는 의사·간호원·보모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직원중 간호원의 수는 영아 50인까지 1인 이상으로 하되 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한다.

③제 1 항의 직원중 보모의 수는 영아 7인까지 1인 이상으로 하되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한다.

제 14 조 (양육의 내용) 영아시설에서의 양육의 내용은 입소된 영아의 지능의 관찰지도·매일정시에 실시하는 수유·식사·기저기 교환·목욕·일광욕 및 안정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체 측정외에 제 8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전염병의 예방조치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영아의 관찰 및 수용) ①영아시설에 영아가 입소하였을 때에는 입소한 날로부터 적어도 2주간은 관찰실에 수용하여 그의 심신상태를 관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된 영아는 유아기·포복기·육아기로 각각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전원) ①영아시설에 입소된 영아가 4세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영아와 분리 수용하고 육아

시설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시설에 전원시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영아시설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용한 후 5월이 경과된 영아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정하는 육아시설에 전원시켜야 한다.

제17조(협조의 요청) 영아시설의 장은 그 입소된 영아의 생활지도와 입양 또는 위탁보호에 관하여 아동복리지도원이나 아동위원에게 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장부) 영아시설의 장은 입소된 영아의 입소경위·성별·성명·생년월일·양육과 퇴소에 관한 상태를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육 아 시 설

제19조(설비의 기준) 육아시설의 설비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거실·조리실·식당·강당·의료기관·오락을 위한 설비, 도서실과 적당한 운동장을 설비할 것. 다만, 당해 육아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

우에는 의료기관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아동의 성별·연령과 소질에 따르는 직업 지도에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7세이상의 아동의 거실은 남녀별로 할 것.

제 20 조 (직원) ①육아시설에는 아동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자, (이하 생활지도원이라 한다), 아동의 직업지도를 담당하는 자 (이하 "기술지도원"이라 한다). 의사, 간호원, 보모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직원중 생활지도원과 보모의 총수는 아동 15인까지 1인이상으로 하되, 15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한다.

제 21 조 (입소아동의 지도) 영아시설에서 육아시설로 전원된 아동은 당해 육아시설에서의 생활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다른 아동들과 분리 수용하여 특별히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원된 아동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학력미달 아동과 함께 수용할 수 있다.

제 22 조 (생활지도상의 준수사항) ①육아시설에서의 생활지도는 가정적 분위기에서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단체생활에 적응하게 하며 그 능력과 소질에 따라 장래 사회의 건전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②전항의 생활지도는 일일계획과 연간계획에 의하여 행하되, 아동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오락을 행하여 그 지능의 개발 보건과 정서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직업지도상의 준수사항) ①육아시설에서의 직업지도는 아동의 소질에 따라 장래 독립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당해 직업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직업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업지도는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3시간이상 행하지 아니할 것.
2. 하오 7시부터 상오 7시까지와 공휴일에는 직업지도를 행하지 아니할 것.
3. 위험 또는 유해하거나 아동의 체력에 과중한 실습작업을 시키지 아니할 것.

③법인이 설치한 육아시설의 장은 당해시설에서의 직업지도에 수반된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장부에 명기하고 아동 각 개인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

서에 예금 또는 저금을 하여 그 퇴소 후의 생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확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법인이 설치한 육아시설의 장은 직업지도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당해 육아시설 이외의 사업장에서 직업지도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동이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수입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협조의 요청) 육아시설의 장은 그 입소된 아동의 생활지도·직업지도·입양 또는 위탁보호등에 관하여 아동복리지도원이나 아동위원에게 그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준용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육아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소년직업보도시설

제26조(소년직업보도시설) 소년직업보도시설의 설비와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제18조와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조 산 시 설

제27조(설비의 기준) 조산시설의 설비는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모자실과 상담실을 설비할 것.
2. 적당한 수의 변소를 설비할 것.

제28조(준용규정)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은 조산시설의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9조(건강진단) 조산시설의 장은 임산부가 그 시설에 입소하였을 때에는 그 건강진단과 매독반응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장부) 조산시설의 장은 입소중인 임산부 및 산아의 경과력과 발육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정신박약아보호시설

제31조(설비의 기준)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의 설비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육아시설의 설비에 준한다.

제32조(직원) ①정신박약아 보호시설에는 생활지도원, 기술지도원, 의사(정신과 전문의사 1인이상을 포함

한다) 아동의 지능검사를 담당하는 자(이하 "지능검사원"이라 한다) 간호원·보모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②생활지도원과 보모의 총수는 아동 10인까지 1인 이상으로 하되 10인을 초과할 때 마다 1인을 증가한다.

제33조(생활지도 및 직업지도상의 준수사항) ①정신박약아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지도와 직업지도는 아동의 지능과 소질에 따라 장래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직업지도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심리학적·정신의학적·진단과 검사)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에서는 입소된 아동의 적절한 보호지도를 위하여 수시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에게 유해한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준용규정) 제18조와 제24조의 규정은 정신박약아 보호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 7 장 맹농아아 양호시설 신체 허약아 보호시설 및 지체 부자유아 보호시설

제 36 조 (설비의 기준) 맹농아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과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설비는 제 3 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각각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맹농아아 양호시설에는 아동의 거실, 의료기관, 강당, 오락을 위한 설비, 도서실, 직업지도에 필요한 설비 및 조리실을 설비하되 특히 맹아시설에 있어서는 음악에 관한 설비를, 농아시설에 있어서는 영사에 관한 설비와 적당한 운동장을 설비할 것.
2. 신체허약아 보호시설에는 아동의 거실, 의료기관 관찰실, 강당, 오락을 위한 설비, 도서실, 조리실과 정원을 설비할 것.
3.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는 아동의 거실, 의료기관, 강당, 오락을 위한 설비, 도서실, 특수수공예등의 작업지도에 필요한 설비,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의지장구를 제작하는 설비, 조리실과 운동장을 설비할 것. 다만, 당해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인근에 의지장구 제작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의지

장구를 제작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과 맹아시설에는 계단의 경사를 느리게 하고 욕실과 변소에는 손잡이를 설비하여야 하며 특히 맹아시설에 있어서는 맹아에게 필요한 특수한 표지등 신체기능의 부자유를 돕는 설비를 할 것.

5. 7세이상의 아동의 거실은 남녀별로 할 것.

6. 맹농아 양호시설과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및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7 조 (직원) ①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과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직원에 관하여는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맹아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점자를 해득하는 자라야 하며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의사는 정형외과의 진료에 상당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③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외에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④맹농아아양호시설과 신체허약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원, 보모 및 간호원의 총수는 아동 10인까지

1인이상으로 하되, 1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하고 보호시설과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의 생활지도원, 보모 및 간호원의 총수는 아동 7인까지 1인이상으로 하되, 7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증가한다.

제38조(생활지도 및 직업지도)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과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지도와 직업지도에 관하여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준용규정) 제18조와 제24조의 규정은 맹농아아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호시설과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8장 모자보호시설

제40조(설비의 기준) 모자보호시설의 설비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모자실, 집회실, 학습실, 의료기관과 조리실을 설비할 것. 다만, 당해 모자보호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모자실은 1세대당 1실이상으로 할 것.

3. 집회실과 학습실에는 아동의 학습에 필요한 책상, 의자와 모자의 교양에 필요한 도서를 비치할 것.

4. 당해 모자보호시설의 인근에 탁아시설 또는 아동휴양시설이 없을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탁아시설을 설비할 것.

제41조(직원) 모자보호시설에는 여자생활지도원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제42조(생활지도) 모자보호시설에서의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모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장부) 모자보호시설의 장은 입소된 모자에 관한 상황과 모자에 대한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장 탁 아 시 설

제44조(설비의 기준) ①탁아시설의 설비는 제3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에 있어

서는 아동의 거실이나 포복실, 의료기관, 조리실 및 위험성이 없는 변소를 설치하고, 3세이상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에 있어서는 아동의 거실이나 유희실·옥외 유희장·의료기관·조리실 및 위험성이 없는 변소를 설비할 것. 다만, 당해 탁아시설의 인근에 의료기관 또는 옥외 유희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또는 옥외 유희장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의 아동의 거실이나 포복실의 면적은 아동 1인당 1.5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3세이상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의 아동의 거실이나 유희실의 면적은 아동 1인당 2.48평방미터 이상으로 하며, 옥외유희장의 면적은 아동의 유희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의 아동의 거실이나 포복실에는 실내미끄럼틀, 의자, 그네 기타 필요한 완구를 비치하고, 3세이상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의 아동의 거실이나 유희실에는 악기, 흑판, 책상, 의자, 오락기구와 그림책등을 비치할 것.

4. 3세이상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의 옥외 유희장에는 모래사장, 미끄럼틀과 그네를 설치 할 것.

②30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에 있어서는 전항 각호의 설비중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동의 탁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5조(직원) ①탁아시설에는 보모와 간호원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②전항의 직원중 보모의 수는 3세미만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에 있어서는 아동 10인까지 1인 이상으로 하고, 3세이상의 아동을 입소시키는 탁아시설에 있어서는 아동 20인까지 1인이상으로 한다.

제46조(탁아시간) 탁아시설에서의 탁아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의 보호자의 노동시간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탁아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47조(보호의 내용) ①탁아시설에서의 보호의 내용은 입소된 탁아의 건강상태의 관찰, 자유놀이, 안정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전염병의 예방조치등을 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건강상태의 관찰은 탁아의 안면, 체온, 피부의 이상유무, 외상과 청결상태에 관하여 매일 탁아시와 퇴소시 이를 행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상태의 관찰을 한 결과

이상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호에 필요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자유놀이는 음악, 율동, 그림, 공작, 이야기, 자연관찰 사회관찰과 단체놀이 등으로 한다.

제 48 조 (보호자와의 연락) 탁아시설의 장은 탁아의 보호자와 밀접한 연락을 취하고 보호방법과 영양상태 등에 관하여 그 보호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9 조 (장부) 탁아시설의 장은 탁아의 가정상황과 입소중에 행한 보호의 경과를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장 아동휴양시설

제 50 조 (설비의 기준) 아동휴양시설의 설비는 제 3 조 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동유희등 옥외의 아동휴양시설에는 광장, 그네, 사장과 미끄럼틀등을 설비할 것.
2. 아동관등 옥내의 아동휴양시설에는 강당, 유희실, 도서실과 영사실 (유희실 또는 강당을 겸할 수 있다) 을 설비할 것.

제 51 조 (직원) 아동휴양시설에는 아동의 오락을 지도하는 자와 간호원 기타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 52 조 (오락의 지도) ①아동휴양시설에서의 오락의 지도는 작난감에 의한 놀이, 집단놀이, 음악, 율동, 독서, 수공, 그림 그리기, 이야기, 극영화, 소풍과 캠핑등에 의하여 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오락의 지도는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행하며, 집단적으로 행할 때에는 특히 크럽조직에 의한 지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 53 조 (보호자와의 연락) 아동휴양시설의 장은 아동의 건강과 품행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그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제 54 조 (장부) 아동휴양시설의 장은 오락지도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1 장 교 호 시 설

제 55 조 (설비의 기준) 교호시설의 설비는 제 3 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학과지도에 필요한 설비는 당해학과에 해당하는 학교의 설비에, 학과지도이외의 설비에

관하여는 육아시설의 설비에 준한다.

제56조(준용규정) 교호시설의 직원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생활지도 학과지도 및 직업지도) ①교호시설에서의 생활지도 학과지도와 직업지도는 입소된 아동을 선도하여 그 불량성을 제거하고 장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지도는 당해 학과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와 직업지도에 관하여는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협조의 요청) 교호시설의 장은 그 입소된 아동의 생활지도와 직업지도 입양 또는 위탁보호에 관하여 그 보호자 아동복리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9조(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등) 교호시설에서는 입소된 아동의 적절한 교호를 위하여 수시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진단과 검사를 행하며 각 아동별 교호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장부) 교호시설의 장은 입소된 아동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 소질, 품행, 교호평가 기타 교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2 장 부랑아보호시설

제 61 조 (설비의 기준) 부랑아 보호시설의 설비는 제 3 조 각호에 의하는 외에 육아시설의 설비에 준한다.

제 62 조 (직원) 부랑아 보호시설에는 제 20 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외에 입소된 부랑아의 감별을 위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제 63 조 (생활지도 학과지도 및 직업지도) ①부랑아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지도 학과지도와 직업지도는 입소된 아동을 선도하여 부랑벽 또는 불량성을 제거하고 장래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지도는 정신적인 훈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는 자활에 필요한 기술습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도와 직업지도에 관하여는 제 22 조와 제 2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64 조 (감별 및 사후조치) ①부랑아 보호시설에서는

입소된 아동의 심신상태 그 내력 성질과 품행을 관찰하여 계속적인 보호의 필요유무를 감별하고 그 감별 결과에 따라 퇴소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부랑아 보호시설에서의 아동의 보호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제 65조 (준용규정) 제 58조의 규정은 부랑아 보호시설에 이를 준용한다.

제 66조 (장부) 부랑아 보호시설의 장은 아동의 성별 성명, 생년월일, 성질, 품행 감별결과에 따르는 조치 등을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동복리지도원자격시험규정

〔1970.4.24 보건사회부령제348호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지도원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방법)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한다.

제3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사회사업개론, 법제대의 아동관계 법령 및 실무로 한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시험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과목과 출원절차를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보건사회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험에 관한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

력을 가진 자

2.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제6조(시험의 합격기준) 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7조(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결정된 자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②합격증서를 오손 또는 분실한 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자는 그 후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9조(수수료) ①시험응시자는 응시수수료로서 1,000원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합격증서의 재교부 신청자는 재교부 수수료로서

500원의 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당지급) 시험위원 및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동복리위원회규정

〔1969.11.28 대통령령 제 4337 호 〕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아동복리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조직) ①보건사회부에 중앙아동복리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부산시와 도에 각각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아동복리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30인이내,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써 조직한다.

③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총칭한다) 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각각 아동복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 3 조 (임기) ①위원회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다

만,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 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의 의사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조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각각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 (간사) ①위원회에 각각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 10 조 (운영세칙) 이 영의 정하는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제 4337 호 1969.11.28공포>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孤児入養特例法

〔 1961. 9.30法律第731号 〕
改正 1966 2.23法律第1745号
1975.12.1法律第2823号

第1条(目的) ①이 法은 外国人이 大韓民国国民인 孤児를 養子로 함에 있어서 簡易한 措置를 取함으로써 孤児의 福利増進을 図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66.2.23法, 1745号)

②孤児가 外国人의 養子로 되는 要件과 節次에 関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限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改正 66.2.23法 1745号)

第2条(養子될 資格) ①이 法에서 孤児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말한다. (改正 66.2.23法 1745)

1. 扶養義務者가 알려져있지 아니한 18歳未満의 者
2. 扶養義務者의 同意를 얻은 18歳未満의 者

②前項의 18歳未満의 孤児에는 戸主나 父母의 系統을 承継할 者를 包含한다.

第3条(養親될 資格) ①다음 要件을 갖춘 外国人은 이 法에 依하여 孤児를 養子로 할 수 있다. (改正 66.2.23法 1745号)

1. 本国法에 依하여 養親이 될 수 있을것

2. 養子를 扶養함에 充分한 財産이 있을 것

3. 品行이 端正하고 悪疾이 없을것

4. 養子를 賤業·苦役 其他 人権蹂躙 憂慮있는 職業을 為하여 売買또는 使用하지 아니할것

5. 養子에 対하여 宗教의 自由를 認定하고 教育과 保護에 있어서 그 地域社会의 한 成員으로서 認定되는 相当한 待遇를 받도록 하겠다는 誓約과 이에 対한 本国 公共機関 또는 그 委嘱을 받은 者의 保證이 있을것

②削除 (1966.2.23法1745号)

第4条(法院의 認可) ①外国人이 孤児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孤児의 住所 또는 現在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에 入養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66.2.23法1745,75.12.31法2823号)

②法院이 前項의 申請을 받았을 때에는 第2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扶養義務者의 存否를 確認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15日의 間隔을 두고 2回에 걸쳐 新聞紙와 法院掲示場에 扶養義務者의 申告를 催告하는 公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66.2.23法1745)

③法院의 入養認可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④法院이 前項의 決定을 하였을 때에는 孤児의 収容者에 対하여 引渡命令을 하여야 한다. 이 命令에 応하지 아니할 때에는 法院은 執達吏로 하여금 이를 執行하게 한다.

第5条(入養斡旋機関) ①이 法에 의한 孤児의 入養斡旋에 관한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入養斡旋機関"이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는 法人또는 団体에 限하여 행한다.

③入養斡旋機関의 許可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入養斡旋機関은 그가 斡旋한 孤児가 外国人의 養子가 된 후에도 그의 身上에 관한 事項을 常時 把握하여야 하며 当該 外国国籍을 取得한 것이 確認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66.2.23 法 1745 号]

第6条(入養児의 除籍) 法務部長官이 前条第4項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職権으로 그 入養된 孤児의 国籍을 除籍할 것을 法院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75.12.31 法 2823 号)

[全文改正 66.2.23 法 1745 号]

第7条(秘密漏泄禁止) 入養斡旋機関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者는 그 業務上 孤児에 関하여 知得한 秘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66.2.23 法 1745)

第8条(監督) ①保健社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入養斡旋機関에 대하여 그 入養斡旋業務에 관한 보고를 命하거나 関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斡旋業務에 관한 書類를 調査하게 하거나 関係人에게 필요한 質問을 하게할 수 있다.

②前項의 경우에 関係公務員은 그 権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66.2.23 法 1745号)

第9条(許可의 取消) 保健社会部長官은 入養斡旋機関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66.21.23 法 1745号)

第10条(罰則) ①第5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孤児의 入養斡旋에 관한 業務를 행한 者는 2年以下懲役 또는 4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②第7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処한다. (本条新設 1966.2.23 法 1745号)

第 11 条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条新設 1966.2.23 法 1745号)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66.2.23 法 1745号)

이 法은 公布後 2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5.12.31 法 2822号)

①(施行日)이 法은 1976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当時 弧児入養에 관한 地方法院에 擊属중인 事条에 関하여는 後前의 例에 의한다.

孤兒入養特例法施行令

[대통령령제 3130호
1967. 6.29공포]
개정 대통령령제 4227호
1969.11.10 공포

第1条(目的) 이 영은 고아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条(入養認可)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인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고아의 호적등본, 입양알선기관의 아동 및 가정조사서, 법제3조에 의한 증빙서류와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고아의 주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시에는 후견인지정서와 후견인의 입양승낙서
2. 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시에는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양의무자의 입양동의서(호적등본에 의하여 부양의두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 입양알선기관의 장이 직접입양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아동 및 가정조사서와 법제3조에 의한 증빙서류의 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条(入養斡旋機関의 設置) ①입양알선에 관한 업무는 입양알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입양알선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에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아니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입양알선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신청자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第4条(入養斡旋機関의 許可基準) 법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 기관의 허가기준은 다음에 의한다.

1. 입양알선기관에는 아동상담원, 심리학자, 의사, 간호원, 사무직원을 두어야하며, 사무실, 상담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운영자본금 3백만원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알선기관이 인근에 있는 아동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일반

가정에 위탁 보호시킬 때에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촉탁의사가 있을 때에는 의사를 두지아니할 수 있다.

2. 아동일시 보호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第5条(機関長 및 児童相談員)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과 아동상담원은 4년제 대학(구제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사업과의 과정을 졸업한자, 대학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를 졸업하고 6월이상 사회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알선기관에서 1년이상 아동상담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②아동상담원은 입양대상아동과 입양희망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와 입양에 관한 절차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입양알선기관에 두어야할 아동상담원의 정원수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第6条(国籍取得報告) 기관장은 법제5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외국에 입양된 고아가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제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에 외국국적취득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7条(報告等) ①기관장은 매년초에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및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서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양알선기관이 그 사업을 폐지 또는 정지하거나 대표자·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고자 또는 신고자가 외국민간원조단체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第8条(証票의 書式) 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관한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다.

附　　則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 4227 호 1969.11.10 개정)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고아입양인가 신청서

1. 양 부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직 업 국 적

2. 양 모

성 명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직 업 국 적

3. 양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본 적

주 소

직 업 국 적

4. 기타 참고 사항

위와 같이 입양시키고자 하오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한민국 법원장 귀하

〔제 2 호서식〕

외국에입양된 고아의 외국국적취득 상황보고서

입양인가 번호	입양인가 년월일	고아성명	양부모국적	국적취득 년월일	비고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민사지법 제 호					
합 계					

첨부서류 국적취득에 관한 증빙서류 통

외국에 입양된 고아의 외국국적취득상황을고아입양특례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관소재지

기 관 명

대 표 자 ㊞

법무부장관 귀하

〔제 3 호서식〕

조 사 원 증

사 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람은 고아입양특례법 제 8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고아 입양 특례법 시행 규칙

1967.9.9. 공포 보건사회부령 제202호
개정 1969.6.12. 공포 보건사회부령 제273호

제1조(입양알선기관의 설치허가등) ①고아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 알선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재산목록 및 운영자본금 보유 증빙서.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규약.
4. 법인 설립 등기부 등본 또는 외국민간 원조단체 등록 증명.
5. 기관장 및 아동상담원의 이력서.
6. 기타 참고사항.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있는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제2조(변경 신고등) ①기관이 영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를 신고할 때에는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에 수반되는 사후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신임자의 이력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소재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소재지.

2. 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설비의 개요.

3.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 허가증의 후면에 변경사항을 기재한다.

제3조(기관의 설비등) ①기관은 영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한 사무실과 상담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가. 면적은 19.8평방미터 이상일 것.

나. 사진기, 전화기를 각 1대씩 갖출 것.

2. 상담실

가. 상담실의 면적은 9.9평방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상담실에는 상담용 탁자 및 의자 1조를 갖출 것.

다. 어린이용 완구 10종 이상과 어린이 도서 30권 이상을 갖출 것.

②전항의 사무실 및 상담실이 있는 건물에는 소화용 기구와 비상구를 설치하여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4조(학과지정)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학과
2. 교육학과
3. 심리학과

제5조(아동상담원의 정수) ①기관에 두어야 할 아동상담원의 수는 연간 입양알선계획인원 60인까지 2인으로 하며, 그 계획인원 30인이 증가할 때마다 1인을 증가 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전항의 아동상담원의 반수 이상을 사회사업과의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 6.12. 개정 보건사회부령제 273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양알선 기관설치허가 신청서

1. 기관의 소재지
2. 기관의 명칭
3. 기관설비의 개요

위와 같이 입양알선 기관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고아 입양 특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
(법인의 경우에는 소재지 명칭)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및 명칭)

년 월 일부로 신청한 입양알선기관 설치에 대하여는 고아입양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함

년 월 일

보건사회부장관 ㊞

기

1. 기관의 소재지
2. 기관의 명칭

(후 면) 변경신고사항기재 및 확인란

변경신고년월일	신 고 사 항	허가기관확인 인

保護施設에 있는 孤児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

1961. 8.31公布法律第703号

第1条(目的) 本法은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의 後見人에 関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後見人) ①公設의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인 孤児에 대하여는 그 保護施設의 長이 後見人의 職務를 行한다.

②私設의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인 孤児에 対하여는 保護施設의 所在地의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後見人의 職務를 行할 者를 指定한다.

第3条(孤児아닌 者의 後見人) 保護施設에 있는 未成年者로서 孤児가 아닌 者에 対하여도 法院의 許可를 얻어 本法의 規定을 準用할 수 있다.

第4条(委任) ①本法의 規定에 依한 後見人의 職務執行에 関하여는 閣令으로써 特別한 規定을 둘 수 있다.

② 本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써 定한다.

附 則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朝鮮民事令 第1条의 規定에 依하여 応用된 救育所에 있는 孤児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은 廃止한다.

③救育所에 있는 孤児의 後見職務에 関한 法律에 依하여 指定된 後見人은 本法에 依한 後見人으로 본다.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3.4.1.공포 각령 제 1250 호

개정 1969.11.10공포 대통령령제4238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호시설의 정의) 법에서 "보호시설"이라 함은 아동복리법에 의한 아동복리시설과 생활 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을 말한다.

제 3 조(후견인지정신청) ①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후 그 지정서를 첨부하고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설의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 수용중인 미성년자로서 고아가 아닌 자의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그 고아 또는 고아 아닌 자의 호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후견인의 직무집행)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으로 지정 또는 허가된 자의 직무집행은 민법의 후견인직무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될 수 없다.

1. 민법제93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후견인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없거나 아동복리를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후견인의 지정취소) 후견인으로 지정 또는 허가된 자가 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그 임무

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4235호
1969.11.10. 공포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의 후견인 지정 신청서

고아인 미성년자

본 적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고아의 후견인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자

본 적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 하
도 지 사

(별지 제2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신청서

고아아닌 미성년자

본 적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자 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지정신청자

본 적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부 산 시 장 귀하
도 지 사

(별지 제 3 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고아아닌 미성년자

본 적

주 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위의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견인 허가신청자

본 적

주 소

직 업 직장명 직위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월)

년 월 일

신청인 ㊞

가정법원장
지방법원장 귀하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와 서서국 페스타롯치 아동촌재단간의 약정

"대한민국"은 보건사회부가 대표한다.

"서서국 페스타롯치 아동촌 재단"은 동 이사회가 대표한다.

1. (교육위임) 대한민국 보건사회부(이하 정부라 한다)는 일반교육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을 받기 위하여 아동과 청년들을 서서국 페스타롯치 아동촌 재단 이사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임한다.

2. (입촌절차) 교사부부, 보조교사 및 아동의 입촌 절차는 본 약정 부칙에 의한다.

3. (후견인 및 보호자) 아동이 페스타롯치 아동촌에 체류하는 동안 아동에 대해서 주서서 대한민국 대사는 법적후견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으며, 재단은 보호자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단, 교사의 자녀는 예외로 한다.

4. (사회적 지위의 보호) 정부는 교사부부가 페스타롯치 아동촌에 종사중 교육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공무원일 경우 그들의 전직 혹은 상당직의 복직을 보장하고 페스타롯치 아동촌에서의 종사

기간을 전부 복무연한에 산입한다.

5. (교육) 재단은 아동과 청년들을 재단의 목적과 규정에 의하여 한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육성한다.

재단은 아동들과 청년들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복리를 제공하며 이들 모국의 특수한 생활과 근로조건에 적합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은 한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며 보조교사는 실제적인 교육분야의 훈련을 1.2년간 받는다.

6. (고유의 풍속보호 및 귀국보장) 재단은 아동들의 종교, 국민교육, 문화를 보호하고 타 국가의 이해와 평화의 추구를 증진시킨다.

재단은 아동들이 아동촌에서 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이들을 직업교육센타 또는 타 센타에 집단적으로 배치하여 유럽생활수준에 의존되지 않고 항상 한국인으로 긍지를 가지도록 하며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이들의 귀국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 (합의사항) 정부와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

가.(수송비 부담) 아동, 청년 및 호송자의 왕복 수송비는 정부와 재단이 분담하며 쌍방은 소요 자금을 조달하고 제3자로부터 수집되도록 노력한다.

나. (자료제공) 정부는 재단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에는 한국에 관한 직업현황을 제공한다.

다. (직업알선) 정부는 재단과 협조하여 귀국한 아동과 청년의 인격과 직업 양면에 걸친 증진을 도모하며 특히 직업알선에 전력을 기울인다.

8. (재단대표자) 재단은 한국에 주재할 대표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9. (자문위원회) 대한민국정부 관계 부처 실업가, 사회사업전문가, 주한서서거류민단 대표자 및 주한 본재단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약간명의 위원을 가지는 자문위원회를 한국 서울에 둔다.

자문위원회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가. 귀국한 한국청년들의 개별적인 조언과 편의를 제공한다.

나. 한국의 노동 수요를 조사하고 경제 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 현황을 재단에 제공한다.

다. 귀국한 한국청년을 위한 정기적인 회의를 조성케 한다.

10.(이사) 재단은 정부에 재단이사회의 이사 일석을 배당한다.

11.(정기적인 접촉) 재단은 정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며 위탁된 아동성장에 대한 주요사항을 계속 통고한다.

본 약정은 한국어, 독어 및 영어(각2부)로 작성하여 서명일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석상의 의문점은 영어를 주로 한다.

1965년2월24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건사회부와 주한 페스타롯치 아동촌 재단대표와 본 약정에 서명하였다.

대 한 민 국 — 서 서 국

보건사회부장관 — 페스타롯치 아동촌재단 대표

오 원 선 — 파울 스 타 드 린

부 칙

아동, 보조교사 및 교사부부에 대한 페스타롯치 아동촌 입촌절차

1. (통고) 페스타롯치 아동촌 재단 이사회는 입촌하게 될 아동, 보조교사 및 교사부부의 숙소, 유자격자의 수 등을 입촌 6 개월전에 정부에 통고한다.

2. (검토 및 선발) 자문위원회는 지원자의 자격을 검토한다. 정부는 최종선발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선발결과통고) 정부는 선발된자의 입촌원서 (소정양식 A.B.C.D) 를 재단에 제출한다.

4. (각종 증명서 소지) 선발된 자는 개인여권, 출생증명서, 해외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5. (교사부부의 자격) 교사부부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부(夫)"~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에 대한 자격과 경력이 있는 자

나. "부(婦)"~가정(家政)에 유경험자

다. 연령~28세 이상 46세 미만

라. 영어, 독어 및 불어중 1개국어에 능숙한 자

마. 6~10년간 트로겐시에 체류 가능한 자

6. (보조교사의 자격)

가. 보조교사 남녀는 한국에서 교육계에 종사 경

력이 있는 자

나. 연령. 19~25 세

다. 트로겐에서 1~2 년간 체재후 귀한하여 실제 교육분야에 종사할 자

라. 영어에 능통한 자 (독어 해득 가능한 자)

7. (아동의 자격)

가. 연령. 12~13 세

나. 지능이 평균 이상인 아동

다. 성격이 정상적인 아동 (온순하고 선량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라. 건강한 아동

마. 빈곤한 아동

바. 종교, 기독교 혹은 불교

직업교육과 더불어 고등학교를 이수할 수 있는 아동만을 트로겐에 보내기 바람.

淪落行為等防止法

〔1961.11. 9 法律第771号〕

第1条(目的) 本 法은 淪落行為를 防止하여 国民風紀浄化와 人権의 尊重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用語의 定義) 本 法에서 淪落行為라 함은 不特定人으로부터 金銭 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収受하는 約束을 하거나 其他 営利의 目的으로 性行為를 하는 것을 말한다.

第3条(適用上의 愼重) 本 法의 適用解釈에 있어서는 国民의 権利가 不当하게 侵害되는 일이 없도록 愼重을 期하여야 한다.

第4条(淪落行為의 禁止) 누구라도 淪落行為를 하거나 그 相対者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5条(誘引行為의 禁止) 누구라도 남에게 淪落行為의 相対者가 되기를 誘引하거나 勧誘하는 行為를 하지 못한다.

第6条(媒介行為等의 禁止) 누구라도 淪落行為를 誘引 또는 強要하거나 그 処所를 提供하지 못한다.

第7条(保護指導所) ①国家는 淪落行為의 常習이 있

는 者와 環境 또는 性行為로 보아 淪落行為를 하게될 顯著한 憂慮가 있는 女子(以下 要保護女子라 한다)를 善導保護하기 為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이 指定하는 重要都市 其他 必要한 곳에 保護指導所를 設置한다.

②保護指導所는 다음 各号의 業務를 行한다.

1. 要保護女子의 身上 其他 問題에 関하여 그 相談에 応하는 일
2. 要保護女子의 性格, 家庭 또는 그 環境 等에 対하여 原因을 探究하고 必要한 指導를 行하는 일
3. 要保護女子의 動態와 分布状況 等을 常時 調査 把握하는 일
4. 要保護女子의 実情에 따라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臨時로 収容保護를 行하는 일
5. 要保護女子에게 善良한 職業의 斡旋을 行하는 일
6. 要保護女子의 実情에 따라 그들의 家庭 其他 縁故者에게 帰還措置를 行하는 일
7. 其他 善導保護事業의 目的達成을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일

③保護指導所에서 行하는 業務는 恒常 그들의 精神啓蒙에 主眼을 두고 相談에 応하거나 調査, 善導, 保護等을 行할 때에는 温情과 理解로 対하여 그들로 하여금 親密感과 信頼感을 가지도록 留意해야 한다.

④保護指導所의 設置와 그 組織 其他 必要한 事項을 閣令으로 定한다.

第8条(職業輔導施設) ①国家는 要保護女子에 対하여 自立更生의 精神과 能力을 涵養하기 為하여 必要한 곳에 職業輔導施設을 設置하고 職業教育을 実施한다.

②職業輔導施設의 設置와 그 組織 및 施設基準 其他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9条(地方自治団体等의 施設) 地方自治団体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公益法人은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前2条의 規定에 의한 保護指導所와 職業輔導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第10条(保護費用負担) ①本 法의 規定에 依한 要保護女子의 善導保護에 関한 費用은 国庫의 負担으로 한다.

②前条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団体 또는 公益法人이 設置하는 保護指導所와 職業輔導施設의 設置

및 그 運営에 要하는 費用은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国家가 그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11条(不法原因의 債権無効) 営業의 目的으로 第5条 또는 第6条의 行為를 하는 者 또는 이에 協力하는 者가 営業上 関係있는 要保護女子에게 가지는 債権은 그 契約条件, 貸借의 形式如何를 不問하고 一切 이를 無効로 한다.

第12条(秘密의 保障) 本 法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必要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누구라도 어느 女子가 淪落行為를 한 事実이 있다는 것을 漏洩하지 못한다.

第13条(初犯者에 対한 措置) 初犯인 淪落行為者에 対하여는 먼저 保護指導所 等으로 하여금 適切한 善導의 措置를 取하게 한다. 但, 改悛의 情이 없는 者는 処罰한다.

第14条(罰則) 第4条 및 第5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萬圓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15条(同前) 第6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萬圓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16条(同前) ①淪落行為者 또는 그의 相対者로부터 報酬를 받을 것을 目的으로 하여 営業으로 第6条의 行為를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圜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②前項의 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17条(同前) ①남에게 暴力, 威脅, 詐偽의 方法을 쓰거나 또는 남을 困境에 빠뜨리거나 業務, 雇傭其他의 関係로 因하여 自己의 保護 또는 監督을 받는 関係를 利用하여 前条第1項의 罪를 犯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圜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②前項의 刑은 이를 併科할 수 있다.

第18条(同前) 第4条의 規定에 違反한 行為로 因하여 남에게 性病을 伝染시킨者에 対하여는 第14条의 規定에 依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할 수 있다.

第19条(同前) 第12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萬圜 以下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20条(同前) 本 法 施行에 関係되는 公務員으로서 職権을 濫用하여 人権을 損傷시킨 者는 3年以下의 懲役에 処한다.

第21条(施行令) 本 法 施行令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本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過渡政府法律第7号公娼制度 廃止令은 이를 廃止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3호〕

제1조(보호지도소 등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신청)
①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 또는 군인 때에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시설 및 비품목록
3. 시설평면도 및 부근약도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전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이력서 및 자산상황

2. 법인등기부 등본

3. 정관

제2조(병설) ①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시설은 이를 동일구내에 병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도소와 직업보도소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보고서, 수지예산서 및 업적보고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설치자가 시·군 또는 법인인 때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서류등의 제출요구) 보건사회부장관은 보호

지도소 또는 직업보도 시설의 운영상황과 보호선도중인 요보호여자의 수용 및 선도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지도소 또는 직업보도시설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국고보조신청)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6월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지예산서
3. 건물 기타 설비의 규모 및 구조
4. 보조금 사용명세서
5.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교부) 보건사회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협조) ①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요보호여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근

보호지도소에 연락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은 보호지도소장으로부터 요보호여자의 선도보호에 필요한 협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초범자 등에 대한 조치) 보호지도소장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초범인 윤락행위자나 개전의 정이 있는 자를 선도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보호) ①보호지도소장은 요보호여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십자사 병원·관공립병원·요양소 기타 사회사업단체 등에 이를 위탁하여 수용 가료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용가료에 요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보호지도소 (직업보도시설)
설치승인 (허가) 신청서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9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도소 (직업보도시설) 를 설치하고자 별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승인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설치장소

2 . 시설명칭

3 . 개설일자 년 월 일

4 . 요보호여자의 수용 인원수

현인원수 명

예정인원수 명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제 2 호서식〕

국 고 보 조 신 청 서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 11 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보조를 받고자 별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오니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소재지

2. 시설명칭

3. 요보호부녀의 수용인원수

   가. 현인원수 명

   나. 예정인원수 명

4. 보조요구총액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 시설기준령

〔1969.11.10 대통령령 제423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이하 "직업보도소"라 한다)의 시설기준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업보도소의 시설기준과 직원) ①직업보도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실
2. 거실
3. 주방
4. 식당
5. 욕실
6. 소방시설

②전항의 교실에는 직업보도를 받는 자(이하 "소생"이라 한다)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책상·의자와 기타 필요한 설비 및 채광 또는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거실의 넓이는 1 인당 2.5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1 실의 정원은 10 인 이하로 한다.

④직업보도소에는 소생의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지도원과 그 교양지도를 위한 보도원이 있어야 한다.

제 3 조 (직업보도 종목별 시설기준) ①직업보도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에 그 보도종목별로 다음 각호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 양재 또는 양복의 제조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 실습실 50 평방미터 이상

나 . 재봉기 2 인당 1 대 이상

다 . 아이롱 2 인당 1 개 이상

라 . 재단대 4 인당 1 대 이상

마 . 마네킹 5 개 이상

2 . 편물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 실습실 50 평방미터 이상

나 . 편물기 1 인당 1 대

3 . 이발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 실습실 50 평방미터 이상

나 . 이발의자 3 인당 1 대 이상

다 . 증기소독기 및 약품소독기 각 2 개이상

라. 건발기 2대 이상

마. 바리깡·면도 및 가위 각 1인당 1개

바. 대형거울, 이발 의자수와 동수

사. 세면장 및 급수시설

4. 미용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실습실 50평방미터 이상

나. 미용의자 2인당 1대 이상

다. 건발기 2개이상

라. 파마기 2인당 1개이상

마. 안면기 2개이상

바. 대형거울 미용의자수 동수

사. 세면장 및 급수시설

5. 타자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실습실 50평방미터 이상

나. 타자기 1인당 1대

다. 타자기용 책상과 의자 타자기 수와 동수

6. 요리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조리실 50평방미터 이상

나. 조리대 4인당 1대 이상

다. 조리기구 10인당 1식 이상

라. 냉장고 1대 이상

마. 환풍기 1대 이상

바. 각국식 요리별로 필요한 음식기구, 10인당 1식 이상

사. 급수시설

아. 소독시설

7. 자동차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운전교습장 3천3백평방미터 이상

나. 기재실 33평방미터 이상

다. 자동차 2종이상으로서 각 1대 이상

라. 자동차 차체 1대 이상

마. 자동차엔징 1대 이상

바. 정비장 66평방미터 이상

사. 유류저장설비와 소방시설

8. 관광에 관한 기술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

가. 도서실 33평방미터 이상

나. 관광관계도서 2백부 이상

다. 한국모형지도 1개 이상

라. 한국지도(25만분의 1) 5매 이상

마. 고적 및 명승지안내도 각 1인당 1매 이상

바. 환등기 1대 이상

사. 녹음기 1대 이상

아. 카메라 10인당 1대 이상

②전항 각호 이외의 기술에 관한 직업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보도소의 시설에 관하여는 전항의 각 직업보도시설중 그와 유사한 것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제 4조(환경위생) 직업보도소의 음식·기구·침구·의류·거실·식당·주방·욕실·실습실과 변소는 수시 소독하여야 한다.

제 5조(건강진단) ①직업보도소의 장은 그 소생에 대하여 연2회 이상 혈액검사·분뇨검사·결핵검사 기타 필요한 건강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직업보도소의 장은 전항의 검사나 건강진단의 결과 질병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조(비치서류) 직업보도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직업보도소의 운영일지

2. 직업보도소의 자산과 수지상황을 기재한 장부

3. 직원의 이력서

4. 소생의 명부

5. 소생의 건강관리상황 기록부

6.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7조(소칙) 직업보도소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직업보도종목에 관한 사항

2. 직업보도기간에 관한 사항

3. 직업보도과정의 월별진도에 관한 사항

4. 소생의 정원에 관한 사항

5. 직업보도과정 수료에 관한 사항

6. 입소·퇴소와 상벌에 관한 사항

7. 휴일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규정

〔1969.11.28 대통령령 제 4342호〕

제 1 조 (설치) 윤락여성의 선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및 군에 각각 지방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 2 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지방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1. 윤락여성의 선도에 관한 사항
2. 윤락여성의 임시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윤락여성의 귀향과 그 직업알선에 관한 사항
4. 윤락여성의 직업보도 시설에 관한 사항
5. 윤락여성의 성병관리에 관한 사항
6. 윤락행위 방지법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기타 윤락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

제 3 조 (구성) ①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로서 조직한다.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 시에 있어서는 사회과장이, 군에 있어서는 내무과장이 된다.

2.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중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윤락여성선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조 (의사)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7조 (분과위원회) ①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분장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 8조 (직원) ①각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9조(운영규칙) 이 영에 규정하는 것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 예규 제3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녀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담원의 정수) ①상담원은 수석상담원과 일반상담원으로 구분한다.

②수석상담원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각 1인씩을 둔다.

③일반상담원의 정수는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배정한다. 다만,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상담원의 임무) ①수석상담원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일반상담원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을 행한다.

②일반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윤락행위등 방지법 제7조 제2항의 업무

2. 요보호여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가정에 대한 상담 및 가출부녀자의 선도보호

3. 부덕함양 및 사회기풍순화를 위한 지도·계몽

4.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시하는 업무

제4조(상담원의 임용) ①수석상담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중에서 임용한다.

1.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일반상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일반상담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성중에서 임용한다.

1.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였거나 정규대학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 또는 가족계획요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소지자

제5조(임용의 제한) 도지사는 25세미만이거나 55세를 초과한 자를 상담원으로 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상담원의 배치) 도지사는 임용한 상담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대도시의 중요역전과 고속버스터미날

2. 우범지역

3. 공단지역

4. 광산지역

5. 항만지역

6. 관광지역

제7조(상담원의 훈련) ①상담원으로 임용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상담원으로 처음 임용된 자는 당해년도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4주과정의 사회사업지도자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상담원으로 종사하는 자는 매 2년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주과정의 사회사업지도자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상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상담원의 복무 기타 인사기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지방잡급직원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 지) 부녀상담원 임용자격규정(1968.6.12 보건사회부 예규 제230호)은 이를 폐지한다.

家庭儀礼에 関한 法律

〔1969. 1. 16 法律 才2079号〕
改正 1973. 3. 13 法律 才2604号

才1条(目的) 이 法은 家庭儀礼에 있어서 虛礼虛飾을 一掃하고 그 儀式節次를 合理化함으로써 浪費를 抑制하고 健全한 社会気風을 振作함을 目的으로 한다.

才2条(定義) 이 法에서 "家庭儀礼"라 함은 家庭의 儀礼로서 行하는 婚礼·喪礼·祭礼·回甲宴 等을 말한다.

才3条(家庭儀礼準則) ①家庭儀礼의 儀式節次는 才2項의 規定에 의한 準則에 따라 厳粛하고 簡素하게 行하여야 한다.

②家庭儀礼의 儀式節次에 関한 準則은 家庭儀礼 審議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公務員 및 政府管理企業体의 任·職員은 家政儀礼準則의 実践에 率先垂範하여야 한다.

才4条(虛礼虛飾行為의 禁止) ①누구든지 家庭儀礼에 있어서 다음 各号의 行為를 하지 못한다. 다만,

家庭儀礼의 참뜻에 비추어 合理的인 範囲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行為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請牒狀 또는 訃告狀等 印刷物에 의한 個別告知
2. 花環·花盆 이와 類似한 装飾物의 陳列 또는 使用
3. 答礼品의 贈与
4. 屈巾祭服의 着用
5. 挽草의 使用
6. 慶弔期間中 酒類 및 飮食物의 接待

② 才1項의 規定은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機関名儀나 会社 또는 団体의 名儀로 行하는 喪礼의 경우에도 適用한다.

才5条(儀礼式場等 営業) ①家庭儀礼를 行하는 式場을 提供하고 賃貸料를 받거나 葬儀에 所要되는 器具·物品을 販売 또는 貸与하거나 結婚相談 또는 仲媒行為를 하는 것을 業으로 하는 者는 保建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事項을 変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才1項의 規定에 의한 営業의 種類, 施設基準, 賃貸料·手数料 또는 営業者의 遵守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定한다.

才6条(廃業申告等) ①才5条 才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休業 또는 廃業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会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才7条 才1項의 規定에 의한 営業停止 処分期間中에 提出된 廃業申告는 当該 営業停止 処分期間이 終了한 날에 提出된 것으로 본다.

才7条(許可의 取消等) ①保健社会部長官은 才5条 才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1月以上 6月以下의 範囲 안에서 期間을 定하여 그 営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許可를 받은 후 3月이 経過하여도 그 営業을 開業하지 아니한 때.
2. 才4条 才1項 才2号의 規定을 違反한 때.
3. 才5条 才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이나 遵守事項을 違反한 때.
4. 其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違反한 때.

②才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取消処分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処分을 받은 날로부터 6月이

經過하지 아니하고는 同一한 営業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才8条(家庭儀礼 審議委員会等) ①保健社会部長官의 諮問에 応하여 家庭儀礼에 関한 事項을 調査·研究·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家庭儀礼審議委員会를 둔다.

②家庭儀礼準則의 普及·実践을 推進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長官 所属下에 中央家庭儀礼実践推進委員会를, 서울特別市·釜山市·道와 市(区를 包含한다)·郡에 地方家庭儀礼実践推進委員会를 둔다.

③才1項과 才2項의 規定에 의한 家庭儀礼審議委員会와 各級 家庭儀礼実践推進委員会의 構成·職務·運営 및 経費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才9条(罰則) 才5条 才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営業을 行한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0万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才10条(同前) ①才4条의 規定에 違反한 경우에는 다음 各号의 者에 대하여 50万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処한다. 다만, 同条 才2項의 行為中 国家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機関名義로 行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婚礼 또는 回甲宴에 있어서는 그 当事者

2. 喪礼에 있어서는 主喪, 다만, 才4条 才1項 才4号 違反의 경우에는 그 着用者

3. 祭礼에 있어서는 祭主

② 才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가 14세에 達지 아니한 者인 때에는 그 親権者 또는 後見人을 処罰한다.

③ 才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의 意思에 反하여 따로 그 行為를 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者에 대하여 処罰한다.

才11条 (権限의 委任) 保健社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権限을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才12条 (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1973. 3. 13　法律 才2604号)

①(施行日) 이 法은 1973年 6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才5条 才1項의 規定에 該当하는 営業을 経営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以内에 이 法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 許可를 받아야 한다.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1973.3.13 대통령령 제655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3조제3항에서 "정부관리기업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식물"이라 함은 장식용 테프·꽃가루·딱총·꽃수술·조각품 등을 말한다.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주류"라 함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음식물"이라 함은 다과류나 청량음료 이외의 음식물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 준칙)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준칙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허례허식이 아닌 행위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전이나 묘소 또는 예식장에 좌우 1개씩 2개의 화환이나 화분 또는 꽃바구니를 진열하는 행위

2. 상례에 있어서 운구 또는 산역에 참여한 자나 매장지 또는 화장장까지 수행한 자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3. 혼례에 있어서 당사자와 그 부모 및 주례가 꽃을 패용하는 행위

4. 혼례에 있어서 가정에서 당사자의 친족에 대하여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5. 회갑연에 있어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② 혼인·사망 등의 사실을 사후에 고지하는 행위는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의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중앙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중앙실천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이하 "지방실천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실천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및 중앙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지방실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조사 연구
2. 가정의례준칙의 심의
3.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②중앙실천위원회 및 지방실천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의례준칙의 이행을 위한 지도·계몽.

2. 가정의례준칙의 실천사항에 관한 조사·건의

3. 기타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당해직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리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0조(의사)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①각 위원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②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12조(경비 부담등) ①각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각 위원회의 운영과 가정의례준칙의 보급·실천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가정 의례 준칙

〔1973. 5. 17 대통령령 제6680호〕
개정 1975. 5. 30 대통령령 제763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영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의례의 의식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혼례"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2.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제례"라 함은 기제·절사·연시제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회갑연"이라 함은 제 60 회 출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주상"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제전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제주"라 함은 제사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만장의 사용)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만장의 사용"이라 함은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을 비단이나 종이 등에 적어서 기를 만들어 상여를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른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준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2장 혼 례

제5조(약혼)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행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제6조(혼인) ①혼인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혼인식의 장소는 당사자 일방의 가정, 공회당이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결혼예식장 기타 적당한 장소로 한다.

2. 혼인신고서에 서명 날인한다.

3. 혼례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②혼인에 있어서 "함잽이"를 보내는 행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신행은 혼인 당일에 한다.

④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혼인서약·성혼선언의 요령은 별지 2에 의한다.

제 3 장 상 례

제 7 조(장례제식)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제식(이하 "장례제식"이라 한다)은 발인제와 위령제만을 행하고 그 이외의 노제·반우제·삽우제 등의 제식은 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발인제) ①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제상에는 사진 또는 위패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제 9 조(위령제) ①매장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령제는

무덤 쌓기가 끝난 후 그 무덤 앞으로 혼령 자리를 옮기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 놓고 분향·잔올리기·축문 읽기 및 배례로써 행한다.

②화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령제는 화장이 끝난 후 혼령 자리를 유골함으로 대신하고 제 1 항에 준하는 절차로써 행한다.

제 10 조(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로부터 3 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 11 조(상기) ①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로부터 100 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자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상기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 12 조(상복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흑색 복장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되, 흉부에 상장 또는 흰꽃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복장을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까지로 한다.

제 13 조(상제) ①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

제가 된다.

②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손이 된다.

③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 14 조 (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기업체 또는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 15 조 (관나르기) ①관나르기는 영구차 또는 영구수레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여로 하되 상여에는 과분한 장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나르기의 행렬순서는 사진·명정·영구·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한다.

제 16 조 (상례의 식순등)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은 별지 3에 의한다.

제 4 장 제 례

제 17 조 (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절사 연시제로 구분한다.

제 18 조 (기제) ①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 대조까지로 한다.

②기제는 매년 사망한 날 해진 뒤에 제주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기제의 참사자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자손으로 한다.

제 19 조 (절사) ①절사의 대상은 직계조상으로 한다.

②절사는 매년 추석절 아침에 종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③절사의 참사자의 범위는 직계자손으로 한다.

제 20 조 (연시제) 연시제는 매년 1월 1일 아침에 지내되 그 대상, 장소, 참사자의 범위는 기제에 준한다.

제 21 조 (제수) ①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②절사의 경우에는 떡으로, 연시제의 경우에는 떡국으로 밥에 대신할 수 있다.

제 22 조 (제례의 절차등)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등의 요령은 별지 4에 의한다.

제 23 조 (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그 배례방법은 재배 또는 묵념으로 하며,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회 갑 연

제 24 조 (회갑연) 회갑연은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하되, 지나친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73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② (구 준칙의 폐지) 종전의 가정의례 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1〕 약혼서식

약 혼 서		
구 분	남	여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호주의 성명 주소		

위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혼인할 것을 약속함.

1. 결혼 예정일
2. 기타 조건

년 월 일

약혼자

(남) ○ ○ ○ 인

(여) ○ ○ ○ 인

입회인

(남자측) : 주소

성명 ○ ○ ○ 인

(여자측) : 주소

성명 ○ ○ ○ 인

※ 첨부 : 호적등본 1부

건강진단서 1부

민법 제80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은 그 동의권자로 한다.

〔별지 2〕 혼인식에 있어서의 식순, 혼인서약, 성혼선언

1. 혼인식순

가. 개 식
나. 신랑 입장
다. 신부 입장
라. 신랑, 신부 맞절
마. 혼인 서약
바. 성혼 선언
사. 혼인신고서 날인
아. 주례사
자. 신랑, 신부 내빈께 인사
차. 신랑, 신부 행진
카. 폐 식

2. 혼인 서약

주례는 신랑·신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혼인서약을 하게 된다.

신랑 ○○○군과 신부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3. 성혼 선언

성혼 선언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성 혼 선 언

이제 신랑 ○○○군과 신부 ○○○양은 그 일가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동안 고락을 함께 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읍니다.
이에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년 월 일

주 례 ○ ○ ○

〔별지 3〕 상례에 있어서의 식순, 상장의 규격

1. 발인제의 식순

가. 개 식

나. 주상 및 상제들의 분향

다. 고인의 약력 소개

라. 조객 분향

마. 폐 식

2. 상장의 규격

① 감의 크기 (두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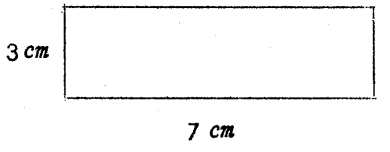

② 접는 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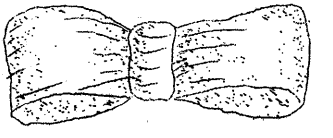

〔별지 4〕 제례에 있어서의 절차 등

1. 제례의 절차

가. 혼령 모시기

제주는 분향하여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나. 잔 올리기

술잔은 한번 올리기로 한다.

다. 축문 읽기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라. 물림 절

참사자는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 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으로 다음의 본보기에 따라 쓴다.

가. 부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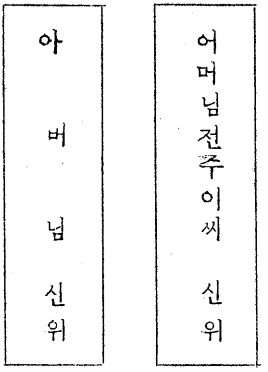

나. 배우자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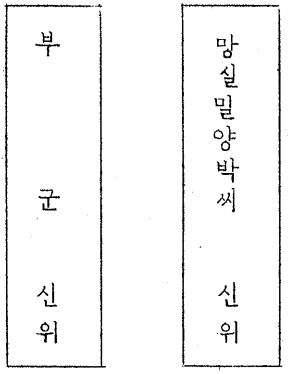

다. 절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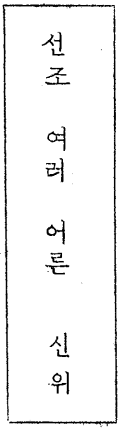

라. 합사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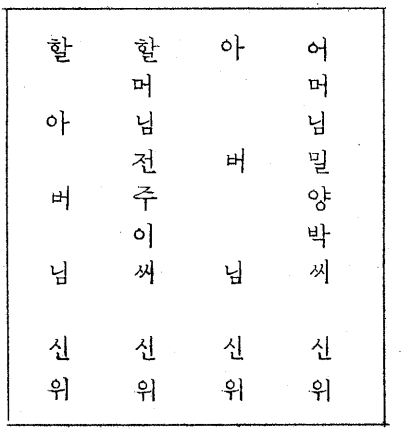

가정 의례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1973.5.17 보건사회부령 제411호〕
개정 1976.2.20 보건사회부령 제513호
개정 1976.11.24 보건사회부령 제542호

제1조(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혼예식장 영업 : 임대료를 받고 혼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장례식장 영업 :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장례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장의사 영업 : 장의에 소요되는 기구·물품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결혼상담소 영업 : 수수료를 받고 결혼상담 또는 중매 행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2조(시설기준) ①결혼예식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식실마다 신랑 신부 대기실을 따로 설치할 것.
2. 예식실마다 출입문을 복도에 면한 측에 2개 이상 설치 할 것.

3. 예식실이 복도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폭을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예식실에는 적당한 환기·채광·보온 및 방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영업소에는 예식실의 좌석수를 감안하여 적당한 규모의 남·여별 화장실을 설치할 것.

5.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②장례식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례식장의 위치는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을 것.

2. 시체의 안치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출 것.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③장의사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의에 필요한 물품·기구의 진열에 소요되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것.

2. 장의물품 및 기구의 보관에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출 것.

3.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④결혼상담소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출 것.

2.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상담실을 따로 갖출 것.

3. 남·여 상면실을 따로 갖출 것.

4.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3조(허가신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조에 규정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에 있어서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 명칭, 설립년월일, 정관과 대표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의 종류(장의사에 있어서는 취급하는 물품,

기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결혼상담소에 있어서는 상담요원의 이력서를 첨부할 것)

4. 영업시설의 설계도(결혼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5.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사항.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영업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업자가 영업소의 명칭이나 제3조제1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의 신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영업을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인 또는 상속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양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영업자가 그 영업

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 10일 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대장과 허가증) 허가관청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례식장등 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등) ①의례식장등 영업에 있어서의 임대료 또는 수수료의 한도액은 별표1 내지 별표4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허가관청은 지방별 실정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또는 수수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그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허가증을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것.
2. 임대료나 수수료를 지정된 장소에 게시할 것.
3. 가정의례준칙을 준수할 것.
4. 영업소의 경내에서 가정의례 준칙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도록 할 것.

5. 영업소의 경내에서는 일체의 음식물 접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것.

6. 영업소는 항상 청결하고 엄숙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항상 친절할 것.

7. 관계자 이외의 자의 식장 출입을 금할 것. (결혼예식장과 장례식장에 한한다)

8. 영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의 지도 업무에 협조할 것.

9. 혼인신고서 용지 또는 사망신고서 용지를 비치하고, 신고서의 제출의 편의를 제공할 것. (결혼예식장과 장례식장에 한한다)

10. 업무상 지득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11. 상담요원 이외의 자로 하여금 상담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담요원을 변경한 때에는 반드시 허가관청에 신고할 것. (결혼상담소에 한한다)

12. 상대방의 결함을 은폐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아니할 것. (결혼상담

소에 한한다.

13. 영업소의 전용전화의 증설 또는 변경은 반드시 허가관청에 신고할 것.

14.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 8 조에 규정된 임대료 또는 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지 아니할 것.

제 10 조 (보고) ①허가관청은 법 제 4 조의 위반사항과 가정의례 준칙의 이행현황 및 영업소의 운영실태를 매월 조사하여 다음달 10 일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업자는 매월 그 운영상황을 다음달 5일까지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허가수수료) 제 3 조 또는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례식장등 영업허가 신청 또는 영업변경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의례식장등 영업허가 : 5천원

2. 의례식장등 영업변경허가 : 3천원

제 12 조 (경유기관) 이 영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신청서 신고서 등의 서류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197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결혼예식장임대료최고한도액

등급	지역	좌석당임대료기준		실당 최고한도액
		100석이하예식장	100석이상예식장	
갑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120원	100원	30,000원
을	도청 소재지	100원	80원	24,000원
병	시·군청 소재지	80원	60원 60	18,000원
정	기타 지역	60원	40원	12,000원

〔별표 2〕

장례식장임대료한도액

등급	지역	안치실임대료 (1일 24시간안치기준)				식장임대 실당최고	
		냉장시설		비냉장시설		좌석당 임대료 기준	한도액
		독실	합실	독실	합실		
갑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원 2,000	원 1,000	원 1,000	원 700	원 200	원 60,000
을	도청소재지	원 1,800	원 800	원 800	원 600	원 160	원 48,000
병	시, 군청 소재지	원 1,500	원 600	원 600	원 500	원 120	원 36,000
정	기타지역	원 1,200	원 500	원 500	원 400	원 80	원 24,000

〔별표 3〕

장의사장례용품임대료최고한도액

구 분	임 대 품 목	임 대 료	비 고
서울특별시 부산시, 시	병풍, 향로, 촛대 조등, 천막 및 상가표시	6,000원	촛대 2개 상가표시 10매 기타각 1개 기준
기타 지역	병풍, 향로, 촛대 조등, 천막 및 상가표시	3,600원	촛대 2개 상가표시 10매 기타 각 1개 기준

〔별표 4〕

결혼상담 .수수료최고한도액

수수료내용	수 수 료	비 고
상담수수료	6,000 원	
사례금(성혼시)	1인당 12,000원	

〈별지 제 1 호서식〉

( ) 영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 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년 월 일
	④ 주 소					
	⑤ 법인설립 년월일	년 월 일	⑥ 법인 소재지			
⑦ 업 종			⑧ 업소명			
⑨ 업소소재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5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시 장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설계도 1 부 (결혼예식장 및 장례식장에 한한다)
2. 물품 및 기구목록표 1 부 (장의사에 한한다)
3. 상담요원 이력서 1 부 (결혼상담소에 한한다)
4. 정관 1 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수입증지 5,000원

2909-02-18
1975.8.5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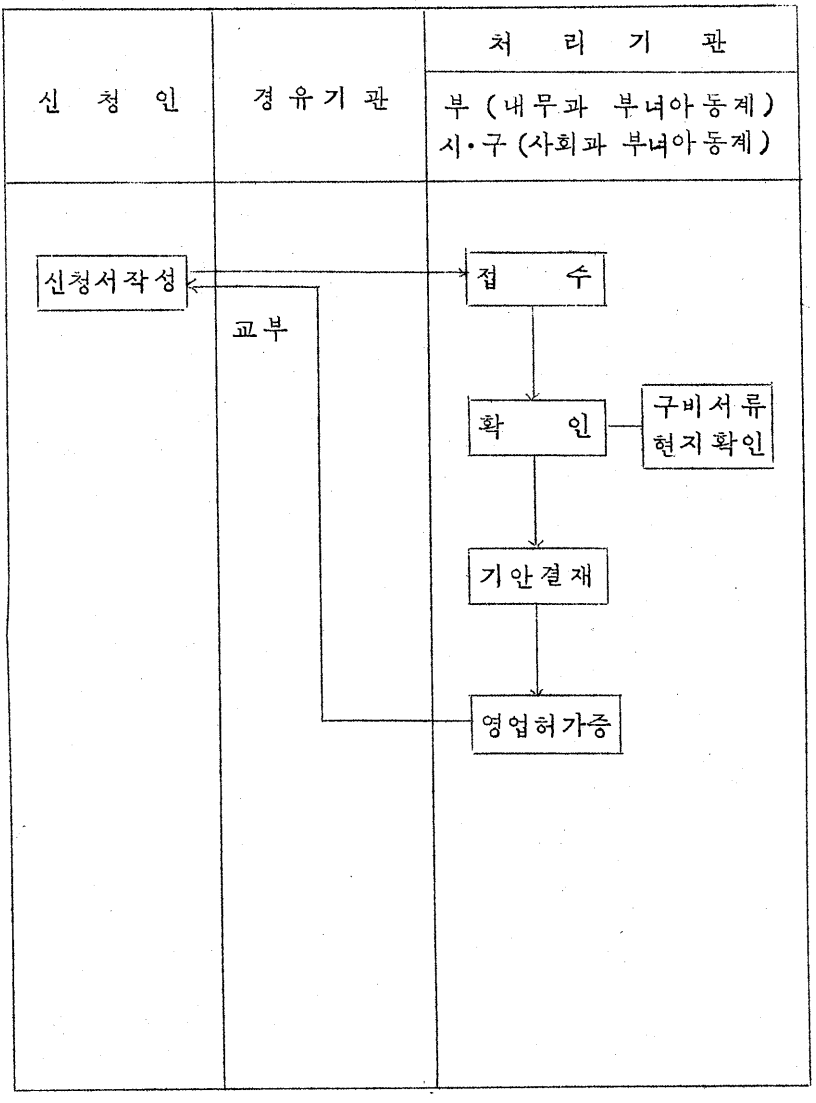

<별지제2호서식>

( ) 영업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① 성명 (법인은 명칭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생년월일	년 월 일
	④ 주소					
	⑤ 법인설립 년 일일	년 월 일	⑥ 법인 소재지			
⑦ 업종및 허가번호			⑧ 업소명			
⑨ 업소 소재지						
변경사항 ⑩ 변경전						
변경사항 ⑪ 변경후						
⑫ 변경사유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영업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시장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없 음

수입증지 3,000원

2409-02-19
1975. 8. 5 승인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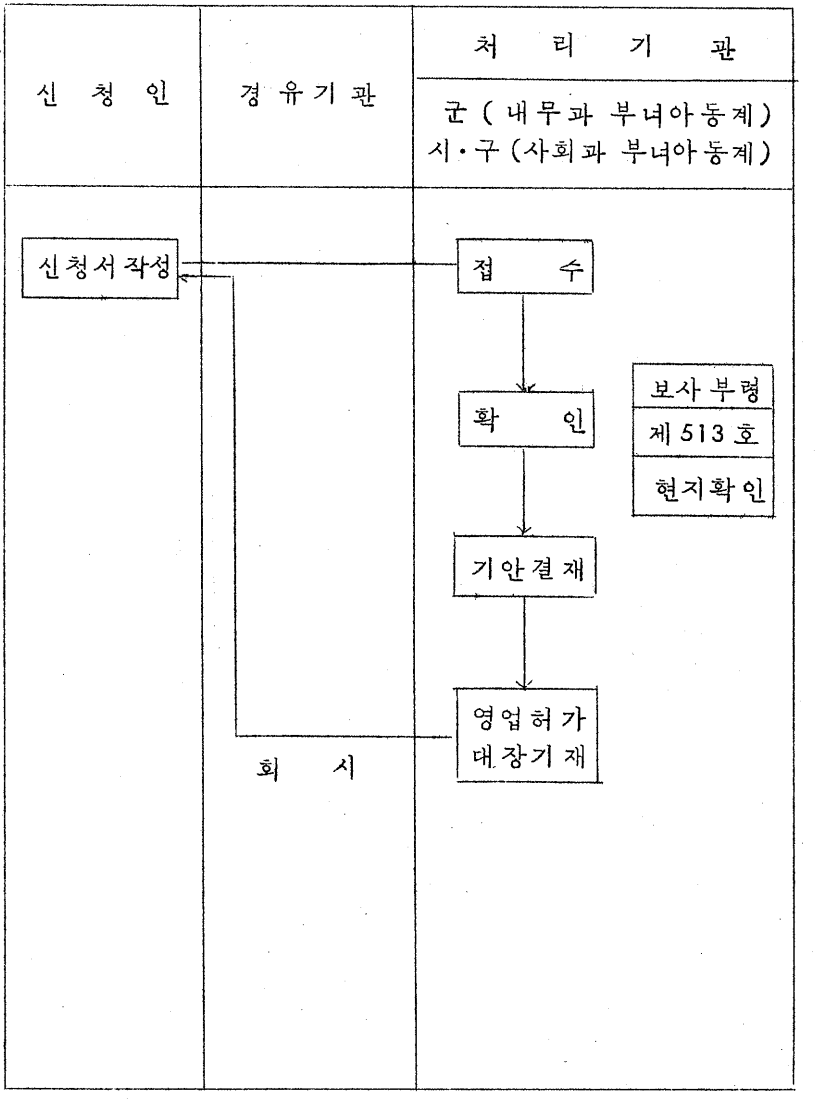

〈별지 제 3 호서식〉

( ) 영업에 관한 (양수 상속) 신고 서			처리기간
① 업종및허가번호		② 허가년월일	년 월 일
③ 업 소 명		④ 업소 소재지	

신고내용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⑤ 성명 (법인은 명칭및 대표자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생년월일 (법인은 설 립 년 월 일)		
	⑧ 주 소		
	⑨ 업 소 명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영업 (양수 상속)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시 장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양수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증지 없 음

2909-02-20
1975. 8. 5 승인

190 ㎜ × 268 ㎜
신문용지 54 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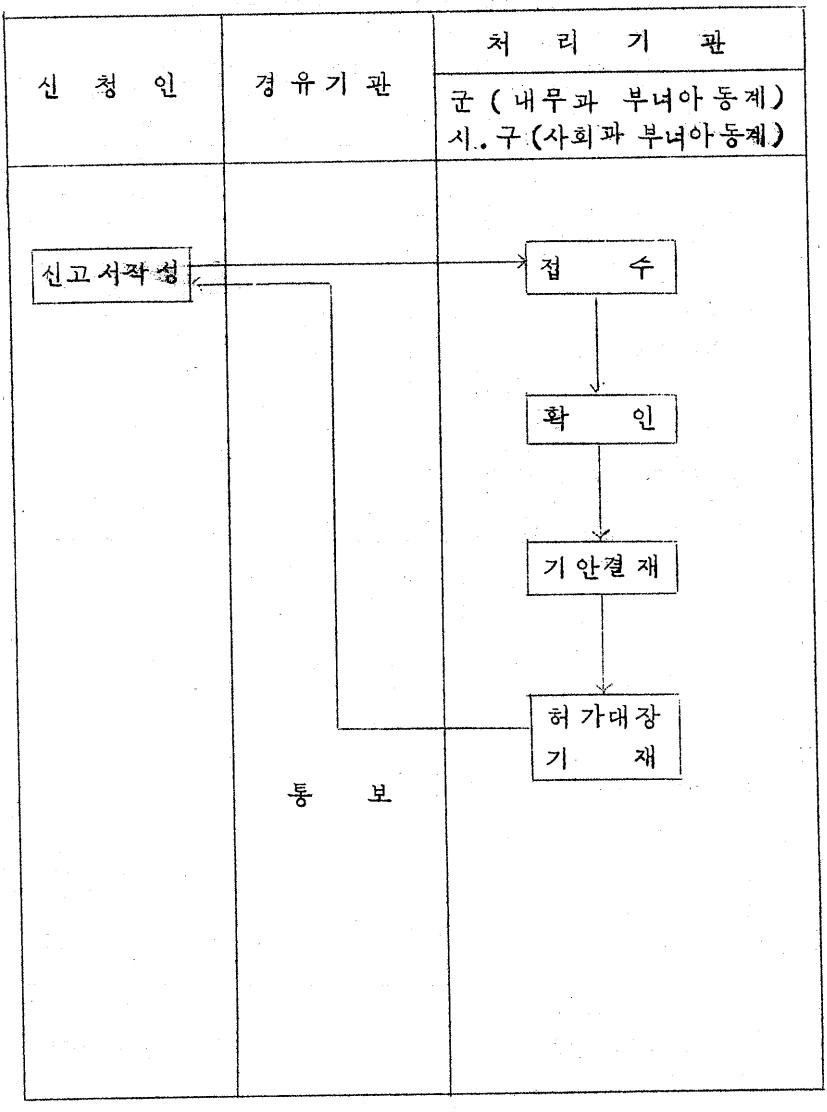

〈별지제4호서식〉

<table>
<tr><td colspan="6">( ) 영업 (휴업 / 폐업) 신고서</td><td>처리기간</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①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td><td></td><td>② 주민등록번호</td><td></td><td>③ 생년월일</td><td>년 월 일</td></tr>
<tr><td>④ 주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⑤ 법인설립 년 월 일</td><td colspan="2">년 월 일</td><td>⑥ 법인 소재지</td><td></td></tr>
<tr><td colspan="3">⑦ 업종및허가번호</td><td></td><td>⑧ 업소명</td><td></td></tr>
<tr><td colspan="3">⑨ 업소소재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⑩ (휴업·폐업) 예정일</td><td></td><td>⑪ 사업착수예일(휴업기간)</td><td></td></tr>
<tr><td colspan="3">⑪ (휴업·폐업) 사유</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휴업 / 폐업)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시장 / 도지사 귀하</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td><td>수입증지
없음</td></tr>
</table>

2909-02-21
1975. 8. 5 승인

190 mm × 268 mm
신문용지 54 g/m²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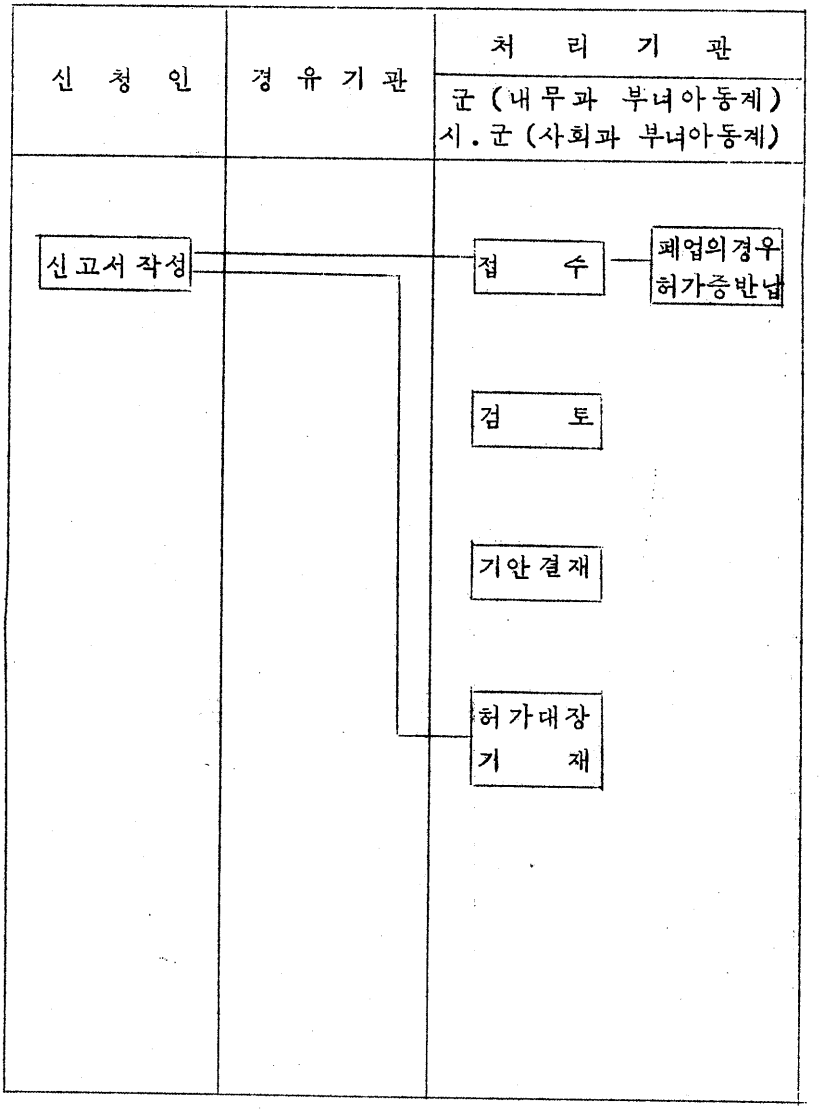

〈별지제 5 호서식〉

(앞면)

(　　) 영업허가대장

① 허가번호		② 허가 년월일	
③ 업종		④ 소재지 및 업소명	

영업자	⑤ 성명 (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생년월일	년 월 일생
	⑧ 성별	남 여	⑨ 주소			
	⑩ 법인 설립년월일		⑪ 법인 소재지			

⑫ 시설내용

⑬ 취급장의용품 (장의사에 한함)

2909-02-23
1975. 8. 5 승인

190 ㎜ × 268 ㎜
인쇄용지 2급 70 g/㎡

(뒷 면)

변 경 사 항			행 정 처 분 사 항		
번호	월 일	내 용	월 일	처분내용	기 재 자 성 명 . 인

〈별지 6호〉

제 호

( ) 영업허가증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주 소		주민등록번호	
업 종			
업소명			
업소소재지			
허가조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 영업을 허가함.

년 월 일

○○ 시 장
도지사 ㊞

2909-02-22
1975. 8. 5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특급) 120 g/m²

自活指導事業에 관한 臨時措置法

1968.7.23法律第2039号

第1條(目的) 이 法은 勤労能力이 있는 零細民에게 勤労救護를 実施함과 동시에 救護用糧穀의 適正한 管理를 期함으로써 自活을 助成하고 地域社会開発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用語의 定義등) ①이 法에서 "勤労救護"라 함은 零細民에게 就労를 통하여 행하는 救護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自活指導事業"(이하 "事業"이라 한다)이라 함은 勤労救護를 実施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을 말한다.

第3條(事業의 主管과 施行등) 事業은 保健社会部長官이 主管하고 地方自治団体의 長이 施行한다. 다만, 施行計劃에 관하여는 保健社会部長官이 関係部処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條(事業의 策定) 事業은 다음의 順位에 따라 策定하여야 한다.

1. 勤労救護의 對象者가 多數 居住하고 있는 地域의 事業

2. 自活助成의 效果가 큰 事業

3. 地域社会開発度가 높은 事業

第5條(収用과 補償등) ① 地方自治団体의 長은 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土地収用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地 其他 権利를 収用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収用된 土地其他 権利에 대하여는 그 所有者 또는 関係人의 同意가 있을 경우에 限하여 土地収用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施行으로 생긴 分配對象이 되는 土地, 其他 権利의 一部로써 補償할 수 있다.

③事業에 関聯되는 権利를 当該地方自治団体의 長에게 移転한 者에 대한 補償에 관하여도 前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條(土地의 分配등) 事業施行으로 생긴 分配對象이 되는 土地 其他 権利는 前條 第2項 및 第3項의 경우와 公共必要에 의하여 留保하는 部分을 제외하고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勤労救護의 對象者에게 優先的으로 無償分配할 수 있다.

第7條(受益者負担) ① 地方自治団体의 長은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利益을 받은 者에 대하여 그 利益의 범위안에서 工事費의 一部를 負担시킬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負担金의 徵收範囲 및 節次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当該 地方自治団体의 條例로 정한다.

第8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① 事業에 就労한 者에게 支給하는 労賃은 勤労基準法, 豫算会計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糧穀으로 支給할 수 있다. 그 糧穀의 加工에 所要되는 経費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前項의 糧穀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物品管理) ①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労賃으로 支給될 糧穀은 다른 目的을 위하여 사용·交換·売買하거나 기타의 処分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前項의 糧穀의 包装은 糧穀支給時에 回収하여 標識을 抹消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包装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学校給食用등 糧穀管理) 学校給食, 母子給食 其他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糧穀의 物品管理에 관하여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1條(法適用例) 이 法은 受援糧穀에 관한 国際間의 條約, 協定 其他 合議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2條(糧穀의 返還請求) 保健社会部長官 또는 地

方自治団体의 長은 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処分된 糧穀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 그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13條(罰則) 第9條第1項 및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糧穀을 사용·交換·売買하거나 기타의 処分을 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10万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第14條(同前) 第9條第2項 및 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抹消되지 아니한 包装을 譲渡한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3万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15條(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外國民間援助団體에 関한 法律

1963.12.7法律第1480号

第1條(目的) 이 法은 国内에 있어서의 外国民間援助団体(이하 "外援団体"라 한다)의 事業의 적정을 도모함으로써 社会福祉事業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外援団体"라 함은 그 本部가 外国에 있고 그 本部의 支援으로 国内에서 保健事業·教育事業·生活保護·災害救護 또는 地域社会開発等의 社会福祉事業을 행하는 非営利的인 社会事業機関으로서 그 事業資源이 外国에서 마련되고 実質的으로 外国人에 의하여 運営되는 機関을 말한다.

第3條(適用對象) 이 法은 다른 法律·條約 기타 国際協定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外援団体에 적용한다.

第4條(登録) ① 外援団体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登録하여야 한다.

② 保健社会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한 外援団体에 대하여는 登録証을 交付한다.

第5條(登録団体의 特典) 登録되지 아니한 外援団体

가 導入한 物品은 関稅法 第 3 條第5号의 規定의 物品으로 보지 아니한다.

第6條(物品의 導入) ① 登録된 外援団体는 事業遂行에 필요한 物品과 社会福祉用 物品을 導入할 수 있다.

② 保健社会部長官은 社会福祉用 物品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財務部長官 및 商工部長官과 合議한 후 미리 外援団体에 대하여 一定한 物品의 導入禁止를 通告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援団体에 導入禁止의 통고를 한 物品으로서 그 통고전에 蒐集 또는 発送된 物品을 제외하고는 이를 社会福祉用 物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第7條(導入節次) ① 外援団体는 前條 第1項의 物品을 導入하고자 할때마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申請하여 그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保健社会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인정 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정여부를 決定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지한다.

第8條(寄贈對象者) 社会福祉用 物品의 寄贈對象者는 外援団体가 保健社会部長官과 協議하여 選定한다.

第9條(物品輸送費의 負担)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된 對象者에게 寄贈하는 社会福祉用 物品에 대한 国内에 있어서의 그 輸送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부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할 輸送費의 부담節次 輸送費의 限界·輸送節次方法 등에 관하여는 保健社会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物品処分의 制限) ① 社会福祉用 物品은 이를 売買 또는 交換하지 못한다. 그러나 糧穀이외의 物品으로서 寄贈받은 者 자신이 직접 사용함에 적당하지 아니한 物品은 예외로 한다.

②受援団体의 代表者는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얻어 糧穀이외의 社会福祉用 物品을 売買 또는 交換할 수 있다.

第11條(委員会) ①外援団体의 救護事業의 運営에 관한 事項을 調整·協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에 中央救護協議委員会를,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에 地方救護 協議委員会를 둔다.

②中央救護協議委員会 및 地方救護協議委員会의 構成과 運営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보고) 保健社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援団体에 대하여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登録의 取消) ① 保健社会部長官은 登録한 外援団体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録을 取消할 수 있다.

1. 目的 이외의 事業을 한때

2. 前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허위의 보고를 한 때

4. 登録事項에 허위가 있을때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録을 取消하는 경우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은 당해 外援団体에 대하여 남아있는 社会福祉用 物品의 処分의 方法을 指示할 수 있다.

第14條(返還등의 命令) ①누구든지 詐偽 기타 不正한 手段에 의하여 社会福祉用物品을 받거나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前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社会福祉用 物品을 받은 者 또는 그 物品을 他人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그 物品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保健社会部長官은 外援団体에 즉시 그 全部 또는 一部의 返還을 命하거나 또는 그 価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本人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辨償하게 할 수 있다.

第 15 條 (罰則) 前條 第 1 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会福祉用 物品을 받거나 또는 他人으로 하여금 받게 한者는 3年以下의 懲役, 6万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 16 條 (同前) 第 10 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社会福祉用 物品을 売買 또는 交換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4万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処한다.

第 17 條 (施行令) 이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6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保健社会部에 登録된 外援団体는 이 法 施行日로부터 30日 이내에 登録을 更新하여야 한다.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시행령

(1969.11.17 대통령령제 4262 호)
개정 1974. 6.22 대통령령제 7182 호
1975.11.13 대통령령제 7871 호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등록) ①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 (이하 "외원단체"라 한다) 가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외원단체 등록신청서 2 통 (정부본) 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10 일이내에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11.13 대통령령 제 7871 호)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 1 항의 등록신청서에 형식상의 미비가 없는한 10 일이내에 등록하고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당해 외원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 2 조의 2 (도입물품의 범위) ①법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물품과 사회복지용물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진료 (순회진료를 포함한다) 사업용 물품과 사회복지시설의 의무실 및 요보호대상자 전용 의료기관의 진료사업용 물품
2.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의 교육용 물품
3. 생활보험법 또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재해구호대상자와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구호대상자로 인정하는 자에 대한 구호용 물품
4. 새마을사업용 물품과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복지사업용 물품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용 물품과 동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용 물품
6. 무료진료를 위한 일반의료기관용 물품
7. 의원단체 자체의 업무용 물품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종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74.6.22 대통령령 제 7182 호)

제 3 조 (물품도입의 인정) ①의원단체가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도입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물품도입인정신청서 3통과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74.6.22 대통령령 제7182호, 개정 75.11.13 대령 제7871호)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도입인정신청물품이 의료약품, 의료기재 또는 병원시설재인 경우에는 7월이내에 그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75.11.13 대령 제7871호)

③외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입인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월내에 그 인정받은 물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미리 도입기간 연장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74.6.22 대령 제7182호)

제4조(기증대상자의 선정)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원단체가 사회복지용 물품의 기증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요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도입인정신청서에 기증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장

관이 그 물품도입을 인정한 때에 이미 협의된 것으로 본다.

(개정 75.11.13 대령제 7871 호)

1. 물품도입(도입예정) 년월일 및 입항지명

2. 물품명 및 수량

3. 기증대상자의 주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자로 할 때에는 그 거주지의 시·군·읍·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4. 기증대상자명(불특정다수인을 대상자로 할때에는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5. 물품기증시기 기간 및 장소명

6. 기증목적

7. 물품의 저장장소

②보건사회부장관과 외원단체는 생활보호, 재해구호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미 선정된 기증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74.6.22 대령제 7182 호)

제 4 조의 2 (도입물품의 사후관리) 보건사회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하여금 그 관할 행정구역내에 있는 기증대상자에게 공여된 도입물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74.6.22 대령제7182호)

제5조(양곡의 정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양곡과 분유 및 식용유를 말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호협의 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구호협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사회부 사회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한적십자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주한 미국 국제개발처를 대표하는 자 1인

(개정 75.11.13 대령제787호)

3. 외원단체를 대표하는 자 6인
4.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를 대표하는 자 1인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보건사회국장(제주도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장 또는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75.11.13 대령제7871호)

1. 대한적십자사 지사를 대표하는 자 1인

2. 주한 미국 국제개발처 지방주재관 1인

(개정 75.11.13 대령제7871호)

3. 외원단체 지방대표자 6인

4.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 시·도 연합회를 대표하는 자 1인

제7조(위원회의 기능) 각급 위원회의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원단체의 구호사업 및 그 운영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외원단체의 연간 물품도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외원단체의 기별사업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입물품의 선택 및 기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입하, 양하, 출하 및 재고 물동상황 및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6. 고정배급소 설치 및 배급확인에 관한 사항

7. 물품수송기관의 지정 및 수송비에 관한 사항

8. 긴급구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9조(회의) ①각급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각급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직원) ①각급 위원회에 그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필요한 수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장은 보건사회부 사회과장이 되고, 지방위원회의 간사장은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도의 사회과장 (제주도에 있어서는 보건사회과장)이 되며, 중앙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방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각급 위원회의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담당 업무를 처리한다.

④각급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당해 위원회의 간사

장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제 11조(위원회의 수당등) 각급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경비의 보조) 보건사회부장관은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 13조(보고) ①외원단체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보고서의 종류, 서식 및 기일 등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75.11.13 대령제7871호)

제 14조(등록취소의 통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원단체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외원단체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외원단체의 대표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등록증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15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69.11.17 대통령령제 4262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6.22 대통령령제 7182 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전에 도입인정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5.11.13 대통령령제 7871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외원단체등록신청서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1. 일반사항 _____

가. 본부 사무소 _____

(1) 단체명칭 _____

(2) 소 재 지 _____

(3) 대표자 _____ 직명 _____

(4) 본국정부등록 및 인가연월일 _____

나. 한국사무소

(1) 단체명 (영문) _____

(약칭) _____

(국문) _____

(2) 소재지 _____ 전화 _____

(3) 창립일자 _____

(4) 사업시작일자 _____

(5) 소속종교 _____

(6) 대 표 자 _____

취임년월일 _____ 국적 _____

단체자산

가. 부동산

(건물) 소유 _____ 동 _____ 평

차용 _____ 동 _____ 평

소재지

(토지) 소유 _____ 평

차용 _____ 평 _____

소재지

나. 자금

거래은행명 _____ 한국화폐 _____

미 국 화 폐 _____

다. 주요설비 및 비품

명 칭	수 량	용 도

(7) 차 량

차량명칭	도입년도	차량번호
예 시		
Willys 3/4	Jeep 1960	5327

(8) 직 원

(외국인)

국 적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위	담당사무

전화번호

(한국인)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위	담당사무	전화번호

가정복지원

성 명	성 별	연 령
학 력	경 력	

(9)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표 (도표)

(10) 지방주재사무소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명
직 원 수	전화번호	

2. 사업계획

가. 사업종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나. 사업개요

다. 원조상황

(1) 물자원조

기증대상	물품종류	월분배량
월 분배방법	연간원조량	

(2) 현금원조

기증대상자	월 원조기준액
원조방법	연간원조액

(3) 기술원조

원조대상	원조내용

3. 부속서류 (별첨서식)

가. 외국단체서명등기서

나. 주한외국공관추천서 또는 본국정부의 인정서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서명

외원단체서명등기서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1. 단 체 명　　약　　칭

2. 소 재 지　　전화번호

3. 서명권자

성명 :　　직위 :　　국적 :

서명 _____

단체직인 :

4. 서명대리권자

성명 :　　직위 :　　국적 :

서명 _____

위와 같이 서명등기를 합니다.

대표자 :

[별지 제2호서식]

외원단체등록사항변경신고서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1. 등록번호

2. 단체명

3.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변경사항

가. 변경내용 ( ) 구 ( )
신 ( )

나. 변경내용 ( ) 구 ( )
신 ( )

다. 변경내용 ( ) 구 ( )
신 ( )

5. 변경사유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외원단체등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_____

[별지 제3호서식]

외원단체등록증

1. 등록번호 :

2. 단 체 명 : 국적 :

3. 대표자 및 지위 :

4. 소 재 지 :

5. 사업종류 :

6. 등록년월일 :

이 단체는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함.

보건사회부장관

[별지 제 4 호서식]

외원단체도입물품인정신청서

No.

1. 단 체 명 2. 대표자명

3. 소 재 지

4. 기증자및주소

5. 물자내용

수 량	형 태	품 명
중 량	가 격	
	$ 원	

6. 물품도입계획

출 항 지	입 항 지	도착예정일자
적재선박명		

7. 물품사용계획 (기증대상자 및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8. 부속서류 (별첨)

선하증권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 7 조제 1 항에 의하여 위와같이 물품도입을 인정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대표자 서명

이 물품도입을 인정함.

보건사회부장관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1974. 7. 4 보사부령제 446 호로전면개정)
개정 74.12.27 보사부령제 462 호
75.10.15 보사부령제 494 호

제 1 조 (물품도입인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 3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4.12.27 보사부령제 462 호)

1. 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도입물품명세서 2 부
2. 사용계획서 또는 배정계획서 (기증 받을자가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별로 작성한다) 2 부
3. 도입물품의 가액 (본선인도가격) 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시행령 제 2 조의 2 제 1 항제 6 호의 물품을 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75.10.15 보사부령제 494 호)

제 2 조 (도입기간 연장) 외원단체가 시행령 제 3 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기간 연장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도입기간 만료 10 일전까지 그 연장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도입물품의 종류등) ①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종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물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과 구급차량, 기타 의료기관 전용물품

2.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2호의 물품 : 각종 교육용자재, 도서등으로서 직접 교육에 사용되는 물품

3. 영 제2조의2 제1항제3호의 물품 :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재해구호대상자등의 요구호대상자에게 직접 공여되는 의류, 식료품 또는 주택자재

4.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4호의 물품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새마을 사업용으로 그 용도를 증명한 물품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역복지사업용으로 인정한 물품

5.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5호의 물품 : 의류, 식료품, 의약품등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에게 직접 공여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물품

6. 시행령 제2조의2 제7호의 물품 : 타자기, 복사기

계산기등으로서 당해 외원단체의 전년도 사업실적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4조(일반의료기관용물품의 도입)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제6호의 일반의료기관용 물품을 도입하고자 하는 외원단체는 당해 기증받을 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가액 (본선인도가격)의 2할 상당액을 표시한 무료진료 확약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74.12.27 보사부령제462호)

제5조(도입물품의 사후관리) ①도지사는 외원단체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예정보고와 기증받은 자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품 도착보고를 받은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하 및 현품 도착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74.12.27 보사부령제462호)

②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내에 수배된 외원물품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과 임의 처분여부를 확인 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도입물품의 신고등) ①외원단체로부터 도입물품을 기증받은 자는 현품도착 즉시 관할 도지사에게 현품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인수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불현황을 명백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외원단체로부터 내구성 기재류를 기증받은 자는 당해 물품의 적당한 위치에 물품명, 기증외원단체명, 기증받은 자의 명칭, 현품 인수일자 등을 명시하고 매년 12월말 현재의 그 관리상황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송비의 한계 및 부담절차) ①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수송비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송기관에 의하여 국내입항지의 모선하역으로부터 도입물품을 기증받은 자가 현품을 수령하는 최종 수배지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수송비는 당해물품이 최종 수배지까지 수송완료된 이후에 수송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제출한다.

제8조(물품매매 또는 교환의 허가)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물품을 기증받은 자가 사회복지용 물품의 매매 또는 교환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물품매매 또는 교환허가신청서를 그 기증 받은자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당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 일내에 그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조 (외원단체의 제보고) 외원단체는 별표 1 에 의한 보고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74.12.27 보사부령제 462 호)

부 칙

(74. 7. 4 보사부령제 446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12.27 보사부령제 462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10.15 보사부령제 494 호)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 고 서 명	기 재 내 용	제출기한	제 출 처
1. 물품도착예정보고(정부가 조작한 물품에 한함)	입하예정일자 모 선 명 입항예정항구명 기타 참고사항 선하증권(B/L) 및 송품장(Invoice) 첨부할 것	입항 10 일전	보건사회부장관
2. 출하예정보고(외원단체가 직접출하 하는 물품에 한한다.)	수배지 도착예정일 기증수량 수배자명	출하 10 일전	관할도지사
3. 연간사업	별지제 3 호서식에 의한다.	매년 1 월 31 일	보건사회부장관
4. 전년도 사업실적보고	별지제 4 호서식에 의한다.	〃	〃

〔별지 제 1 호서식〕

도 입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중 량 (kg)	가 액 ($)	용 도	비 고

1. 의약품은 용도, 용법 및 성분명세서를 첨부할 것
2. 기계류는 당해 물품의 모형도 및 사용방법 설명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2호서식〕

사회복지용물품매매(교환)허가신청서

1. 단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명

4. 사업종별

5. 단체소속인원수(수용인원수)

6. 매매(교환)대상물품 수량

7. 기증외원단체명

8. 수증년월일

9. 매각(교환)이유

10. 매각후 대금의 용도(교환하고자 할 때는 교환물품명)

위와 같이 사회복지용물품을 매매(교환 또는 양도)하고자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성명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년도 사업계획서

1. 단 체 명 : 국문

(영문)

2. 소 재 지 :

3. 등록년월일 : 등록번호 :

4. 대표자주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5.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개요	소요예산	재원조달방법	시행기관 및 인 원 수

6. 임직원 명단

구 분	국적별	성 명	국내주소	성별	생년월일	입국일자	담당업무	비 고
임 원								
직 원								
계								외국인 : 명 한국인 : 명

7. 지방사무소 현황

명 칭	소재지	대 표 자			임직원수	담당사업	비 고
		성 명	성별	연 령			

8. 재산목록

가. 부동산

종 류	지 번	지적 (건평)	시 가	비 고
건 물				
토 지				
기 타				
계				

나. 동 산

종 류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현 금					
차 량					
기 타					
계					

위와 같이 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성명 ㊞

〔별지 제4호서식〕

년도사업실적보고서

1. 단체명 : 국문

(영문)

2. 소재지 :

3. 등록년월일 : 등록번호 :

4. 대표자 : 주소

성명 성별 생년월일

5. 사업실적 총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연간진도	예산집행사항		재원조달		시혜단체 및 인권현황	비고
				당초계획	집행액	계획	실적		

※ 사업명은 법 제2조의 사업명으로 기재하고 세부사업명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6. 물자도입 및 배정내역

가. 도입내역

품목별	기증단체별	용도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나. 배정내역

단 체 별	품 명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7. 현금도입 및 사용실적

가. 도입내역

기증단체별	도 입 금 액		기 증 목 적	비 고
	$	원 화		

나. 사용실적

용도별	단체또는 개 인	지원목적	금 액		비 고
			$	원 화	

국제원조 한국사회사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1972.11.8 예규 31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정부, 유엔경제사회이사국(UN/DESA),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아동기금(UNICEF)간에 체결된 국제, 원조 한국 사회사업 1차 재정 협정서 제3장 규정에 의하여 국제원조 한국 사회사업 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인이상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부위원장은 사회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사회부 부녀아동국장
2.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장
3.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 교수부장
4. 사회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주한 유엔아동 기금 대표와(UNICEF) 주한 유엔

사회사업 훈련 고문관 및 주한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회의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5조(심의)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 사회사업, 대학사회사업학과, 민간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사업 단체의 사업 협조 및 의견교환에 관한 사항
2. 사회사업 교육의 발전을 위한 자문과 사회사업 훈련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과편성 및 과정의 개편등 조언에 관한 사항.
3. 공, 사립 사회사업 기관의 사회행정가 및 실무자의 전문적 자질양상과 활용을 위한 조언에 관한 사항
4. 외국 문헌의 한국어 번역과 활용에 관한 사항

5. 시범 사업장의 개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기술 원조에 관한 사항.

6. 사회사업 전문 연구가의 선정, 활용에 관한 사항

7. 수원가족, 청소년 및 아동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봉사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회사업에 필요한 조언, 협조, 자문, 봉사에 관한 사항

제 6 조 (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매 2월마다 소집하되 필요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2. 위원 1인 이상의 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7 조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의사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사업의 계획 및 운영의 필요에 따라 5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를 위원장이 정한다.

③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 9 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국립사회사업지도자 훈련원 교학과장, 서기는 교무계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10 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중앙구호협의위원회운영규정

19708.18 예국 2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원의 구분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구분) 위원회의 직원은 별표의 자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간사 2. 2급간사

3. 1급서기 4. 2급서기

제3조(보수) 간사 및 서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월액으로 지급한다.

1. 1급간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3급을류 상당 대우

2. 2급간사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갑류 상당 대우

3. 1급서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4급을류 상당 대우

4. 2급서기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5급갑류 상당 대우

제4조(여비지급등) 간사 및 서기의 국내출장여비지급기준과 방법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국내여비지급

규정의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 5 조 (복무) 간사 및 서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 (위원수당)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출석수당은 일액으로 하되, 당해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 이를 지급한다.

제 7 조 (규정준칙)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에 설치되는 지방구호협의위원회의 직원의 구분, 자격, 제급여 복무 및 위원수당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0. 8. 18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내규) 보건사회부 내규 제 12 호 (1964. 11. 20.) 및 내규 제 35 호 (1966. 11. 18) "중앙구호협의 위원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위원회의 간사및 서기로 임명된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자로 본다.

별표

간사및서기자격표

1급간사 ①대학졸업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자② 관련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③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

2급간사 ①초급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영어에 능통한 자②관련업무에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자③특별한 학식, 기술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자

1급서기 ①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해득이 가능한 자②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자

2급서기 ①중학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영어해득이 가능한 자②관련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海 外 移 住 法〔1962. 3. 9 法律第1030号제정〕

改正 1963. 2. 9 法律第1271号
1963. 11. 5 法律第1439号
1973. 2. 16 法律第2531号

第1條(目的) 本法은 国民의 海外進出을 奬励함으로써 人口政策의 適正과 国民経済의 安定을 期함과 同時에 国威를 宣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①이 法에서 海外移住者라 함은 生業에 従事하기 위하여 外国에 移住하는 者와 그 家族 또는 外国人과의 結婚(外国에서 永住権을 取得한 大韓民国国民과 結婚하는 경우를 包含한다). 入養 및 縁故関係로 인하여 移住하는 者를 말한다.
②前項에서 家族이라 함은 移住하는 者와 同一戸籍内에 있는 者를 말한다.

第3條(移住者의 欠格事由)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本法에 依한 海外移住의 資格이 없다. 다만, 第4号 乃至 第7号에 該当하는 者라도 移住相対国家에서 그者의 移住를 許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3. 2.16 法2531>

1. 兵役을 忌避하고 있는 者<改正 73. 2.16 法 2531>

2.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지 아니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改正 73. 2.16 法 2531>

3.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및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精神病者와 心身耗弱者

5. 알콜中毒者 또는 麻薬中毒者

6. 聾者 啞者 또는 盲者

7.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伝染病患者

8. 国家의 体面을 損傷할 우려가 있거나 国是에 違背될 行為를 할 우려가 있는 者<改正 73.2.16 法 2531>

9. 其他 海外移住가 不適合하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保健社会部令으로 定하는 者<改正 73. 2.16 法 2531>

第4條(移住의 種類) 本法에 依한 海外移住는 集団移住, 契約移住와 特殊移住로 区分하고 그 区分의 標準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條(移住対象地域의 制限) 国家施策上 또는 海外

移住를 希望하는 者의 保護를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에는 海外移住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73. 2.16 法 2531〉

第 6 條(移住申請 및 許可) ①本法에 依한 海外移住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海外移住許可申請書를 保健社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前項의 規定에 依한 海外移住許可申請書를 받았을 때에는 申請者의 海外移住資格을 審査하고 許可与否를 決定하여 遲滯없이 当該申請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에 依한 海外移住許可通知를 받은 者는 保健社会部長官이 定하는 所定期間內에 海外移住에 必要한 要件을 갖추어 海外移住節次를 畢하여야 한다.

第 7 條(海外移住資格審査委員会) ①前條의 規定에 依한 海外移住者의 資格을 審査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会部長官所屬下에 海外移住資格審査委員会를 둔다.

②前項의 海外移住資格審査委員会의 組織과 運営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8 條(海外移住者의 財産搬出) 海外移住者는 大統領

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財産을 搬出할 수 있다.

第9條(補助金의 交付) ①保健社会部長官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法人에 対하여는 그 業務에 必要한 経費, 海外에 移住하는 者에 対하여는 그 海外移住에 必要한 旅費 其他 経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依한 補助金의 交付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0條(海外移住의 斡旋) ①財団法人(以下"法人"이라 한다)이 아니면 海外移住希望者를 募集 또는 斡旋하거나 其他 海外移住에 関한 業務를 取扱할 수 없다<改正 63.11.5 法1439.73.2.16法2531>

②前項의 法人은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한 法人은 그 業務에 関하여 海外移住希望者로부터 移住斡旋에 必要한 手数料, 通信料 等 保健社会部長官이 承認한 費用以外에는 名目의 如何를 不拘하고 金品 其他의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改正 73. 2.16 法2531>

第 11 條 (海外移住許可取消) 保健社会部長官은 海外移住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할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한다.

1. 海外移住許可申請書에 虛偽事実이 있음이 発見되었을 때

2. 第 3 条各号의 1에 該当하게 되었을 때

3. 保健社会部長官이 指定하는 期間內에 海外移住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但, 疾病 其他 保健社会部長官이 不得已하다고 認定하는 事由로 因할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 12 條 (罰則) 海外移住許可申請書에 虛偽事実을 記載하여 그 許可를 받은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20 萬圜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 13 條 (同前) 第 10 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圜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 14 條 (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代理人, 使用人 其他従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関하여 第 10 條의 違反行為를 하였을 때에는 行為者를 罰하는 外에 그 法人에 対하여도 前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15 條 (施行令) 本法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63. 2. 9. 法 127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63.11. 5. 法 1439〉

이　法은　公布後　30日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3. 2.16. 法 253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海外移住法施行令 (1969. 11. 10. 大統領令第4229号)

改正 1973. 6.21 大統領令 第6737号
1974. 3.20 大統領令 第7092号
1975.12.26 大統領令 第7896号
1976.11.15 〃 8278

第1條(生業의 定義) 해외이주법(以下"法"이라 한다) 第2條第1項에서 "生業"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業을 말한다.

1. 農業, 林業, 水産業, 畜産業
2. 鉱業, 토석채취업
3. 工業, 土木業, 建築業
4. 運輸業, 商業
5. 써비스業(改正 73.6.21 大令6737)
6. 其他 技術 또는 一般的労動을 주로 하는 業

第2條(전염병이 定義) 法 第3條에서 "전염병 환자"라 함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規定에 該当하는 환자와 이주대상국에서 定하는 바에 의한 전염병환자를 말한다.

第3條(移住의 定義) ①法 第4條에서 "集団移住"라 함은 정부와 이주대상국과의 교섭에 의하여 행

하는 集団的 移民의 移住를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계약 이주"라 함은 이주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단체가 이주 대상국의 취업 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 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이민의 이주를 말한다.

③法 第4條에서 "특수이주"라 함은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개인의 초청에 의하여 当該 外国에 3년이상 거주하게 되는 개인(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과 그 가족의 이주나 입양 또는 결혼등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의 이주를 말한다. 다만 해외고용 계약에 의하여 고용주의 초청으로 가족을 동반하여 이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第4條(移住対象地域의 制限) 法 第5條의 規定에 依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지역에는 海外移住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号의 地域에 있어서 가족이 합류하거나 国家利益에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3. 6. 1 大令 6737)

1. 우리나라와 전쟁상태 또는 적대상태에 있는 国家

2. 大韓民国在外公館이 設置되어 있지 아니한 国家

第5條(海外移住許可申請) 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外移住許可를 받고자 하는자는 海外移住許可 申請書에 다음 各号의 書類를 添附하여 保健社会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
2. 주민등록표 등본
3. 병적증명서 (18歲 以上 35歲 以下의 男子로서 현역 또는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者와 현역 또는 실역복무를 마친 자로서 3년이 經過되지 아니한 者에 限한다.)
4. 해외이주자 신원진술서
5. 명함판사진 2매
6.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書類 (국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주권 소지증명,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제결혼증명)
7. 移住後 생계안정을 保証할 수 있는 書類로서 保健社会部令으로 定하는 서류
8. 其他 해외이주자격심사에 必要한 서류로서 보건사회부령으로 定하는 서류

第6條 삭제 (대령 8278 호)

第7條 삭제(大令 7896号)

第8條(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① 法第7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資格審査委員会(以下 "委員会"라한다.)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各1人과 委員12人 以内로써 組織한다.

②委員長은 보건사회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사회부해외이주국장이 된다.

③委員은 해외이주사무에 관한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단체의 직원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第8條의2 (委員会의 審査事項) 委員会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3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결격사유 해당기준의 설정
2. 제4조 본문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 허용기준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 모집승인에 관한 사항
4. 해외이주자가 출국시 소지할 수 있는 외환한도
5.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第9條(委員長의 職務) ①委員長은 회무를 통리하며 委員会를 代表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代行한다.

第10條(委員会의 会議) ①委員長은 委員会의 会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会議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議決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議長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11條(幹事) ①委員会에 幹事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사회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한다. (改正 73.6.21 大令 6737)

第12條(組織 및 運営細則) 이 令에 정하는 것 외에 委員会의 組織과 運営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委員会의 審議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이 定한다.

第13條 삭제 (大令 8278 号)

第14條(재산반출) 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에 関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第15條(보조금) ①法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財団法人에 (以下 "法人"이라한다) 対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委任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必要한 所要経費의 一部 또는 全部를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②제1항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法人은 委任된 업무를 수행함에 必要한 所要豫算計劃書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보조금 집행계획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법인은 그 위임받은 업무의 종료 후 15일내에 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빙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海外移住者에 対한 여비 기타 경비의 보조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고 매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第16條(許可申請) 法제1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各号의 書類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73.6.21 大令6737)

1. 法人 설립취지서
2. 任員名単·임원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공무원인 경우에는 所属機関長의 승인서를 첨부할것)
3. 任員의 이력서 및 민간인 신원진술서
4. 任員의 호적등본
5. 事業計劃書 및 수지예산서
6. 출연행위 및 자산에 관한 증명서류
7. 이주대상국의 취업알선기관과의 제휴관계서류 및 그 취업알선기관의 설립에 관한 당해 이주대상국의 許可書類
8. 정 관

第 17 條 (募集의 承認) ①法人이 다음 각호의 1에 該当하는 海外移住 希望者의 募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이주대상국의 就業斡旋機関 또는 事業主와의 労動供給 契約에 의하여 해외이주 希望者를 募集할 때

2.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생업을 자영할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할 때.

3.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제 17 조제 7 호 내지 제 10 호에 규정된 해외 이주에 관한 지원을 조건으로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할 때.

②법인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해외이주희망자 모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주 예정지역의 상황

2. 이주 대상국의 취업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 당해 법인간에 체결한 이주에 관한 계약내용이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사항

3. 이주후에 종사할 직업과 그 수입예정액 및 취업조건

4. 해외이주희망자와 당해 법인과의 계약내용

5. 모집 총인원수 및 모집방법

6. 응모자의 자격요건

7. 이주 알선비용 및 그 징수와 지급방법

제 17 조의 2 (이주알선 실적등 보고) 법인은 매달의 다음 각호의 업무실적을 그 다음달 10 일까지 보건

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외이주 알선실적
2. 해외이주 허가신청 대행실적
3. 해외 이주 상담 및 안내실적
4. 해외지사 활동실적

第18條(이주알선비용승인) 法第10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수수료·통신료등 이주 알선에 必要한 費用에 対한 承認을 얻고자 하는 자는 그 承認 申請書에 비용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19條(施行規則) 이 令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보건사회부령으로 定한다.

附 則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3.6.21大令6737)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74.3.20大令7092)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大令 第7896号)

이 令은 公布後 2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大令 8278号)

이 令은 公布後 1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保健社会部令 第508号 1976. 1.16.

海外移住法施行規則

第1條(目的) 이 規則은 海外移住法(以下 "法"이라 한다) 및 同法施行令(以下 "令"이라 한다)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移住後 生計安定을 保証할 수 있는 書類)① 令 第5條第7号에서 "移住後 生計安定을 保証할 수 있는 書類"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書類를 말한다.

1. 연고초청 또는 国際結婚에 의한 海外移住申請의 경우에는 財政保証書
2. 就業에 의한 海外移住申請의 경우에는 雇傭契約書 및 経歷証明書
3. 국제입양에 의한 海外移住申請의 경우에는 양부모의 입양진술서 또는 財政保証書

②第1項 各号의 書類中 移住対象国의 수민절차상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서류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第3條(海外移住資格審査에 必要한 書類) 令 第5條

第 8 号에서 "海外移住資格審査에 必要한 書類"라 함은 다음 各号의 書類를 말한다.

1. 海外移住者에 대하여 実施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하였음을 証明하는 書類(14세 이상 70세 未満의 者에 한한다)

2. 公務員·政府投資機関豫算会計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関 또는 金融機関(保険会社 및 短期金融会社를 包含한다)의 任職員이 海外移住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所属機関長의 海外移住同意書

3. 招請에 의하거나 一部 家族이 国外에 滞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確認에 필요한 出入国事実証明 또는 永住権 所持証明等의 関係書類

4. 其他 海外移住資格審査委員会에서 移住資格審査上의 필요에 의하여 要請하는 書類

第 4 條(海外移住不適合者의 範囲) 法 第 3 條第 9 号에서 "其他 海外移住가 不適合하다고 認定되는 者"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말한다.

1. 旅券法등 다른 法令에 의하여 海外移住가 不適合한 者

2. 保健社会部長官이 定하는 社会指導層 人士

3. 保健社会部長官이 定하는 일정기준 以上의 所得

이 있는 者 또는 財産所有者

4. 国家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극히 필요하다고 保健社会部長官이 認定하는 者

5.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移住를 할 수 없는 者

6. 허위기재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移住를 하려고 하는 者.

7. 其他 海外移住의 目的이 明確하지 아니한 者

第5條(兵役義務者等에 対한 海外移住制限) ①現役(実役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服務未畢者·兵役適令未達者(14세부터 17세가 되는 해의 12月31日까지의 男子를 말한다. 以下같다) 또는 兵役法 第78條의 2에 해당되는 者로서 未婚인 者는 同一戸籍内에 있는 父母와 未婚인 형제자매 全員이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면 海外移住를 할 수 없다. 다만, 그 父母나 兄弟姉妹中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그 該当者를 제외한 全員이 移住하는 경우에는 海外移住를 할 수 있다.

1. 60才 以上이거나 労動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者

2. 移住対象国의 法令에 의하여 入国이 거부되어

있는 者.

3. 法令에 의하여 海外移住를 할 수 없는 者

4. 移住対象国에 이미 出国하여 永住権을 취득한 者

②現役服務未畢者, 兵役適令未達者 또는 兵役法 第78條의 2에 해당되는 者로서 기혼인 자는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年以上이 경과되고 그 배우자와 子女全員(第1項 各号의 1에 해당되는 者는 除外한다) 이 移住하는 경우가 아니면 海外移住를 할 수 없다.

③軍専門医 要員은 現役服務를 필한 者가 아니면 海外移住를 할 수 없다.

④現役에 服務中인 下士官 또는 兵은 戸籍上 全家族(第1項第4号 該当者는 除外한다) 이 移住하는 경우가 아니면 海外移住를 할 수 없다.

다만, 혼인신고에 의하여 法定分家가 된 者는 戸籍上 全家族이 移住하는 경우라도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海外移住를 할 수 없다.

⑤現役服務를 마친자, 徴集免除 또는 兵役免除者(兵役法 第78條의 2에 해당되는 者는 除外한다)와

兵役法 第21條 또는 兵役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者는 全家族의 移住가 아니더라도 海外移住할 수 있다.

第6條(書式) 令 第5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許可申請書, 令 第5條第4号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者身元陳述書 및 令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移住許可通知는 各各 別紙 第1号書式 乃至 別紙 第3号 書式에 의한다.

附 則

이 規則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별지제1호서식)

해 외 이 주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한
15 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한자						
	본적				학력	직업	호주와의관계	
	주소							

동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학력	직업	호주와의 관계
	한글	한자						

이주예정지		이주종류	

초청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신청인과의 관계	출입국상황

위와 같이 해외이주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신청인 ㊞

보건사회부장관 귀하

구 비 서 류

1. 소양교육이수증 1통
2. 여권용사진 1매
3. 해외이주자신원진술서 1통
4. 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거주자인경우 영주권소지증명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증명서)
5. 재정보증서 1통
   (취업의경우 고용계약서 및 경력증명서
   국제입양의경우 입양진술서또는재정보증서)
6. 호적등본 1통
7. 병적증명서 (18-35세의남자) 1통
8. 주민등록표 등본 1통
9. 기타해외이주적격검사에필요한서류

수수료
없음
알선또는수속대행기관

2910-01-3E
1975.12.9승인

190 ㎜ × 268 ㎜ (신문용지 50 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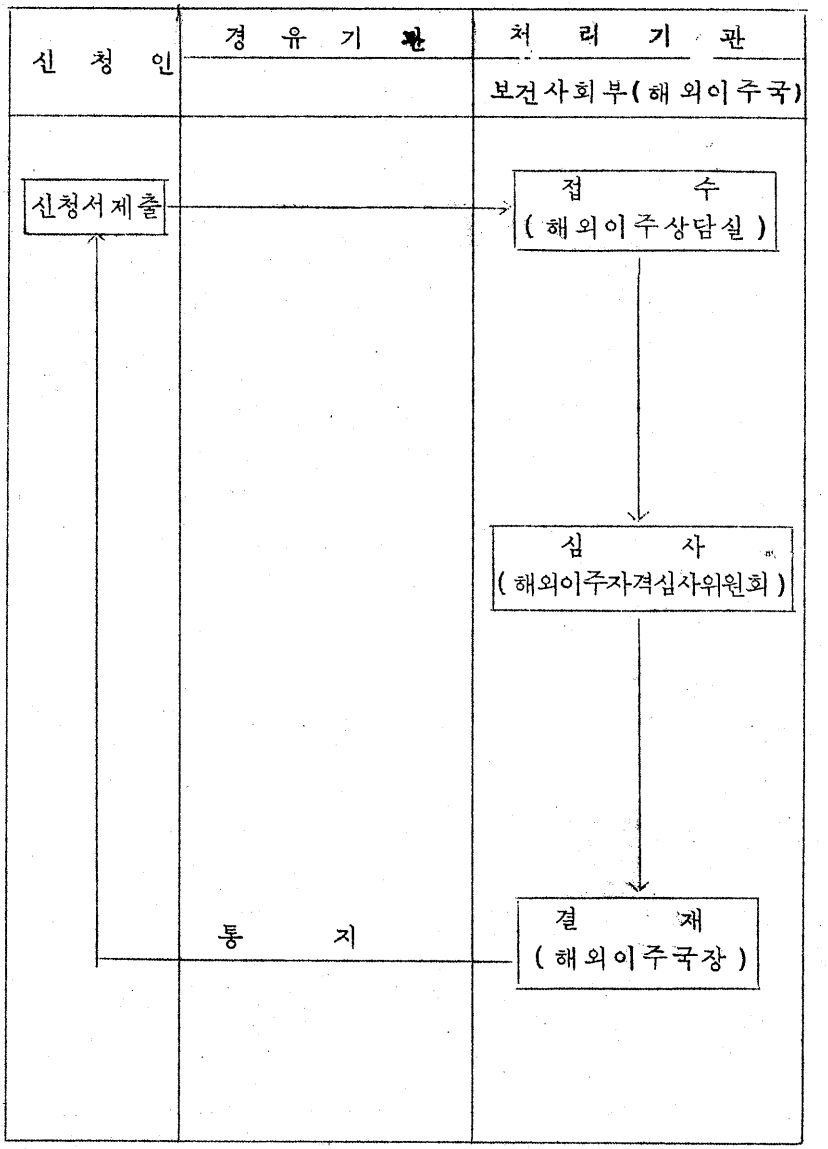

(별지제 2 호서식)

해 외 이 주 자 신 원 진 술 서

이민구분	□연고초청 □취업이주 □국제결혼 □집단이민	주의사항 ①이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약란을 읽을것 ②반드시 잉크나 볼펜을 사용할것 ③성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글로 쓸것 ④사진이면에는 성명을 기재할것 ⑤신원보증인은 필히 2명을 기재할것 ⑥신청자의 호적등본 2통을 첨부할것					
성명	한 글 ( )	주민등록 번 호		발행지및 발행일자		사진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종 교			
원적				본 관			
본적				호주와의 관 계	(관계) 의		
주소				전화번호			
직업	직장및직책			전화번호			

이민신청사항	이민국	초청자또는 초청기관	초청자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인 소지여권	이민경위및 계획	자격증 및 면허증
							종 류 : 발행관청 : 번 호 : 발행일자 :

병역	부 대 명	병 과	제대구분	계 급	군 번	미필자	등록사항 : 미필사유 :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	직업및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지여권	결혼년월일
	(한글) (한문)						

재산	소유자	부동산	동산	년간종합소득액
	본인 배우자 부모	원 원	원 원	원 원

학력	학교명	기간	소재지	전공과목	졸업학위

경력	기관명	기간	소재지	직책및급수	상훈

가족(이북거주자포함)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업및직책	소지여권	주소
	부						
	모						
	배우자						

八一五이후거주지	기 간	주 소	주민등록신고여부	자가, 전세, 하숙

해외여행	기 간	여행국	목 적	초 청 자	여권종류

보증인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및직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인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함.

년 월 일

진술자 성명 ㊞

대서인이 작성하는 경우
대서자 성 명 ㊞
대서자 현주소

2910-01-2A
1975.1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제 3 호서식)

보 건 사 회 부

이 주 : 1478.2- (70-3727) 년 월 일

수 신 : 신 청 인 발신 : 보건사회부장관

제 목 : 해외이주허가통지

다음과 같이 해외이주를 허가하였기 통보합니다.

허가번호		이주예정지		이주종류	
본 적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직 업	호주와의관계
허						
가						
자						

비고	

※ 주의사항

1. 30일 이내에 여권을 신청하여야 하며 여권 발급후 6월이내에 출국하여야 함.

2. 부득이한 사유로 위기간을 경과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기간연장 승인을 얻어야 함.

3. 출국전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 외이주 신고를 관할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하여야 함.

2910-01-18
1975.12.9 승인

190 mm × 268 mm (박엽지 50 g / m²)

大韓赤十字社組織法

1949.4.30. 法律 第25号

第1章 総 則

第1条 大韓赤十字事業을 遂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 大韓赤十字社는 法人이다.

第3条 大韓赤十字社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左의 事業을 行한다.

1. 제네바会議의 精神으로써 戦時에 自進하여 国軍의 医療補助機関이 되어 病傷者를 救恤하는 事業
2. 国内 水災, 火災, 飢饉, 悪疫 其他 重大한 天災地変이 発生한 때에 그 救済策을 樹立하고 被害者를 救恤하는 事業
3. 病院, 診療所等의 医療事業, 看護事業, 応急救護事業, 特志奉仕事業 및 少年赤十字事業의 社会事業 또는 教化事業
4. 其他 国民의 保健厚生向上에 必要한 事業

第4条 大韓赤十字社는 営利事業을 할 수 없다.

第5条 大韓赤十字社는 赤十字事業에 関하여 政府에 建議할 수 있다. 大韓赤十字社는 政府의 諮問에 対하여 答申하여야 한다.

第6条 大韓赤十字社는 法人으로서의 当事者能力, 訴訟能力, 其他 모든 能力을 保有하는 外에 左의 権限을 保有한다.

1. 印章의 制定 및 使用
2. 各国 赤十字社에서 共通히 使用하는 『白色質希猟式赤十字』標章의 使用
3. 政府의 承認을 얻어 国内法規에 背馳되지 아니하는 細則 또는 規程의 制定

第7条 大韓赤十字社나 그 指示에 依한 代行者 또는 国軍医務当局이나 그 指示에 依한 代行者가 아니면 事業用 또는 宣伝用으로 赤十字의 標章을 使用하거나 또는 赤十字나「제네바赤十字」等의 文句를 使用할 수 없다.

第8条 大韓赤十字社는 本社를 서울市에 두고 中央委員会의 決議에 依하여 地方에 支社를 둘 수 있다.

第9条 大韓民国内에 居住하는 者는 性別, 種族, 国籍, 宗教 또는 政治信念 如何를 不問하고 大韓赤十字社의 社員이 될 수 있다. 社員의 種類는 中央委員会가 細則으로 定한다.

第10条 大韓赤十字社의 各種 会議는 그 開会定員数를 在籍人員의 過半数로 하고 出席人員 3分之2以上의 決議로써 議事를 決定한다.

第2章 設立 및 議決機関

第11条 大韓赤十字社는 左의 組織委員으로 構成된 組織委員会가 設立한다.

1. 大統領이 任命한 委員 8人
2. 国会에서 指名한 委員 12人
3. 서울市 및 各道에서 各 4人式 選出한 委員 60人

第12条 組織委員会 任期는 第13条의 境遇를 除한 外에는 5年으로 한다.

第13条 組織委員中 大韓赤十字社의 福利를 為하여 不適当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이 任命한 委員인 境遇에는 大統領이 国会에서 指名된 委員인 境遇에는 国会가 서울 特別市 또는 道에서 選出된 委員인 境遇에는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各各 審査하여 •이를 除名 또는 解任할 수 있다.

第14条 組織委員中 前条에 依하여 除名이나 解任을 当하거나 또는 死亡하였을 때에 大統領이 任命한 委員인 境遇에는 大統領•이 国会에서 指名된 委員인 境遇에는 国会가 그 後任者를 任命 또는 指命하고 서울特別市 또는 道에서 選出된 委員인 境遇에는 当該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가 그 後任者를 補

選한다。 但，補選인 境遇에는 次期 組織委員年会에서 確認을 받아야 한다。

第15条 大韓赤十字社의 運営에 関한 最高議決機関으로서 中央委員会를 둔다。

中央委員会는 左의 委員으로써 構成한다。

1。組織委員会에서 選出된 委員 6人

2。支社 代表者会에서 選出된 委員 6人

3。大統領이 任命하는 内務部，財務部，国防部，法務部，文教部 및 社会部長官의 職에 있는 委員 6人

第16条 組織委員会 및 支社代表者会에서 選出된 中央委員의 任期는 第1次年会에서 各各 2人式 1年 2年，3年으로 抽籤에 依하여 決定하며 次後에 就任한 当該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大統領이 任命한 中央委員의 任期는 当該 国務委員 在任 期間으로 한다。

中央委員은 再選될 수 있으며 任期途中 欠員으로 因하여 補選된 委員은 前任者의 残任期間 在任한다。

第17条 組織委員会 및 支社代表者会에서 選出된 中央委員中 辞任，死亡 또는 其他 理由로 欠員이 생겼을 때에는 그 選出한 組織委員会 또는 支社代表者会議에서 그 後任者를 補選하고 大統領이 任命한 中央委員中欠員이 생겼을 때에는 大統領이 그 後任

者를 任命한다.

第18条 組織委員会와 支社代表者会는 第16条第1項前段에 規定한 中央委員을 選出하기 為하여 本法施行後 1日以内에 第1次年会를 開催하고 그 後 毎年会에서 任期満了委員의 後任者를 選出하여야 한다.

第3章 執行機関

第19条 大韓民国 大統領은 大韓赤十字社의 名誉総裁로, 国務総理는 名誉副総裁로 推戴한다.

第20条 大韓赤十字社総裁는 中央委員会에서 選出하고 大統領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総裁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再選될 수 있다.

総裁는 社務를 統理하며 中央委員会와 同会에서 設定하는 各委員会의 議長이 된다.

第21条 中央委員会는 左의 各 任員을 選任한다.

1. 副 総 裁 2人
2. 秘 書 長 1人
3. 財政監督 1人
4. 法律顧問 1人

各 任員은 1年間 服務하며 任期満了後 再選任될 수 있다.

第22条 中央委員会는 執行委員 7人을 選出한다.

執行委員은 執行委員会를 構成한다.

執行委員会는 中央委員会의 会期가 아닌 境遇에 있어서의 同委員会의 一切 権限을 代行한다.

第23条 大韓赤十字社의 事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에 事務総長을 둔다.

事務局에 関한 職制는 細則으로 定한다.

第4章 監督과 罰則

第24条 政府는 大韓赤十字社의 監督上 必要한 命令을 発하며 또는 処分을 할 수 있다.

第25条 中央委員会는 毎年 4月1日直後 3月31日로써 完了된 前会計年中의 財政에 関한 収支計算報告書를 政府에 事業報告를 該当 各部에 提出하여 検査를 받은後 그 写本을 大統領 및 国会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26条 本法 第7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6万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附 則

第27条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実施한다.

第28条 西紀1947年3月15日附 美軍政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組織된 朝鮮赤十字社는 廢止하고 이에 屬하였든 一切의 權利와 義務는 大韓赤十字社가 이를 繼承한다.

대한적십자사조직법시행령

1974. 7.20 대통령령 제720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무부장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처분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행한다.

제3조(업무감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의 업무 및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업무의 범위내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세칙등의 승인) 대한적십자사가 법 제6조제3호,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칙 또는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예산안등의 승인) 대한적십자사는 매 회계연

도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본자산의 취득 및 처분) 대한적십자사가 기본재산을 취득·양도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결산검사등) ①대한적십자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정에 관한 수지계산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3월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후 2월내에 보건사회부장관 및 제3조제2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월내에 검사를 필하고 그 검사결과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총재인준등) ①대한적십자사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인준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위원회의사록 2부.

2. 이력서 (명함판 사진 첨부) 2부.

3. 신원증명서 2부.

4. 취임승락서 2부.

②법 제21조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가 임원이나 집행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대한적십자사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은 시행당시의 총재는 이 영에 의하여 인준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의 세칙·직제·예산안 및 사업계획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1975. 12. 31
法律 第2,856号

韓國海外開発公社法

第1条(目的) 이 法은 韓国海外開発公社(以下 "公社"라 한다)를 設立하여 海外移住 및 海外就業 등에 関한 業務를 遂行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法人) 公社는 法人으로 한다

第3条(事務所) ①公社는 本事를 서울特別市에 둔다.

②公社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必要한 곳에 支社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

第4条(資本金) ①公社의 資本金은 10億원으로 하고 그 全額을 政府가 出資한다.

②資本金納入의 時期 및 方法은 国務会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이 定한다.

③資本金의 出資는 現金以外에 国有의 不動産 또는 事業에 必要한 動産 等으로서 現物 出資할 수 있다.

第5条(定款) ①公社의 定款에는 다음 各 号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称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本金에 関한 事項

5. 出資証券에 関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関한 事項

7. 理事会 運営에 関한 事項

8. 業務와 그 執行에 関한 事項

9. 会計에 関한 事項

10. 公告 方法에 関한 事項

11. 定款의 変更에 関한 事項

12. 其他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

②定款의 変更은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条(登記) ①公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本社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成立한다.

②公社는 登記를 必要로 하는 事項에 関하여는 그 登記後가 아니면 第3者에 対抗하지 못한다.

第7条(類似名称 使用禁止) 이 法에 依한 公社가 아닌 者는 "韓国海外開発公社" 또는 이에 類似한 名称을 使用하지 못한다.

第8条(任員) 公社에 社長 및 副社長 各1人과 理事3人 以内 및 監事1人을 둔다.

第9条(任員의 任命) ①社長은 保健社会部長官의 提請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②副社長 및 理事는 社長의 提請에 依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이 任命하고 監事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이 任命한다.

第10条(任員의 任期) ①社長·副社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②補闕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11条(任員의 職務) ①社長은 公社를 代表하며 그 業務를 統理한다.

②副社長은 社長을 補佐하며 社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業務를 分掌하며 社長·副社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指定된 理事가 職務를 代行한다.

④監事는 公社의 会計와 이에 関聯되는 業務를 監査한다.

第12条(任員의 欠格事由) 다음 各 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

2.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権되지 아니한 者

4. 禁錮以上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2年이 経過되지 아니한 者

5. 法律 또는 判決에 依하여 資格이 停止된 者.

第13条(任員의 身分) 公社의 任員은 刑法 其他 法律에 依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4条(任員의 兼職制限) 公社의 任員은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없이 다른 職務를 兼할 수 없다.

第15条(理事会) ①公社의 業務에 関한 重要 事項을 決議하게 하기 為하여 公社에 理事会를 둔다.

②理事会는 社長·副社長 및 理事로서 構成한다.

③社長은 理事会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④理事会의 議事는 構成員 3分의 2 以上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⑤議長은 議決権을 가지며 可否同数인 때에는 決定権을 가진다.

⑥監事는 理事会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16条(職員의 任免) 公社의 職員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社長이 任免한다.

第17条(事業) ①公社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為하여 다음 各 号의 事業을 行한다.

1. 海外移住 및 就業에 関한 調査研究
2. 海外移住 및 就業의 斡旋 및 相談
3. 海外移住 및 就業者의 募集送出
4. 海外移住 및 就業者의 資質向上을 위한 各種 訓練 및 教育
5. 海外移住 및 就業者의 国内財産에 対한 信託 斡旋
6. 海外移住 및 就業에 따르는 国内外 節次의 代行
7. 海外移住 및 就業에 따르는 海外旅行費의 全部 또는 一部의 補助 및 貸付
8. 海外移住者와 就業者의 現地 指導 및 定着을 위하여 必要한 福祉施設의 設置 및 運営
9. 海外移住者 또는 그 団体가 海外에서 農業, 漁業, 工業, 林業, 其他의 事業을 行하는 境遇에 그에 必要한 資金의 全部 또는 一部의 貸付

및 그 事業에 必要한 資金의 借入에 関한 債務의 保証

10. 海外移住者의 定着에 必要한 土地의 取得, 造成, 管理 및 譲渡

11. 農業移民 等 集団으로 移住하는 때에는 그 関聯되는 企業体에 対한 支援 斡旋

12. 第1号 乃至 第11号의 附帯事業 및 政府로부터의 委嘱事業

②公社는 第1項 第3号 및 第7号 乃至 第10号의 規定에 依한 事業中 海外移住에 関한 事業은 保健社会部長官, 海外就業에 関한 事業은 労動庁長의 承認을 미리 얻어야 한다.

③公社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얻어 第1項 第7号 및 第9号의 貸付를 하고자 할 때에는 該当 移住国의 法令에 依한 強制執行 等에 依하여 債権을 確保할 수 있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8条(業務의 監督等) ①保健社会部長官은 公社의 業務会計 및 財産에 関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所属 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検査하게 할 수 있다.

②保健社会部長官은 第1項의 検査結果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事実을 発見한 때에는 社長이 그 是正을 命하거나 任命権者에게 任員의 解任을 建議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이나 定款에 違反된 行為를 한 때

2.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公社의 運営에 顕著한 損失을 招来하게 한 때

第19条(承認事項) ①公社는 다음 各 号의 事項에 対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1. 事業計劃

2. 大統領令이 定하는 財産의 取得, 譲渡, 交換, 또는 担保의 提供

3. 任職員의 定員 및 報酬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節次 其他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会部令으로 定한다.

第20条(借入金) ①公社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長期借入(借款을 包含한다. 以下같다), 또는 一時 借入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一時 借入金은 当該 年度内에 償還하여야 한다. 다만, 現金의 不足으로

因하여 全額을 償還하지 못하는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다음 年度에 償還할 수 있다.

第21条(償還計劃) 公社는 每事業年度마다 長期借入金 償還計劃을 樹立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2条(補助金) 政府는 公社의 事業에 対하여 豫算의 範囲 안에서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第23条(豫算및 会計) 公社의 豫算 및 会計는 政府投資機関豫算会計法에 依한다.

第24条(損益金의 処理) ①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은 다음 各 号의 順으로 処理한다.

1. 移越損失金의 補塡
2. 資本金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分의 1 以上 積立
3. 国庫納入

②公社의 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積立金으로서 이를 補塡한다.

第25条(罰則) 第7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에 対하여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26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第1条（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条（設立準備）　①保健社会部長官은 3人 以内의 設立委員을 委嘱하여 公社의 設立에 関한 事務를 処理하게 한다.

②設立委員은 委嘱을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内에 定款을 作成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1回의 資本金納入이 끝난 때에는 遅滞없이 連名으로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社長이 任命된 때에는 遅滞없이 모든 事務를 社長에게 引継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事務引継가 끝난 때에는 解嘱된 것으로 본다.

第3条（経過措置）　①1965年 11月3日에 設立된 財団法人 韓国海外開発公社（以下"法人"이라 한다）에 属하는 財産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時期에 政府가 이 法에 依한 公社의 資本金으로 出資한 것으로 한다.

②公社設立当時의 法人에 属하는 一切의 権利와

義務는 이 法에 依한 公社가 承継한다.

③法人은 公社設立과 同時에 解散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에 民法中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関한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政府出資로 되는 法人財産의 価額決定方法과 時期,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이 法 施行当時 韓国海外開発公社가 아닌 者가 韓国海外開発公社 또는 이와 類似한 名称을 使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로 부터 6月以内에 그 名称을 変更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 8005 호 1976. 2.28

한국해외개발공사법시행령

제 1 조 (목적) 이 영은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사 또는 출장소의 설치승인)

①한국해외개발공사 (이하 " 공사 " 라 한다) 가 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의 명칭
2. 지사의 소재지
3. 설치이유
4. 설치예정년월일
5. 지사의 기구 및 정원
6. 지사의 업무내용
7.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지사의 폐쇄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사회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사의 명칭

2. 지사의 소재지

3. 폐쇄이유

4. 폐쇄예정 년월일

제 3 조 (설립등기)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사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제 4 조 (지사설치의 등기) ①공사가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사설치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본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 주일 이내에 그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한 경우의 본사 소재지에서의 지사설치등기는 공사의 설립등기와 아울러 행한다)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본사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새로이 지사를 설치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하면 된다.

제5조(이전등기) ①공사가 본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동기간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이전한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 이내에 제3조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안에서 본사 또는 지사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면 된다.

제6조(변경등기) 제3조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 이내에,

지사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출자액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사설치 등기에 있어서는 지사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본사 또는 지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등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9조(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17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부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외이주 및 취업자의 모집·송출에 따른 각종 정보 및 수속절차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2. 항공운송대리점업 및 여행알선업

3. 기타 해외인력진출과 관련된 업무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제10조(승인을 요하는 재산) 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교환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있어서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정부가 출자한 부동산

2. 각종 훈련 및 교육시설

3. 해외이주자와 취업자의 정착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복지시설

4. 기타 업무용 재산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것.

제11조(차입승인) ①공사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이유

2. 차입금 총액

3. 차입원·차입금의 이자 및 조건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기간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규칙의 작성) 공사는 다음 각호에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업무에 관한 사항

4. 해외이주 또는 취업의 알선등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결산의 승인) 공사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내에 결산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보건사회부장관을 거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법인재산의 평가방법 및 시기) ①재단법인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구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정부 출자로 되는 재산의 출자가액을 평가 결정하기 위하여 구법인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기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법인의 재산평가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구법인의 이사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에의 평가의뢰 및 재산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납입자본금) ①공사 설립시의 납입자본금은

구법인재산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 총자산액 중 부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이 납입자본금을 재무부장관과 공사의 설립위원 및 구법인의 이사장에게 확정 통보한 때에는 구법인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되고 법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한 제1회의 자본금납입이 끝난 것으로 본다.

제4조(출자증권의 발급) 공사의 설립등기후 공사의 사장은 지체없이 납입자본금에 대한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구법인의 청산) 구법인의 이사장은 공사의 설립후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구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1970.6.30 대통령령제5141호〕

개정 1974. 5. 9 대통령령제7139호

1975. 8.14 대통령령제7723호

제1조(친목단체의 범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친목단체"라 함은 단체구성원 상호간의 친목만을 목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본부등록)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대표자가 그 단체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회단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이하 "본부등록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2.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이력서(사진첨부).
3.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취임동의서.
4. 사업계획서(향후 2년간의 것).
5. 수지예산서(향후 2년간의 것).
6. 창립총회회의록.
7. 삭제 <74.5.9 대령 7139>

제 3 조 (지부등록) 법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지부의 대표자가 그 지부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부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서울특별시·부산시나 도의 교육위원회 (이하 지부등록청 "이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호적등본.

2.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이력서 (사진첨부).

3. 대표자 및 주요간부의 취임동의서.

4. 사업계획서 (향후 1 년간의 것).

5. 수지예산서 (향후 1 년간의 것)

6. 창립총회회의록.

7. 삭제 < 74.5.9 대령 7139>

8. 지부설치를 승인한 본부의 증명서.

제 4 조 (서류의 보완요구) ①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제 2 조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과 이 영에 의한 구비서류에 형식상요건의 불비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의 보완기간은 법 제 4 조제 1 항에 규

정된 기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5 조(등록증) 법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사회단체의 등록증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고 사회단체의 지부 등록증은 별지 제 4 호서식에 의한다.

제 6 조(변경등록) ①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 5 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과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등록청 또는 지부등록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는 당해 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폐기하고 다시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지부등록청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의 변경등록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사항을 본부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정기보고) 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가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정기보고는 별지 제 6 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 8 조 (해산신고) ①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의 해산신고는 별지 제 7 호서식에 의한 해산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지부등록청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지부의 해산신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부등록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등록대장) ①본부등록청과 지부등록청은 사회단체의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사회단체 또는 그 지부의 등록사항을 기재보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대장과 그 등록사항의 기재방법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 10 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의뢰) 본부등록청과 지부등록청은 법 또는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협조와 자료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1 조 (등록사무의 위임) 본부등록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안에서만 활동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부등록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 ①이 영에 의한 사회단체(본부)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수입인지로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업무가 지부등록청에 위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조의 본부등록에 있어서는 6,000원.

2. 제6조의 변경등록중 본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에 있어서는 2,000원

③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부등록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중 지부등록에 관한 변경등록 및 제1항단서의 경우의 등록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5.8.14 대령 772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5.9 대령 713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5.8.14 대령 7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기까지는 서울특별시·부산시·도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서식〕

사 회 단 체 등 록 신 청 서

1 . 명 칭

2 . 소재지

3 . 대표자

성 명

주 소

직 업

4 . 주요간부

성 명

주 소

직 업

5. 정관 또는 규약 (별첨)

6 . 조직년월일

7 . 회원의 수 본부 인 . 지부 인

8 . 활동지역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단체의 등록을 신청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표자

본부등록청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사 회 단 체 지 부 등 록 신 청 서

1. 본부의 등록번호
2. 본부의 명칭
3. 본부의 소재지
4. 본부의 대표자
5. 지부의 명칭
6. 지부의 소재지
7. 지부의 대표자
   - 성 명
   - 주 소
   - 직 업
8. 지부의 주요간부
   - 성 명
   - 주 소
   - 직 업
9. 조직년월일
10. 회원의 수 인

위와 같이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사회단체의 지부의 등록을 신청하오니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勤労基準法〔1953. 5. 10 法律第286号〕

改正 1961.12. 4 法律第 791 号
1974.12. 24 法律第 2708 号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憲法에 依拠하여 勤労条件의 基準을 定하므로써 勤労者의 基本的生活을 保障, 向上시키며 均衡있는 国民経済의 発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勤労条件의 基準) 이 法에서 定하는 勤労条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労動関係当事者는 이 基準을 理由로 勤労条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3条(勤労条件의 決定) 勤労条件은 勤労者와 使用者가 同等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第4条(勤労条件의 遵守) 勤労者와 使用者는 団体協約, 就業規則과 勤労契約을 遵守하여야 하며 各者가 誠実하게 履行할 義務가 있다.

第5条(均等処遇) 使用者는 勤労者에 対하여 男女의 差別的待遇를 하지 못하며 国籍, 信仰 또는 社会的

身分을 理由로 勤労条件에 対한 差別的処遇를 하지 못한다.

第6条(強制勤労의 禁止)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其他精神上 또는 身体의 自由를 不当하게 拘束하는 手段으로써 勤労者의 自由意思에 反하는 勤労를 強要하지 못한다.

第7条(暴行의 禁止) 使用者는 事故発生 其他 如何한 理由로도 勤労者에게 暴行, 殴打行為를 하지 못한다.

第8条(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営利로 他人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 利益을 取得하지 못한다.

第9条(公民権行事의 保障) 使用者는 勤労者가 勤労時間中에 選挙権 其他 公民権의 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하기 為하여 必要한 時間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拒否하지 못한다. 다만, 그 権利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함에 支障이 없는 限 請求한 時刻을 変更할 수 있다.

第10条(適用範囲) 이 法은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適用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使用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이나 大統領令으로써

定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1条(適用範囲) 이 法과 本法에 基하여 発하는 大統領令은 国家, 서울特別市·釜山市, 道, 市, 郡, 邑, 面 其他 이에 準할것에 対하여도 適用된다.

〈改正 74.12.24 法2708〉

第12条(報告出席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労者는 이 法의 施行에 関하여 労働庁長·労働委員会 또는 勤労監督官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遅滞없이 必要한 事項에 対하여 報告 또는 出席하여야 한다.

〈改正74.12.24 法2708〉

第13条(大統領令과 規則의 明示)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基하여 発하는 大統領令의 要旨와 就業規則을 常時 各 事業場에 掲示 또는 備置하여 勤労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1項 命令中 寄宿舎에 関한 規定과 寄宿舎規則을 寄宿舎에 掲示 또는 備置하여 寄宿하는 勤労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14条(勤労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労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不問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以下 事業이라 한다)에 賃金을 目的으로 勤労를 提供한 者를 말한다.

第 15 条 (使用者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経営担当者 其他 勤労者에 関한 事項에 対하여 事業主를 為하여 行為하는 者를 말한다.

第 16 条 (勤労의 定義) 이 法에서 勤労라 함은 精神労動과 肉体労動을 말한다.

第 17 条 (勤労契約의 定義) 이 法에서 勤労契約이라 함은 勤労者가 使用者에게 勤労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 対하여 賃金을 支給함을 目的으로 締約된 契約을 말한다.

第 18 条 (賃金의 定義) 이 法에서 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労의 対償으로 勤労者에게 賃金, 俸給 其他 如何한 名称으로든지 支給하는 一切의 金品을 말한다.

第 19 条 (平均賃金의 定義) ①이 法에서 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事由가 発生한 날 以前 3 月間에 그 勤労者에 対하여 支給된 賃金의 総額을 그 期間의 総日数로 除한 金額을 말한다. 就業後 3 月未満도 이에 準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依하여 算出된 金額이 当該 勤労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境遇에는 그 通常賃金

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第2章 勤 労 契 約

第20条(이 法 違反의 勤労契約) ①이 法에 定한 基準에 達하지 못하는 勤労条件을 定한 勤労契約은 그 部分에 限하여 無効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無効로 된 部分은 本法에 定한 基準에 依한다.

第21条(契約期間) 勤労契約은 期間의 定함이 없는 것과 一定한 事業完了에 必要한 期間을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그 期間은 1年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22条(勤労条件의 明示) 使用者는 勤労契約締約時에 勤労者에 対하여 賃金, 勤労時間 其他의 勤労条件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23条(勤労条件의 違反) ①第22条의 規定에 依하여 明示된 勤労条件이 事実과 相違가 있을 境遇에는 勤労者는 勤労条件違反에 因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또는 即時 勤労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勤労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境遇에는 労動委員会에 申請할 수 있으며 勤

労契約이 解除되었을 境遇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 変更하는 勤労者에게 帰郷旅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条(違約豫定의 禁止) 使用者는 勤労契約不履行에 対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締約하지 못한다.

第25条(前借金相殺의 禁止) 使用者는 前借金 其他 勤労할 것을 条件으로 하는 前貸債権과 賃金을 相殺하지 못한다.

第26条(強制貯金의 禁止) ①使用者는 勤労契約에 附随하여 強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管理를 規定하는 契約을 締約하지 못한다.

②使用者가 勤労者의 委託으로 勤労者의 貯蓄金을 管理하게 될 境遇에는 保管과 返還方法을 定하여 労動庁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74.12.24 法2708>

第27条(解雇等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労者에 対하여 正当한 理由없이 解雇, 休職, 停職, 転職, 減俸 其他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勤労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為한 休業期間과 其後 30日間 또는 産前産

後의 女子가 이 法에 規定된 休業期間과 其後 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4条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支給하였을 境遇 또는 天災·事変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事業継続이 不可能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 但書後段의 境遇에는 그 事由에 関하여 労動庁長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74.12.24 法2708〉

第27条의2(解雇의 豫告) ①使用者는 勤労者를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日前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한다. 30日前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 以上의 通常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事変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事業継続이 不可能하여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받은 境遇 또는 勤労者의 帰責事由로 因하여 解雇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②第1項 但書後段의 境遇에는 勤労者의 帰責事由에 関하여 労動委員会의 認定을 받아야 한다.

第28条(退職金制度) 使用者는 継続勤労年数 1年에 対하여 30日分 以上의 平均賃金을 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労者에게 支給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

하여야 한다。 다만, 勤労年数가 1年未満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9条(豫告解雇의 適用例外) 第27条의 2의 規定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勤労者에게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日傭勤労者로서 3月을 継続 勤務하지 아니한 者

2。2月以内의 期間을 定하여 使用된 者

3。月給勤労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季節的 業務에 6月以内의 期間을 定하여 使用된 者

5。修習使用中의 勤労者

第30条(金品清算) 使用者는 勤労者의 死亡 또는 退職의 境遇에 그 権利者가 清算을 要求한 때에는 14日以内에 賃金補償金 其他 一切의 金品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特別한 事情이 있을 境遇에는 当事者間의 合議에 依하여 期日을 延長할 수 있다。

第30条의 2(賃金債権優先辨済) 賃金, 退職金, 災害補償金 其他 勤労関係로 因한 債権은 使用者의 総財産에 대하여 質権·抵当権·租税·公課金을 除外하고는 다른 債権에 優先하여 辨済받을 権利가 있다。

〔本条新設 74.12.24 法2708 〕

第31条(使用証明書) ①使用者는 勤労者가 退職後라도 使用期間, 業務種類, 地位와 賃金 其他 必要한 事項에 関한 証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事実대로 記入하여 即時交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証明書에는 勤労者의 要求한 事項만을 記入하여야 한다.

③使用者는 勤労者의 就業을 故意로 妨害할 目的으로 秘密記号를 使用하거나 虚偽行為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2条(勤労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各事業場別로 勤労者名簿를 作成하고 勤労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歴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事項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記入할 事項에 変更이 있는 境遇에는 遅滞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第33条(契約書類의 保存) 使用者는 勤労者名簿와 勤労契約에 関한 重要한 書類를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第3章　賃　　金

第34条(最低賃金) ①労動庁長은 必要에 依하여 一定한 事業 또는 職業에 従事하는 勤労者를 為하여 最低賃金을 定할 수 있다. 〈改正74.12.24 法2708〉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労動庁長이 最低賃金을 定하고자 할 境遇에는 労動委員会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改正74.12.24 法 2708 〉

第35条(最低賃金適用의 例外) 最低賃金이 定해진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金額에 未達하는 賃金으로 勤労者를 使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精神 또는 身体의 障害로 勤労能力이 低位에 있는 者로서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
〈改正 74.12.24 法2708 〉

2. 勤労者의 事情으로 所定勤労時間을 完了하지 못하는 境遇

3. 修習使用中에 있는者 또는 所定勤労時間이 特히 짧은 者로서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
〈改正 74.12.24法2708 〉

第36条(賃金支払) ①賃金은 通貨로 直接勤労者에게 그 金額을 支給하여야 한다. 但 法令 또는 団体

協約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賃金의 一部를 控除하거나 또는 通貨以外의 것으로 支給할 수 있다.

②賃金은 每月 1回以上 一定한 期日을 定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支給하는 賃金, 手当 其他 이에 準하는것 또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하는 賃金에 対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7条(非常時支払) 使用者는 勤労者가 出産, 疾病, 災害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非常한 境遇의 費用에 充当하기 為하여 請求하는 境遇에는 支給期日前이라도 既往의 勤労에 対한 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38条(休業支払) 使用者의 帰責事由로 因하여 休業하는 境遇에는 使用者는 休業期間中 当該 勤労者에 対하여 平均賃金의 100分의 60以上의 手当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事業継続이 不可能하여 労動委員会의 承認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9条(都給勤労者) 使用者는 都給 其他 이에 準하는 制度로 使用하는 勤労者에 対하여는 勤労時間에 応하여 一定額의 賃金을 保障하여야 한다.

第40条(賃金台帳) 使用者는 各事業場別로 賃金台帳을 作成하고 賃金과 家族手当計算의 基礎가 되는 事項,

賃金額 其他 大統領令으로써 定하는 事項을 賃金支給時마다 記入하여야 한다.

第 41 条(賃金의 時効) 이 法 規定에 依한 賃金債権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時効로 因하여 消滅한다. 〈改正 74.12.24 法2708〉

第 4 章 勤労時間과 休息

第 42 条(勤労時間) ①勤労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1日에 8時間, 1週日에 48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当事者間의 合意에 依하여 1週日에 60時間을 限度로 勤労할 수 있다.

②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어 第1項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認可를 얻을 余暇가 없을 境遇에는 事後遅滞없이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74.12.24 法2708〉

③労動庁長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勤労時間의 延長이 不適当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그後 延長時間에 相当한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命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2708〉

第 43 条(有害危険作業) ①地下作業 其他 大統領令으

로써 定한 有害危險한 作業은 1日에 6時間 1週日에 36時間을 基準으로 한다. 다만,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1日 2時間以上, 1週日 12時間以上의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2708〉

第44条(休憩) ①使用者는 勤労時間 4時間인 境遇에는 30分以上, 8時間인 境遇에는 1時間以上의 休憩時間을 勤労時間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休憩時間은 勤労者가 自由로 利用할 수 있다.

第45条(休日) 使用者는 勤労者에 対하여 1週日에 平均 1回以上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第46条(時間外 夜間 및 休日勤労) 使用者는 延長時間勤労(第42条, 第43条의 規定에 依하여 延長된 時間의 勤労)와 夜間勤労(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労)또는 休日勤労에 対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以上을 加算하여 支給하여야 한다.

第47条(月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月에 対하여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는 勤労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限하여 積置하여 使用하거나 分割

하여 使用할 수 있다.

第47条의2 (勤労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事業으로서 公益 또는 国防上 特히 必要한 때에는 使用者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勤労時間을 第42条의 規定에 依한 週 48時間 또는 第43条의 規定에 依한 週36時間의 範囲内에서 1日 8時間 또는 6時間을 超過할 수 있으며 第44条의 規定에 依한 休憩時間을 変更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販売 및 保管業, 金融保険業
2. 映画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教育研究 및 調査事業, 広告業
3. 医療 및 衛生事業, 接客業, 焼却 및 清掃業, 理容業
4. 其他 保健社会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第48条 (年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労者에 対하여는 8日, 9割以上 出勤한 者에 対하여는 3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以上 継続 勤労한 勤労者에 対하여는 1年을 超過하는 継続勤労年数 1年에 対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總日數가 20日을 超過할 境遇에는 그 超過하는 日數에 対하여는 通常賃金을 支給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期間에 対하여는 就業規則이나 其他로 定하는 바에 依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의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甚大한 支障이 있는 境遇에는 그 時期를 變更할 수 있다.

④勤勞者가 業務上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期間과 産前産後의 女子가 第60条의 規定에 依하여 休業한 期間은 第1項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

第49条(適用의 除外) 이 章과 第5章에서 定한 勤勞時間, 休憩와 休日에 関한 規定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勤勞者에 対하여서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土地의 耕作, 開墾, 植物의 栽植栽培, 採取事業, 其他의 農林事業

2. 動物의 飼育, 水産動植物의 採捕, 養殖事業, 其他

의 畜産養蚕, 水産事業

3. 監視 또는 斷続的으로 勤労에 従事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労動庁長의 認可를 받은 者

4.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事業에 従事하는 勤労者

第5章 女子와 少年

第50条(最低年令과 就職認許証) ①13歳未満者는 勤労者로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労動庁長의 就職認許証을 所得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4.12.24 法 2708〉

②第1項의 就職認許証은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義務教育에 支障이 없는限 職種을 指定하여서만 発行할 수 있다.

第51条(使用禁止) 女子와 18歳未満者는 道徳上 또는 保健上 有害危険한 事業에 使用하지 못한다. 다만, 禁止職種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52条(年少者証明書) 使用者는 18歳未満者에 対하여는 그 年齢을 証明하는 戸籍証明書와 親権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53条(勤労契約) ①親権者 또는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労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親權者, 後見人 또는 労動庁長은 勤労契約이 未成年者에게 不利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向後 이를 解除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8 〉

第 54 条 (賃金請求) 未成年者는 独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第 55 条 (勤労時間) 13 歳以上 18 歳未満者의 勤労時間은 1日에 7 時間 1週日에 42時間을 超過하지 못한다. 다만,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1日에 2 時間以内의 限度로 延長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8 〉

第 56 条 (夜業禁止) 女子와 18 歳未満者는 下午 10 時부터 上午 6 時까지의 사이에 勤労시키지 못하며 또 休日勤務에 従事시키지 못한다. 다만, 労動庁長의 認可를 얻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4.12.24 法 2708 〉

第 57 条 (時間外勤務) 使用者는 18 歳以上의 女子에 対하여는 団体協約이 있는 境遇라도 1日에 2 時間, 1週日에 6 時間, 1年에 150時間을 超過하는 時間外의 勤労를 시키지 못한다.

第 58 条 (坑内勤労禁止) 使用者는 女子와 18 歳未満者를 坑内에서 勤労시키지 못한다.

第 59 条 (生理休暇) 使用者는 女子가 生理休暇를 請求하는 境遇에는 月 1 日의 有給生理休暇를 주어야 한다.

第 60 条 (産前後休暇) ①使用者는 姙娠中의 女子에 対하여는 産前後를 通하여 60 日의 有給保護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有給保護休暇는 産後에 30 日 以上 確保되도록 한다.

②姙娠中의 女子勤労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軽易한 勤労에 転換시켜야 하며 時間外勤労를 시키지 못한다.

第 61 条 (育児時間) 生後 1 年未満의 乳児를 가진 女子勤労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日 2 回 各各 30 分以上의 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

第 62 条 (帰郷旅費) 女子와 18 歳未満者가 解雇日로부터 14 日以内에 帰郷하는 境遇에는 使用者는 必要한 帰郷旅費를 負担하여야 한다.

다만, 勤労者의 帰責事由에 因한 解雇로서 使用者가 그 事由에 対하여 労動委員会의 認定을 받았을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63 条 (教育施設) ①常時 30 人以上의 18 歳未満者를 使用하는 者는 이에 対한 教育施設을 하여야 한다.

다만,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奨学金을 支給하고 教育施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教育施設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6章 安定과 保健

第64条(危険防止) ①使用者는 作業上 危険 또는 保健上 有害한 施設에 対하여 그 危害防止 또는 勤労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保持에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勤労者는 危険防止에 必要한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使用者가 講究할 措置의 基準과 勤労者가 遵守하여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65条(安全装置) ①危険한 作業을 必要로 하는 機械와 器具는 必要한 規格 또는 安全装置를 具備하지 아니하면 譲渡, 貸与 또는 設置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機械와 器具의 種類, 必要한 規格과 具備하여야 할 安全装置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66条(特히 危險한 作業) ①特히 危險한 作業을 必要로 하는 機械와 器具는 미리 労動庁長의 認可를 받지 아니하면 製造, 変更 또는 設置하지 못한다. 〈改正 74.12.24 法 2708〉

②第1項의 機械와 器具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機械와 器具는 認可를 받은 다음 大統領令으로써 定한 期間을 経過한 境遇에 있어서는 労動庁長이 行하는 性能検査에 合格한 것이 아니면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74.12.24法2708〉

第67条(有害物) ①黄燐성냥 其他 保健上의 有害物은 製造, 販売, 輸入 또는 販売의 目的으로 所持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有害物의 種類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68条(危險作業物의 就業制限) ①使用者는 経験이 없거나 必要한 技能이 없는 勤労者를 危險한 業務에 使用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業務範囲経験과 技能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69条(安全衛生教育) 使用者는 勤労者를 採用한 때에는 그 勤労者에 対하여 当該 業務에 関하여

必要한 安全과 保健을 為한 教育을 施行하여야 한다.

第70条(病者의 就業禁止) ①使用者는 伝染病의 疾病 精神病 또는 勤労로 因하여 病勢가 悪化할 憂慮가 있는 疾病에 걸린 者에게는 就業을 禁止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就業을 禁止하는 疾病의 種類와 程度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71条(健康診断) ①一定한 事業에 対하여는 使用者는 勤労者의 採用時와 定期로 医師에게 勤労者의 健康診断을 시켜야 한다.

②使用者가 指定한 医師의 診断을 希望하지 아니하는 勤労者는 他医師의 診断을 求하여 그 結果를 証明하는 書面을 使用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健康診断의 結果에 依하여 勤労者의 健康保持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事業의 種類와 規格 또는 定期의 健康診断의 回数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72条(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 ①一定한 事業에는 使用者는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를 두어야 한

다.

②第1項의 事業의 種類와 規格 또는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의 資格과 職分에 関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③労動庁長은 必要에 따라 使用者에 対하여 安全管理者와 保健管理者의 増員 또는 解任을 命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8〉

第73条(監督上의 行政措置) ①使用者는 常時10人以上의 勤労者를 使用하는 事業場을 設置, 移転, 変更한 境遇에는 危険防止에 関한 本法 또는 이 法에 基하여 発하는 命令에서 定하는 計劃書를 工事着手 14日前까지 労動庁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8〉

②労動庁長은 勤労者의 安全과 保健上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工事着手를 中止 또는 計劃의 変更을 命하여야 한다.

③勤労者를 就業시키는 事業의 建設物, 寄宿舍, 其他 附属建設物設置, 原料 또는 材料가 安全과 保健에 関하여 定해진 基準에 反하는 境遇에는 労動庁長은 使用者에 対하여 그 全部 또는 一部의 使用의 停止, 変更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命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境遇에는 労動庁長은 使用者에 命한 事項에 対하여 必要한 事項을 勤労者에게 命할 수 있다.

第7章 技能習得

第74条(技能習得者의 弊端除外) 使用者는 養成工, 修習 其他 名称如何를 不問하고 技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 勤労者를 酷使하거나 家事 其他 技能習得에 関係없는 業務에 従事시키지 못한다.

第75条(技能者養成) ①長期習得을 要하는 特定技能者를 勤労의 過程에서 養成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그 教習方法, 使用者資格, 契約期間, 勤労時間과 賃金에 関한 規定은 労動委員会에 諮問하며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②使用者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統領令에 依하여 勤労者를 使用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工員数, 教習方法, 契約期間, 賃金의 基準과 支給方法을 定하여 労動庁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使用者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認可에 基하여 勤労者를 使用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労動庁長에게 申告하여 技能을 習得하는 者라는 証明書의 交付를

받아 이를 事業場에 備置하여야 한다.

第76条(未成年者) 第75条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 未成年者에 対하여는 第48条第1項의 規定에 依한 年次有給休暇로서 12日을 주어야 한다.

第77条(認可取消) 第75条의 規定의 適用을 받는 勤労者를 使用하는 使用者가 그 資格을 喪失하거나 또는 認可의 条件에 違反하는 境遇에는 労動庁長은 第75条第2項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改正74.12.24 法 2708〉

第8章 災害補償

第78条(療養補償) ①勤労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必要한 療養을 行하거나 또는 必要한 療養費를 負担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業務上 疾病과 療養의 範囲는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79条(休業補償) 第78条의 規定에 依하여 療養中에 있는 勤労者에 対하여는 使用者는 勤労者의 療養中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第 80 条 (障害補償) 勤労者가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体에 障害가 있는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応하여 平均賃金에 別表에 定한 日数를 乘하여 얻은 金額의 障害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第 81 条 (休業補償 障害補償의 例外) 勤労者가 重大한 過失로 因하여 業務上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過失에 対하여 労動委員会의 認定을 받은 境遇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行하지 아니 하여도 無妨하다.

第 82 条 (遺族補償) 勤労者가 義務上 死亡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対하여 平均賃金의 千日分의 遺族補償을 行하여야 한다.

第 83 条 (葬死費) 勤労者가 業務上 死亡한 境遇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의 90 日分의 葬死費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 84 条 (一時補償) 第 78 条의 規定에 依하여 補償을 받는 勤労者가 療養開始後 2 年을 経過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平均賃金의 1,340 日分의 一時補償을 行하여 그 後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8 〉

第 85 条 (分割補償) 使用者는 支給能力있는 것을 証明하고 補償을 받을 者의 同意를 얻은 境遇에 있어서는 第 80 条 또는 第 82 条 또는 第 84 条의 規定에 依한 補償金을 1 年間에 걸쳐 分割補償할 수 있다.

第 86 条 (補償請求権) 補償을 받을 権利는 退職으로 因하여 変更되지 아니하며 譲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 87 条 (다른 損害賠償과의 関係) 補償을 받게 될 者가 同一한 事由에 対하여 民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이 法 災害補償에 相当한 金品을 받을 境遇에는 그 価額의 限度에 있어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免한다.

第 88 条 (労動庁長의 審査와 仲裁) ①業務上의 負傷, 疾病 또는 死亡의 認定, 療養의 方法, 補償金額의 決定 其他 補償実施에 関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労動庁長에게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労動庁長은 1 月以内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8 〉

③労動庁長은 必要에 依하여 職権으로써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改正 74.12.24法2708〉

④労動庁長은 審査 또는 仲裁를 為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医師에게 診断 또는 検案을 시킬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8〉

⑤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와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審査 또는 仲裁의 開始는 時効의 中断에 関하여는 이를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第89条(労動委員会의 審査와 仲裁) ①第88条第2項의 期間内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結果에 不服이 있는 者는 労動委員会의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境遇에는 労動委員会는 1月以内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第90条(民事訴訟) 이 法에 依한 災害補償에 関한 事項에 対하여 民事訴訟을 提起함에는 労動委員会의 審査 또는 仲裁를 거쳐야 한다. 다만 第89条의 期間内에 審査 또는 仲裁를 完了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1条(都給事業에 対한 例外) 事業이 数次의 都給에 依하여 行하여지는 境遇에는 災害補償에 対하여는

그 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改正 74.12.24 法2708 〉

②第1項의 境遇에 元受給人이 書面上 契約으로써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担当하게 하는 境遇에는 그 受給人도 또한 使用者로 한다. 다만, 2人以上의 下受給人에게 同一한 事業에 対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担当하게 하지 못한다. 〈改正74.12.24法2708 〉

③第2項의 境遇에 元受給人이 補償의 請求를 받은 境遇에 있어서는 補償은 担当한 下都給人에 対하여 為先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都給人이 破産의 宣告를 받거나 또는 行方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74.12.24 法 2708 〉

第92条(書類保存)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関한 重要한 書類를 2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第93条(時効) 이 法 規定에 依한 災害補償請求権은 3年間 行事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時効로 因하여 消滅한다. 〈改正74.12.24 法 2708 〉

第9章 就業規則

第94条(就業規則의 作成申告) 常時10人以上의 勤労

者를 使用하는 使用人은 다음의 事項에 関한 就業規則을 作成하여 労動庁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変更하는 境遇에 있어서 또한 같다.

1. 始業, 終業의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와 就業交替에 関한 事項
2. 賃金의 決定, 計算과 支給方法, 賃金의 磨勘支給時期와 昇給에 関한 事項
3. 家族手当의 計算과 支給方法에 関한 事項
4. 退職에 関한 事項
5. 退職金賞与와 最低賃金에 関한 事項
6. 勤労者의 食費, 作業用品等 負担에 関한 事項
7. 勤労者를 위한 教育施設에 関한 事項
8. 安全과 保健에 関한 事項
9. 業務上과 業務外의 災害扶助에 関한 事項
10. 表彰과 制裁에 関한 事項
11. 其他 当該事業의 勤労者 全体에 適用될 事項

第95条(規則의 作成変更의 節次) ①使用者는 就業規則의 作成 또는 変更에 関하여 当該 事業場에 勤労者의 過半数로 組織된 労動組合이 있는 境遇에는 그 労動組合, 勤労者의 過半数로 組織된 労動組合이 없는 境遇에는 勤労者의 過半数를 代表하는 者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94条의 規定에 依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意見을 記入한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96条(制裁規定의 制限) 就業規則에서 勤労者에 対하여 減給의 制裁를 定할 境遇에 있어서는 그 減額은 1回의 額이 平均賃金의 1日分의 半額을 超過하고 総額이 1賃金 支給期에 있어서의 賃金総額의 10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97条(団体協約遵守) ①就業規則은 法令 또는 当該事業場에 対하여 適用되는 団体協約에 反할 수 없다.

②労動庁長은 法令 또는 団体協約에 抵触되는 就業規則의 変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74.12.24 法2708>

第98条(違反効力) 就業規則에 定한 基準에 未達하는 勤労条件을 定한 勤労契約은 그 部分에 関하여는 無効로 한다. 이 境遇에 있어서 無効로 된 部分은 就業規則에 定한 規準에 依한다.

第10章　寄　宿　舍

第99条(寄宿舍生活의　保障)　①使用者는　事業의　附属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労者의　私生活의　自由를　侵犯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寄宿舍生活의　自治에　必要한　任員選挙에　干涉하지　못한다.

第100条(規則의　作成変更)　①事業의　附属寄宿舍에　勤労者를　寄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의　事項에　関하여　寄宿舍規則을　作成하여　労動庁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変更한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74.12.24　法2708〉

1. 起寢, 就寢, 外出과　外泊에　関한　事項
2. 行事에　関한　事項
3. 食事에　関한　事項
4. 安全과　保健에　関한　事項
5. 建設物과　設備의　管理에　関한　事項
6. 其他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労者　全体에　適用될　事項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則의　作成　또는　変更에　関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労者의　過半数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寄宿舍規則의 申告를 할때에 第2項의 同意를 証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④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労者는 寄宿舍規則을 遵守하여야 한다.

第101条(設備와 安全衛生) ①使用者는 事業의 附属寄宿舍에 対하여 勤労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保持에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講究하여야 할 措置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11章 勤労監督官

第102条(監督機関) ①勤労条件의 基準을 確保하기 為하여 労動庁 및 그 소속機関에 勤労監督官을 둔다. <改正74.12.24 法2708>

②勤労監督官의 資格任免과 職務配置에 関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써 定한다.

第103条(監督官의 権限) ①勤労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其他 附属建設物에 臨検하고 帳簿와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으며 또 使用者와 勤労者에 対하여 尋問할 수 있다.

②医師인 勤労監督官 또는 勤労監督官의 委嘱을 받은 医師는 就業의 禁止를 하여야 할 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労者의 検診을 行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勤労監督官 또는 그 委嘱을 받은 医師는 그 身分証明書와 労動庁長의 検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74.12.24 法2708〉

④第3項의 臨検 또는 検診指令書에는 그 時日과 場所·範囲를 明記하여야 한다.

⑤勤労監督官은 이 法 其他 労動関係法令 違反의 罪에 対하여 刑事訴訟法에 規定된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改正74.12.24 法 2708〉

⑥勤労監督官은 이 法의 安全과 保健에 関한 基準에 反하고 勤労者에게 急迫한 危険이 있는 境遇에는 第73条第2項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労動庁長의 権限을 直時 行할 수 있다.

第104条(監督官의 義務) 勤労監督官은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 厳守하여야 한다. 勤労監督官을 退官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5条(監督機関에 対한 申告) ①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基하여 発하는 大統領令에 違反

한 事実이 있는 境遇에는 勤労者는 그 事実을 労動庁長 또는 勤労監督官에게 通告할 수 있다.

〈改正74.12.24 法 2708 〉

②使用者는 第1項의 通告를 理由로 勤労者에 対하여 解雇 其他 不利한 処遇를 하지 못한다.

第106条(司法警察権行使者의 制限) 이 法 其他 労動関係法令에 依한 臨検書類의 提出, 尋問等 捜査는 検査와 勤労監督官이 専行한다.

勤労監督官의 職務에 関한 犯罪의 捜査에 限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章 罰 則

第107条 第6条, 第7条 또는 第8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50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74.12.24 法 2708 〉

第108条 勤労監督官이 이 法에 違反된 事実을 故意로 黙過한 때에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年以下의 資格停止에 処한다.

第109条 第51条, 第58条 또는 第67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第 110 条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50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 9 条, 第 26 条第 1 項, 第 27 条第 1 項, 第 2 項, 第 27 条의 2, 第 28 条, 第 35 条, 第 42 条第 1 項, 第 2 項, 第 43 条, 第 44 条, 第 50 条, 第 55 条, 第 56 条, 第 57 条, 第 60 条, 第 61 条, 第 64 条第 1 項, 第 65 条, 第 66 条, 第 68 条, 第 76 条, 第 78 条, 第 79 条, 第 80 条, 第 82 条, 第 83 条와 第 105 条第 2 項에 違反한 者

2. 第 42 条第 3 項, 第 73 条第 2 項, 第 4 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3. 第 75 条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얻은 員数, 教習方法, 契約期間, 勤労時間, 賃金의 基準과 支給方法에 違反한 者

第 110 条의 2 第 30 条·第 36 条·第 37 条·第 38 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50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本条新設 74.12.24 法 2708〕

第 111 条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250万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8〉

1. 第 5 条, 第 13 条, 第 21 条, 第 22 条, 第 24 条, 第 25 条, 第 31 条第 1 項, 第 2 項, 第 3 項, 第 32 条, 第 33 条, 第 39 条, 第 40 条, 第 42 条第 2 項但書,

第 45 条，第 46 条，第 47 条，第 48 条第 1 項，第 3 項，第 52 条，第 53 条，第 59 条，第 62 条，第 63 条，第 64 条第 2 項，第 69 条，第 70 条，第 71 条第 1 項，第 2 項，第 72 条第 1 項，第 73 条第 2 項，第 74 条，第 75 条第 3 項，第 92 条，第 94 条，第 95 条，第 96 条，第 99 条第 2 項，第 100 条，第 101 条와 第 104 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改正 74.12.24 法 2708 〉

2. 第 26 条第 2 項의 規定에 依하여 認可를 받은 保管과 返還의 方法에 違反한 者

3. 第 72 条第 3 項과 第 97 条第 2 項의 規定에 依한 命令에 違反한 者

4. 第 103 条의 規定에 依한 勤労監督官 또는 그 委嘱을 받은 医師의 臨検 또는 検診을 拒絶，妨害 또는 忌避하고 그 尋問에 対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虚偽陳述을 하며 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虚偽帳簿書類를 提出한 者

5. 第 12 条의 規定에 依한 労動庁長，労動委員会 또는 勤労監督官의 要求가 있을 境遇에 報告를 하지 않거나 虚偽의 報告를 하고 또는 出頭하지 아니하는 者 〈改正 74.12.24 法 2708 〉

第112条 이 法의 違反行為를 한 者가 当該事業의 勤労者에 関한 事項에 対하여 事業主를 為하여 行為한 代理人, 使用人 其他의 従業者인 境遇에는 事業主에 対하여도 各 이 条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事業主(事業主가 法人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営業에 関하여 成年者와 同一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境遇에 있어서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以下 本条에 있어서 같다)가 違反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한 境遇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業主가 違反의 計劃을 알고 그 防止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 違反行為를 알고 그 是正에 必要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境遇 또는 違反을 教唆한 境遇에는 事業主도 行為者로서 処罰한다.

附 則

第113条 本 法은 公布日로부터 90日後에 施行한다.

第114条 軍政法令 第121号 最高 労動時間法, 軍政法令, 過渡政府法令 第4号 未成年者 労動保護法은 廃止한다.

第115条 兵役法에 依하여 徵兵 当한 勤労者에 対하여는 그 服務期間中 本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61.12.4 法 791〉

①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本法 施行前에 第47条의 規定에 依하여 이미 積置한 月次有給休暇는 本法施行後 1年以内에 使用케하여 処理하여야 한다.

附 則〈74.12.24 法 2708〉

이 法은 1975年 1月1日부터 施行한다.

別 表

身体障害等級과 災害補償表

等 級	災害補償	等 級	災害補償
第1級	1,340日分	第8級	450日分
第2級	1,190日分	第9級	350日分
第3級	1,050日分	第10級	270日分
第4級	920日分	第11級	200日分
第5級	790日分	第12級	140日分
第6級	670日分	第13級	90日分
第7級	560日分	第14級	50日分

労動組合法〔1963. 4. 17 法律第1329号〕

改正 1963.12. 7法律第1481号
1973. 3.13법률제2610호
1974.12.24法律第2706号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거하여 勤労者의 自主的인 団結権·団体交渉権과 団体行動権을 보장하며 労動者의 勤労条件을 유지·改善함으로써 그 経済的·社会的 地位의 향상과 国民経済의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正当行為) 刑法第20条의 規定은 労動組合의 団体交渉 기타의 行為로서 第1条에 掲記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行為에 대하여 適用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暴力이나 破壞行為는 정당한 行為로 해석 되어서는 아니된다.

第3条(労動組合의 定義) 이 法에서 "労動組合"이라 함은 勤労者가 主体가 되어 自主的으로 団結하여 勤労条件의 維持·改善 기타 経済的·社会的 地位의 향상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組織하는 団体

또는 그 聯合団体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使用者 또는 항상 그의 利益을 代表하여 행동하는 者의 참가를 許容하는 경우.

2. 그 経費支出에 있어서 主로 使用者의 원조를 받은 경우.

3. 共済·修養 기타 福利事業만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4. 勤労者가 아닌 者의 加入을 許容하는 경우.

5. 組織의 既存労動組合의 正常的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

第4条(勤労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労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賃金·給料 기타 이에 準하는 収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第5条(使用者 定義) 이 法에서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事業의 経営担当者 또는 그 事業의 勤労者에 관한 事項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동하는 者를 말한다.

第6条(노사협의회) ①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상호 협조로서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노사협의회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범위안에서 생산, 교육, 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労使紛糾의 豫防등을 협의한다. <改正 74.12.24 法 2706>

〔전문개정 73.3.13 법 2610〕

③労使協議会의 運営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74.12.24 法 2706>

第 2 章 労 動 組 合

第 1 節 通 則

第7条(労動組合의 보호要件) ①이 法에 의한 労動組合이 아니면 労動争議의 申告 또는 第40条의 規定에 의한 救済申請을 할 수 없다. 그러나, 第39条第1号와 第2号의 規定에 의한 勤労者의 보호를 否認하는 趣旨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改正74.12.24 法 2706>

②이 法에 의한 労動組合이 아니면 労動組合이라는 名称을 사용할 수 없다.

第8条(労動組合의 組織과 加入의 制限) 勤労者는 自由로이 労動組合을 組織하거나 이에 加入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에 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9条(法人格의 取得) ①労動組合은 그 規約에 의하여 法人으로 할 수 있다.

②労動組合이 法人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記를 하여야 한다. <개정 73.3.13 법 2610>

③法人이 労動組合에 대하여는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中 法人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10条(租税의 免除) 労動組合에 대하여는 그 事業体를 제외하고는 租税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第11条(差別待遇의 금지) 組合員은 어떠한 경우에도 人種·宗教·性別·政党 또는 身分에 의하여 差別待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2条(政治活動의 금지) ①労動組合은 公職選挙에 있어서 特定政党을 支持하거나 特定人을 当選시키기 위한 行為를 할 수 없다.

②労動組合은 組合員으로 부터 政治資金을 徵収할 수 없다.

③労動組合基金을 政治資金에 流用할 수 없다.

第 2 節　勞動組合의　設立

第13条(設立의　申告)　①勞動組合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各号의　事項을　기재한　申告書에　規約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개도(서울특별시·부산시포함)　이상에　걸치는　노동조합은　勞動庁長에게, 그외의　노동조합은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行政官庁"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63.12.7 法 1481, 73.3.13 법 2610>

1. 名称.
2.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3. 任員의 姓名과　住所.
4. 소속된　聯合団体의　名称.
5. 傘下　勞動団体의　名称과　組合員数·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와　任員의　姓名·住所.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에　変更이　있을 때에는　変更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行政官庁에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73.3.13 법2610>

③삭제　73.3.13 법 2610 >

第14条(規約)　勞動組合은　그　規約에　다음　各号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名 称

2. 目的과 事業.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4. 組合員에 관한 事項.

5. 聯合団体인 労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団体에 관한 事項.

6. 会議에 관한 事項.

7. 代表者와 任員에 관한 事項.

8. 組合費 기타 会計에 관한 事項.

9. 規約変更에 관한 事項.

10. 解散에 관한 事項.

11. 労使協議会의 代表者에 관한 事項.

第15条(申告証) ①行政官庁은 第13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申告書를 接受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証을 交付하여야 한다.

<개정 73.3.13 법 2610>

②労動組合이 第1項의 申告証을 毁損 또는 紛失한 때에는 그 事由를 具申하여 申告証의 再交付를 申請할 수 있다.

第16条(規約의 取消·変更) 労動組合의 規約이 法

令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害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行政官庁은 労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어 그 取消 또는 変更을 命할 수 있다.

第 3 節 労動組合의 管理

第17条(備置書類) 労動組合은 組合設立日로 부터 30日이내에 다음 各号의 書類를 作成하여 그 主된 事務所에 備置하여야 한다.

1. 組合員名簿(聯合団体인 労動組合에 있어서는 構成団体의 名簿)
2. 規約.
3. 任員의 姓名·住所録.
4. 会議録.
5. 財政에 관한 帳簿와 書類.

第18条(総会의 開催) ①労動組合은 적어도 毎年 1回이상 総会를 開催하여야 한다.

②労動組合의 代表者는 総会의 議長이 된다.

第19条(総会의 議決事項) ①다음 各号의 事項은 総会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1. 規約의 制定과 変更에 관한 事項.
2. 任員의 選挙에 관한 事項.

3. 団体協約에 관한 事項.

4. 豫算·決算에 관한 事項.

5. 基金의 設置·管理 또는 処分에 관한 事項.

6. 聯合団体의 設立·加入 또는 脫退에 관한 事項.

7. 合併·分割 또는 解散에 관한 事項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신설 73.3.13 법 2610>

9. 기타 중요한 事項

②総会는 在籍組合員 過半数의 출석과 출석 組合員 過半数의 찬성로 議決한다. 그러나, 可否同数인 경우에는 議長이 決定権을 가진다.

다만, 規約의 制定 変更과 任員의 解任에 관하여 規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74.12.24 法 2706>

③規約의 制定·変更과 任員의 選挙는 組合員의 直接·無記名投票에 의하여야 한다.

④<削除 63.12.7 法 1481>

第20条(代議員会) ①労動組合은 規約으로 総会에 갈음할 代議員会를 둘 수 있다. <개정 73.3.13 법 2610>

②<삭제 73.3.13 법 2610>

③代議員은 組合員의 直接·無記名投票에 의하여

選挙되어야 한다. <改正 63.12.7 法 1481>

④代議員会를 둔 때에는 総会에 관한 規定은 代議員会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63.12.7 法 1481>

⑤<삭제 73.3.13 법 2610>

第21条(決議의 取消·変更) 行政官庁은 労動組合의 決議가 労動관계 法令에 違反되었거나 公益을 害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労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어 그 取消 또는 変更을 命할 수 있다.

第22条(組合員의 権利) 労動組合의 組合員은 균등하게 그 労動組合의 모든 문제에 参与할 権利를 가진다. 그러나, 労動組合은 그 規約으로 組合費를 納付하지 아니하는 組合員의 権利를 制限할 수 있다.

第23条(任員의 選挙) 労動組合의 任員은 그 組合員中에서 選挙되어야 한다.

第24条(組合費) 労動組合의 組合費는 毎月 그 組合員의 賃金의 100分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第25条(会計監査) ①労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会計監査員으로 하여금 적어도 6月에 1回씩 당해 労動組合의 会計監査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労動組合의 会計監査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당해 労動組合의 会計監査를 실시

할 수 있다.

第26条(臨時総会의 召集) ①労動組合의 代表者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臨時総会 또는 臨時代議員会를 召集할 수 있다.

②労動組合의 代表者는 組合員의 3分의 1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分의 1이상) 会議에 附議할 事項을 提示하고, 会議의 召集을 要求한 때에는 지체없이 臨時総会 또는 臨時代議員会를 召集하여야 한다. <개정 73.3.13 법 2610>

③行政官庁은 労動組合의 代表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会議의 召集을 故意로 忌避하거나, 이를 懈怠한 경우에는 労動委員会의 承認을 얻어 召集할 者를 指名하여 会議를 召集하게 할 수 있다.

第27条(召集의 節次) 総会 또는 代議員会는 적어도 会議開催日 15日전에 그 会議에 附議할 事項을 公告하고, 規約에 정한 方法에 의하여 召集하여야 한다. 그러나, 労動組合이 同一한 事業場 내의 勤労者로 構成된 때에는 그 規約으로 公告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第28条(表決権의 特例) 労動組合이 특정 組合員에

관하여 議決을 할 경우에는 그 組合員은 表決權이 없다.

第29条(運営状況의 公開) 労動組合의 代表者는 그 組合員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그 運営状況을 公開하여야 한다.

第30条(行政官庁의 検査등) ①行政官庁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労動組合의 経理状況을 調査하거나 기타 필요한 書類를 検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관계 公務員은 権限을 표시하는 証票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第4節 労動組合의 解散

第31条(解散事由) ①労動組合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解散한다.

1. 規約에 정한 解散事由의 발생.
2. 合併 또는 分割로 인한 消滅.
3. 組合員 또는 代議員 3分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組合員 또는 代議員 3分의 2이상의 찬성으로 행한 総会 또는 代議員会의 解散決議.
4. 第32条의 規定에 의한 行政官庁의 解散命令

②労動組合이 解散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解散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行政官庁에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第32条(解散命令등) 行政官庁은 労動組合이 労動관계 法令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害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労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어 그 解散을 命하거나 任員의 改選을 命할 수 있다.

第 3 章 団体協約

第33条(交渉権限) ①労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労動組合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는 그 労動組合 또는 組合員을 위하여 使用者나 使用者団体와 団体協約의 締結 기타의 事項에 관하여 交渉할 権限이 있다.

②<삭제 73.3.13 법 2610>

③第1項에서 "使用者団体"라 함은 労動관계에 관하여 그 構成員인 使用者에 대하여 調整 또는 規制할 수 있는 権限을 가진 使用者의 団体를 말한다.

④<삭제 73.3.13 법 2610>

⑤使用者 또는 使用者団体는 労動組合의 代表者와의

誠実한 団体協約締結을 정당한 이유없이 拒否 또는 懈怠할 수 없다.

第34条(団体協約의 作成) ①団体協約은 書面으로 작성하여 当事者雙方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団体協約의 当事者는 団体協約締結日로 부터 15日 이내에 이를 行政官庁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35条(団体協約의 有効期間) ①団体協約에는 1年을 초과하는 有効期間을 정할 수 없다.

②団体協約에 그 有効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1年을 초과하는 有効期間을 정한 때에는 그 有効期間을 1年으로 한다.

③団体協約 有効期間満了時를 前後하여 雙方이 새로운 団体協約을 締結하고자 団体交渉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団体協約이 協結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団体協約은 그 満了日로부터 3月까지 계속効力을 갖는다.

第36条(基準의 効力) ①団体協約에 정한 勤労条件 기타 勤労者의 待遇에 관한 基準에 違反하는 就業規則 또는 勤労契約의 部分은 無効로 한다.

②第1項의 경우 無効로 된 部分은 団体協約에 정한 基準에 의한다. 勤労契約에 規定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第37条(一般的拘束力) 하나의 工場·事業場 기타 職場에 常時 사용되는 同種의 勤労者의 半数이상의 勤労者가 하나의 団体協約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工場·事業場 기타 職場에 사용되는 다른 同種의 勤労者에 대하여도 당해 団体協約이 適用된다.

第38条(地域的拘束力) ①하나의 地域에 있어서 종업하는 同種의 勤労者의 3分의 2이상이 하나의 団体協約의 適用을 받게 된 때에는 行政官庁은 당해 団体協約의 当事者의 雙方 또는 一方의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権으로 労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어 당해 地域에서 종업하는 다른 同種의 勤労者와 그 使用者에 対하여도 당해 団体協約을 適用한다는 決定을 할 수 있다.

②行政官庁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第 4 章 不当労動行為

第39条(不当労動行為) 使用者는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行為(이하 "不当労動行為"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勤労者가 労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労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労動組合의 業務를 為한 정당한 行為를 한 것을 이유로 그 勤労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労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為

2. 勤労者가 어느 労動組合에 加入하지 아니할 것 또는 脫退할 것을 雇傭条件으로 하거나 特定한 労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条件으로 하는 行為. 다만, 労動組合이 당해 事業場에 종사하는 勤労者의 3分의2이상을 代表하고 있을 때에는 労動者가 그 労動組合의 組合員이 될 것을 雇傭条件으로 하는 団体協約의 締結은 例外로 한다.

3. 労動組合의 代表者 또는 労動組合으로부터 委任을 받은 者와의 団体協約締結 기타의 団体交渉을 정당한 이유없이 拒否하거나 懈怠하는 行為.

4. 勤労者가 労動組合을 組織 또는 運営하는 것을 支配하거나 이에 介入하는 行為와 労動組合의 運営費를 원조하는 行為.

다만, 勤労者가 勤労時間中에 使用者와 協議 또는

交涉하는 것을 使用者가 許容함은 無妨하며, 또한 勤勞者의 厚生資金 또는 経済上의 不幸 기타의 災厄의 防止와 救済등을 為한 基金의 寄附와 最小限의 規模의 勞動組合事務所의 제공은 例外로 한다.

5. 勤勞者가 정당한 団体行動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会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条의 規定에 違反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証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庁에 証拠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行為.

第40条(救済申請) 使用者의 不当勞動行為로 인하여 그 権利를 侵害당한 勤勞者 또는 勞動組合은 勞動委員会에 그 救済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済의 申請은 不当勞動行為가 있은 날(계속하는 行為는 그 終了日)로부터 3月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改正 63.12.7 法 1481>

第41条(調査등) ①勞動委員会가 第40条의 規定에 의한 救済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当事者의 審問을 하여야 한다.

②勞動委員会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할 때

에는 관계 当事者와 申請에 의하거나 그 職権으로 証人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事項을 질문할 수있다.

③労動委員会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当事者에 대하여 證拠의 제출과 證人에 대한 反対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労動委員会의 조사와 審問에 관한 節次는 中央労動委員会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2条(救済命令) ①労動委員会가 第41条의 規定에 의한 審問을 終了하고 不当労動行為가 成立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使用者에게 救済命令을 발하여야 하며, 不当労動行為가 成立되지 아니한다고 判定한 때에는 그 救済申請을 棄却하는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第項의 規定에 의한 判定 및 命令 또는 決定은 書面으로 하되 이를 당해 使用者와 申請人에게 각각 交付하여야 한다.

③관계 当事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을 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43条(救済命令의 확정) ①第42条의 規定에 의한 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의 救済命令 또는 棄却決定에 不服이 있는 관계 当事者는 그 命令書 또는 決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中央労動委員会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42条의 規定에 의한 中央労動委員会의 救済命令이나 棄却決定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労動委員会의 再審判定에 대하여 관계 当事者는 그 命令書·決定書 또는 再審判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行政訴訟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訴를 提起할 수 있다. <改正63.12.7 法 1481>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提起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救済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확정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当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44条(救済命令등의 効力) 労動委員会의 救済命令·棄却決定 또는 再審判定은 前条의 規定에 의한 中央労動委員会에의 再審申請이나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効力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第 5 章 補 則

第45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

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3.13 법 2610>

第 6 章 罰 則

第46条 (罰則) 第42条의 規定에 의한 救濟命令에 違反하거나 第43条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6>

第46条의2 (同前) 第43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締結된 団体協約 또는 第38条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本条新設 74.12.24 法 2706]

第47条 (同前) 第30条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検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月이하의 懲役 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6>

第48条 (同前) 第7条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6>

第49条 (同前) 労動組合이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代表者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6>

1. 労動組合이 이 法에 의한 行政官庁의 命令에 違反한 때.

2. 第13条第2項·第31条第2項 또는 第34条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거나 虛偽申告를 한 때.

3. 第17条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第50条(両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従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条·第46条의2 또는 第47条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条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 法人이 아닌 労動組合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廃止法律) 「勤労者의 団体活動에 関한 臨時措置

法」은 이 法施行과 同時에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 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労動組合과 団体協約은 이 法에 의한 労動組合과 団体協約으로 본다.

④(同 前) 이 法 施行당시 第40条第2項의 期間이 경과되지 아니한 不当労動行為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처리한다.

附 則 <63.12.7 法 148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있는 不当労動行為에 대한 救済申請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73.3.13 法 26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附 則 <74.12.24 法 2706>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労動爭議調整法〔1963. 4.17 法律第1327号〕

改正 1963.12. 7 法律第1483号
1963.12.16 法律第1606号
1973. 3.13 法律第2608号
1974.12.24 法律第2707号

第1章 総 則

第1条(目的) 이 法은 労働関係의 公正한 調整을 도모하고 労動爭議를 예방 또는 해결함으로써 産業平和의 유지와 国民経済発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労動爭議의 定義) 이 法에서 労動爭議라 함은 賃金·勤労時間·厚生·解雇 기타 待遇 등 勤労条件에 관한 労動関係当事者의 主張의 不一致로 인한 紛爭状態를 말한다.

第3条(爭議行為의 定義) 이 法에서 爭議行為라 함은 同盟罷業·怠業·職場閉鎖 기타 労動関係当事者가 그 主張을 貫徹할 目的으로 行하는 行為와 이에 대항하는 行為로서 業務의 정상한 運営을 阻害하는 것을 말한다.

第4条(公益事業의 定義) ①이 法에서 公益事業이라 함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事業으로서 国民의 日常生活에 必要不可欠한 것을 말한다.

1. 運輸·通信·專売 및 造幣事業
2. 水道·電気·瓦斯 및 国家에 그 損益이 직접 귀속하는 油類事業
3. 公衆衛生 및 医療事業
4. 証券去来所 및 銀行事業

②国家·地方自治団体 또는 国営企業体가 행하는 事業 또는 国民経済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또는 그 事業体에 대하여는 第1項의 公益事業에 準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개정 73. 3.13 법 2608>

③<削除 73. 3.13 法 2608>

第5条(当事者의 責務) 労動関係当事者는 団体協約에 労使協議会의 設置 기타 労動関係의 適正化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하여야 하며, 労動争議가 발생한 때에는 自主的으로 해결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6条(政府의 責務) 政府는 労動関係当事者間에 労動関係에 관한 主張이 一致하지 아니할 경우에 労

勤関係当事者가 이를 自主的으로 調整할 수 있도록 助力하여 労勤争議의 방지에 努力하여야 한다.

第7条(迅速한 処理) 이 法에 의하여 労勤関係의 調整을 할 경우에는 労勤関係当事者와 労勤委員会 기타의 関係機関은 事件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8条(損害賠償請求에 대한 制限) 使用者는 이 法에 의한 争議行為로 인하여 損害를 받은 경우에 労勤組合 또는 勤労者에 대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第9条(勤労者의 拘束制限) 勤労者는 争議期間中에는 現行犯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自由를 拘束당하지 아니한다.

第10条(特別調整委員) ①中央労勤委員会와 地方労勤委員会가 행하는 労勤争議의 調整 또는 仲裁에 参与하게 하기 위하여 中央労勤委員会와 地方労勤委員会에 각각 特別調整委員을 둘 수 있다.

<改正 73. 3.13 法 2608>

②特別調整委員은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勤労者를 代表하는 者와 公益을 代表하는 者로 하고 그 数는 각각 同数로 한다.

③使用者를 代表하는 特別調整委員은 使用者団体가 추천한 者 중에서, 勤労者를 代表하는 特別調整委員은 労勤組合이 추천한 者중에서, 公益을 代表하는 者는 당해 労勤委員会의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과 勤労者를 代表하는 委員의 同意를 얻은 者 중에서, 中央労勤委員会의 特別調整委員은 労勤庁長이, 地方労勤委員会의 特別調整委員은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각각 委嘱한다. <改正 74.12.24 法 2707 >

第11条(公益事業의 優先的取扱) 公益事業에 관한 争議의 調整은 優先的으로 取扱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第2章 争議行為의 制限·禁止

第12条(争議行為의 制限) ①労勤組合의 争議行為는 그 組合員이 직접 無記名投票에 의한 過半数의 찬성으로 決定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削除 73. 3.13 法 2608 >

第13条(暴力行為등의 금지) ①争議行為는 暴力 또는 破壞行為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工場, 事業場 기타 職場에 대한 安全保護施設의 正常한 維持 運營을 停止, 廢止 또는 妨害하는 行為는 爭議行為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③勞動庁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行政官庁"이라 한다)는 爭議行為가 前項의 行為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勞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어 그 行為의 中止를 命하여야 한다. 다만, 事態가 急迫하여 勞動委員会의 議決을 얻을 時間的 餘裕가 없을 때에는 그 議決을 얻지아니하고 즉시 그 行為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63.12. 7 法 1483〉

④第3項但書의 경우에는 당해 行政官庁은 지체없이 勞動委員会의 事後承認을 얻어야 하며, 그 承認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命令은 그때부터 效力을 喪失한다. 〈新設 63.12. 7 法 1483〉

第14条(冷却期間) 爭議行為는 第16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신고가 行政官庁에 접수된 날로부터 一般事業에 있어서는 20日,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改正 63.12. 7 法1483, 73. 3.13 法 2608〉

第15条(使用者의 採用制限) 使用者는 爭議期間中

爭議에 관계없는 者를 採用 또는 代替할 수 없다.

第16条(労動爭議申告) 労動爭議가 발생한 때에는 関係当事者는 각각 지체없이 이를 行政官庁과 労動委員会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3.12.7 法 1483>

②行政官庁은 第1項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当事者 要件, 団体交渉経緯, 爭議提起節次 等의 適法性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爭議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改正 73. 3.13 法 2608>

③<削除 73. 3.13 法 2608>

④<削除 73. 3.13 法 2608>

第17条(職場閉鎖의 申告) 使用者가 職場閉鎖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官庁과 労動委員会에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63.12.7 法 1483>

第3章 斡 旋

第18条(行政官庁의 斡旋) ①行政官庁은 第16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

이 所屬公務員中에서 斡旋公務員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斡旋公務員은 關係 当事者間의 紛争의 解決을 斡旋하고 그 雙方의 주장의 요점을 確認하여 事件이 解決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9条(行政官庁의 調査) ①行政官庁은 關係 当事者間의 紛争의 解決을 斡旋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斡旋公務員으로 하여금 關係 当事者 또는 参考人에 대하여 出席陳述을 要求하게 하거나 關係書類를 열람하게 하거나, 關係事業場에 出入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斡旋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조사할 때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증표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 3.13 법 2608〕

第20条(斡旋期間) 行政官庁은 第16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날로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내에, 公益事業에 있어서는 15일내에, 斡旋으로 紛争이 解決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事件에 關한 서류에 알선 경위와 意見을 기재한 書類를 添附하여 労動委員会에 移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 3.13 법 2608〕

第21条(알선의 効力) ①알선이 成立한 때에는 斡旋公務員은 斡旋書를 作成하여 関係当事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改正 73. 3.13 法2608>

②斡旋書의 内容은 団体協約과 同一한 効力을 가진다.

第4章 調停

第22条(調停) 労動委員会는 第20条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의 이송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労動争議의 調停에 着手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 3.13 법 2608]

第23条(調停委員会의 構成) ①労動委員会는 労動争議의 調停을 하게 하기 위하여 労動委員会에 調停委員会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会는 調停委員 3人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委員은 당해 労動委員会의 委員이나 特別調停委員중에서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 勤労者를 代表하는 者 및 公益을 代表하는 者 各 1人을 그 労動委員会의 委員長이 指名한다.

第24条(調停委員会의 委員長) ①調停委員会에 委員長을 둔다.

②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調停委員이 된다.

第25条(会議) ①調停委員会의 委員長은 調整委員会의 会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調停委員会는 構成員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출석위원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表決権을 가지며, 可否同数인 때에는 決定権을 가진다.

第26条(意見聴取) 調停委員会는 期日을 정하여 関係当事者를 調停委員会에 출석하게하여 그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27条(出席禁止) 調停委員会의 委員長은 関係当事者와 参考人 이외의 者의 会議出席을 금하며, 그 会議의 공정한 進行을 방해하는 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28条(調停案의 작성) ①調停委員会는 調停案을 作成하여 이를 関係当事者에게 제시하고 그 受諾을 勧告하는 同時에 그 調停案에 이유를 붙여 公表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新聞 또는 放送에 依한 協力을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関係当事者의 雙方에 의하여 受諾된 후 그 해석 또는 履行方法에 관하여 関係当事者間에 意見의 不一致가 생긴 때에는 関係当事者는 당해 調停委員会에 그 해석 또는

履行方法에 관한 明確한 見解의 제시를 要請하여야 한다.

③調停委員会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日 以內에 明確한 見解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29条(調停의 効力) ①第28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停案이 関係当事者에 의하여 受諾된 때에는 調停委員全員은 調停書를 작성하고 関係当事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調停書의 內容은 団体協約과 同一한 効力을 가진다.

③第28条第3項의 規定에 의해 調停委員会가 제시한 해석 또는 履行方法에 관한 見解는 仲裁裁定과 同一한 効力을 가진다.

第5章 仲 裁

第30条(仲裁의 開始) 労動委員会는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仲裁를 행한다.

1. 関係当事者의 雙方이 함께 仲裁의 申請을 한 때
2. 関係当事者의 一方이 団体協約에 의하여 仲裁申請을 한 때

3. 公益事業에 있어서 行政官庁의 요구에 의하거나 労動委員会의 職権으로 仲裁에 廻付한다는 決定을 한 때

第31条(仲裁時의 爭議行為의 금지) 労動爭議가 仲裁에 회부된 때에는 第14条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날로부터 20日間은 爭議行為를 할 수 없다.

<개정 73. 3.13 법 2608>

第32条(仲裁委員会의 構成) ①労動委員会는 労動爭議의 仲裁 또는 再審을 하게 하기 위하여 仲裁委員会를 둔다. 〔全文改正 63.12. 7 法148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仲裁委員会는 仲裁委員 3人으로 構成한다.

③第2項의 仲裁委員은 당해 労動委員会의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과 公益을 代表하는 特別調整委員中에서 그 労動委員会의 委員長이 指名한다.

<改正 63.12. 7 法1483>

④第3項의 경우에 당해 労動委員会에 特別調整委員을 두지 아니한 때에는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으로 갈음한다.

第33条(仲裁委員会의 委員長) ①仲裁委員会에 委員長을 둔다.

②委員長은 公益을 代表하는 労動委員会의 委員인 仲裁委員中에서 互選한다.

第34条(会議) ①仲裁委員会의 委員長은 仲裁委員会의 会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仲裁委員会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数의 賛成으로 議決한다.

③議長은 表決権을 가지며, 可否同数인 때에는 決定権을 가진다.

第35条(意見陳述) 関係当事者가 指名한 労動委員会의 使用者를 代表하는 委員 또는 勤労者를 代表하는 委員이나 特別調整委員은 仲裁委員会의 同意를 얻어 그 会議에 출석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6条(출석금지) 仲裁委員会의 委員長은 関係当事者와 参考人이외의 者의 会議出席을 금하며, 그 会議의 公正한 進行을 방해하는 者의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37条(仲裁裁定) 仲裁裁定은 書面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書面에는 効力発生 期日을 明示하여야 한다.

第38条(仲裁裁定의 確定) ①関係当事者는 第37条의 規定에 의한 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의

仲裁裁定이 違法이거나 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仲裁裁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中央勞動委員会에 그 再審을 申請할 수 있다.

②関係当事者는 第37条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会의 仲裁裁定이나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央勞動委員会의 再審決定이 違法이거나 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行政訴訟法 第5条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仲裁裁定書 또는 再審決定書의 送達을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行政訴訟을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期間內에 再審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行政訴訟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確定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裁裁定이나 再審決定이 確定된 때에는 관계 当事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第39条(仲裁裁定의 効力) ①勞動委員会의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은 第38条의 規定에 의한 中央勞動委員会에의 再審申請 또는 行政訴訟의 제기에 의하여 그 効力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前条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된 仲裁裁定 또는 再審決定의 內容은 団体協約과 同一한 効力을 가진다.

第6章 緊急調整

第40条(緊急調整의 決定) ①労動庁長은 争議行為가 公益事業에 관한 것이거나 그 規模가 크거나 그 性質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国民経済를 害하거나 国民의 日常生活을 危殆롭게 할 危険이 現存하는 때에는 緊急調整의 決定을 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 2707>

②保健社会部長官은 緊急調整의 決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中央労動委員会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③保健社会部長官은 第1項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調整을 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公表함과 同時에 中央労動委員会와 関係当事者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第41条(緊急調整時의 争議行為의 中止) 関係当事者는 第40条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緊急調整의 決定이 公表된 때에는 즉시 争議行為를 中止하여야 하며, 公表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争議行為를 再開할 수 없다.

第42条(中央労動委員会의 調整) 中央労動委員会는 第40条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調整을 開始하여야 한다.

第43条(中央労動委員会의 仲裁廻付決定權) ①中央労動委員会는 第42条의 規定에 의한 調整이 成立될 可望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事件을 仲裁에 廻付할 것인가의 여부를 決定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은 第40条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44条(中央労動委員会의 仲裁) 中央労動委員会는 당해 関係当事者의 雙方이나 一方으로부터 仲裁申請이 있거나 또는 第43条의 規定에 의한 仲裁廻付의 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仲裁를 행하여야 한다.

第7章 補 則

第45条(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73. 3.13 法 2608>

第 8 章　罰　　則

第 46 条 (罰則)　第 41 条의 規定에 違反하여 爭議行為를 中止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30 日 以內에 爭議行為를 한 때에는 그 違反行為의 主謀者는 2 年 以下의 懲役 또는 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7〉

第 46 条의 2 (同前)　第 38 条第 4 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 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本条新設 74.12.24 法 2707〕

第 46 条의 3 (同前)　第 21 条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斡旋書의 內容, 第 29 条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書의 內容 또는 第 37 条의 規定에 의한 仲裁裁定書의 內容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는 500 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本条新設 74.12.24 法 2707〕

第 47 条 (同前)　第 12 条・第 13 条第 2 項・第 14 条・第 15 条 또는 第 31 条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 13 条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1 年이하의 懲役 또는 50 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 2707〉

第 48 条 (同前)　爭議当事者가 第 16 条 또는 第 17 条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한 때에는 6月 이하의 懲役 또는 20萬원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改正 74.12.24 法2707>

第49条(両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従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条 내지 第48条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条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法人이 아닌 労動組合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行政官庁과 労動委員会에 係属中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処理한다.

③(適用排除) 이 法에 의한 争議行為에 관하여는 軍事革命委員会布告 第1号第5項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　則 〈63.12. 7 法 148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3.12.16 法 160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73. 3.13 法 2608〉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74.12.24 法 2707〉

이 法은 197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労動委員會法〔1963. 4. 17 法律第1328号〕

改正 1963.12. 7 法律第1482号
1963.12.16 法律第1605号
1973. 3.13 法律第2609号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労動行政의 民主化와 労使관계의 공정한 調節을 기하기 위하여 労動委員会를 設置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秘密厳守의 義務) 労動委員会의 委員이나 職員 또는 그 委員이나 職員이었던 者는 그 職務에 관하여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條(労動委員会의 区分등) ①労動委員会는 中央労動委員会·地方労動委員会와 特別労動委員会로 한다.

②中央労動委員会는 労動庁에, 地方労動委員会는 서울特別市·釜山市와 道에 각각 設置한다. <改正 63. 12.7 法1482>

③特別労動委員会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事項을 管掌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特定事項을 管掌하는 主務部에 設置한다.

第4條(労動委員会의 管掌) ①中央労動委員会는 2이상의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에 걸친 事件 및 특히 全国的으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事件을 管掌한다.

②地方労動委員会는 당해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道의 行政区域에서 발생한 事件을 管掌한다.

③特別労動委員会는 그 設置目的이 된 特定事項에 관한 事件을 管掌한다.

第5條(労動委員会의 管理) 中央労動委員会는 労動庁長이, 地方労動委員会는 당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特別労動委員会는 당해 主務部長官이 管理한다. <改正 63.12.7 法 1482>

第2章 組 織

第6條(労動委員会의 構成등) ①労動委員会는 勤労者를 代表하는 者(이하 "勤労者委員"이라 한다)와 使用者를 代表하는 者(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 각 3人과 公益을 代表하는 者(이하 "公益委員"이라 한다) 3人 내지 5人으로 構成한다.

②勤労者委員은 労動組合에서, 使用者委員은 使用者団体에서 추천한 者중에서, 中央労動委員会의 委員은 大統領이, 特別労動委員会의 委員은 당해 主務部長官이,

地方労動委員会의 委員은 당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각각 委嘱한다. <改正 63.12.16 法 1605>

③公益委員으로서 中央労動委員会의 委員은 大統領이, 特別労動委員会의 委員은 당해 主務部長官이, 地方労動委員会의 委員은 당해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가 委嘱한다. <改正 63.12.16 法 1605>

④公益委員은 中立性을 保持하여야 하며 그 資格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改正 73.3.13 법 2609>

第7條(委員의 任期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改正 73.3.13 법 2609>

②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③委員은 그 任期가 満了된 경우에도 後任者가 委嘱될 때까지 계속 그 職務를 執行한다.

④委員의 処理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改正 63.12.7 法 1482, 73.3.13 법 2609>

第7條의 2(常任委員) ①中央労動委員会에는 2人의 常任委員을 地方労動委員会에는 2人이내의 常任委員을 둔다.

②常任委員은 労動庁長의 추천에 의해 保健社会部長

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③〈削除 73.3.13 법 2609〉

④常任委員은 政党에 加入하거나 政治에 관여할 수 없다. 〔本條新設 63.12.7 法 1482〕

第7條의3 (任用資格) 常任委員은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労動에 관한 知識과 経験이 있는 者를 任命한다.

①中央労動委員会 常任委員.

1. 1級상당의 公務員으로 1年이상 在職한 者.
2. 2級상당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在職한 者.
3. 判事·検事·軍法務官·辨護士의 職에 6年이상 在職한 者.
4. 公認된 大学에서 副教授이상으로 3年이상 在職한 者.
5. 労動関係에 多年間 종사한 者로서 保健社会部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한 者.

②地方労動委員会 常任委員.

1. 2級상당의 公務員으로 1年이상 在職한 者.
2. 3級甲類 상당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在職한 者.
3. 判事·検事·軍法務官·辨護士의 職에 4年이상

在職한 者.

4. 公認된 大学에서 副教授이상으로 2年이상 在職한 者.

5. 労動関係에 多年間 종사한 者로서 保健社会部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한 者. <新設 63.12.7 法 1482>

第8條(委員長과 副委員長) ①労動委員会에 委員長과 副委員長 각 1人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노동청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장관이,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제청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73.3.13 법 2609>

第9條(職務) ①委員長은 会務를 統理하며 당해 労動委員会를 代表한다.

②副委員長은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 3 章　　会　　議

第 10 條 (会議의　召集)　①委員長은　労動委員会의　会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②委員長은　委員過半数가　会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 11 條 (議決)　①労動委員会는　構成員過半数의　출석과　출석委員　過半数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②議長은　表決権을　가지며, 可否同数인　경우에는　決定権을　가진다.

③第 20 條에　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労動委員会에서　議決을　할　때에는　勤労者委員과　使用者委員　각 1 人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勤労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委員長으로부터　2 回이상의　출석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第 12 條 (会議의　公開)　労動委員会의　会議는　公開한다.　그러나　委員会의　決議에　의하여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 13 條 (会議의　秩序維持)　委員長은　労動委員会의　会議의　공정한　進行을　방해하거나　秩序를　紊乱하게

하는 者에 대하여는 退場을 命할 수 있다.

第14條(事務局) ①労動委員会에 事務局을 둔다.

②事務局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定한다. <개정 73.3.13 법 2609>

第4章 權 限

第15條(労動委員会의 權限) ①労動委員会는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을 独立하여 행한다.

②労動委員会는 勤労條件의 改善에 관하여 관계 行政官庁에 建議할 수 있다.

第16條(委員会의 調査權등) ①労動委員会는 그 事務執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使用者나 그 団体 또는 労動組合 기타 関係人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委員이나 職員으로 하여금 관계工場·事業場 기타 職場의 業務状況 또는 書類기타 物件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하는 경우에는 그 委員 또는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労動委員会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労動委員会에 출석한 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費用을 辨償한다. <改正 73.3.13 法 2609>

第17條(中央労動委員会의 指示権등) 中央労動委員会는 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에 대하여 労動委員会의 事務処理에 관한 基本方針 및 法令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第18條(規則制定権) 中央労動委員会는 中央労動委員会·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의 運営과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19條(中央労動委員会의 再審権) ①中央労動委員会는 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의 処分을 再審하여 이를 承認·取消 또는 変更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再審은 관계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地方労動委員会 또는 特別労動委員会가 행한 処分이 当事者에게 送達된 날로부터 10日이내에 当事者의 双方 또는 一方의 申請에 의하여 행한다.

③中央労動委員会는 그 処分에 관하여 当事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20條(公益委員만이 행하는 權限) ①勤労基準法 第8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에 관한 議決, 労動組合法 第16條·第21條 및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과 同法 第42條 및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判定·命令 또는 決定이나 再審判定에 관한 議決과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法令의 解釈을 할 때에는 公益委員만이 참여한다. <改正 63.12.7 法1482, 73.3.13 법2609>

②前項의 경우에 그 議決에 앞서 행하는 審問에는 勤労者委員 또는 使用者委員이 관여할 수 있다.

第5章 補 則

第21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73.3.13 법2609>

第6章 罰 則

第22條(罰則) 第2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6月以下의 懲役 또는 2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第23條(同前)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보고를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書類를 제출하거나, 관계委員 또는 職員의 調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는 3月이하의 懲役 또는 萬원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第24條(兩罰規定) ①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前條의 違反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罰金刑을 科한다.

②法人이 아닌 勞動組合에 관하여도 前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勞動委員会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勞動委員会로 본다.

附 則 <63.12.7 法 1482>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63.12.16 法 1605>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부 칙 <73.3.13 법 260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각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노동위원회법시행령 〔1969. 12.8 대통령령제 4434호〕

개정 1973. 6.30 대통령령제 6745호

제 1 조 (명칭관용) 노동위원회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에는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명을 관용한다.

제 2 조 (특별노동위원회) 법 제 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와 그 명칭·위치 및 소관사항과 그 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조 (노동위원의 위촉)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사회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2이상의 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에 걸쳐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청한다.

제 4 조 (동전) ①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 위원과 사

용자 위원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전항의 경우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안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을 때에는 당해 행정구역안의 노동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 위원을 위촉한다.

제5조(동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단체의 범위와 위원추천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익위원의 위촉 기준) 공익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4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4년이상 종사한 자.

다. 2급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가. 대학에서 경제학 또는 법률학의 부교수이상으로 2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

다. 3류갑류이상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서 4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이 아닌 일반위원중 공무원인 자에게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출석한 날에 한하여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수당은 출석한 일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한 1급 공무원의 보수(본봉과 수당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노동위원회에 있어서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2급갑류 공무원의 보수와 각각 동일한 것으로 한다.

제8조(의견진술) 노동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이나 도지사는 노동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행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한 실비변상은 당해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국고보조) 지방노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가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6.30 대령 674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 표〕

중앙노동위원회출석자에대한여비지급표

철도임	선임	일당	숙박료	식탁료	비고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1 여비정액표에 의한 제4호 을류 해당차에 대한 금액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1969. 6. 12 보건사회부령제276호한글화〕

개정 1970.8.28 보건사회부령제355호
1974.5.31 보건사회부령제441호

제1조(노동조합등의 범위) 노동위원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한다.
2. 시행령 제4조제1항에 규정된 노동조합은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사용자단체는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를 대상으로 설립된 사용자단체로 하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규정된 노동단체는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단체로 한다.

〔전문개정 74.5.31 보사령 441〕

제2조(추천방법)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근로자위원은 다년간 노동운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2. 사용자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조예가 깊은 당해 사용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주나 그 사업의 경영 담당자중에서 정수의 배수를 추천한다.

제 3 조 (제출서류)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그 이력서와 기타 노동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청장 또는 당해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2 통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상임위원의 추천) 노동청장은 노동위원회법 제 7 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 중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4.5.31 보사령 44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0.8.28 보사령 35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4.5.31 보사령 4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노동위원회 근로자/사용자 위원추천서

노동위원회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자 위원 후보를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성 명	연 령	순 위	약 력	비 고	추천자의 의 견

년 월 일

추천인

노동단체명

대표자의성명 ㊞

사용자단체명

대표자의성명 ㊞

노동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귀하

도지사

職業安定法〔1967. 3.30 法律第1952号〕

改正 1974.12.24 法律第2709号

第1条(目的) 이 法은 勤労者의 能力에 適応한 職業에 就業할 機会를 附与함으로써 工業 其他産業에 필요한 労動力을 充足시켜 職業의 安定을 도모하고 国民経済発展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政府의 職業安定業務) 政府는 前条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号에 게기하는 職業安定業務를 행한다. <改正74.12.24 法2709>

1. 求職者에 대한 国内 및 国外의 職業紹介와 職業指導 및 職業補導에 관한 事項.
2. 労動力의 需要供給에 필요한 調査研究計劃 및 技能者 登録과 失業対策에 관한 事項.
3. 勤労者의 募集·紹介와 職業補導事業에 대한 指導·監督에 관한 事項.
4. 職業適性検査에 관한 事項.
5. 失業保険事業과 이에 관련된 事項.

第3条(定義) ①이 法에서 "勤労者 供給事業"이라 함은 労動組合의 供給契約에 의하여 勤労者를 他人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이 法에서 "技能者"라 함은 大統領令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技術을 가지는 者를 말한다.

第4条(業務担当機関) 第2条의 規定에 의한 職業安定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는 地方労動行政機関이 이를 행한다.

〔全文改正 74.12.24 法 2709〕

第5条(職業安定委員会) ①地方労動行政機関의 職業安定業務 기타 職業安定에 관한 重要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労動庁과 서울特別市·釜山市 및 道에 職業安定委員会를 둔다. <改正 74.12.24 法 2709>

②職業安定委員会의 名称·位置·組織과 運営을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条(失業対策委員会) ①失業対策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労動庁所属下에 失業対策委員会를 둔다.

②国家는 失業対策事業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失業対策委員会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③失業対策委員会의 組織과 運営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条(政府機関間의 協力) ①保健社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各中央行政機関 또는 地方

自治団体의 長에 대하여 그 所管工事의 開始·정지 또는 勤労者의 雇傭等에 관하여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②各中央行政機関 또는 地方自治団体의 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要請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8条(市長·郡守의協力) 市長(区庁長 包含)郡守는 地方労動行政機関의 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無料로 다음의 業務를 行하여야 한다. <改正74.12.24 法 2709>

1. 求人者 또는 求職者의 身元証明 기타 照会에 관한 回報業務

2. 求人 求職에 관한 中継 및 公報業務.

第9条(無料職業紹介事業) ①地方自治団体는 労動庁長의 承認을, 非営利法人은 労動庁長의 許可를 받아 無料職業紹介事業을 행할 수 있다.

②各級学校의 長은 前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在学生 또는 卒業生을 위하여 無料로 職業紹介를 할 수 있다.

③労動庁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職業安定委員会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10条(有料職業紹介) ①有料職業紹介를 하고자 하는 者는 労動庁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범위 및 기타 필요한 事項에 관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有料職業紹介를 하는 者는 労動庁長이 決定한 料金以外의 金品을 徵収할 수 없다.

④労動庁長은 前項의 規定에 의한 料金을 決定하고자 할 때에는 職業安定委員会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11条(兼業禁止) 料食業·飮食業·旅舘業·古物商·典当舖·貸金業·換金業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営業을 하는 者는 職業紹介事業을 행할 수 없다.

第12条(新聞·広告等의 方法에 의한 募集) 勤労者를 雇傭하고자 하는 者는 新聞·雜誌 기타 刊行物의 広告 또는 文書의 頒布等의 方法에 의하여 自由로히 勤労者를 募集할 수 있다.

第13条(直接募集) 勤労者를 雇傭하고자하는 者가 新聞広告等 公開的인 方法以外의 方法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数以上의 勤労者를 通勤할 수 없는 地域에서 直接募集하거나 被用者로 하여금 募集하게

할 때에는 労動庁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通勤할 수 있는 地域에서 勤労者를 募集할 때에는 地方労動行政機関에 그 内容을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9 〉

第14条(委託募集) 勤労者를 雇傭하고자 하는 者가 그의 被用者以外의 者에게 勤労者의 募集을 委託할 때에는 労動庁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第15条(国外 就業者의 募集 및 送出) ①国外에서 就業할 勤労者를 募集하는 者 또는 送出하고자 하는 使用者는 労動庁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前項의 許可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条(報酬受領의 금지) 勤労者를 雇傭하고자 하는 者와 그 募集에 종사하는 者 또는 勤労者의 募集을 委託받은 者와 그 募集에 종사하는 者는 名目의 如何를 不問하고 応募者로 부터 그 募集에 관하여 金品 기타의 利益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17条(勤労者 供給事業의 금지) ①누구든지 勤労者供給事業을 행하지 못한다. 다만, 労動組合法에 의한 労動組合의 労動庁長의 許可를 얻어 無料의 勤労者供給事業을 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前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労動庁長의 許可는 職業安定委員会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第18条(承認 또는 許可事業의 廃止申告) 第9条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 또는 許可를 받은 者와 第10条第1項 및 前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事業을 廃止하였을 때에는 廃止日로부터 7日以内에 労動庁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9条(承認 또는 許可의 取消等) 労動庁長은 第9条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 또는 許可를 받은 者와 第10条第1項·第13条·第14条 및 第17条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그 事業 또는 募集 行為가 公益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職業安定委員会의 議決을 거쳐 그 事業 또는 募集行為를 정지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20条(帳簿等의 備置) 第9条·第10条第1項·第13条·第14条 및 第17条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台帳·기타 필요한 書類를 備

置하여야 한다.

第21条(勤労条件의 明示) 求人者가 職業安定所에 求人 申請을 할 때에는 勤労者가 就業할 業務의 内容과 勤労条件을 明示하여야 하며 地方労動行政機関은 이를 求職者에게 明示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9>

第22条(通勤地域의 原則) ①地方労動行政機関은 求職者에 대하여 通勤할 수 있는 곳에 紹介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9>

② 前項의 規定은 다른 職業紹介事業에도 準用한다.

第23条(職員의 教養訓練) 政府는 職業紹介 職業指導 기타 이 法의 施行에 관한 事務에 종사할 職員에 대하여 필요한 教養과 訓練을 実施하여야 한다.

第24条(技能者登録) 技能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地方労動行政機関에 登録하여야 한다. <改正 74.12.24 法 2709>

第25条(보고와 検査) ①労動庁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勤労者를 雇傭한 者 또는 第9条. 第10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職業紹介를 하는 者에게 雇傭·離職 및 職業紹介와

賃金 기타 勤労条件에 관하여 보고를 命할 수 있다.

②労働庁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関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私設職業紹介所 事業場 기타 施設에 臨検하여 그 業務状況 또는 帳簿 기타 物件을 検査하게 하며 使用者·勤労者·勤労者의 募集者·勤労者供給事業을 行하는 労働組合에 대하여 尋問하게 할 수 있다.

③前項의 規定에 의한 検案을 행하는 関係公務員은 保健社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権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携帯하고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 26 条(秘密保障義務) 職業紹介 또는 勤労者 募集에 関係하거나 관계하는 者는 그 業務上 知得한 勤労者 또는 使用者에 관한 秘密을 漏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労働庁長의 指示에 의하여 公表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27 条(権限의 委任) 労働庁長은 이 法에 의한 그 権限의 一部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 28 条(国庫補助) 労働庁長은 第9条 및 第10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紹介事業을 행하는 法人에게 그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第29条(罰則)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処한다

1. 暴行·脅迫·監禁 기타 精神 또는 身体의 自由에 부당한 拘束을 加하는 手段으로써 職業紹介 또는 勤労者의 募集을 행한 者와 이에 종사한 者.

2. 公衆衛生 또는 公衆道德上 有害한 業務에 就業시킬 目的으로 職業紹介나 勤労者의 募集을 한 者 또는 이에 종사한 者

第30条(同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以下의 懲役 또는 30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9条第1項·第10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얻지 아니하고 職業紹介를 한 者.

2. 第15条·第16条·第17条第1項 本文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31条(同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以下의 懲役 또는 5萬원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10条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거나 第19条의 規定에 의한 停止処分에 違反한 者.

2. 第25条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臨検 또는 検査를 拒否한 者

3. 第11条·第13条 및 第14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32条(同前) 다음 各号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萬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1. 第13条但書 및 第18条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0条·第24条·第26条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25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虚偽의 보고를 한 者.

第33条(両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本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被用者가 그 法人 또는 本人의 業務에 관하여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한 行為를 한 때에는 行為者를 処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本人에 대하여도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経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의 職業安定所·職業安定委員会 및 失業対策委員会는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附　　則 <74.12.24 法2709>

이 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보건사회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72.11.30 보건사회부령 제40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법인의 설립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법인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 (설립 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기부 신청서 (그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 기관등의 증명서 1부

6. 사업개시 예정일과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명함판 사진 첨부), 신원증명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첨부), 호적등본 각 1부 및 민간인신원진술서 4부

8. 창립총회 회의록 1부

9.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사단일 경우에는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0. 설립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제 4 조 (허가기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보건사회부장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5 조 (심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 장관은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 3 조제 4 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보고이전서에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 49 조 내지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당해 등기보고서에 그 등기부등본 1 부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 42 조 제 2 항, 동법 제 45 조 제 3 항 또는 동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 이유서 1 부
2. 정관 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 부

4.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대조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 1부

제9조(임원선임의 보고등) ①법인은 임원을 선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원선임보고서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경우에는 제1 및 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 첨부) 1부
3. 신원증명서 1부
4.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6. 호적등본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 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년도말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목록 (현금에 대하여는 금융 기관의 잔고증명서 첨부) 1부
4. 재산의 증감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5.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이동상황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11 조 (재산의 증가보고) 법인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 조치하고, 재산증가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 12 조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①법인은 기본재

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1월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1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및 재산의 감정서 각 1부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 및 그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그로 인하여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전체재산의 감정서 첨부) 1부

②보건사회부 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그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의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4.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5.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7. 업무일지

8.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민법 제55조에 규정된 재산목록·사원명부 및 전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는 영구, 제6호의 서류는 10년, 기타의 서류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법인사무의 검사, 감독) ①보건사회부 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보건사회부 장관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

고자 할때에는 그 취소 사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해산신고) 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년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전항의 신고를 할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해산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③법인은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법인 해산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신청당시의 정관 1부

제17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 허가신청서를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

2.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및 금액

3. 재산의 처분방법 및 처분 계획서

제18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보건사회부령 제264호 보건사회부 소관 법인설립등에 관한 신청서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 運營細則

1974.2.9. 保健社会部例規 第318号
改正 1975.1.16. 保健社会部例規 第334号

第1条(目的) 이 細則은 社会開発計劃樹立 또는 其他 事項에 必要한 各種資料의 蒐集 또는 調査事項의 能率化를 図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条(研究班 設置) ①前条의 目的事業을 遂行하게 하기 위하여 社会局長 所属下에 社会保障審議委員会의 研究委員 및 参事로 構成한 研究班을 둔다.

②第1項의 研究班에는 社会開発, 社会福祉, 公的扶助, 社会保険, 地域社会開発担当을 두고 各班은 研究委員 1人과 参事 2人 以内로 構成한다.

第3条(業務分掌) ①研究班에 所属된 研究委員과 参事는 各各当該年度 運営計劃上의 事業을 中心으로 細分된 業務를 社会局長의 監督하에 이를 分担하여 処理한다.

②其他 保健社会部 行政遂行에 必要한 諸般調査研究業務計劃樹立 및 執行과정에 있어서 必要한 때에는 当該業務와 関係되는 業務를 管掌한 研究委員 또는 参事에게 分担하여 処理하게 할 수 있다.

第4条(業務의 綜合) 社会開発担当官은 研究班의 各個人別 業務遂行의 円滑을 期하고 研究班 全体業務의 綜合 또는 調整을 한다.

第5条(報告) 社会開発担当官은 研究班의 各種業務事項을 聚合하여 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6条(勤務) 研究班에 勤務하는 研究委員 또는 参事의 勤務에 関하여는 公務員法의 規程에 의하여야 한다.

附 則

①이 運営細則은 1974 2月9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例規는 1975年1月1日부터 適用한다.

②(廃止) 社会保障審議委員会 研究委員中 首席研究委員職務範囲에 관한 件(1970.6.3. 例規 第247号)은 이를 廃止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수당지급규정

1970.4.22. 보건사회부 예규 제244호
개정 1975.1.16. 보건사회부 예규 제33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 연구위원 및 참사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자문수당)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지침 및 기준에 의한 1호 위원수당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개별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도 전기상당액을 자문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상임심의위원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연구수당) ①연구위원 및 참사에 대하여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연구위원 및 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에 준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준한다.

제4조(여비) ①심의위원 연구위원 및 참사로서 자료 수집 또는 조사연구를 위하여 국내의 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1. 심의위원 일반직공무원 1급 상당액

2. 연구위원 일반직공무원 2급갑류 상당액

3. 참사 일반직공무원 2급을류 상당액

②항의 여비지급 방법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70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1968년4월1일 보건사회부 내규 제46호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위원, 연구위원 및 참자에 대한 제급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7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 표) 연구수당지급기준

지급구분	지 급 기 준
연구위원	일반직 국가공무원 2급갑류봉급 상당액
참 사	일반직 국가공무원 2급을류봉급 상당액

'76 정기국회통과 法律 추록

法律 第 号

入養特例法

(1976.12.16. 국회본회의 통과)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保護施設에서 保護를 받고 있는 者의 入養을 促進하고 養子로 되는 者의 安全과 福利增進을 図謀하기 為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養子로 될 者의 資格) ① 이 法에 依하여 養子로 될 수 있는 者는 保護施設(児童福利法에 依한 児童福利施設과 生活保護法에 依한 保護施設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 있는 18歲 未滿의 者로서 다음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이어야 한다.

1. 保護者로부터 離脫된 者로서 管轄 서울特別市長·釜山市場 또는 道知事(以下 "道知事"라 한다)가 扶養義務者를 確認할 수 없어 保護依賴한 者

2. 父母가 入養을 同意(父母가 死亡 其他 事由로 同意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直系專屬의 同意)하거나 後見人이 入養을 同意하여 保護依賴한 者

3. 法院에 依하여 親權喪失의 宣告를 받은 者의 子로서 道知事가 保護依賴한 者

4. 其他 扶養義務者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養子로 될 者에는 戶主나 戶主의 直系卑屬 長男者를 包含한다.

第3條(養親이 될 者의 資格) 養親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号의 要件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1. 養親이 될 者의 本国法에 依하여 養親이 될 수 있는 資格이 있는 者일 것.

2. 養子를 扶養함에 充分한 財産이 있을것.

3. 養子를 賤業, 苦役, 其他 人権유린 憂慮가 있는 職業을 위하여 使用하지 아니할 것.

4. 養子에 対하여 宗教의 自由를 認定하고 社会의 一員으로서 그에 相応한 養育과 教育을 할 수 있을것.

第4條(入養의 同意) ① 第2條第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父母의 同意를 父母가 死亡 其他 事由로 同意할 수 없는 境遇에는 다른 直系尊属의 同意를 父母나 다른 直系尊属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境遇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2号에 該当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保護依頼時의 入養同意로써 入養의 同意에 갈음할 수 있다.

② 15歲 以上인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養同意外에 当該 養子로 될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後見人의 入養同意에는 親戚会의 同意를 要하지 아니한다.

第5條(入養取消請求의 訴의 制限) 이 法에 依하여 入養되어 6月이 經過된 때에는 養子·養親·親父母 其他 関係人은 다음 各号의 1에 該当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入養取消請求의 訴를 提起할 수 없다.

1. 약취 또는 誘引에 依하여 保護者로 부터 離脫되었던 者가 養子로 된 境遇

2. 사기 또는 강박으로 因하여 入養의 意思表示를

한 境遇

第2章 国内入養

第6條(入養의 効力発生) ① 養親이 大韓民国 国民인 境遇에 있어서의 入養은 戸籍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効力이 생긴다.

② 第1項의 申告는 養親이 養子로 될 者의 後見人과 함께 書面으로 하되, 다음 各号의 書類를 添付하여야 한다.

1. 養子로 될 者가 第2條第1項各号의 1에 該当되는 者임을 証明하는 書類
2.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을 同意한 事実을 証明하는 書類

第7條(養子의 姓과 本) ① 이 法에 의하여 養子로 되는 者는 養親이 願하는 때에는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養親의 姓과 本을 따른 養子가 破養 또는 入養이 取消된 경우에는

本来의 姓과 本을 따른다. 이 경우에는 그 養子이었던 者가 第2條第1項 各号의 1에 該当되었던 者임을 証明하는 書類를 갖추어 戸籍法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3章 国 外 入 養

第8條(国内에서의 国外入養) ① 外国人이 国内에서 第2條 第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当該 外国人은 後見人과 함께 養子로 될 者의 本籍地 또는 住所地를 管轄하는 家庭法院에 다음 各号의 書類를 갖추어 入養認可申請을 하여야 한다.

1. 第6條 第2項 各号의 書類
2. 養子로 될 者가 第2條 第1項 第1号 第3号 또는 第4号에 該当되는 者인 경우에는 扶養義務者를 確認하기 위한 公告 事実이 있었음을 証明하는 書類

② 法院의 入養認可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써 하여야 한다.

第9條(外国에서의 国外入養) ① 外国人이 国外에서

第2條 第1項 各号의 1에 該当하는 者를 養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関한 入養斡旋業務를 行하는 機関에 그 斡旋을 依頼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養斡旋業務를 行하는 機関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入養斡旋機関이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養斡旋을 依頼받은 入養斡旋機関의 長이 入養斡旋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8條 第1項 各号의 書類를 갖추어 当該 養子로 될 者의 海外移住許可를 保健社会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④ 養子로 될 者가 海外移住許可를 받고 出国하여 当該国의 国籍을 取得한 때에는 入養斡旋機関의 長은 遅滞없이 이를 法務部長官에게 報告하고 法務部長官은 職権으로 그의 大韓民国 国籍을 除籍할 것을 本籍地 管轄 家庭法院에 通知하여야 한다.

第4章　入養斡旋機関

第10條（入養斡旋機関）① 入養斡旋機関이 되고자 하는 者는 保護施設을 運営하는 法人으로서 保健社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事項을 変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入養斡旋機関의 許可基準 其他 許可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外国人은 入養斡旋機関의 長이 될 수 없다.

④ 入養斡旋機関의 長이 入養対象国이나 当該国의 公認機関과 入養業務에 関한 協約을 締結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1條（養親의 家庭調査와 秘密維持）① 入養斡旋機関의 長은 入養斡旋을 行함에 있어서 그 養親이 될 者에 対하여 第3條 各号의 事実을 詳細히 調査 하여야 한다.

② 入養斡旋機関의 長은 入養을 위하여 入養될 者의 姓名，写真 또는 身分에 関한 事項을 広告할 수 없다.

③ 入養斡旋機関에 従事하는 者 또는 従事하였던 者는 그 業務에 関하여 知得한 秘密을 漏洩하여서

는 아니 된다.

第12條(入養斡旋機関의 長의 후견 직무) 入養斡旋機関의 長은 入養을 斡旋하기 為하여 保護施設의 長으로 부터 入養될 者를 引受한 때에는 그 引受한 날로 부터 入養이 完了될 때까지 後見人으로서의 職務를 行한다.

第13條(無籍児童의 취적) 第9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入養斡旋을 依頼 받은 入養斡旋機関의 長은 그 養子로 될 자가 無籍者인 境遇에는 그 者에 対한 취적 또는 일가創立의 節次를 밟을 수 있다.

第14條(監 督) ① 保健社会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入養斡旋機関에 대하여 그 入養業務에 関한 報告를 命하거나 関係公務員으로 하여금 入養에 関한 書類의 調査 또는 必要한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境遇에 関係公務員은 그 権限을 証明하는 証票를 関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15條(許可의 取消 等) 保健社会部長官은 入養斡旋機関이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

反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第5章 補 則

第16條(準用規定) 入養에 関하여 이 法에 特別히 規定되어 있는 事項을 除外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依한다.

第17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関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章 罰 則

第18條(罰 則) ①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許可없이 第9條의 入養斡旋業務를 行한 者는 5年以下의 懲役 또는 100万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② 第11條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万원 以下의 罰金에 処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30日이 經過한 날로 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入養認可에 関하여 法院에 繫属中인 것은 従前의 例에 依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고아入養特例法에 依하여 許可받은 入養斡旋機関은 이 法에 依하여 許可받은 入養斡旋機関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로 부터 6月内에 이 法에 依한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④ (廃止法律) 法律 第731号 고아入養特例法은 이 法의 施行과 同時에 이를 廃止한다.

'76 정기국회통과 法律 추록

法律 第 号

産業災害補償保險法中改正法律案

(1976.11.30. 국회본회의 통과)

産業災害補償保險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條(目 的) 이 法은 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以下 "保險事業"이라 한다)을 行하여 勤勞者의 業務上의 災害를 迅速하고 公正하게 補償하고 이에 必要한 保險施設을 設置·運營함으로써 勤勞者 保護에 寄与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7條 第1項 中 "前條 第1項"을 "第6條 第1項"으로 "前條 第2項"을 "第6條 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2項 中 "前項 第1号"를 "第1項 第1号"로, "前項 第2号"를 "第1項 第2号"로 한다.

第8條 第1項 第2号 中 "前條 第2項"을 "第7條 第2項"으로 하고, 同項 第3号 中 "前2号"를 "第1号 및 第2号"로 하며 同條 第2項 中 "前項 第2号"를 "第1項 第2号"로 한다.

第9條의 7 第1項 中 "前條"를 "第9條의 6"으로 하고, 同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하며, 同條 第3項 中 "前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9條의 9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一時給与를 算定함에 있어서 그 勤労者가 所属한 事業의 同一한 職種의 勤労者에게 支給되는 通常賃金이 顯著히 変動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平均賃金을 增減할 수 있다.

第14條 第1項 中 "労動庁長은"을 "労動庁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同條 第3項 中 "前2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18 條 (保險施設) ① 労動庁長은 다음 各号의 保險施設을 設置·運営할 수 있다.

1. 療養 또는 外科後 処置에 관한 施設

2. 医療再活 또는 職業再活에 관한 施設

3. 災害豫防에 관한 施設

② 労動庁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을 그가 指定하는 法人으로 하여금 運営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指定된 法人에게는 保險施設을 無償으로 貸与할 수 있다.

第 18 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18 條의 2 (身体障害者 雇傭促進) 労動庁長은 이 法에 의한 障害給与를 받은 者의 障害程度를 參酌하여 保險加入者第 当該者를 適性에 맞는 業務에 雇傭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 19 條의 2 第1項 中 "保險料 其他 徵収金"을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収金"으로 하고, 同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 23 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同條 第3項 中 "前2項"을 "第1項 및 第2項"

으로 하며, 同條 第4項 中 "第1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保險加入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概算保險料中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納付할 수 있는 概算保險料의 全額을 第1項 및 第2項의 法定納付期限內에 納付하는 境遇에는 그 概算保險料의 額에서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控除하여 徵收한다.

第25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同條 第4項中 "前2項"을 "第2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25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의 2 (加算金의 徵收) 勞動庁長은 第2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料를 徵收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 그 徵收하여야 할 保險料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額을 加算金으로 徵收한다.

第26條 第1項 中 "保險料 其他 徵收金"을 "保險料 其他 이 法에 依한 徵收金"으로 하고,

同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保險料 其他 徵收金"을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으로 한다.

第26條의 2 第1項 中 "保險給与를 支給한 때에는" 다음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同條 第2項 中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書類의 送達)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에 関한 書類의 送達에 관하여는 国税基本法 第8條 乃至 第12條의 規定을 준용 한다.

第29條 中 "保險料 其他 徵收金"을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으로 한다.

第30條 第1項 中 "保險料 其他 徵收金"을 "保險料 其他 이 法에 의한 徵收金"으로, "2年間"을 "3年間"으로 하고, 同條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1項의 消滅時効에 関하여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民法에 의한다.

第30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0條의 2 (時効의 中断) ①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消滅時効는 다음 各号의 事由로 因하여 中断된다.

1. 第9條 第2項 또는 第25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한 請求.

2. 第27條의 規定에 依한 督促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通知.

3. 第27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処分節次에 따라 行하는 交付請求.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断된 消滅時効는 다음 各号의 期間이 経過한 때로 부터 새로이 進行한다.

1. 督促에 의한 納付期間.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知한 納付期間.

3. 交付請求中의 期間

第34條 第2項 中 "前條 第2項"을 "第33條 第2項"으로,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37條 中 "前條"를 "第36條"로 한다.

第9條 第2項·第9條의 2 第2項·第9條의 3 第2項·第9條의 4 第2項·第9條의 5 第2項

第12條 第2項·第12條의2 第2項·第15條 第2項·第21條 第2項·第27條 第2項 및 第33條 第2項 "前項"을 各各 "第1項"으로 한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当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消滅時效의 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한 權利에 대하여는 法의 時效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